##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현 대호•김 명 아

연구보고 2015-07

# 2015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현 대 호•김 명 아

# 2015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A Research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2015 

연구자 : 현대호(연구위원)<br>Hyeon, Dae-Ho<br>김명아(부연구위원)<br>Kim, Myoung-Ah

2015. 10. 30.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 령의 개선과 법치주의의 실현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국민법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 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 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법제도와 국민법의식의 상호 조 화를 통하여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square$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종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온 국민법 의식 조사 연구에서와 같이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하여 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국가법제도의 주요 이슈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고찰하 고자 함

○ 특히,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서는 새로 도입한 국민법의 식지표를 활용하여 국민법의식과 그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제도의 개선과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П. 주요 내용

$\square$ 사회 변동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 가족 내 의사결정주체가 부모(부부)공동이라는 응답비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 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 유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 으며,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 고, 그 이유로는 사회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음
- 법에 대한 인상은 권위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 는 60 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률관련 정보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지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인터냇을 통하여 얻는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계약서 숙지정도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이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많아졌으며 매우 자세히 읽는 응답의 비율은 감소 추세였음
- 준법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준법정도보다 자신의 준 법정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으며, 법을 비준수하 는 이유로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불량품을 구입 시 대처방법에는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와 '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대조적인 응답이 비슷한 비 율로 나타났음
$\square$ 현행 법제도와 국민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 로스쿨제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은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 사형제는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고, 안락사(존엄사)에 대 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계열적으로는 찬성의견의 비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

○ 노사관계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책임에는 사업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해 서는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았음

○ 비정규직 보호법은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직업별로 보면 무직/기타와 학생 집단이 성과가 없다고 많이 응답하였음

○ 간통죄 폐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율이 높았음

○ 성매매종사자 처벌은 찬성의견이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 율이 더 높았음

○ 김영란법 도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응 답이 많았음
$\square$ 국민법의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여 이해하기 위하 여 국민법의식지표(6개 분야의 30개 설문 문항)를 개발하 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음

○ 2015년 국민법의식지수는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 6 개 차 원별 국민법의식지수는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법에 대한 관심’, ‘법의 실효성 보 장’, ‘법에 대한 인식/정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법 에 대한 준수'와 ‘법의 제정/집행’ 지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음

○ 2015년 국민법의식지수는 50 대 이상 연령층이 40 대 이하 연령 층에 비해 10점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지 역규모가 클수록,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보다는 미혼 이외 계층의 법의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는 현행 법제도의 시계열 분 석과 이슈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 변화를 고찰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국민법의식 지표와 지수를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법의식을 분석 하여 차원별 및 항목별로 국가법제도의 개선 전략을 제시 하였음

○ 다만, 시계열분석 설문항목과 법제이슈 설문항목은 여전히 해당 설문항목에 한정하여 국민법의식을 고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국내외 사건 및 언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음

○ 국민법의식 지표는 수치화 된 지수형태로 국민법의식을 제시하 였기에 점수화 된 국민법의식 지수가 가지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국민법의식 지표 는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점 등에서 분석 상 한 계가 있음

## III. 기대효과

$\square$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square$ 현실에 맞는 국가법제도의 집행과 국민법의식 수준에 상응 하는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정부에 대한 정책 자료 제공

2 주제어 : 법치국가, 법치주의, 국민참여재판, 로스굴, 간통, 사회적 약자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O Recently, the amendment of legislation and the achievement of Rechtsstaat(Rule of Law) to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levels have been becoming an issue in Korea. Thus, the validity of leg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legal awareness among the public needs to be strengthened more than ever before.

O Also, at the moment when Korea moves to an advanced or developed nation from an emerging or developing one, the need for the realization of an advanced Rechtsstaat(Rule of Law) through the mutual harmony between the national legal systems and the legal awareness of the public is highlighted more than ever before.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as in the one previously conducted by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ims to consider the change of the legal awareness among the public by means of the chronological analysis of the public's legal awareness and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regarding the major issues in the national legal systems in order to figure out the change of the legal awareness among the public.

O Especially, the study on the legal awareness among the public conducted in 2015 creates a foundation to improve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to establish an advanced Rechtsstaat(Rule of Law). in accordance with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levels in Korea, based on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legal awareness among the public and its change by applying the new indices of the public's legal awareness.

## П. Main contents

$\square$ Survey Results about the Change in the Society and the Public's Sense of Values

O The ratio of the responses in which both the parents or husbands and wives alike are involved in family decision making is steadily increasing. Furthermore, many people respond that women are not discriminated in decision-making at the household level. Most of the respondents think that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family decision making results from male chauvinism in a patriarchal culture.

O Regarding the Incentive System for Military Service, the ratio of the advocates for the system is overwhelmingly high. Many of the respondents think that the underprivileged are mistreated in society, which is triggered by the lack of the social support or the government's attention.

O Many of the respondents consider legal systems to be authoritative.

O The number of people aged 60 and older, who consider legal system to be positive, is more higher than any other age group.

O Many respondents are shown to get information on legal systems by the media; from the chronological perspective, however, the ratio of the respondents who get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is steadily increasing.

O Regarding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informed about the content of the contract, the number of people who read the contracts are higher than those who do not read it, but the ratio of people who read the contract carefully tends to decrease.

O As for a question regarding the degree to which they abide by laws, the degree of law-abidingness on an individual level is shown to b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at on a social level. With regard to the reason why people do not stick to the law, the respondents feel that they are at a disadvantage when abiding by laws.

O Concerning the way in which people deal with them when purchasing defective products, the ratio of the responses in which they exchange the defective items to their satisfaction is equal to that of the responses in which they do nothing with them once purchasing the items.
$\square$ Survey Results about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the change of the public's legal awareness

O Many respondents think that law school system is not successful, whereas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s relatively successful.

O Many respondents are against death penalty, but support euthanasia; from the chronological perspective, the ratio of the supporters are not substantially different.

O Many respondents think that Labor Management Relations Laws are not realized, which is attributed to owners or employers. For corporations which trigger environmental pollution, many thinks, more strict regulations must be made than the current ones.

O Many thinks Irregular Worker Protection Laws are not successful. Among the groups of the respondents are the student and the unemployed and other groups.

O Regarding the abolishment of the adultery law, many object to the abolishment, and women are against the abolishment more than men.

O Many support the law punishing those engaged in prostitution, and women are for it more than men.

O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Kim Young Ran Law, many think the law is successful.
$\square$ To fully quantify and understand the public's legal awareness, the public's legal awareness indices (30 survey questions in 6 sections) are develop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O The indices for the public's legal awareness in 2015 are shown to be above average. Among six sections of the indices for the public's legal awareness, the index for the preservation of human
rights i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index for the interest in law, the index for the validity of law, and the index for the awareness and affectiveness of law in order. The indices for the observation of law and for the enactment and execution of law are relatively lower than any other index.

For the indices for the public's legal awareness in 2015, people aged 50 and older have 10 points higher than those aged 40 and younger. The indices are relatively higher in the groups of the lower level of education, the relatively larger size of community, the married rather than the unmarried, respectively.

The present research about the public's legal awareness lead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change in the public's legal awarenes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legislation through the previous chronological approaches and the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legal systems. Developing and utilizing the indices for the public's legal awareness helps to provide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legal systems in terms of the levels and the items through the scientific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public's legal awareness.

O The question items related to the chronological analysis and the legislation issues have still limitations to consider the public's legal awareness only with the relevant question items, and can be affected by the acciden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nation.

O The indices for the public's legal awareness have some limitations:

- As the public's legal awareness is represented quantificationall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degree of accuracy and reliability about the quantified value of the public's legal awareness can occur.
- There are no objects to be compared with the indices for the public's legal awareness.


## III. Expected Effect

$\square$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amend the national legislation and regulation, and to realize an advanced Rechtsstaat(Rule of Law).These results help the government to utilize the data for the government policy-making to realistically execute the national legal systems and to strengthen the validity of the legal systems to the level of the public's legal awareness.
$\begin{aligned} \text { D Key Words : } & \text { Constitutional State, Rule of Law, Citizen } \\ & \text { Participatory Trial(Jury Trial), Law School, } \\ & \text { Adultery, The Underprivileged }\end{aligned}$

## 목 차

요 약 문 ..... 5
Abstract ..... 11
제 1 장 서 론 ..... 2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21
제 2 절 설문의 개발 및 조사방법 ..... 22

1. 설문의 개발 및 재구성 ..... 22
2. 조사의 방법과 한계 ..... 31
제 2 장 사회변동과 국민법의식 ..... 53
제 1 절 개 관 ..... 53
제2절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54
3.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 54
4. 여성의 지위 ..... 58
5. 병역의무이행자의 지위 ..... 67
6. 사회적 약자의 지위 ..... 72
제 3 절 법생활과 법의식의 변화 ..... 77
7. 법에 대한 인상 ..... 77
8. 생활에서의 법경험 ..... 80
9. 법생활과 준법 정도 ..... 88
10. 법생활과 권리의식 ..... 101
제 3 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 107
제 1 절 개 관 ..... 107
제 2 절 사법개혁 관련제도의 도입과 법의식 변화 ..... 108
11. 로스쿨제도 ..... 108
12. 국민참여재판 ..... 114
제 3 절 현행 법제와 법의식 변화 ..... 118
13. 사형제 폐지의 여부 ..... 118
14. 안락사 허용의 여부 ..... 122
15. 노사관계법의 준수 정도 ..... 126
16.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의 정도 ..... 133
17. 비정규직 보호의 성과 ..... 137
18. 간통죄의 찬반 여부 ..... 139
19. 성매매종사자 처벌의 여부 ..... 144
20. 김영란법 도입의 성과 ..... 148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 153
제 1 절 지표 개발 배경 및 과정 ..... 153
21.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배경 ..... 153
22.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과정 ..... 154
제 2 절 전문가 가중치 산출 방법 및 적용 ..... 170
23. 가중치 산정 방법 ..... 170
24. 지표 도출을 위한 가중치 산정 절차 ..... 171
25. 중요도 산출 결과 예시 및 의의 ..... 174
제 3 절 국민법의식 지표 결과 분석 ..... 176
26. 문항별 분석 ..... 176
27. 차원별 분석 ..... 258
28. 종합 분석 ..... 282
제 5 장 결 론 ..... 291
참 고 문 헌 ..... 297
<부 록> ..... 303
I. 응답자의 특성 ..... 305
ㅍ. 조사지점 ..... 307
III. 기본빈도표 ..... 319
IV. 교차집계표 ..... 333
V. 2015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 39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사회，문화 및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 며 다른 외국과의 교류도 크게 증가하여 왔다．이러한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민법의식 수준과 오늘날 국민법의식 수준 간에 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현행 법제도와 전통법（또는 관습법） 등과도 차이가 나타나는 분야들도 나타났다．특히，현행 국가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국민법의식이 바로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차를 두고서 변화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사회 법규범과 국민 법의식 간에 차이가 있는 분야가 있다．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선진 국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법제 도와 국민법의식의 상호 조화를 통하여 선진법치국가 실현이 주목되 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 령의 개선과 법치주의의 실현이 중요하며，국민법의식 수준에 상응하 는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종래 한국법제연구원（이하＇본원＇이라 한다）에서는 여러 차례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이를 통하여 국민법의식 수준 과 그 변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법치주의 실현을 모색하여 왔다．이번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도 91년•94년•08년 국민법의식 조 사1）에서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 여＇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에 관한 설문 문항’과＇국 가법제도의 주요 이슈 분석에 관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

1） 2015 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본원에서 수행한 여러 번의 국민법의식 조사 중 1991년 조사（박상철외 2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 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박상철외 2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 구원，1994）및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를 시계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민법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2 ) 또한 이번 국민법의식 조사에 서는 국민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민법의식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국민법의식의 수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는 법인식 관련 다양한 설문 문항을 활용한 분야별 설문조사와 법인식 관련 수치화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활용한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민법의식 변화를 파악하 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선진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국가법제 도의 개선방안과 현실에 맞는 국가법제도의 집행 등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한다.

## 제 2 절 설문의 개발 및 조사방법

## 1. 설문의 개발 및 재구성

(1) 설문 개발의 방향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는 종래의 시계열분석 과 최근 현행 법제도에 대한 국민법의식의 수준을 살펴보고, 아울러 국민법의식의 종합적인 통계를 생성하여 국가차원의 법제개선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즉 (1)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알기 위한 시계열 분야의 설문항목, (2) 현행 법제도에 대한 국 민법의식 수준과 그 변화를 알기 위한 분야의 설문항목 및 (3) 종합적 인 국민법의식을 알기 위한 국민법의식지표 분야의 설문항목으로 나누 어서 설문항목을 구성하고 개발하였다.3)
2) 이 연구에서 설문문항은 내부연구자와 외부전문가 및 설문조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 및 워크욥 등을 통하여 개발되고 수정•보완되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및 제 5 장은 현대호박사가, 제 4 장은 김명아박사가 작성하였다.
3) 본원에서 실시한 1991년과 1994년의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조사한 분야 및 설문항목, 그리고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조사한 분야 및 설문항목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그림 1＞설문항목의 구성 및 개발 방향

（2）2015년 설문항목의 재구성 및 개발

1） 2015 년 설문항목의 재구성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종래 본원에서 수행하여 온 국민법 의식 조사 중에서 시계열 분석과 현행 법제도의 분석에 관련하여 국 민법인식을 질의하는 설문항목 중에서 일부 문항을 추가하거나，삭제 하거나，수정하거나，또는 위치를 변경하였다．구체적으로 2008년 설 문항목을 기준으로 달라진 설문항목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2008년에는 만 18 세이상을 조 사대상자로 선정한 것4）과 달리 이번 조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을 조 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이는 『민법』 제4조가 개정되어 사람의 성년 을 19 세로 변경한 것과 『공직선거법』 제 15 조제 1 항에서 19 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는 등의 달라진 연령기 준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27－29면 참조． 4）이세정•이상윤，${ }^{『}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2008．112면．

둘째，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에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중에서 ＂문4）최근 국제결혼여성，외국인 노동자，새터민（탈북자）등이 국내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 까？혹은 반대하십니까？＂라는 문항5）을 삭제하였다．이는 2008년 당시 에는 어느 정도 국민법의식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국민법의식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낮 아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셋째，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중에서＂문5） ○○님은＇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라는 문항（6）은 비록 설문항목 중에서 일부 구분이 모호한 사항（‘1．공평하 다＇와＇2．민주적이다＇라는 답변의 구분）이 있지만，긍정적인 응답을 질문하는 항목이고 아울러 시계열분석 차원에서 그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 왔기에 수정하지 않았다．그러나＂문6）○○님은 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6－1）（문6）에서＇1，2번＇응답자에게만）그럼，법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문7）○○님은＂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혹은 그렇지 않습니 까？＂，＂문8）○○님은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혹 은 그렇지 않습니까？＂이라는 문항은 삭제하였다．7）이들을 삭제한 이 유는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 새로 도입한 문항（국민법의식지표에

5）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2008．114면．
6）이세정 • 이상윤，${ }^{『}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2008．114면．
7）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2008．114면， 115면．

관한 문항)에 따른 설문항목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문6)과 문6-1)을 삭제하고, 문7)과 문8)은 국민법의식지표의 유사한 설문항목(문28과 문29)으로 대신할 수 있어서 이를 삭제하였다.

넷째, 법생활에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중에서"문10) ○○님은 뉴스 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판결에 관한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11) ○○님은 법적 문제 발 생시 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 습니까?", "문11-1) (문11)에서 '1번' 응답자에게만)그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렵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11-2) (문11-1)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그럼, 이용하 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2) ○○님 은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4) ○○님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5) ○○ 님은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문16) ○○님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만약 법에 대 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다음 중 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18) ○○님은 사회생 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문23)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 해 주십시오.", "문24)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

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5) ○○님이 뺑소니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27) 만일, ○○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문28)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님의 자녀가 이러한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을 삭제 하였다.8) 그 이유는 문10)은 문9)(" $\bigcirc \bigcirc$ 님은 생활법률 관련 정보를 주 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에 대한 설문으로 대신할 수 있어 서 이를 삭제하였고(구체적인 이유를 질문하지 않아도 국민법의식 분 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11)부터 문11-2)는 2008년 당시 로 스쿨제도의 도입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설문항목에 해당되어 삭제 하였으며, 문12)는 국민법의식지표에서 유사한 설문(문23)으로 대신하 여 이를 삭제하였다. 문14)부터 문17)까지는 2008년 당시 법교육의 중 요성과 관련한 설문항목으로 이를 반드시 유지할 만한 필요성이 낮고 정책적 질문에 가까워서 이를 삭제하였고, 문18)과 문23) 및 문24)는 국민법의식을 대표하는 설문(문30과 문23)으로 대표성이 낮아 이를 삭 제하였으며, 문25)와 문27) 및 문28)의 설문항목은 국민법의식지수에 서 유사한 설문으로 대신하였기에 이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2008년 설문항목에서 "문19) ○○님은 법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9-1) (문19)에서 ' 1,2 번, 응답자에게만)그럼,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0) ○○님은 본인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도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문19)와 문19-1) 및 문20)에 관련
8)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6면123면.

하여 국민법의식지표에서 유사한 설문항목(문25와 문24)으로 대신하였 기에 이를 삭제하였다.

다섯째, 사법개혁에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중에서 "문29) ○○님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 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0) ○○님은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1) ‘로스쿨(법학전문대 학원)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 O님은 오늘 이전에 '로스쿨 제도’에 대해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32) ○○님은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3)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 입되었습니다. ○○님은 오늘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듣거 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을 삭제하였다.9) 그 이유는 문29)은 국민법 의식지표에서 유사한 설문항목(문48)으로 대신하였기에 이를 삭제하였 고, 문 30 )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과에 대한 설문항목(문 18 과 문 25 ) 등으로 대신할 수 있어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문31)부터 문34)까지는 로스쿨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과를 묻는 설문항목(문12와 문18) 으로 수정하였기에 이를 삭제하였다.

여섯째, 현행 법제도에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중에서 "문35) ○○님 은 인터넷 실명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8) 다음은 헌법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bigcirc \bigcirc$ 님은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 렇지 않습니까?", "문39) ○○님은 우리 헌법에서 어떤 점이 가장 강

[^0] 124면.

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문41）○○님은 우리 사회에서 선 거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혹은 그렇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문41－1）（문41）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그럼，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을 삭제 하였다．그 이유는 문35）와 문41）및 문41－1）도 2008년 당시에 적합한 문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문39）는 국민법의식지표에서 유사한 설 문항목（문36부터 문41까지）으로 대신하여 이를 삭제하였다．10）

일곱째，설문 분석을 위한 DQ 사항 중에서 DQ 3 은 혼인상태에 대한 상세한 질의사항을 필요한 한도로 단순화하였고，2015년 설문에서 DQ3．（＂○○님 본인을 포함하여，함께 거주하시는 가족은 몇 명입니 까？＂와 DQ3－1．（＂（DQ3에서＇1번＇이외의 응답자에게만）그럼， $\mathrm{O} O$ 님 댁의 가구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를 신설하여 가구원수와 가 구원의 구성을 파악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DQ5）와 DQ 6 ）에서 질의 사항을 세분화하거나 과도하게 세분화 된 것을 단순 화하였고 DQ 7$)$ 의 종교와 관련된 질의사항을 삭제하여 필요 이상의 설문항목을 제외시켰다．11）

2）2015년 설문항목의 개발 및 예비조사의 반영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본 조 사에 앞서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예비조사의 결과는 시계열 분석 을 위한 설문항목과 현행 법제도에 대한 설문항목을 다음과 같이 재 구성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10）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2008．125면－ 27면．
11）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2008． 129 면， 130면．
<그림 2> 실태조사 항목 최종 설문안


또한 예비조사의 결과는 2008년 설문항목 중에서 선정하여 2015년 조사에 포함시킨 설문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2015년 설문항목으로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8)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가의 질 의한 결과 답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답변(예컨대,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 벌금형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어서 응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서 이를 반영하여 현행 규제보다 강화해야 하는지의 여부 정도만을 묻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3> 문항수정 사례(1)

## 문8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

OO님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2) 벌금형보다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4) 기타
(9) 잘 모르겠다

둘째, 문15)의 경우 2008년 설문에서는 마치 사형제 폐지를 유도하 는 설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가 검증결과 수정이 필요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보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설문항목을 수정하였다.
<그림 4> 문항수정 사례(2)

## 문15 사형제페지 찬반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과거 10 여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표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OO님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문구 자체가 응답시 편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삭제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과거 10 여년 동안 사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00 님은 '사형제 페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셋째, 예비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법의식지표에 관한 설문항목 중 1 개의 문항은 위치를 바꾸어 질의하고, 4 개의 문항은 문구를 수정 하여 질의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지표조사 항 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국민법의식지표의 수정 항목

| 구분 | 조사 항독 | 비고 |
| :---: | :---: | :---: |
| 국민 법의식 지표 (Par3. 지수산출 문항) | 21. 언톤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 차원1. 법에 대한 관심 |
|  | 22.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  |
|  | 23.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  |
|  | 24. 일상에 필요한 벌률지식 인지 |  |
|  | 25. 어협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 $\begin{aligned} & \text { 차원2. } \\ & \text { 법에 대ㅎㅏㅏ } \\ & \text { 인식/정서 } \end{aligned}$ |
|  | 26, 국민 의사흘 반영한 법제정 |  |
|  | 27. 입반 국민의 권리 보호 |  |
|  | 28. 평등, 자별 엾이 작응 |  |
|  | 29.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
|  | 30. 주위에 범죄 빨생시 신고 |  |
|  | 31. 정부의 법준수 정도 | 자원3. <br> 법에 대한 준수 |
|  | 32.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  |
|  | 33.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  |
|  | 34. 기업의 밥준수 정도 |  |
|  | 35.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  |


| 구눈 | 조사 항목 | 비고 |
| :---: | :---: | :---: |
| 국민 법의식 지표 (Par3. 지수산출 문항) | 36. 신체의 자유 보장 | $\begin{aligned} & \text { 차원4. } \\ & \text { 법ㅇㅇ 의한기본권 } \\ & \text { 보장 } \end{aligned}$ |
|  | 37. 이의 제기 및 정원권리 보장 |  |
|  | 38.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  |
|  | 39. 참정권 보장 |  |
|  | 40. 언른/츨판/접회/결사의 자유 보장 |  |
|  | 41. 재산권 형사의 자유 보장 |  |
|  | 42.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 차원5. <br> 법의 실효성 보장 |
|  | 43. 이웃 간 분쟁 감소 |  |
|  | 44. 범죄 감소 |  |
|  | 45. 공무원 부패 방지 |  |
|  | 46. 정부 권한 톨제 |  |
|  | 47. 국희의 공정한 입빱 | $\begin{aligned} & \text { 자ㅇㅝㅝ6. } \\ & \text { 법의 제정/집혐 } \end{aligned}$ |
|  | 48. 범원의 공정한 판결 |  |
|  | 49. 정부의 공정한 집행 |  |
|  | 50.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  |

## 2. 조사의 방법과 한계

(1) 조사 방법 및 경과

1) 조사 방법

본 조사의 표본은 종래와 같이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 집락추출법' 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이 조사방법은 지역별 최소표본수를 30 개 수준으로 정하고, 기본할당수준에 따라 제곱근비례배분방식을 적절하 게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조사의 표본추출 과정과 권역별 추출지점의 수는 아래와 같다.

```
<표 1> 표보ᄂ추추ᄅ과저ᄋ
```

지역별로 적절한 표본수 배정

지역 내에서 1 차 추출단위인 시/군/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선정
$\qquad$
시/군/구 내에서 읍/면/동으로 19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2 차 추출단위인 읍/면/동 추출
$\qquad$
추출된 읍/면/동 내에서 통/반/리를 추출
$\qquad$
최종 추출 단위는 가구로 3,000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표본 지점당 성별/연령별 할당된 사례수 고려
<표 2> 권역별 추출지점의 수

| 권 역 | 권역별 추출지점의 수 <br> 중소도시 |  |  |  |
| :---: | :---: | :---: | :---: | :---: |
|  | 읍/면 지역 | 호비 | 계 |  |
| 경인권 | 71 | 48 | 13 | 132 |
| 강원권 | - | 3 | 7 | 10 |
| 충청권 | 10 | 10 | 18 | 38 |
| 전라권 | 10 | 4 | 20 | 34 |
| 경상권 | 45 | 14 | 21 | 80 |
| 제주권 | - | 4 | 2 | 6 |
| 합 계 | 136 | 83 | 81 | 300 |

표본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할당 + 비례배분방식'으로 할당하였고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사후층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러한 표본추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집락에 속하는 지역과 조사지역별 할당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이를 다시 성 별 및 연령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표본집단에 속하는 지역 및 조사지역별 할당표본수

| 표본집단에 속하는 지역 및 조사지역별 할당표본 수 |  |  |
| :---: | :---: | :---: |
| 행정구역 | 모집단 | $30+\mathrm{a}$ (제곱근) |
|  |  | 할당(명) |
| 서 울 | $8,410,189$ | 535 |
| 부 산 | $2,936,485$ | 206 |
| 대 구 | $2,018,649$ | 151 |
| 인 천 | $2,343,432$ | 170 |


| 표본집단에 속하는 지역 및 조사지역별 할당표본 수 |  |  |
| :---: | :---: | :---: |
| 행정구역 | 모집단 | $30+\alpha$ (제곱근) |
|  |  | 할당(명) |
| 광 주 | 1,151,821 | 99 |
| 대 전 | 1,210,908 | 101 |
| 울 산 | 925,423 | 86 |
| 세 종 | 133,528 | 38 |
| 경 기 | 9,804,890 | 617 |
| 강 원 | 1,263,825 | 104 |
| 충 북 | 1,272,522 | 106 |
| 충 남 | 1,659,738 | 130 |
| 전 북 | 1,510,409 | 121 |
| 전 남 | 1,553,835 | 123 |
| 경 북 | 2,222,729 | 163 |
| 경 남 | 2,685,384 | 191 |
| 제 주 | 479,051 | 59 |
| 전 국 | 41,582,818 | 3,000 |

<표 4> 성별 및 연렁별 할당표본수

| 성별 및 연령별 할당표본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도 | 성 별 | 전 국 | 20 대 | 30 대 | 40 대 | 50 대 | 60 대 <br> 이상 |
|  | 소 계 | 3000 | 527 | 557 | 643 | 592 | 681 |
|  | 남 | 1489 | 279 | 284 | 328 | 299 | 299 |
|  | 여 | 1511 | 248 | 273 | 315 | 293 | 382 |

## 성별 및 연령별 할당표본 수

| 시 도 | 성 별 | 전 국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 | :---: | :---: | :---: | :---: | :---: | :---: | :---: |
| 서 울 | 소 계 | 535 | 101 | 108 | 110 | 101 | 115 |
|  | 남 | 261 | 51 | 54 | 55 | 49 | 52 |
|  | 여 | 274 | 50 | 54 | 55 | 52 | 63 |
| 부 산 | 소 계 | 206 | 36 | 35 | 40 | 44 | 51 |
|  | 남 | 101 | 19 | 18 | 20 | 21 | 23 |
|  | 여 | 105 | 17 | 17 | 20 | 23 | 28 |
| 대 구 | 소 계 | 151 | 27 | 26 | 33 | 31 | 34 |
|  | 남 | 74 | 15 | 13 | 16 | 15 | 15 |
|  | 여 | 77 | 12 | 13 | 17 | 16 | 19 |
| 인 천 | 소 계 | 170 | 32 | 33 | 38 | 35 | 32 |
|  | 남 | 85 | 17 | 17 | 19 | 18 | 14 |
|  | 여 | 85 | 15 | 16 | 19 | 17 | 18 |
| 광 주 | 소 계 | 99 | 19 | 20 | 22 | 18 | 20 |
|  | 남 | 49 | 10 | 10 | 11 | 9 | 9 |
|  | 여 | 50 | 9 | 10 | 11 | 9 | 11 |
| 대 전 | 소 계 | 101 | 19 | 20 | 22 | 20 | 20 |
|  | 남 | 50 | 10 | 10 | 11 | 10 | 9 |
|  | 여 | 51 | 9 | 10 | 11 | 10 | 11 |
| 울 산 | 소 계 | 86 | 16 | 17 | 20 | 18 | 15 |
|  | 남 | 44 | 9 | 9 | 10 | 9 | 7 |
|  | 여 | 42 | 7 | 8 | 10 | 9 | 8 |
| 세 종 | 소 계 | 38 | 6 | 9 | 9 | 6 | 8 |
|  | 남 | 18 | 3 | 4 | 5 | 3 | 3 |
|  | 여 | 20 | 3 | 5 | 4 | 3 | 5 |


| 성별 및 연령별 할당표본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도 | 성 별 | 전 국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begin{aligned} & 60 \text { 대 } \\ & \text { 이상 } \end{aligned}$ |
| 경 기 | 소 계 | 617 | 113 | 124 | 145 | 120 | 115 |
|  | 남 | 309 | 59 | 63 | 74 | 62 | 51 |
|  | 여 | 308 | 54 | 61 | 71 | 58 | 64 |
| 강 원 | 소 계 | 104 | 16 | 16 | 21 | 22 | 29 |
|  | 남 | 52 | 9 | 8 | 11 | 11 | 13 |
|  | 여 | 52 | 7 | 8 | 10 | 11 | 16 |
| 충 북 | 소 계 | 106 | 18 | 18 | 22 | 21 | 27 |
|  | 남 | 53 | 10 | 9 | 11 | 11 | 12 |
|  | 여 | 53 | 8 | 9 | 11 | 10 | 15 |

## 성별 및 연령별 할당표본 수

| 시 도 | 성 별 | 전 국 | 20 대 | 30 대 | 40 대 | 50 대 | 60 대 <br> 이상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130 | 21 | 23 | 26 | 25 | 35 |
|  | 남 | 65 | 11 | 12 | 14 | 13 | 15 |
|  | 여 | 65 | 10 | 11 | 12 | 12 | 20 |
| 전 북 | 소 계 | 121 | 19 | 19 | 25 | 23 | 35 |
|  | 남 | 60 | 10 | 10 | 13 | 12 | 15 |
|  | 여 | 61 | 9 | 9 | 12 | 11 | 20 |
|  | 소 계 | 123 | 18 | 18 | 24 | 24 | 39 |
|  | 남 | 62 | 10 | 10 | 13 | 13 | 16 |
|  | 여 | 61 | 8 | 8 | 11 | 11 | 23 |

## 성별 및 연령별 할당표본 수

| 시 도 | 성 별 | 전 국 | 20 대 | 30 대 | 40 대 | 50 대 | 60 대 <br> 이상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163 | 25 | 26 | 32 | 33 | 47 |
|  | 남 | 82 | 14 | 14 | 17 | 17 | 20 |
|  | 여 | 81 | 11 | 12 | 15 | 16 | 27 |
| 경 남 | 소 계 | 191 | 31 | 35 | 41 | 39 | 45 |
|  | 여 | 95 | 17 | 18 | 21 | 20 | 19 |
|  | 59 | 10 | 10 | 13 | 12 | 14 |  |
| 제 주 | 남 | 29 | 5 | 5 | 7 | 6 | 6 |
|  | 여 | 30 | 5 | 5 | 6 | 6 | 8 |

표본의 크기별 표본 오차 예시는 다음과 같고, 본 조사의 경우 표본 크기가 3,000 이므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 \%$ 신뢰수준에서 $\pm 1.8 \%$ 이내이다.
<표 5> 표본의 크기별 표본 오차 예시

| Observed <br> Percentage | 500 | 1000 | 2000 | 3000 |
| :---: | :---: | :---: | :---: | :---: |
|  | $\pm \%$ | $\pm \%$ | $\pm \%$ | $\pm \%$ |
| 40 or 60 | 4.4 | 3.1 | 2.2 | 1.8 |
| 30 or 70 | 4.3 | 3.0 | 2.1 | 1.8 |
| 20 or 80 | 3.5 | 2.8 | 2.0 | 1.6 |
| 10 or 90 | 2.6 | 2.5 | 1.8 | 1.4 |

응답된 표본은 모집단의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표본 특성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 :---: | :---: | :---: |
| 전 체 |  | 3,000 | 100.0 |
| 성 별 | 남자 | 1,489 | 49.6 |
|  | 여자 | 1,511 | 50.4 |
| 연령별 | 20대 | 529 | 17.6 |
|  | 30 대 | 560 | 18.7 |
|  | 40대 | 644 | 21.5 |
|  | 50 대 | 594 | 19.8 |
|  | 60 대 이상 | 673 | 22.4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13.2 |
|  | 고졸 | 1,196 | 39.9 |
|  | 대재 이상 | 1,409 | 47.0 |
| 소득별 | 199만원 이하 | 379 | 12.6 |
|  | 200~299만원 | 485 | 16.2 |
|  | 300~399만원 | 655 | 21.8 |
|  | 400~499만원 | 629 | 21.0 |
|  | 500 만원 이상 | 853 | 28.4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4.4 |
|  | 자영업 | 666 | 22.2 |
|  | 블루칼라 | 588 | 19.6 |
|  | 화이트칼라 | 733 | 24.4 |
|  | 전업주부 | 563 | 18.8 |
|  | 학생 | 185 | 6.2 |
|  | 무직/기타 | 132 | 4.4 |


| 표본 특성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 :---: | :---: | :---: |
| 전 체 |  | 3,000 |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483 | 49.4 |
|  | 충청권 | 311 | 10.4 |
|  | 호남권 | 302 | 10.1 |
|  | 경상권 | 779 | 26.0 |
|  | 강원/제주 | 125 | 4.2 |
| 표본 특성 |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전 체 |  | 3,000 | 100.0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45.7 |
|  | 중소도시 | 918 | 30.6 |
|  | 읍면지역 | 710 | 23.7 |
| 혼인 <br> 상태별 | 미혼 | 672 | 22.4 |
|  | 기혼 | 2,233 | 74.4 |
|  | 별거/사별/기타 | 94 | 3.1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인가구 | 180 | 6.0 |
|  | 1 세대 가구 | 787 | 26.2 |
|  | 2 세대 가구 | 1,905 | 63.5 |
|  | 3 세대 가구 | 127 | 4.2 |
| 주관적 계층수준별 | 하층 | 1,352 | 45.1 |
|  | 중간층 | 1,527 | 50.9 |
|  | 상층 | 122 | 4.1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22.8 |
|  | 중도 | 1,462 | 48.7 |
|  | 보수 | 855 | 28.5 |

한편，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기존의 종이설문지를 활용하는 조사방법을 대신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는 $\operatorname{CAPI}(C o m p u t e r ~ A s s i s t e d ~$ Personal Interview）를 도입한 것에 차이가 있다．이번 연구에서 도입한 CAPI조사방법은 전국 17 개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3,000 명의 피조사자 를 대면하여 실시간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첫째，종이설문지에 비해 코딩 및 펀칭 과 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종이설문지로 면접을 진행하고 난 뒤 에는 설문지에 기록된 응답을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컴퓨터에 옮기 는 작업을 하게 된다．비록 설문조사자가 자료를 입력한다고 할지라 도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CAPI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면접 당 시부터 곧바로 컴퓨터 DATA 형식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둘째，자동적으로 넘어갈 문항을 로직 을 구성하여 체크한다．기존 종이설문지의 경우에는＇ 1 번 문항의 1）번 응답자는 2번 문항으로，2）번 응답자는 1－1번으로＇처럼 면접원이 설문 진행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응답자의 대답에 따라 적절한 문 항으로 진행시켜야 했지만 CAPI를 활용하면 응답에 따른 다음 문항 선택을 자동으로 연결해 상대적으로 면접원의 면접 진행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셋째，설문지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 주어서 종이설문지 보 다 CAPI 조사가 더 편리하고 간단하다．

[^1]2) 조사 경과
(가) 예비조사

2015 국민법의식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 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4월 30일부터 2015년 5월 8일까지 서울 • 경기 지역 거주자 103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개발된 문항이 실제 국민의 법의식을 측정하는데 타당하고 유효한 문항인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그림 6> 예비조사 개요


예비조사 참여자들은 총50개 문항(본문항 기준)에 대해 응답했으며, 이를 통해 문항별 응답 용이성, 문항 수정/보완 등의 의견 수집 및 통 계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
\text { <표 } 7>\text { 신뢰도 및 타당도의 정의 }
$$

| 구 분 | 정 의 |
| :---: | :---: |
| 신뢰도 | •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느냐 <br> 하는 정도 |
| 타당도 | •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br> 확인 (지표 항목들이 조사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

신뢰도는 응답 결과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Cronbach-a계수로 신뢰도를 판단하였으며(통상적 으로 Cronbach-a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타 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요인분석을 통해 사전 에 구성한 차원 및 속성들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함께 묶이는지 를 검증하였다).
(나) 본조사
본조사는 2015년 5월 28일부터 2015년 6월 27일까지 31일간에 걸쳐 2015년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전국(제주특별 자치시 포함)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 3,000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aire)를 사용하여 기존의 종이설문지 대신 노 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조사원이 가구마다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 접 면담하는 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아시 아리서치센터와 (유)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의 한계와 주요 사건

본원에서 수행한 종전의 국민법의식 조사에서처럼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본 조사 이전과 진행 중에 발생한 국내•외의 주요 사건과 언론 동향 등으로 조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본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1 년 전까지 발생한 주요 사건과 언론 동향 을 살펴보았다. 예컨대, 세월호 사건, 갑질(땅콩 회항사건), 간통죄 위헌 결정, 메르스 사건 등은 이번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준법 정 도나 국민법의식 지표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았다. 이들 주요 사건은 2015년 국민법의식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서 정확한 국민법의식을 파악함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표 8> 주요 사건 및 언론 동향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2014년 } \\ & \text { 6월 } \end{aligned}$ | 6.4 지방 선거 후 진보교육감 대거당선 |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자치장과 기초단체 자치장을 임기 4년(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 일)으로 하는 선거(시도지사 17 명, 구시군의장 226 명 등, 총 3,952 명 선출)가 2014년 6월 4일(수)에 있었음. 최종투표율은 $56.8 \%$ 로 시도지사 선거 결과 로 새누리당 8 명과 새정치연합 9 명으로 총 17 명이 선출되었고, 구시군의장 선거 결과로 새누리당 117 명과 새정치연합 80 명 그리고 무소속 29 명으 로 총226명이 선출되었음. ${ }^{13)}$ <br> 선거결과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 세월호사건을 반영한 결과로 일부 언론에서 해석함. ${ }^{14)}$ |
|  | 문창극 총리 후보 <br> 지명 후 낙마 | 세월호 사태 이후 책임총리제를 이끌어 갈 총리 에 문창극 후보를 지명했으나 그의 역사인식 등 이 파문을 일으켜 결국 총리후보 사퇴.15) 결국 헌정사상 초유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 의를 표했던 정홍원 총리가 유임됨.16) |
|  | 내수부양과 규제완화를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명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지명. ${ }^{17)}$ 내수부양과 규제완화에 힘쓰겠다고 포부 밝힘.18) |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6.13. 발표자료 (http://nec.go.kr/portal/main.do).
14) SBS뉴스 2014년 6월 5일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세월호 분노 담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24062\&plink=COPYPASTE\&cooper=URL)
15) 뉴스타운 2014년 6월 24일 "문창극 후보자 자진 사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42)
16) 일요시사 2014년 6월 30일 ""버린 카드" 정홍원 총리 전격 유임 파장 막후"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41)
17) 중앙일보 2014년 6월 13일 "朴 정부 2기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누구"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951650\&cloc=olink|article|default)
18) 파이낸셜뉴스 2014년 6월 15 일 "박근혜정부 2 기 내각 경제정책] 최경환號 ‘내수부양" 특명 ‘돈’도 풀고 ‘규제’도 푼다"
(http://www.fnnews.com/news/201406151712020614?t=y)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2014년 } \\ \text { 6월 } \end{gathered}$ |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발생 | 강원도 고성군 GOP (휴전선 일반전초)에서 경계근 무 중이던 임 병장이 K-2 소총을 난사해 5명이 사 망하고 7명이 부상 당함.19) 그 후 무장탈영했던 임 병장은 검거 후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음.20) |
| 2014년 |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 | 각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으로 무력사용이 금 지된 후 70 년 만에 전쟁가능국으로 돌아옴.21) 이러 한 일본의 우경화는 한-중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됨. ${ }^{22)}$ |
| 7월 |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 항공기 격추 |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긴장 속에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니아 상공에서 미 사일에 맞아 격추됨.23) 2014년 3월의 말레이시아 항 공 실종 사건과 더불어 항공기 탑승에 대한 불안이 고조. ${ }^{24)}$ |

19) 머니투데이 2014년 6월 22일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5명 사망...임병장은 어디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2209413897681\&outlink=1)
20) 뉴스타운 2015년 2월 3일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이외수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일침"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16)
21) MBN 2014.07.02.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2 차 세계대전 이후 70 년 만에 전쟁 가능국으로.." (http://star.mbn.co.kr/view.php?no=947910\&year=2014)
22) 연합뉴스TV 2014.07.04. "한중 정상 "일본 자위권 확대 • 고노담화 훼손시도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70043)
23) 국제신문 2014.07.18. "우크라이나 상공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말레이항공 "피격기 승객 283 명...""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40718.99002094528)
24) YTN사이언스 2014.12.31. "올해 대형 항공 참사 잇따라‥사망자 9년 만에 ‘최다""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412311 246435850)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2014년 } \\ & \text { 7월 } \end{aligned}$ | 잠적한 <br> 유병언 회장 변사체로 발견 |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해당 선박의 실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구원파 등에 검찰 의 수사가 집중되자，25）유병언 회장 등이 잠적함．26） 그러나 7월 22 일 유병언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며 해당 사건은 허무하게 끝나게 됨．27） |
| $\begin{gathered} \text { 2014년 } \\ \text { 8월 } \end{gathered}$ |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 치사율이 $90 \%$ 에 이른다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 프리카에서 확산되어 의료진이 50 명 이상 사망하 고，28）우리나라와 가까운 홍콩에도 의심환자가 발생 함．29）이후 미국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함 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됨．30） |
|  | 군 폭력에 의해 윤일병 사망사건 발생 | 선임병사들의 구타에 의해 사망한 윤일병의 사인이 구타에 의한 뇌진탕으로 밝혀짐．31）이후 재판에서 가해 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으나32）군 지휘부의 책임 은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33） |

25）아시아경제 2014．04．2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드러나는＇구원파＇의 실체＂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308552788204）
26）연합뉴스TV 2014．05．21．＂꽁꽁 숨은 유병언 일가‥잠적 택한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63640）
27）뉴스1 2014．08．19．＂［일지］유병언 시신 발견부터 수사결과 발표까지＂
（http：／／news1．kr／articles／？1819913）
28）스포츠동아 2014．07．29．＂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의료진도 100 여명 사망，치료 방법 없어 심각＇＂（http：／／sports．donga．com／3／all／20140729／65494563／2）
29）이데일리 2014．08．01．＂홍콩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환자 최종 음성판정，그래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630166606183056\＆D CD＝A00703\＆OutLnkChk＝Y）
30）이투데이 2014．08．03．＂에볼라 감염 美 박사，에모리대 병원서 치료‥에볼라에 알 아야할 5 가지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61565）
31）뉴스1 2014．08．07．＂軍인권센터＂윤일병，구타에 의한 뇌진탕 사망＂．．．軍 은폐 의혹（종합）＂ （http：／／news1．kr／articles／？1805239）
32）매일경제 2015．04．09．＂군법원，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살인죄＇적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40035）
33）JTBC TV 2015．04．22．＂윤일병 사건＂솜방망이에 그친 처벌 마저도 ‘무혐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id＝NB10861219）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2014년 } \\ \text { 8월 } \end{gathered}$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 역대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 황. 4월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가 큰 슬픔 에 잠겨있던 때에 방한한 교황은 소박한 행보로 많은 감동을 주었으며,34) 세월호 유족을 손수 위로하며 그 들의 아픔을 어루만짐. ${ }^{35)}$ |
|  | 오바마 미국 <br> 대통령이 IS와의 <br> 전쟁을 선포 | 오바마 대통령이 9.11 1주년을 맞아 테러단체인 IS (이슬람국가)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음.36) 그러나 시리 아 공습 등에도 불구하고,37) IS는 지속적으로 활동하 며 인질 살해, 문화유산 파괴, 대량학살 등의 만행을 계속하고 있음. ${ }^{38)}$ |
| 9월 |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 | 현재 가격에서 2,000 원 인상하여 평균 4,500 원 선으 로 인상하기로 논의.39) 그러나 국민건강을 위해서라 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 이 불거짐.40) 더불어 기업이 덜 낸 세금을 서민이 메 꾸었다는 보도와 함께 조세행정의 형평성에 대한 의 문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을 얻음.41) |

34) 스포츠조선 2014.08.14.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의전차량 '소울' $\cdots$ 소박한 행보 '눈길""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 id=201408150100155910009759\&servicedate=20140814)
35) 연합뉴스 2014.08.15. "<교황방한> '세월호 눈물' 닦아준 교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69837)
36) 비즈니스포스트 2014.09.11. "오바마, 이슬람국가(IS)와 전쟁선언"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3)
37) 연합뉴스 2014.09.23. "<시리아공습> 실력행사 나선 오바마‥중동정세 향방 주목 (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37147)
38) 한국일보 2015.05.03. "인류 문명 파괴하는 IS의 속보이는 노림수"
(http://www.hankookilbo.com/v/3502982c849246cb9e0d58c2d71281ca)
39) 경향신문 2014.09.16. "담뱃값 인상 국회서 추가 논의, 인상폭 조정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62253361\&code=910302)
40) MK 뉴스 2014.09.11. "담뱃값 인상...여 "민의 건강한 삶 위해", 야 "서민 호주머니

터는 꼼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86866)
41) 프레시안 2014.09.17. "대기업엔 6조원 퍼주고, 서민에겐 6조원 세금폭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228)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2014년 } \\ & \text { 9월 } \end{aligned}$ | 상가권리금 보장 <br> 법제화 추진 | 정부가 자영업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상가권리금 보장 법제화 추진.42)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15년 5월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43) |
| $\begin{gathered} \text { 2014년 } \\ 10 \text { 월 } \end{gathered}$ | 카카오톡 사찰 논란 |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한 것이 밝혀 짐.44) 사이버 감시를 피해 카카오톡 이외의 메신저 서비스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자,45) 카카오톡 대 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이어짐.46) |
|  | 단통법 시행 | 10 월 1 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됨. ${ }^{47)}$ 그러나 전체적 으로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고 평가됨.48) 현재까 지도 단통법의 성과를 놓고 정부와 국민의 시각차 가 큰 것으로 나타남.49) |

42) MBN 2014.09.24.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건물주 변경돼도 5년 계약 기간 보장" (http://star.mbn.co.kr/view.php?no=1234226\&year=2014)
43) 스포츠조선 2015.05.12. "상가 권리금 법제화-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5130100125650008621\&servicedate=20150512)
44) KBS TV 2014.10.01. "시민단체 "경찰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40426\&ref=A)
45) YTN TV 2014.10.01.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사이버 망명" 늘어" (http://www.ytn.co.kr/ln/0103_201410011709105280)
46) MBC TV 2014.10.14. "다음카카오 기자회견..."수사 기관 감청 요청에 불응""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541503_13479.html)
47) MBN 2014.10.01. "단통법 시행 첫날, 소비자도 대리점도 혼란‥도대체 왜?" (http://star.mbn.co.kr/view.php?no=1268400\&year=2014)
48) YTN TV 2014.10.19. ""휴대폰 너무 비싸"..단통법이 바꾼 소비 행태" (http://www.ytn.co.kr/_ln/0102_201410190853324011)
49) 스포츠조선 2015.05.10. "소비자 "없다" vs 정부 "있다"...엇갈린 단통법 실효성 논란"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5130100124620008552\&servicedate=20150512)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2014년 } \\ \text { 11월 } \end{gathered}$ | 한중FTA <br> 실질적 타결 | -2014년 11월 한중 정상 회담 후, 오랜 시간 협상을 끌 어오던 한중 FTA 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됨.50) <br> -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FTA (2012) 에 이어 중국과의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 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됨.51) |
| $\begin{gathered} \text { 2014년 } \\ \text { 12월 } \end{gathered}$ | 갑질 <br> (땅콩 회항 <br> 사건) |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등석 승객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건. ${ }^{52)}$ <br> - 이후 대한항공 측의 사건 은폐 시도 등이 더욱 큰 논란을 가져왔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1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진행 중임.53) |
|  | 비정규직 처우 <br> (열정페이) | - 열정페이는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 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 ${ }^{54)}$ <br> - 유명디자이너가 월 10 만원(견습), 30 만원(인턴)의 급 여를 지급한 사실이 기사화되며 이슈화 됨. ${ }^{55)}$ |
| $\begin{gathered} \text { 2015년 } \\ \text { 1월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IS 테러 단체 } \\ \quad \text { 가입 } \\ \text { (테러방지법) } \end{gathered}$ | - 이슬람권에서의 테러가 갈수록 빈발하고 잔혹해지고 있던 차에 우리나라 청소년이 테러단체인 IS(이슬람 국가)에 가입한 사실이 보도되며 이슈화 됨.56) <br> - 테러가 더 이상 먼나라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됨.57) |

[^2]|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318010011120)
58) 서울경제 2015.1.13. "인천 어린이집 폭행, 네 살 배기 아이 음식 뱉어내자 뒤통수 후려갈겨..."이번이 처음 아냐" 경찰수사 중"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1322470693760.htm)
59) YTN 2015.4.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심의...이견 여전"
(http://www.ytn.co.kr/_ln/0101_201504020737370989)
60) 비즈니스워치 2015.2.11. "세금 민란, 국민을 너무 쉽게 뵀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3067)
61) 노컷뉴스 2015.1.21. "비겁한 '편법 증세'에 분노한 민심"
(http://www.nocutnews.co.kr/news/4357363)
62) 법률신문 2015.2.26. "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 년만에 폐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356)
63) 대한변협신문 2015.3.16. "[최신판례]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 2009 헌바17 외 (병합)"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3)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64) 아시아투데이 2014.11.11. "모바일리안시대..SNS타고 번진 시사풍자어 열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07010004280)
65) 이데일리 2015.1.9. "관피아가 떠난 자리, 'O피아'가 채웠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177526609236080\&D $\mathrm{CD}=\mathrm{A} 00503 \& O u t L n k C h k=Y$ )
66) 서울신문 2015.3.27.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 내년 9월 28 일부터 시행"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27004016)
67) 뉴시스 2015.1.29. "권익위, 김영란법 위헌•과잉입법 논란에 정면대응"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9_0013445696\&cID=10301 $\& \mathrm{pID}=10300$ )
68) 경기신문 2014.12.30. "안전불감증 만연 잇단 참사에 속수무책... '안전' 최대 화두"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64)
69) KBS TV, 2014.4.29. "박 대통령 "국민께 죄송..." 국가안전처 신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54810\&ref=A)
70) 한국일보, 2015.4.6. "우리 사회 안전 나아지지 않았다. $87 \%$ "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http：／／www．hankookilbo．com／v／c2853973db2f4c64aa066ac0c36a6697）
71）JTBC 2015．4．9．＂위헌？합헌？＂성매매법＇어떻게 봐야 하나＂
（http：／／news．jtbc．joins．com／html／875／NB10843875．html）
72）연합뉴스 2015．4．9．＂‘미아리포청천＂김강자＂특정지역 생계형 성매매 놔두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9／0200000000AKR20150409189600004．HT ML？input＝1195m）
73）신동아 2015．05．26．＂成•이완구•반기문•親盧 ‘충청 커넥션’ 의혹 추적＂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5／04／16／201504160500007／201504160500007＿1．html）
74）국제신문 2015．05．14．＂서울 예비군 훈련장서 총기 난사‥가해자 포함 2 명 사망－ 3명 부상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514．22006195019）
75）연합뉴스 2015．05．16．＂론스타 vs 한국정부＇5조원대 국가소송＇워싱턴서 개시（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5／0200000000AKR20150515207100071．HTML？input＝1195m）
76）JTBC TV 2015．05．14．＂론스타，5조원대 소송 본격화…정부는＇밀실 진행＇，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id＝NB10887794）

| 일 시 | 사 건 | 주요 내용 |
| :---: | :---: | :---: |
| 2015년 | 메르스 사태 | 2015년 7월 3일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자 184 명 가운데 109 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으 며, 사망자는 지난달 30 일 이후 발생하지 않아 33 명 을 유지. ${ }^{77)}$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현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서울시장이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 |
| 6월 | 대통령의 국회법 <br> 개정 거부권 행사 <br> (법률안 거부권 행사) |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5 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 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25 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법 개정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여부가 여의도 정가 를 혼란에 빼져들게 함. |

(3) 조사결과의 분석 상 한계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본 조사 이전과 진행 중에 발생한 국내•외의 주요 사건과 언론 동향 등으로 조사결과가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점 외에도 이 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종래의 법의식조사 분석의 경우처럼 시계열분석 설문항목과 법제이슈 설문항목은 여전히 해당 설문항목에 한정하여 국민법의식을 고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즉 설문별로 국민법의식 수준을 알 수 있으나, 해당 차원별(유형별)로 분류하여 국민법의식을 평가할 수 없다 라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설문문항과 조사방법 상으로 인하 여 국민법의식 전체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설문문 항 별로 국민법의식 수준만을 평가하고 전체적으로나 차원별로 국민 법의식 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77) 질병관리본부, '15.7.3 9시 기준 발표자료 (http://www.cdc.go.kr/CDC/main.jsp).

다음으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서는 종래 국민법의식 조 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민법의식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민법의식 지표는 항목별, 차 원별 및 전체적으로 국민법의식 수준을 수치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종래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정 확한 국민법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개선되고 과학화 된 조사 연구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도입한 국민법의식 지표는 수치화 된 점수로 국민법의식을 제시함으로 인한 점수가 가지는 국민 법의식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여부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조사결과 를 평균하여 산출한다는 점 등에서 수치상의 한계가 나타난다. 또한 국민법의식 지표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것이라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없다 점에서 해당 점수가 주는 의미를 정확히(비교하여) 분석할 수 없 다는 점도 있다. 아울러 이번 국민법의식에서 조사방법(CAPI)과 표본 수 $(3,000$ 명) 및 조사 지역 등에서 완전히 동일한 유사 설문 사례가 없 어서 다른 유사한 설문 사례와 상호 비교하여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 제 2 장 사회변동과 국민법의식

## 제 1 절 개 관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국민의 가치관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종래 개발되어 활 용되어 온 설문항목 중에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적절한 것을 선정하 여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 설문 문항은 크게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 화로 분류하는 문항’과 '법생활과 법인식의 변화로 분류하는 문항’으 로 나누었다.

먼저,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여성의 지위, 병역의무이행자 의 지위,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조사결과에서는 가족 내 의사결정주체가 부모(부부)공동이라는 응답비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는 응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 유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회적 약 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이유로는 사회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법생활과 법의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법에 대한 인상, 생활에서의 법경험(법률관련 인지경 로, 계약서 숙지정도), 준법정도(우리 사회의 준법정도, 자신의 준법정 도), 법 생활과 권리의식(불량품 구매 시 대처방법)을 묻는 문항을 포 함시켰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에 대한 인상은 권위적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 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관련 정보 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계약 서 숙지정도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이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많아 졌으며 매우 자세히 읽는 응답의 비율은 감소추세였다. 준법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준법정도보다 자신의 준법정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법을 비준수하는 이유로는 '법대로 살 면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불량품을 구입시 대처방법에 는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와 '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대 조적인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 제 2 절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1.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종합 분석]
가족의 공동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어본 결과, 부모(부부)의 공동이라는 응답이 $50.9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남편）（23．3\％），가족모두（13．4\％），어머니（아내）（10．8\％），기타 $(1.2 \%)$ ，자녀 $(0.5 \%)$ 순으로 나타났다．아버지，어머니，남편，아내，자녀 등 가구원 중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34．6\％）보다는 부모（부부）공 동，가족 모두 등 2 인 이상 복수의 가족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비율（64．3\％）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가족공동의 문제를 구성원 개인이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가구 내 공동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법제도 변화에서 가족의 공동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모（또는 부부）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민법』 제781조에 따른 부모의 합의에 따른 자의 성과 본 결정，『민법』 제824조의 2 에 따른 혼인의 취소 시 부모의 합의에 따른 자의 양육 등 결정，『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시 부모의 합의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 결정，『민 법』 제864조의 2 에 따른 인지 시 부모의 합의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 결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 내에서 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른 의사 결정이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아울러 가정 내에서 여성（母）의 지위도 강화되어 왔고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의식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부부 공동으로 의사 결정하는 질문 항목 의 경우 1991 년의 조사에서는 $30.6 \%$ 이고， 2015 년의 조사에서는 $50.9 \%$ 로 나타나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내의 의사결정이 부부 중심으 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가족 모두가 의사 결정하는 응 답의 경우 1991 년의 조사에서는 $42.4 \%$ 에서 2008 년 조사에서는 $14.1 \%$ 로 낮아졌고，2015년의 조사에서는 $13.4 \%$ 로 나타나 이 역시 달라진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8)}$ 결과적으로 2015년 조사에서는 부모（부부）공동의 의사의 응답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남편 또는 아내의 단독 결정이 아닌 부부가 함께 해결하는 가족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가족 내 의사결정구조의 시계열 변화79）

```
~<아버지(나ᄆ펴ᄂ) -으ᄂ어머니(아내) }=\mathrm{ 부모(부부)고ᄋ도ᄋ의사 #가조ᄀ 모두 # 자녀/기타/모르ᄆ/무으ᄋ다ᄇ
```


［특성별 분석］
가구원 2인 이상 공동（부부（부모）공동의사＋가족모두）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68.0 \%$ 로 가장 높았으며，

78）박상철외 2 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40면；이세정•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75면．
79）박상철외 2 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40면；이세정•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75면；박상철외 2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68면．

그 다음으로 화이트칼라(66.7\%), 전업주부(66.0\%)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는 기혼(68.8\%), 가구구성별로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동으로 의사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특성별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응답자 <br>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부부 } \\ \text { (부모) } \\ \text { 공동 } \\ \text { 의사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아버지 } \\ & \text { (남편)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가족 } \\ & \text { 모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어머니 } \\ & \text { (아내) } \end{aligned}$ | 자녀 | 기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3,000 | 50.9 | 23.2 | 13.4 | 10.8 | 0.5 | 1.2 | 0.1 |
| 혼인 <br> 상태별 | 미혼 | 672 | 26.4 | 29.4 | 26.2 | 15.8 | 0.1 | 2.1 | 0.0 |
|  | 기혼 | 2,233 | 59.7 | 21.6 | 9.1 | 8.8 | 0.5 | 0.4 | 0.0 |
|  | 별거/사별/기타 | 94 | 16.7 | 17.4 | 25.1 | 21.8 | 4.0 | 13.9 | 1.0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51.3 | 32.1 | 9.3 | 4.2 | 0.0 | 3.1 | 0.0 |
|  | 자영업 | 666 | 58.3 | 20.3 | 9.7 | 9.7 | 0.4 | 1.4 | 0.1 |
|  | 블루칼라 | 588 | 48.8 | 23.5 | 13.7 | 11.8 | 0.3 | 2.0 | 0.0 |
|  | 화이트칼라 | 733 | 51.7 | 21.4 | 15.0 | 11.3 | 0.1 | 0.6 | 0.0 |
|  | 전업주부 | 563 | 55.2 | 23.8 | 10.8 | 8.3 | 1.4 | 0.5 | 0.0 |
|  | 학생 | 185 | 26.9 | 31.7 | 26.1 | 15.3 | 0.0 | 0.0 | 0.0 |
|  | 무직/기타 | 132 | 33.1 | 23.9 | 19.1 | 19.9 | 0.8 | 2.5 | 0.7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인가구 | 180 | 25.9 | 18.1 | 29.0 | 15.7 | 1.1 | 9.8 | 0.5 |
|  | 1세대 가구 | 787 | 51.5 | 27.4 | 9.3 | 10.3 | 0.7 | 0.9 | 0.0 |
|  | 2세대 가구 | 1,905 | 52.9 | 22.3 | 13.2 | 10.9 | 0.2 | 0.5 | 0.0 |
|  | 3세대 가구 | 127 | 53.0 | 18.7 | 20.1 | 4.9 | 2.5 | 0.9 | 0.0 |

가구원의 2 인 이상 공동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응답은 세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 일수록 부모세대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남성 중심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10 > 계층수준 및 이념성향별 가족 내의 의사결정구조 비교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세대간 비교 |  |  | 성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부모 <br> 중심 (부모) | 가족 <br> 전체 <br> (가족 <br> 모두) | 자녀 중심 (자녀+ 부부 공동) | $\begin{gathered} \text { 남성 } \\ \text { 중심 } \\ \text { (아버지+ } \\ \text { 남편) } \end{gathered}$ | 중립 $\begin{aligned} & \text { (부모+ } \\ & \text { 가족 } \\ & \text { 모두) } \end{aligned}$ | 여성 중심 (어머니+ 아내) |
| 전 체 |  | 22.7 | 13.4 | 43.1 | 23.2 | 21.2 | 10.8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20.5 | 12.8 | 43.8 | 22.2 | 20.0 | 11.5 |
|  | 중간층 | 23.7 | 13.5 | 43.7 | 23.3 | 21.5 | 10.4 |
|  | 상층 | 33.6 | 18.6 | 27.5 | 33.5 | 31.1 | 7.9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27.4 | 15.2 | 40.4 | 20.8 | 24.6 | 12.2 |
|  | 중도 | 24.8 | 13.8 | 42.8 | 23.4 | 22.2 | 10.3 |
|  | 보수 | 15.4 | 11.2 | 45.7 | 24.9 | 16.7 | 10.4 |

## 2. 여성의 지위

(1) 설문 결과의 분석

문10) $\bigcirc \bigcirc$ 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43.5 |
| :---: | :---: | :---: |
|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4.2 ᄀ |  |
|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39.3 - |  |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44.2 ᄀ | 55.6 |
|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11.4 - |  |
| 모름/무응 답 | 0.9 |  |
| 계( $\mathrm{N}=3,000$ ) | 100.0 |  |

［종합 분석］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는지를 묻는 질 문에 대하여，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55.6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44．2\％］＋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11．4\％］）로 나타났다．이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 43．5\％（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4．2\％］＋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 다［39．3\％］）보다 $12.1 \%$ 높게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그 동안 정부의 노력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많이 개선되어 왔으며，그 대표적인 『여성발전기본 법』80）은 2015．07．01．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부 개정된 법률이 새로 시행되었다．『양성평등기본법』은＂『대한민국헌법』 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이 법의 기본이념은＂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 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

80）당시『여성발전기본법』은＂『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 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그 기본이념으로 이 법을 통하여＂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 진，모성의 보호，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 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추구하고 있었다．

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이 나타났다．

한편，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정책을 종합기획하고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2001년 01월 29일 여성부가 만들어 졌으며，2010년 03월 19일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그런데 최 근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호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남성들이 헌 법재판소에＇남성부＇는 없는데도＇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은 평등 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으나，헌법재판소 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1）대법원도 기존의 유교적 전 통에 따르기 보다는 남녀평등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경우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82），2010년에는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 도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바 있으 며，8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남녀

81）헌재 2015．2．10．［2015헌마103］
82）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 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 로 변화되어 왔으며，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종 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 는 것임에도，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 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종중 구성원의 자격 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대판（전합）2005．07．21．［2002다1178］）．
83）총회결의에서 구체적인 종중재산의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이사회가，세 대주인 종원과 비세대주인 종원 사이에 분배금에 2 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도 세 대주에 1 인 세대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의한 것은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고용인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4)
<그림 9> 여성의 불리한 대우의 정도


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과거에 비해 여성에 대한 배려와 관련 제도의 개선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볼 수 없고, 또한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 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 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위 이사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다(대판 2010.9.30. [2007다 74775]).
84)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12.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 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 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할 경우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 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3.3.14. [2010다101011]).

## ＜그림 10＞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의 시계열 변화85）


［특성별 분석］
여성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의견을 특성별로 살펴보면，불리한 대우 를 받는다는 의견은 남성이 $33.2 \%$ ，여성이 $53.6 \%$ 로 나타나 남녀의 의 견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계층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소득이 높 을수록，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저학력，저소득，읍면지역 거주，보수성 향의 경우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에 비해 $10 \%$ 가량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3]<표 11> 특성별 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매우 <br>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고 <br> 있다 |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는 <br> 편이다 |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지 <br> 않는 <br> 편이다 |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리한 <br> 대우 <br> 받음 |  |  |  |  |  | 불리한 <br> 대우 <br> 받지 <br> 않음 |
| 전 체 |  |  | 3,000 | 4.2 | 39.3 | 44.2 | 11.4 | 0.9 | 43.5 | 55.6 |
| 성 별 | 남자 | 1,489 | 2.5 | 30.7 | 50.1 | 15.7 | 1.0 | 33.2 | 65.8 |
|  | 여자 | 1,511 | 5.9 | 47.7 | 38.3 | 7.2 | 0.9 | 53.6 | 45.5 |
| 학력별 | 중졸 <br> 이하 | 395 | 2.6 | 25.4 | 51.8 | 19.2 | 1.0 | 28.0 | 71.0 |
|  | 고졸 | 1,196 | 3.9 | 37.8 | 47.2 | 10.0 | 1.2 | 41.7 | 57.2 |
|  | 대재 이상 | 1,409 | 4.9 | 44.4 | 39.5 | 10.5 | 0.7 | 49.3 | 50.0 |
| 소득별 | 199만원 <br> 이하 | 379 | 4.2 | 29.9 | 46.0 | 18.9 | 1.0 | 34.1 | 64.9 |
|  | $\begin{aligned} & \text { 200~ } \\ & \text { 299만원 } \end{aligned}$ | 485 | 5.1 | 33.9 | 46.1 | 13.7 | 1.2 | 39.0 | 59.8 |
|  | 300~ 399만원 | 655 | 2.9 | 40.2 | 45.3 | 10.5 | 1.1 | 43.1 | 55.8 |
|  | 400~ 499만원 | 629 | 3.7 | 42.6 | 43.7 | 9.0 | 1.0 | 46.3 | 52.7 |
|  | 500만원 이상 | 853 | 5.1 | 43.3 | 41.7 | 9.3 | 0.7 | 48.4 | 51.0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4.3 | 44.2 | 42.1 | 8.7 | 0.7 | 48.5 | 50.8 |
|  | $\begin{aligned} & \text { 중소 } \\ & \text { 도시 } \end{aligned}$ | 918 | 3.9 | 36.1 | 46.0 | 12.6 | 1.3 | 40.0 | 58.7 |
|  | 읍면 <br> 지역 | 710 | 4.3 | 33.8 | 45.8 | 15.0 | 1.0 | 38.2 | 60.8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6.1 | 40.0 | 43.3 | 9.6 | . 9 | 46.2 | 53.0 |
|  | 중도 | 1,462 | 4.2 | 43.4 | 41.4 | 10.0 | 1.2 | 47.5 | 51.3 |
|  | 보수 | 855 | 2.7 | 31.6 | 49.6 | 15.4 | . 7 | 34.3 | 65.0 |

한편,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 비율은 높았지만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 하고 군가산점제를 찬성한 비율 $(82.5 \%)$ 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다고 응답하고 군가산점제를 찬성한 비율(73.0\%)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에 따른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반

| 대우 정도 | 군가산점제 찬성 | 군가산점제 반대 | 모름무응답 |
| :---: | :---: | :---: | :---: |
| 불리한 대우를 받음 | $73.0 \%$ | $24.8 \%$ | $2.2 \%$ |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 | $82.5 \%$ | $15.2 \%$ | $2.3 \%$ |

(2) 설문 결과 이유의 분석

문10-1) (문10에서 ' 1,2 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 :---: |
| .................................. | .......... |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 32.9 |
|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18.8 |
|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18.4 |
|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15.2 |
|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14.4 |
| 기타 | 0.2 |
| 모름/무응답 | 0.1 |
| …....................................................................................................... |  |
| 계(N=1,304) | 100.0 |

## [종합 분석]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mathrm{N}=1,304$ )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응답이 $32.9 \%$ 로 가장

높았고,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18.8\%), 남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 차이( $18.4 \%$ ),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15.2 \%)$,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14.4 \%$ )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가 불리 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8.2 \%$ 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 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율(51.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 성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인식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 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3> 여성의 불리한 대우와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 비교

| 여 성 | 사회적 약자 | 불리한 대우 받음 | 불리한 대우 <br> 받지 않음 |
| :---: | :---: | :---: | :---: | 모름/무응답

[특성별 분석]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이라는 응답은 진보성향이 $21.0 \%$ 로 보수성향 $14.5 \%$ 보다 높았으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응답 은 보수성향이 $41.4 \%$ 로 진보성향 $26.0 \%$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라는 응답 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에는 지 역규모의 특성도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4> 특성별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남성 중심의 가부징적 문화 | 여성 관련 <br> 법 규정 <br> 자체의 <br> 미비 또는 <br> 결함 | 남녀의 <br> 사회, <br> 경제적 <br> 지위 <br> 차이 |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남성의 <br> 이해 <br> 부족 <br> 또는 <br> 이기심 <br> 팽배 | 기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32.9 | 18.8 | 18.4 | 15.2 | 14.4 | 0.2 | 0.1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683 | 26.0 | 21.0 | 17.8 | 19.6 | 15.2 | 0.5 | 0.0 |
|  | 중도 | 1,462 | 32.5 | 19.6 | 19.1 | 14.1 | 14.6 | 0.0 | 0.0 |
|  | 보수 | 855 | 41.4 | 14.5 | 17.4 | 13.0 | 13.0 | 0.3 | 0.4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33.9 | 19.7 | 17.4 | 15.2 | 13.5 | 0.2 | 0.2 |
|  | $\begin{aligned} & \text { 중소 } \\ & \text { 도시 } \end{aligned}$ | 918 | 27.9 | 19.9 | 18.6 | 16.0 | 17.4 | 0.2 | 0.0 |
|  | 읍면 <br> 지역 | 710 | 37.4 | 15.2 | 20.5 | 14.1 | 12.5 | 0.3 | 0.0 |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과 2015년의 조사에서 모두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응답비율은 아래와 같이 2015년 조사
（32．9\％）가 2008년 조사（44．0\％）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다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86）
＜그림 12＞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의 시계열 변화87）


3．병역의무이행자의 지위

문14．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bigcirc \bigcirc$ 님은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 성하십니까？혹은 반대하십니까？

결 과
매우 찬성한다
21.5 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16.8 ᄀ

매우 반대한다
2.6 －

모름／무응답
2.4

계 $(\mathrm{N}=3,000)$
100.0

86）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85면．
87）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85면．
[종합 분석]
군가산점 제도의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 이 $78.2 \%$ (매우 찬성한다[21.5\%]+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56.7\%])로 반 대한다는 의견 $19.4 \%$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16.8\%]+매우 반대한다 [2.6\%])보다 $58.8 \%$ 높게 나타났다. 국방부가 2011년에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 명(남 508 명, 여 51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찬성 ( $83 \%$ ), 반대( $17 \%$ )로 나타났다. ${ }^{88)}$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현행 법제도와 헌법재판소 입장과는 차이가 있 다. 즉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가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11 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아서 "제대 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 5482 호로 제정된 것) 제 8 조제 1 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8.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89) 또한 헌법재판소는
88) 국방부가 2011.4.1. - 4.5.에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남 508명, 여 5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결과에 따르면, 찬성(83\%), 반대( $17 \%$ )로 나타났다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newsId=I_669\&newsSeq=N_66148\&com mand=view\&siteId=mnd\&id=mnd_020400000000 2015년 10월 30일). 병무청이 209.12.1. 12.4에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500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군가산점제도 시행 찬반여부 등)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병무청, 『군가산점 여론조사 결과 보고』 2009,1 면), 군가산점의 찬성이유로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68.0 \%$ 로 나타났고, 반대이유로 '여성과 군 미필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로 $42.2 \%$ 로 나 타났다. 경제적 보상방안 찬성여부에 찬성 $61.8 \%$ (남 57.1,녀 66.6), 반대 $37.7 \%$ 로, 보상 방법으로 취업지원(25.0\%),국민연금 인정(22.2\%), 대학학자금(14.3\%)으로, 보상금액으로 연 200 만원( $28.7 \%$ ), 연 500 만원( $27.0 \%$ ), 연 1,000 만원 이상 $(27.0 \%$ )으로 나타났다.
89) 이 사건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 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 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 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 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로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

1999．12．23에 군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도 역 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는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제대군 인이 아닌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되며，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았다．90）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인 2001년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는데，그 개정이유로＂제대군인이 국가•기업 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 트 범위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위헌결정됨에 따라，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3 세의 범위안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합리 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다．현재까지도 군가산점과 관련된 논쟁은 다시 인정하여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이러한 움직임은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형 태로도 나타나고 있다．91）

[^4]91）헌재 2013．2．26．［2013헌마68］

[특성별 분석]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녀 모두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지만 남성(84.0\%)의 찬성의견이 여 성( $72.2 \%$ )의 찬성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 이 낮을수록 찬성율이 높고, 대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의 찬성율이 더 높으며,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찬성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5> 특성별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하는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전 체 |  |  | 3,000 | 21.5 | 56.7 | 16.8 | 2.6 | 2.4 | 78.2 | 19.4 |
| 성 별 | 남자 | 1,489 | 29.7 | 54.3 | 13.1 | 2.0 | 0.8 | 84.0 | 15.1 |
|  | 여자 | 1,511 | 13.3 | 58.9 | 20.5 | 3.2 | 4.0 | 72.2 | 23.7 |


|  |  | 응답자 | 매우 | 대체로 | 대체로 | 매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한다 | 편이다 | 편이다 | 한다 | 무응답 | 찬 성 | 반 대 |
| 전 체 |  | 3,000 | 21.5 | 56.7 | 16.8 | 2.6 | 2.4 | 78.2 | 19.4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20.2 | 61.9 | 11.3 | 1.3 | 5.3 | 82.1 | 12.6 |
|  | 고졸 | 1,196 | 20.2 | 57.4 | 17.1 | 2.1 | 3.3 | 77.6 | 19.2 |
|  | 대재 이상 | 1,409 | 22.9 | 54.6 | 18.2 | 3.4 | 1.0 | 77.5 | 21.6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18.3 | 57.5 | 18.6 | 2.7 | 2.8 | 75.9 | 21.3 |
|  | 중소도시 | 918 | 21.9 | 55.3 | 17.8 | 2.7 | 2.4 | 77.2 | 20.5 |
|  | 읍면지역 | 710 | 27.0 | 56.7 | 12.3 | 2.2 | 1.8 | 83.7 | 14.4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683 | 19.1 | 56.8 | 18.1 | 3.7 | 2.3 | 75.9 | 21.8 |
|  | 중도 | 1,462 | 20.8 | 56.1 | 18.3 | 2.4 | 2.4 | 76.9 | 20.7 |
|  | 보수 | 855 | 24.4 | 57.5 | 13.3 | 2.1 | 2.6 | 81.9 | 15.4 |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조사에서는 2008년 조사보다 찬성의견이 다소 낮아졌지만 수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 시계열 변화92)


[^5]
## 4．사회적 약자의 지위

（1）설문 결과의 분석

문9．$\bigcirc \bigcirc$ 님은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 십니까？
결 과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11.7 ᄀ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55.6^{\text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모름／무응답 5.4 」
67.3
$\qquad$
계 $(\mathrm{N}=3,000)$
［종합 분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견이 $67.3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11．7\％］＋불 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55．6\％］）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 견 $32.0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26．6\％］＋전혀 불리한 대우 를 받지 않고 있다［5．4\％］）보다 $35.3 \%$ 높게 나타났다．${ }^{93)}$

93）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6 대 광역시 거주하는 20 세 이상 남녀 1,770 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신의기－강은영，『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69면）．
（단 위：빈도（\％））

|  | 전혀 그렇지 <br> 않다 | 그렇지 않은 <br> 편이다 | 그런편이다 | 확실히 <br> 그렇다 | 평 균 | 표준 <br> 편차 |
| :--- | :---: | :---: | :---: | :---: | :---: | :---: |
| 법은 양자를 보호하 <br> 기 위한 것이다 | $62(3.5)$ | $455(25.7)$ | $894(50.5)$ | $359(20.3)$ | 2.88 | .765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정부의 노력과 관련 법제의 개선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소득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에 관련하여 여러 법률과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 시 행하고 있다．예컨대，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 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신보건 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양특례법』，『일 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 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식품기부 활성화 에 관한 법률』，『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다문 화가족지원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 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장애아동 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그 밖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법』，『임대주택법』 및『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 는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법률구조 에 관련해서도 1986．12．23．에 제정된 『법률구조법』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등이 있으며，정부는 2015년 7월 28일에 『민사소송법』의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94)}$

9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259）참조．

## <그림 1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대우 정도


[특성별 분석]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래 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력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는 응답이 많았고, 이념성향은 진보적일수록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16> 특성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정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매우 <br>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고 <br> 있다 |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는 <br> 편이다 |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지 <br> 않는 <br> 편이다 |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리한 <br> 대우 <br> 받음 |  |  |  |  |  | 불리한 <br> 대우 <br> 받지 <br> 않음 |
| 전 체 |  |  | 3,000 | 11.7 | 55.6 | 26.6 | 5.4 | 0.7 | 67.3 | 32.0 |
| 학력별 | 중졸 <br> 이하 | 395 | 4.7 | 43.5 | 38.6 | 12.5 | 0.7 | 48.2 | 51.1 |
|  | 고졸 | 1,196 | 9.2 | 58.4 | 26.3 | 5.5 | 0.7 | 67.6 | 31.8 |
|  | 대재 이상 | 1,409 | 15.9 | 56.7 | 23.5 | 3.3 | 0.7 | 72.6 | 26.8 |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고 <br> 있다 |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는 <br> 편이다 |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지 <br> 않는 <br> 편이다 | 전혀 <br> 불리한 <br> 대우를 <br> 받고 <br> 있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리한 <br> 대우 <br> 받음 |  |  |  |  |  | 불리한 <br> 대우 <br> 받지 <br> 않음 |
|  |  |  | 3,000 | 11.7 | 55.6 | 26.6 | 5.4 | 0.7 | 67.3 | 32.0 |
| 소득별 | 199만원 <br> 이하 | 379 | 10.1 | 46.1 | 31.6 | 11.8 | 0.5 | 56.2 | 43.4 |
|  | $\begin{gathered} \text { 200~ } \\ \text { 299만원 } \end{gathered}$ | 485 | 12.7 | 53.1 | 27.5 | 6.2 | 0.4 | 65.8 | 33.7 |
|  | $\begin{gathered} \text { 300~ } \\ \text { 399만원 } \end{gathered}$ | 655 | 10.0 | 58.6 | 27.3 | 3.7 | 0.3 | 68.6 | 31.0 |
|  | $\begin{gathered} \text { 400~ } \\ \text { 499만원 } \end{gathered}$ | 629 | 12.8 | 56.1 | 25.1 | 4.5 | 1.4 | 68.9 | 29.6 |
|  | $\begin{gathered} 500 \text { 만원 } \\ \text { 이상 } \end{gathered}$ | 853 | 12.4 | 58.5 | 24.3 | 4.0 | 0.7 | 70.9 | 28.3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15.0 | 56.3 | 24.3 | 3.9 | 0.4 | 71.3 | 28.2 |
|  | 중도 | 1,462 | 12.7 | 57.9 | 23.9 | 4.5 | 0.9 | 70.6 | 28.4 |
|  | 보수 | 855 | 7.4 | 51.1 | 32.9 | 8.2 | 0.5 | 58.5 | 41.1 |

(2) 설문 결과 이유의 분석

문9-1. (문9에서 ' 1,2 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 :---: |
| 사회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 부족 | 37.8 |
| 국민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17.4 |
|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16.5 |
|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14.8 |
|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13.0 |
| 기타 | 0.4 |
| 모름/무응답 | 0.1 |
| 계 ( $\mathrm{N}=2,020$ ) | 100.0 |

[종합 분석]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mathrm{N}=2,020)$ 를 대상으 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사회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부족 이라는 응 답이 $37.8 \%$ 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17.4\%),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16.5 \%$ ),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14.8 \%$ ),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13.0 \%$ )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특성별 분석]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관 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이라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권리의식부족’이라는 응답은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특성별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사회젇 } \\ \text { 배려 또는 } \\ \text { 정부의 } \\ \text { 관심 부족 } \end{gathered}$ | 국민의 <br> 이해 부족 <br> 또는 <br> 이기심 <br> 팽배 |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사회, <br> 경제적 <br> 지위 <br> 차이 | 권리 의식 <br> 부족 또는 <br> 법 생활의 <br> 불철저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37.8 | 17.4 | 16.5 | 14.8 | 13.0 | 0.4 | 0.1 |
| 학력별 | 중졸 <br> 이하 | 395 | 42.6 | 17.4 | 11.3 | 14.7 | 12.3 | 0.8 | 1.0 |
|  | 고졸 | 1,196 | 36.7 | 17.7 | 16.6 | 15.9 | 13.0 | 0.1 | 0.0 |
|  | 대재 <br> 이상 | 1,409 | 37.9 | 17.2 | 17.4 | 13.9 | 13.1 | 0.5 | 0.0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39.9 | 16.1 | 17.6 | 14.6 | 11.4 | 0.4 | 0.0 |
|  | 중도 | 1,462 | 38.2 | 16.9 | 17.2 | 14.5 | 12.9 | 0.3 | 0.0 |
|  | 보수 | 855 | 35.1 | 19.8 | 14.1 | 15.5 | 14.7 | 0.5 | 0.4 |

## 제 3 절 법생할과 법의식의 변화

1. 법에 대한 인상

문1. $\bigcirc \bigcirc \bigcirc$ 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 결 $\quad$ 과 | $\%$ |
| :--- | :---: |
| …............................... |  |
| 권위적이다 | 37.6 |
| 불공평하다 | 24.4 |
| 민주적이다 | 21.3 |
| 공평하다 | 14.2 |
| 기타 | 1.8 |
| 모름/무응답 | 0.7 |
| …............................................................................................ |  |
| 계( $\mathrm{N}=3,000)$ | 100.0 |

［종합 분석］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법에 대한 인상을 물어본 결과，＇권위 적이다’라는 응답이 $37.6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 ‘불공 평하다＇（24．4\％），＇민주적이다＇（21．3\％），＇공평하다＇（14．2\％）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7＞법에 대한 인상


법에 대한 인상 응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공평하다＇，＇민주적 이다＇등의 긍정적인 의견은 종래보다 증가하였고，＇불공평하다＇，＇권 위적이다，등의 부정적인 의견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적어도 국 민법의식 차원에서 보면，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공평성과 민주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며，사회 전반에 걸쳐 법 제도에 기반한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법에 대한 인상의 시계열 변화95）

|  | 1991년 | 1994년 | 2008년 | 2015년 |
| :---: | :---: | :---: | :---: | :---: |
| 공평하다 | $13.4 \%$ | $13.0 \%$ | $8.9 \%$ | $14.2 \%$ |
| 민주적이다 | $11.1 \%$ | $12.8 \%$ | $14.2 \%$ | $32.4 \%$ |

95）박상철외 2 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 53 면；이세정•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02면；박상철외 2인， ${ }^{『} 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74면．

|  | 1991년 | 1994년 | 2008년 | 2015년 |
| :---: | :---: | :---: | :---: | :---: |
| 엄격하다 <br> (2008년 이후 보기 삭제) | $18.9 \%$ | $19.1 \%$ | - | - |
| 불공평하다 <br> (2008년 이후 보기 추가) | - | - | $32.6 \%$ | $24.4 \%$ |
| 편파적이다 | $24.7 \%$ | $24.9 \%$ | - | - |
| (2008년 이후 보기 삭제) | - | $30.3 \%$ | $43.6 \%$ | $37.6 \%$ |
| 권위적이다 | $32.0 \%$ | - | $0.7 \%$ | $2.5 \%$ |

[특성별 분석]
‘법에 대한 인상’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 대 이상이 '공평하다'( $20.0 \%$ ), '민주적이다' $(24.6 \%$ )라는 긍정적인 인상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념성향별로는 '공평하다'라는 응답은 보수성향이 $18.3 \%$ 로 진보성향 $13.7 \%$ 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주관적 계층수준 별에서는 하층에서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26.5 \%$ 로 상층(19.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념성향별에서는 중도층과 진보성향 등에서 '불공 평하다'는 응답이 $27.0 \%$ 와 $24.4 \%$ 로 각각 나타나 보수성향(19.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관적 계층수준 간의 법에 대한 인식에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특성별 법에 대한 인상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공평 <br> 하다 | 민주적 <br> 이다 | 불공평 <br> 하다 | 권위적 <br> 이다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14.2 | 21.3 | 24.4 | 37.6 | 1.8 | 0.7 |
| 연령별 | 20대 | 529 | 13.2 | 21.9 | 25.8 | 37.6 | 1.3 | 0.2 |
|  | 30 대 | 560 | 11.0 | 18.7 | 25.7 | 41.4 | 2.5 | 0.6 |
|  | 40대 | 644 | 10.1 | 17.5 | 26.4 | 44.3 | 1.2 | 0.4 |
|  | 50 대 | 594 | 16.1 | 23.4 | 22.1 | 35.6 | 2.3 | 0.5 |
|  | 60대 이상 | 673 | 20.0 | 24.6 | 22.2 | 29.8 | 1.8 | 1.6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공평 <br> 하다 | 민주적 <br> 이다 | 불공평 <br> 하다 | 귄위적 <br> 이다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14.2 | 21.3 | 24.4 | 37.6 | 1.8 | 0.7 |
| 주관적 <br> 계층 수준별 | 하층 | 1,352 | 14.2 | 20.7 | 26.5 | 35.3 | 2.1 | 1.2 |
|  | 중간층 | 1,527 | 14.0 | 21.0 | 22.8 | 40.2 | 1.6 | 0.4 |
|  | 상층 | 122 | 18.1 | 31.0 | 19.6 | 30.5 | 0.8 | 0.0 |
| $\begin{gathered} \text { 이념 } \\ \text { 성향별 } \end{gathered}$ | 진보 | 683 | 13.7 | 25.1 | 24.4 | 34.5 | 1.8 | 0.4 |
|  | 중도 | 1,462 | 12.1 | 17.7 | 27.0 | 40.8 | 1.5 | 0.9 |
|  | 보수 | 855 | 18.3 | 24.3 | 19.9 | 34.6 | 2.3 | 0.7 |

## 2. 생활에서의 법경험

(1) 법률 관련 정보의 수집 경로

| 자주 접하는 경로를 2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1순위, 중복응답) |  |  |
| :---: | :---: | :---: |
| 결 과 | $\begin{gathered} \text { 1순위 } \\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중복 } \\ & \% \end{aligned}$ |
|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 70.4 | 93.4 |
| 인터넷 | 21.0 | 52.9 |
| 주위 사람 | 6.3 | 40.2 |
|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 1.5 | 5.9 |
| 정부 홍보물 | 0.3 | 4.4 |
| 학교 | 0.4 | 1.5 |
| 기타 | 0.0 | 0.1 |
| 모름/무응답 | 0.0 | 1.6 |
| 계 $(\mathrm{N}=3,000)$ | 100.0 | (중복응답) |

[종합 분석]
법률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를 물어본 결과 1 순위 응답으로 언론매 체가 $70.4 \%$ 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21.0 \%$ ), 주위사람(6.3\%), 책이나 잡

지( $1.5 \%$ ), 학교( $0.4 \%$ ), 정부홍보물 $(0.3 \%)$ 순으로 나타났으며, 1 순위와 2순 위를 통합하여 살펴보아도 언론매체가 $93.4 \%$ 로 가장 높고, 인터넷 (52.9\%), 주위사람(40.2\%), 책이나 잡지(5.9\%), 정부홍보물(4.4\%), 학교 (1.5\%)순으로 나타나므로 1순위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96)
<그림 18> 법인지 경로


법률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매체, 책이나 잡지, 정부홍보물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인터넷을 활 용한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96)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4.6.20.-7.1.까지 서울•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 347 명 을 대상으로 '규칙이나 법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칙이나 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인터넷(29\%)'이 가장 많았고, 선생님 ( $26.9 \%$ )'과 '부모님 $(25.4 \%$ )', '법전 또는 책 $(14.8 \%$ )'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뉴스', ‘어디에선가 들었다' 등으로 나타났다(교육부/2007-14(월) 석간보도자료 (법 교육기부주간 운영);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 $74 \& e n c o d e Y n=Y \& b o a r d S e q=55010 \& m o d e=v i e w)$.
＜표 20＞법인지 경로 시계열 변화（1순위）${ }^{97)}$

|  | 1991년 | 1994년 | 2008년 | 2015년 |
| :---: | :---: | :---: | :---: | :---: |
| 언론매체 | $74.9 \%$ | $70.9 \%$ | $74.4 \%$ | $70.4 \%$ |
| 인터넷 | - | - | $17.6 \%$ | $21.0 \%$ |
|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 $6.2 \%$ | $9.8 \%$ | $2.0 \%$ | $1.5 \%$ |
| 정부홍보물 | - | $1.8 \%$ | $0.4 \%$ | $0.3 \%$ |
| 주위 사람 | $9.2 \%$ | $9.1 \%$ | $5.2 \%$ | $6.3 \%$ |
| 학교 | $4.1 \%$ | $3.4 \%$ | $0.3 \%$ | $0.4 \%$ |
| 사건을 격고 나서 | $5.6 \%$ | $4.9 \%$ | - | - |
| 기타 | - | - | $0.2 \%$ | $0.0 \%$ |
| 모름／무응답 | - | - | - | $0.0 \%$ |

법률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를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하여 시계열로 보면，2008년에 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1＞법인지 경로의 시계열 변화（1＋2순위）${ }^{98)}$

|  | 2008년 | 2015년 |
| :---: | :---: | :---: |
| 언론매체 | $93.0 \%$ | $93.4 \%$ |
| 인터넷 | $45.6 \%$ | $52.9 \%$ |
|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 $9.7 \%$ | $5.9 \%$ |
| 정부홍보물 | $3.3 \%$ | $4.4 \%$ |
| 주위 사람 | $43.5 \%$ | $40.2 \%$ |
| 학교 | $1.1 \%$ | $1.5 \%$ |
| 기타 | $0.4 \%$ | $0.1 \%$ |
| 모름／무응답 | - | $1.6 \%$ |

97）박상철외 2 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 63 면；이세정•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22면；박상철외 2인， ${ }^{『} 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85면．
98）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22면．

## [특성별 분석]

법률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를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언론매체’라는 응답이 많 았고,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높거 나 소득이 많을수록 '언론매체’라는 응답이 적어지고,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언론매 체’라는 응답이 적어지고,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높거나, 진보적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법률관련정보를 얻는 경로로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특성별 법인지의 경로(1+2순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언론 } \\ \text { 매체 } \\ \text { (신문, TV, } \\ \text { 라디오 등) } \end{gathered}$ | 인터닛 | 책(법전) <br> 이나 <br> 잡지 <br> (법령 <br> 정보지) | $\begin{aligned} & \text { 정부 } \\ & \text { 홍보물 } \end{aligned}$ | 주위 <br> 사람 | 학 교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93.4 | 52.9 | 5.9 | 4.4 | 40.2 | 1.5 | 0.1 | 1.6 |
| 연령별 | 20대 | 529 | 89.1 | 81.7 | 7.7 | 3.1 | 13.6 | 4.4 | 0.0 | 0.4 |
|  | 30대 | 560 | 92.1 | 81.0 | 5.4 | 2.2 | 16.9 | 1.7 | 0.2 | 0.3 |
|  | 40대 | 644 | 91.4 | 67.7 | 6.3 | 5.0 | 28.7 | 0.3 | 0.0 | 0.6 |
|  | 50대 | 594 | 95.5 | 34.4 | 5.7 | 7.0 | 54.0 | 0.9 | 0.3 | 2.3 |
|  | 60대 <br> 이상 | 673 | 97.9 | 8.8 | 5.0 | 4.3 | 79.3 | 0.9 | 0.1 | 3.9 |
| 학력별 | $\begin{aligned} & \text { 중졸 } \\ & \text { 이하 } \end{aligned}$ | 395 | 97.7 | 4.5 | 2.4 | 4.9 | 84.4 | 0.9 | 0.2 | 4.9 |
|  | 고졸 | 1,196 | 94.9 | 40.7 | 5.7 | 5.0 | 50.0 | 1.7 | 0.2 | 1.8 |
|  | 대재 <br> 이상 | 1,409 | 90.9 | 76.7 | 7.2 | 3.7 | 19.5 | 1.6 | 0.0 | 0.5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언론 <br> 매체 <br> (신문, TV, 라디오 등) | 인터넷 | 책(법전) <br> 이나 <br> 잡지 <br> (법령 <br> 정보지) | 정부 <br> 홍보물 | 주위 <br> 사람 | 학 교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93.4 | 52.9 | 5.9 | 4.4 | 40.2 | 1.5 | 0.1 | 1.6 |
| 소득별 | 199만원 <br> 이하 | 379 | 95.8 | 26.7 | 4.2 | 4.7 | 62.9 | 1.8 | 0.3 | 3.7 |
|  | $\begin{gathered} \text { 200~ } \\ \text { 299만원 } \end{gathered}$ | 485 | 94.5 | 45.5 | 4.8 | 3.4 | 48.4 | 1.4 | 0.0 | 2.1 |
|  | 300~ 399만원 | 655 | 93.7 | 54.4 | 4.5 | 5.1 | 39.6 | 1.2 | 0.2 | 1.3 |
|  | 400~ 499만원 | 629 | 94.1 | 58.1 | 5.8 | 5.0 | 34.0 | 1.9 | 0.0 | 1.1 |
|  | $\begin{gathered} 500 \text { 만원 } \\ \text { 이상 } \end{gathered}$ | 853 | 90.9 | 63.6 | 8.6 | 3.8 | 30.5 | 1.5 | 0.1 | 0.9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683 | 92.9 | 61.3 | 7.5 | 4.7 | 31.3 | 1.5 | 0.1 | 0.6 |
|  | 중도 | 1,462 | 92.3 | 61.2 | 6.1 | 3.5 | 33.7 | 1.9 | 0.1 | 1.3 |
|  | 보수 | 855 | 95.6 | 31.9 | 4.5 | 5.6 | 58.5 | 1.0 | 0.1 | 2.9 |

(2) 보험 또는 펀드 가입시 계약서의 숙지 정도

문3. OO 님은 보험이나 펀드를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53.1 |
| :---: | :---: | :---: |
| 매우 자세히 읽는다 | 8.9 |  |
| 대충 읽는다 | 44.2 ${ }^{\text {ل }}$ |  |
| 별로 읽지 않는다 | 35.67 | 46.0 |
| 전혀 읽지 않는다 | 10.4 ${ }^{\text {- }}$ |  |
| 모름/무응 답 | 0.8 |  |
| 계 ( $\mathrm{N}=3,000$ ) | 100.0 |  |

［종합 분석］
계약서 숙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읽는다는 의견이 $53.1 \%$（매 우 자세히 읽는다［8．9\％］＋대충 읽는다［44．2\％］）로，읽지 않는다는 의견 $46.0 \%$（별로 읽지 않는다［35．6\％］＋전혀 읽지 않는다［10．4\％］）보다 7．1\％ 높게 나타났다．

> <그림 19> 계약서 숙지의 정도


계약서 숙지 정도에 대한 응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매우 자세 히 읽는다는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이고，읽지 않는다（별로＋전혀） 는 2008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종래와 달 리 보험이나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이 많아졌고 전자적으 로 가입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또한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정부와 법원이 약관 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다시 말해서 보험이나 펀드에 관련한 약관거래에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세세한 약관조항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나타났다．즉 사전적으로는 표준약관 도입으로 약관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으며，사 후적으로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다툼 수 있는 방법이 마 련되어 있다．또한 보험이나 펀드의 약관거래에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법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 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을 약관으로 본다（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따라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 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 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조제2항）．또한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 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3항）． 더 나아가서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제1항）．
＜표 23＞계약서 숙지 정도의 시계열 변화99）

|  | 1991년 | 1994년 | 2008년 | 2015년 |
| :---: | :---: | :---: | :---: | :---: |
| 매우 자세히 읽는다 | $27.6 \%$ | $33.6 \%$ | $13.4 \%$ | $8.9 \%$ |
| 대충 읽는다 | $46.9 \%$ | $44.8 \%$ | $48.4 \%$ | $44.2 \%$ |
| 별로 읽지 않는다 | - | - | $30.8 \%$ | $35.6 \%$ |
| 안본다 | $21.1 \%$ | $18.1 \%$ | - | - |
| 전혀 읽지 않는다 | - | - | $7.4 \%$ | $10.4 \%$ |
| 모름／무응답 | $4.4 \%$ | $3.6 \%$ | - | $0.8 \%$ |

［특성별 분석］
계약서 숙지정도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지역규모가 커질수록 계약서 숙지 정도가 높은 것을

[^6]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34면；박상철외 2인， ${ }^{『} 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89면．

볼 수 있다. 반면에 6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의 경우 자세히 읽지 않는다 는 응답이 $61.0 \%$ 에 달해 다른 연렁층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계층수준이 하층인 경우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50.3 \%$ 로 상층 $(30.9 \%)$ 에 비해 $19.4 \%$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4> 특성별 계약서 숙지의 정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자세히 <br> 읽는다 | $\begin{aligned} & \text { 대충 } \\ & \text { 읽는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읽지 } \\ \text { 않는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읽지 } \\ \text { 않는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읽는다 |  |  |  |  |  | $\begin{aligned} & \text { 읽지 } \\ & \text { 않는다 } \end{aligned}$ |
| 전체 |  |  | 3,000 | 8.9 | 44.2 | 35.6 | 10.4 | 0.8 | 53.1 | 46.0 |
| 연령별 | 20 대 | 529 | 10.9 | 47.2 | 32.3 | 8.3 | 1.4 | 58.1 | 40.6 |
|  | 30 대 | 560 | 11.6 | 52.3 | 29.7 | 6.3 | 0.2 | 63.9 | 36.0 |
|  | 40대 | 644 | 9.9 | 47.7 | 35.9 | 6.5 | 0.0 | 57.6 | 42.4 |
|  | 50 대 | 594 | 6.8 | 45.7 | 39.1 | 8.4 | 0.0 | 52.5 | 47.5 |
|  | 60대 <br> 이상 | 673 | 6.1 | 30.5 | 39.8 | 21.1 | 2.4 | 36.6 | 61.0 |
| 학력별 | 중졸 <br> 이하 | 395 | 4.2 | 26.0 | 37.9 | 27.8 | 4.1 | 30.2 | 65.7 |
|  | 고졸 | 1,196 | 7.1 | 43.4 | 39.4 | 9.9 | 0.2 | 50.5 | 49.3 |
|  | 대재 이상 | 1,409 | 11.8 | 50.0 | 31.8 | 6.0 | 0.4 | 61.8 | 37.8 |
| 소득별 | 199만원 <br> 이하 | 379 | 7.1 | 32.4 | 34.4 | 22.3 | 3.8 | 39.5 | 56.7 |
|  | $\begin{gathered} \text { 200~ } \\ \text { 299만원 } \end{gathered}$ | 485 | 8.5 | 43.4 | 34.8 | 13.3 | 0.0 | 51.9 | 48.1 |
|  | $\begin{gathered} \text { 300~ } \\ 399 \text { 만원 } \end{gathered}$ | 655 | 6.5 | 47.1 | 36.3 | 9.9 | 0.3 | 53.6 | 46.2 |
|  | $\begin{gathered} \text { 400~ } \\ \text { 499만원 } \end{gathered}$ | 629 | 8.8 | 46.8 | 36.1 | 7.8 | 0.5 | 55.6 | 43.9 |
|  | 500만원 이상 | 853 | 12.0 | 45.9 | 35.7 | 5.9 | 0.5 | 57.9 | 41.6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자세히 <br> 읽는다 | 대충 읽는다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읽지 } \\ & \text { 않는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읽지 } \\ & \text { 않는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읽는다 |  |  |  |  |  | $\begin{aligned} & \text { 읽지 } \\ & \text { 않는다 } \end{aligned}$ |
| 전체 |  |  | 3,000 | 8.9 | 44.2 | 35.6 | 10.4 | 0.8 | 53.1 | 46.0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1,372 | 9.9 | 46.2 | 35.8 | 7.5 | 0.7 | 56.1 |
|  | $\begin{aligned} & \text { 중소 } \\ & \text { 도시 } \end{aligned}$ | 918 | 918 | 9.1 | 42.0 | 37.0 | 11.4 | 0.5 | 51.1 |
|  | 읍면 <br> 지역 | 710 | 710 | 6.9 | 43.3 | 33.6 | 15.0 | 1.3 | 50.2 |
| 주관적 <br> 계층 수준별 | 하층 | 1,352 | 7.0 | 41.8 | 37.0 | 13.3 | 1.0 | 48.7 | 50.3 |
|  | 중간층 | 1,527 | 9.9 | 45.9 | 35.4 | 8.1 | 0.7 | 55.8 | 43.5 |
|  | 상층 | 122 | 18.9 | 50.2 | 22.9 | 8.0 | 0.0 | 69.1 | 30.9 |

3. 법생활과 준법 정도
(1)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
1) 설문 결과의 분석

문4. $\bigcirc \bigcirc$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 | :---: | :---: |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37 | 49.5 |
| 잘 지켜지는 편이다 | 47.2 |  |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76.6 | 50.0 |
|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 3.5 |  |
| 모름/무응답 | 0.5 |  |
| 계 ( $\mathrm{N}=3,000$ ) | 100.0 |  |

[종합 분석]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지켜진다는 의견 이 $49.5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2.3\%]+잘 지켜지는 편이다[47.2\%])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 $50.0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46.6\%]+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3.5\%])보다 다소 낮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

[특성별 분석]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2.4\%)이 남성(46.4\%)에 비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50 대 이상의 연령층과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주관 적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진다고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기타(61.6\%), 학생(58.5\%) ${ }^{100), ~ ㅎ ㅘ ㅇ ㅣ ㅌ ㅡ ㅋ ㅏ ㄹ ㄹ ㅏ(56.2 \%) ㅇ ㅢ ~}$
100) 법무부는 2009.7.8. - 7.10.에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에게 의뢰하여 전국 8 개 중고교학생 1,762 명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 각하느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http://m.blog.daum.net/mojjustice/8703533\# 2015.10월 방문).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 $22.6 \%$ ), '별로 그렿지 않다'( $40.3 \%$ )는 응답은

순으로 우리 사회의 준법정도가 낮다고 조사되었다.
<표 25> 특성별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

| 구 분 <br> (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잘 <br> 지켜 <br> 지고 <br> 있다 | 잘 <br> 지켜 <br> 지는 <br> 편이다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 } \\ \text { 지지 } \\ \text { 않는 } \\ \text { 편이다 } \end{gathered}$ | 전혀 <br> 지켜 <br> 지고 <br> 있지 <br> 않다 | \| 모름/무응답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짐 } \end{gathered}$ |  |  |  |  |  | $\begin{aligned} & \text { 잘 } \\ & \text { 지켜 } \\ & \text { 지지 } \\ & \text { 않음 } \end{aligned}$ |
| 성 별 | 남자 |  | 1,489 | 2.1 | 44.4 | 49.3 | 3.8 | 0.5 | 46.4 | 53.0 |
|  | 여자 | 1,511 | 2.5 | 49.9 | 43.9 | 3.2 | 0.5 | 52.4 | 47.1 |
| 연령별 | 20대 | 529 | 1.7 | 41.4 | 50.9 | 5.5 | 0.5 | 43.1 | 56.4 |
|  | 30대 | 560 | 2.1 | 38.5 | 56.1 | 2.7 | 0.6 | 40.6 | 58.8 |
|  | 40대 | 644 | 1.9 | 42.9 | 51.8 | 3.0 | 0.3 | 44.8 | 54.8 |
|  | 50대 | 594 | 2.8 | 52.3 | 40.7 | 4.1 | 0.2 | 55.1 | 44.8 |
|  | 60대 이상 | 673 | 2.8 | 58.4 | 35.4 | 2.4 | 1.0 | 61.2 | 37.8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3.4 | 53.9 | 37.6 | 4.2 | 0.9 | 57.3 | 41.8 |
|  | 고졸 | 1,196 | 2.5 | 50.2 | 43.5 | 3.0 | 0.8 | 52.7 | 46.5 |
|  | 대재 이상 | 1,409 | 1.8 | 42.7 | 51.7 | 3.7 | 0.2 | 44.5 | 55.4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2.1 | 51.1 | 43.2 | 2.9 | 0.7 | 53.2 | 46.1 |
|  | 자영업 | 666 | 2.4 | 47.2 | 46.2 | 3.5 | 0.7 | 49.6 | 49.7 |
|  | 블루칼라 | 588 | 3.4 | 46.7 | 46.4 | 3.1 | 0.4 | 50.1 | 49.5 |
|  | 화이트칼라 | 733 | 1.6 | 42.0 | 52.9 | 3.3 | 0.2 | 43.6 | 56.2 |

절반을 넘었지만, '매우 그렇다 $(1.6 \%$ )' '대체로 그렇다(5.6\%)'는 응답은 $7.2 \%$ 에 머물 렀습니다(보통이다 $28.9 \%$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10 명 중 1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도 2015.4.13. - 4.22.에 전국의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대면방법으로 '우리 사회 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85.69 \%$ 로 가장 높 게 나온 반면,'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12.24 \%$ )거나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0.24 \%$ )는 의견은 경우 $12.48 \%$ 에 불과하였다
(http://www.goodlaw.org/bbs/view.asp?id=guide_item_bd\&menu=guide\&b_idx=460\&page=1 2015년 10월 30일 방문).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잘 } \\ \text { 지켜 } \\ \text { 지고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 } \\ \text { 지는 } \\ \text { 편이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 } \\ \text { 지지 } \\ \text { 않는 } \\ \text { 편이다 } \end{gathered}$ | 전혀 <br> 지켜 <br> 지고 <br> 있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짐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ㅈㅏㅏ } \\ & \text { 지켜 } \\ & \text { 지지 } \\ & \text { 않음 } \end{aligned}$ |
|  | 전업주부 | 563 | 2.6 | 58.4 | 35.8 | 2.5 | 0.7 | 61.0 | 38.3 |
|  | 학생 | 185 | 1.7 | 39.3 | 53.0 | 5.5 | 0.5 | 41.0 | 58.5 |
|  | 무직/기타 | 132 | 0.0 | 36.8 | 54.2 | 7.4 | 1.6 | 36.8 | 61.6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2.8 | 49.5 | 43.6 | 3.7 | 0.4 | 52.3 | 47.3 |
|  | 중소도시 | 918 | 1.9 | 47.7 | 47.0 | 2.9 | 0.5 | 49.6 | 49.9 |
|  | 읍면지역 | 710 | 1.8 | 42.0 | 51.7 | 3.8 | 0.8 | 43.8 | 55.5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1.8 | 45.3 | 48.9 | 3.7 | 0.4 | 47.1 | 52.6 |
|  | 중간층 | 1,527 | 2.5 | 48.6 | 45.3 | 3.0 | 0.6 | 51.1 | 48.3 |
|  | 상층 | 122 | 5.0 | 50.1 | 37.4 | 6.9 | 0.6 | 55.1 | 44.3 |

2) 설문 결과 이유의 분석

문4-1. (문4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 :---: |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42.5 |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18.9 |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11.2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11.0 |
| 법을 잘 몰라서 | 7.2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6.8 |
| 기타 | 2.0 |
| 모름/무응 답 | 0.5 |
| 계 ( $\mathrm{N}=1,501$ ) | 100.0 |

[종합 분석]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 $(\mathrm{N}=1,501)$ 를 대 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이 $42.5 \%$ 로 가장 높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18.9\%),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11.2\%),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1.0 \%$ ), '법을 잘 몰라 서'(7.2\%),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 문에'(6.8\%)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 우리 사회의 법 비준수 이유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에 대한 응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1991년 조사(17.6\%)와 2015년 조사(49.5\%)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 이 우리 사회에서의 법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101)

[^7]＜그림 22＞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의 시계열 변화102）

> ㅁ준수 비준수


우리 사회의 법 비준수 이유에 대한 응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한 2015년 조사결과（42．5\％）가 2008년 조사결과（34．3\％）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크게 부각되듯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 나고 있는 일부 계층이 범죄행위 등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 나 또는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처벌을 받은 현상 등을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가 2,251 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6.64 \%$ 를 차지 하였다．즉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10 명중 7 명이상이 며，반면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10 명 중 2 명 $(19.95 \%)$ 이 채 되지 않았다．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법보다는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50\％），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22．61\％），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8.99 \%)$ 순서로 나타났다．
102）박상철외 2 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79면；이세정•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93면；박상철외 2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107면．
<그림 23> 우리 사회의 법 비준수 이유의 시계열 변화103)

[특성별 분석]
우리 사회의 법 비준수 이유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 득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가구내 세대수가 많을수록, ‘법대 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법의 비준수를 조장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법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8]<표 26> 특성별 우리 사회의 법 비준수 이유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법을 <br> 잘 몰라서 | 법을 <br> 지키는 <br> 것이 <br> 번거롭고 <br> 불편해서 | $\begin{aligned} & \text { 법대로 } \\ & \text { 살면 } \\ & \text { 손해를 } \\ & \text { 보니까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지키지 } \\ \text { 않아도 } \\ \text { 다른 } \\ \text { 사람이 } \\ \text { 모를 } \\ \text { 것으로 } \\ \text { 생각되기 } \\ \text { 때문에 } \end{gathered}$ | 지키지 <br> 않아도 <br> 처벌받지 <br> 않을 <br> 것으로 <br> 생각되기 <br> 때문에 | 법을 <br> 지키지 <br> 않는 <br> 사람이 <br> 더 <br> 많아서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 1,501 | 7.2 | 11.2 | 42.5 | 6.8 | 11.0 | 18.9 | 2.0 | 0.5 |
| 소득별 | 199만원 이하 | 188 | 8.2 | 13.7 | 32.2 | 8.5 | 8.3 | 22.8 | 4.0 | 2.2 |
|  | $\begin{gathered} \text { 200~ } \\ \text { 299만원 } \end{gathered}$ | 249 | 5.6 | 11.9 | 36.0 | 6.3 | 11.5 | 25.6 | 2.1 | 0.9 |
|  | $\begin{gathered} \text { 300~ } \\ 399 \text { 만원 } \end{gathered}$ | 315 | 6.2 | 11.3 | 42.1 | 5.9 | 9.9 | 23.0 | 1.1 | 0.5 |
|  | $\begin{gathered} \text { 400~ } \\ \text { 499만원 } \end{gathered}$ | 307 | 7.8 | 10.0 | 46.2 | 7.2 | 12.3 | 15.3 | 1.3 | 0.0 |
|  | $\begin{aligned} & 500 \text { 만원 } \\ & \text { 이상 } \end{aligned}$ | 443 | 7.8 | 10.5 | 48.2 | 6.7 | 11.6 | 13.1 | 2.1 | 0.0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649 | 6.7 | 11.0 | 46.7 | 6.1 | 11.8 | 16.2 | 1.4 | 0.1 |
|  | $\begin{aligned} & \text { 중소 } \\ & \text { 도시 } \end{aligned}$ | 459 | 8.5 | 10.2 | 40.0 | 7.5 | 9.0 | 20.6 | 2.9 | 1.4 |
|  | $\begin{aligned} & \text { 읍면 } \\ & \text { 지역 } \end{aligned}$ | 394 | 6.3 | 12.7 | 38.4 | 7.2 | 11.9 | 21.4 | 1.8 | 0.2 |
| 가구 <br> 구성별 | 1인가구 | 114 | 6.8 | 10.7 | 35.8 | 5.6 | 12.8 | 23.0 | 2.3 | 3.0 |
|  | $\begin{aligned} & \text { 1세 대 } \\ & \text { 가구 } \end{aligned}$ | 386 | 9.2 | 11.0 | 41.0 | 7.4 | 10.6 | 17.6 | 2.5 | 0.8 |
|  | $\begin{aligned} & \text { 2세 대 } \\ & \text { 가구 } \end{aligned}$ | 930 | 6.3 | 12.1 | 43.7 | 7.0 | 10.5 | 18.8 | 1.4 | 0.2 |
|  | $\begin{aligned} & \text { 3세 대 } \\ & \text { 가구 } \end{aligned}$ | 70 | 7.7 | 1.3 | 45.0 | 2.9 | 16.2 | 21.3 | 5.7 | 0.0 |

(2) 자신의 준법 정도

1) 설문 결과의 분석
```
무ᄂ5. ○○니ᄆ으ᄂ 보ᄂ이ᄂ 스스로 버ᄇ으ᄅ 어느 저ᄋ도 자ᄅ 지키ᄂ다고 새ᄋ가ᄀ하시ᄇ니까?
결 과
과
매우 잘 지킨다
잘 지키는 편이다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 8.1
모름/무응답
0.2
계 \((\mathrm{N}=3,000)\)
100.0
```

[종합 분석]
자신의 준법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지킨다는 의견이 $91.7 \%$ (매우 잘 지킨다[13.9\%]+잘 지키는 편이다[77.8\%])로 잘 지키지 않는 다는 의견 $8.1 \%$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8.0\%]+전혀 지키지 않는다 [0.1\%])보다 $83.6 \%$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의 준법정도보다 자신의 준법정도를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24> 자신의 준법 정도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경우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 진다고 하는 비율이 $52.3 \%$ 인데 반해, 자신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고 응답한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율 이 $81.7 \%$ 로 나타나 준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7> 자신의 준법 정도와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 간 응답비교

| 우리사회의 준법정도 | 준 수 | 비준수 | 모름/무응답 |
| :---: | :---: | :---: | :---: |
| 자신의 준법정도 | $52.3 \%$ | $47.2 \%$ | $0.5 \%$ |
| 준 수 | $18.3 \%$ | $81.7 \%$ | $0.0 \%$ |
| 미준수 |  |  |  |

자신의 준법 정도에 대한 응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법을 잘 지킨다는 의견이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5> 자신의 준법 정도의 시계열 변화104)


[^9][특성별 분석]
자신의 준법 정도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94.5\%)이 남성 $(88.8 \%$ )보다 $5 \%$ 이상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고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일수록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고 조사되었다.
<표 28> 특성별 자신의 준법 정도

| (단위:\%)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매우 잘 지켜지고 <br> 지켜지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잘 } \\ & \text { 지켜 } \\ & \text { 지는 } \\ & \text { 편이다 } \end{aligned}$ | $\begin{array}{c\|} \text { 잘 } \\ \text { 지켜지지 } \\ \text { 않는 } \\ \text { 편이다 } \end{array}$ |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짐 } \end{gathered}$ |  |  |  |  |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지지 } \\ \text { 않음 } \end{gathered}$ |
| 전 체 |  |  | 3,000 | 13.9 | 77.8 | 8.0 | 0.1 | 0.2 | 91.7 | 8.1 |
| 성 별 | 남자 | 1,489 | 11.8 | 77.0 | 11.0 | 0.1 | 0.1 | 88.8 | 11.1 |
|  | 여자 | 1,511 | 15.9 | 78.6 | 5.0 | 0.1 | 0.4 | 94.5 | 5.1 |
| 연령별 | 20대 | 529 | 10.5 | 76.6 | 12.7 | 0.0 | 0.2 | 87.1 | 12.7 |
|  | 30대 | 560 | 9.7 | 81.7 | 8.0 | 0.3 | 0.3 | 91.4 | 8.3 |
|  | 40대 | 644 | 13.6 | 78.8 | 7.4 | 0.0 | 0.2 | 92.4 | 7.4 |
|  | 50대 | 594 | 15.9 | 77.2 | 6.8 | 0.2 | 0.0 | 93.1 | 7.0 |
|  | 60대 <br> 이상 | 673 | 18.5 | 75.1 | 5.8 | 0.1 | 0.5 | 93.6 | 5.9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12.2 | 78.2 | 8.9 | 0.3 | 0.4 | 90.3 | 9.2 |
|  | 중도 | 1,462 | 12.1 | 79.5 | 8.2 | 0.1 | 0.2 | 91.5 | 8.2 |
|  | 보수 | 855 | 18.4 | 74.6 | 6.8 | 0.1 | 0.1 | 93.0 | 6.9 |

2) 설문 결과 이유의 분석

문5-1. (문5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 과 | \% |
| :---: | :---: |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36.1 |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23.2 |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14.1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9.7 |
| 법을 잘 몰라서 | 9.0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7.6 |
| 기타 | 0.4 |
| 계 $(\mathrm{N}=242)$ | 100.0 |

[종합 분석]
자신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자 $(\mathrm{N}=242)$ 를 대상으로 그 이 유를 물은 결과,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이 $36.1 \%$ 로 가 장 높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23.2\%), '법을 지키 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14.1\%),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9.7\%), '법을 잘 몰라서'(9.0\%),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7.6\%)순으 로 나타났다.
<그림 26> 자신의 법 비준수 이유
36.1\%


우리 사회와 자신의 법 비준수에 대한 이유를 비교하면, 양자 모두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음과 같이 다른 응 답을 한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법준수의 여부를 자신의 주관 적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현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우리 사회와 본인의 법 비준수 이유 비교

|  | 법대로 <br> 살면 <br> 손해를 <br> 보니까 | 법을 <br> 지키지 <br> 않는 <br> 사람이 <br> 더 <br> 많아서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법을 <br> 잘 몰라서 | 법을 지키지 <br> 않아도 다른 <br> 사람이 모를 <br> 것으로 <br> 생각되기 <br> 때문에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우리 } \\ & \text { 사회 } \end{aligned}$ | 42.5\% | 18.9\% | 11.2\% | 11.0\% | 7.2\% | 6.8\% | 2.0\% | 0.5\% |
| 자신 | 36.1\% | 14.1\% | 23.2\% | 7.6\% | 9.0\% | 9.7\% | 0.4\% | 0.0\% |

[특성별 분석]
자신의 법 비준수 이유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수준이 낮을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오 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법준수 여부를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현상이 있었고 여전히 사회 전반에 법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특성별 자신의 법 비준수 이유

|  |  | 응답자 <br> 수 <br> (명) | 법대로 <br> 살면 <br> 손해를 <br> 보니까 | 법을 <br> 지키는 <br> 것이 <br> 번거롭고 <br> 불편해서 | 법을 <br> 지키지 <br> 않는 <br> 사람이 <br> 더 <br> 많아서 | 지키지 <br> 않아도 <br> 다른 <br> 사람이 <br> 모를것으로 <br> 생각되기 <br> 때문에 | 법을 <br> 잘 몰라서 | $\begin{gathered} \text { 지키지 } \\ \text { 않아도 } \\ \text { 처벌받지 } \\ \text { 않을것으로 } \\ \text { 생각되기 } \\ \text { 때문에 } \end{gathered}$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 242 | 36.1 | 23.2 | 14.1 | 9.7 | 9.0 | 7.6 | 0.4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22 | 40.9 | 20.0 | 14.7 | 12.6 | 5.0 | 6.1 | 0.7 |
|  | 중간층 | 110 | 32.4 | 28.1 | 12.3 | 6.5 | 12.4 | 8.3 | 0.0 |
|  | 상층 | 10 | 17.8 | 8.7 | 25.2 | 9.6 | 20.5 | 18.3 | 0.0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3 | 28.6 | 18.9 | 20.6 | 15.7 | 8.2 | 8.0 | 0.0 |
|  | 중도 | 121 | 36.8 | 24.1 | 15.2 | 6.7 | 9.3 | 7.2 | 0.7 |
|  | 보수 | 59 | 42.6 | 26.1 | 4.8 | 9.4 | 9.3 | 7.9 | 0.0 |

4. 법생활과 권리의식

문6. $\bigcirc \bigcirc$ 님은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결 과 | \% |
| :---: | :---: |
|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41.4 |
|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41.2 |
|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11.9 |
|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 3.8 |
| 기타 | 0.9 |
| 모름/무응답 | 0.7 |
| 계 $(\mathrm{N}=3,000)$ | 100.0 |

［종합 분석］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구입시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에 ‘끝까 지 따져서 바꿔온다＇（41．4\％）와 ‘한번 산것이니 어쩔 수 없다＇（41．2\％）라 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 다＇（ $11.9 \%$ ），＇손해배상을 받아낸다＇$(3.8 \%)$ 순으로 나타났다．${ }^{105)}$ 불량식품 의 구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끝까지 따져서 바꿔온 다［41．4\％］＋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11．9\％］＋손해배상을 받아낸다 ［3．8\％］）이 $57.1 \%$ 로 나타나 포기한다는 응답（‘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41.2 \%$ 와 비교하여 권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 불 량제품에 관련하여『제품안전기본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이 마련되어 있다．불량식품과 관련해서 는 2008년 4월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106）분야별로『식 품위생법』10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전염병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등 여러 법률이 존재한

105）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초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뢰하여＇식품 구입 시 피해 입을 때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해당 회사나 구입처에 직접 불만 제기（41．8\％），소비자단체에 상담제기（3．1\％），그낭 지나쳤다（42．9\％）로 나타났다（조윤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 제 10 호， $2012,10,15$ 면）．
106）당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이유는＂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위해식품 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짐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생산•판매의 금지 등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시험 • 분석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 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107）식품위생법은 제정 당시＇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식품위생법은 2015．03．27．일부개정 되었는데，이때 본 법의 목적이＂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 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기사화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 던 사건으로는 속칭 '쓰레기 만두 사건'108)을 들 수 있다.
<그림 27> 불량품 구입시 대처방법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구입시 대처방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 보면,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은 1994년 조사부터 지 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는 의견은 2008년 (32.9\%)조사에 비해 2015년(41.4\%)조사에서 $8.5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소액의 제품 등을 거래 시 나타 나는 불량제품의 교환, 손해배상 등에서 소비자가 그 권리를 적극적 으로 주장하기 위한 소송이나 그 밖의 구제 등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109)

[^10]＜그림 28＞불량품 구입시 대처방법의 시계열 변화110）


## ［특성별 분석］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구입시 대처방법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50 대 미만의 연령층에서는＇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는 의견이 많았 고， 5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의 견이 많았다．이는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구입 시 젊은층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직업별로는 전업주부 （44．4\％），무직／기타（42．9\％），화이트칼라（42．7\％），블루칼라（42．0\％），학생 $(39.9 \%)^{111)}$ ，자영업（39．1\％），농／수／축산업（31．1\％）순으로 조사되었다．한 편，주관적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소비자

110）박상철외 2 인，『 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90면；이세정•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217면；박상철외 2인， ${ }^{『} 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119면．
111）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2013．11．1．－11．30．에 대구지역 고등학교 2학년생 351명 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에서 ‘물품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불만，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나？’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 면，판매자•제조자에게 불만처리 요구（38．8\％），소비자상담센터에 불만처리 의뢰 （6\％），주변 사람에게 불평（38\％），혼자 참고 넘어감（17．2\％）로 나타났다．
（http：／／eargood．blog．me／40204048372 최종방문 2015．10．30．）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손해배상을 받아낸다'는 등의 적극적 대응과 관련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 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31> 특성별 불량품 구입시 대처방법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끝까지 <br> 따쟈서 <br> 바꿔온다 | 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소비자 <br> 고발 <br> 센터에 <br> 신고한다 | 손해 <br> 배상을 <br> 받아낸다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41.4 | 41.2 | 11.9 | 3.8 | 0.9 | 0.7 |
| 연령별 | 20 대 | 529 | 42.6 | 31.7 | 18.0 | 6.7 | 0.4 | 0.5 |
|  | 30 대 | 560 | 46.0 | 31.3 | 16.8 | 3.6 | 2.1 | 0.2 |
|  | 40대 | 644 | 43.9 | 36.4 | 14.9 | 3.4 | 1.1 | 0.3 |
|  | 50대 | 594 | 40.5 | 47.9 | 7.3 | 3.1 | 0.3 | 0.8 |
|  | 60대 이상 | 673 | 35.0 | 55.7 | 4.2 | 2.8 | 0.6 | 1.7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30.7 | 62.3 | 2.5 | 2.0 | 0.7 | 1.8 |
|  | 고졸 | 1,196 | 42.2 | 44.0 | 8.9 | 3.5 | 0.6 | 0.8 |
|  | 대재 이상 | 1,409 | 43.7 | 33.0 | 17.1 | 4.6 | 1.2 | 0.4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31.1 | 58.8 | 5.1 | 1.5 | 0.7 | 2.8 |
|  | 자영업 | 666 | 39.1 | 48.4 | 7.8 | 3.0 | 0.6 | 1.1 |
|  | 블루칼라 | 588 | 42.0 | 41.2 | 11.7 | 3.2 | 0.9 | 1.1 |
|  | 화이트칼라 | 733 | 42.7 | 31.9 | 19.0 | 5.3 | 1.1 | 0.1 |
|  | 전업주부 | 563 | 44.4 | 43.8 | 7.6 | 2.8 | 1.3 | 0.2 |
|  | 학생 | 185 | 39.9 | 33.6 | 18.9 | 7.1 | 0.0 | 0.5 |
|  | 무직/기타 | 132 | 42.9 | 39.8 | 9.2 | 4.9 | 1.6 | 1.7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40.9 | 43.6 | 10.4 | 3.5 | 0.7 | 0.8 |
|  | 중간층 | 1,527 | 41.4 | 40.2 | 12.8 | 4.0 | 1.1 | 0.6 |
|  | 상층 | 122 | 46.5 | 27.8 | 17.5 | 5.9 | 0.8 | 1.5 |

## 제 3 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 제 1 절 개 관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현행 법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법개혁 관련 제도와 법의식의 변화(로스쿨제도, 국민참여재판) 와 최근 법제도와 법의식의 변화(사형제 폐지, 안락사 허용, 노사관계 법,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 비정규직 보호법, 간통죄, 성매매종사자 처벌, 김영란법 도입)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로스쿨제 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다른 문항과 달리 5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모름/무응답이 높게 나타나서 고 연령층에서 로스 쿨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참여 재판은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현행 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 사형제는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고, 안락사(존엄사) ${ }^{112)}$ 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 이 많았으며, 시계열적으로는 찬성의견의 비율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 았다. 노사관계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책임에는 사 업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12) 통상 '넓은 의미 안락사’라는 개념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약물주사 등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이 적 극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인공호흡기 같은 장치를 떼 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한편,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있었으나(2008년 조사에서는 ‘안락사’만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일반인의 입 장에서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한 설문의 분석에 있어서도 양자의 구분이 반드 시 필요하지 아니하여 안락사에 존엄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문항목을 정했다.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직업별로 보면 무직/기타와 학생 집단이 성과가 없다고 많이 응답하였다. 간통죄 폐지는 반대한다 는 의견이 더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율이 높았다. 성매매종사자 처벌은 찬성의견이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율이 더 높았다. 김영 란법 도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응답이 많았다.

## 제 2 절 사법개혁 관련제도의 도입과 범의식 변화

## 1. 로스쿨제도

(1) 설문 결과의 분석

문12.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bigcirc \bigcirc$ 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매우 성과가 있다
성과가 있는 편이다
1.4 ᄀ

별로 성과가 없다
전혀 성과가 없다
51.0
28.7

모름/무응답
$7.8-58.8$
12.5

계 $(\mathrm{N}=3,000)$
100.0
[종합 분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과가 있다 는 의견이 $28.7 \%$ (매우 성과가 있다[1.4\%]+성과가 있는 편이다[27.3\%])로, 성과가 없다는 의견 $58.8 \%$ (별로 성과가 없다[51.0\%]+전혀 성과가 없

다［7．8\％］）로 나타나 그 차이가 $30.1 \%$ 로 큰 차이를 보였다．다만，모름／ 무응답이 $12.5 \%$ 로 높게 나타나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하 여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국민의 여론은 로스쿨제도 보다는 사법시험을 존치 하고자 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올해 한국방송공 사와 동아일보가 실시한 사법시험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각 $57.5 \%$ 와 $67.9 \%$ 로 사법시험의 유지 의견이 많았다．113） 한편，2011년 한국기업법무협회가 법전문가 조사결과에서는＇지금이라 도 로스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6 \%$ 로 나타나는 등 로스 쿨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부정적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114）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의 도입은 2007．7．27．에 제정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15）과 2011．7．25．에 제정된『변호사시험법』116）

113）한국방송공사가 사법시험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2015．2．5．－2．9．에 9，911명을 대상으로 KBS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유지 $(57.5 \%)$ ，폐지 $(41.6 \%)$ ，잘 모르겠다 $(0.6 \%)$ ，기타 $(0.3 \%)$ 로 나타났다．
（http：／／news．kbs．co．kr／poll／view．do？pgcd＝8\＆pcd＝1716 2015년 10월 30일 방문）．한편，동아 일보도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선호 제도에 관하여 2015．5．23．－5．24．에 전국 성인 남녀 1,000 명 조사 결과에서는 사법시험（67．9\％），로스쿨（ $23 \%$ ），모름／무응 답 $(9.1 \%)$ 로 나타났다．
（http：／／news．donga．com／3／03／20150528／71505271／1 2015년 10월 30일 방문）．
114）한국기업 법무협회가 2011．4．26．에 404명（로스쿨 교수 53명，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수 64 명，법조계 종사자 165 명，업체 및 기타 법무담당 종사자 122 명）을 대상으 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법조종사자 $79 \%$＂지금，로스쿨 폐지＂，법률저널，2011년 5월 2일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4）．즉＇로스쿨 제도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나？＇라는 설문에＇지금이라도 로스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6 \%$ 로 가장 높게 나왔다．＇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7.7 \%$ ，＇이미 시행된 만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11.1 \%$ ，＇기타＇ $0.5 \%$ 순이었다．
115）이 법의 제정이유로＂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 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 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 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116）이 법의 제정이유로＂『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7．9．28．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최근 언론에서는 현재의 로스쿨이 ‘현대판 음 서 제도'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로 입학부터 교육 과정, 그리 고 이후 졸업과 변호사 자격 취득, 취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적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애써 해명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117) 이러한 차원에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면, 변호사•검사•판사 등 법률적 직위들은 그간 그나마 우리 사회 의 ‘계층 사다리’란 최소한의 가능성마저 걷어차여진 채, 철저한 그들 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118)
<그림 29> 로스쿨 시행 평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가장 큰 성과를 도입 전(2008년)과 후(2015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8년(시행전)에 비해 ‘전문법조인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 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117) 미디어스 2015.09.23. "'PD수첩', 현대판 음서제도 로스쿨을 해부하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69)".
118) 미디어스 2015.09.23. "'PD수첩', 현대판 음서제도 로스쿨을 해부하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69)".

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이라는 의견은 감소하였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과 ‘법조계 비리 나 부패 감소’라는 의견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로스쿨 시행 성과의 시계열 변화(도입 전/후)119)

[특성별 분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과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 대 이상에서 '모름/무응답'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고 연령층의 경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있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 대 $(31.8 \%$ )와 60 대 이상( $30.6 \%$ ),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33.9 \%$ ), 대도시 거주자(32.4\%)와 주관적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과가 없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70.6\%)와 40대(64.4\%),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6.6\%)와 학생층(64.9\%)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11]<표 32> 특성별 로스쿨의 시행 성과

| 구 분 (단위:\%) |  | 응답자 수 <br> (명) | 매우 <br> 성과가 <br> 있다 | $\begin{aligned} & \text { 성과가 } \\ & \text { 있는 } \\ & \text { 편이다 } \end{aligned}$ | 별로 <br> 성과가 <br> 없다 | 전혀 성과가 없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br> 있음 |  |  |  |  |  | 성과 <br> 없음 |
|  | 저 체 |  | 3,000 | 1.4 | 27.3 | 51.0 | 7.8 | 12.5 | 28.7 | 58.8 |
| 연령별 | 20대 | 529 | 1.5 | 30.3 | 51.6 | 9.6 | 7.0 | 31.8 | 61.2 |
|  | 30대 | 560 | 1.6 | 22.1 | 62.1 | 8.5 | 5.6 | 23.7 | 70.6 |
|  | 40대 | 644 | 1.5 | 27.5 | 56.7 | 7.7 | 6.5 | 29.0 | 64.4 |
|  | 50대 | 594 | 1.1 | 27.0 | 48.2 | 7.4 | 16.3 | 28.1 | 55.6 |
|  | 60대 이상 | 673 | 1.2 | 29.4 | 38.2 | 6.0 | 25.1 | 30.6 | 44.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0.8 | 28.7 | 37.1 | 6.2 | 27.3 | 29.5 | 43.2 |
|  | 고졸 | 1,196 | 1.3 | 27.4 | 48.4 | 6.1 | 16.9 | 28.7 | 54.4 |
|  | 대재 이상 | 1,409 | 1.6 | 26.9 | 57.1 | 9.6 | 4.7 | 28.5 | 66.8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0.0 | 27.0 | 42.7 | 12.3 | 18.0 | 27.0 | 55.0 |
|  | 자영업 | 666 | 0.9 | 22.0 | 52.5 | 7.7 | 16.9 | 22.9 | 60.2 |
|  | 블루칼라 | 588 | 2.4 | 31.5 | 46.4 | 5.8 | 13.9 | 33.9 | 52.2 |
|  | 화이트칼라 | 733 | 1.5 | 27.1 | 57.1 | 9.5 | 4.7 | 28.6 | 66.6 |
|  | 전업주부 | 563 | 1.3 | 28.5 | 47.9 | 5.7 | 16.6 | 29.8 | 53.6 |
|  | 학생 | 185 | 0.0 | 30.8 | 56.5 | 8.4 | 4.4 | 30.8 | 64.9 |
|  | 무직/기타 | 132 | 2.1 | 26.8 | 44.1 | 10.4 | 16.6 | 28.9 | 54.5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649 | 1.8 | 30.6 | 46.4 | 9.3 | 11.9 | 32.4 | 55.7 |
|  | 중소도시 | 459 | 1.3 | 24.0 | 54.4 | 6.3 | 13.9 | 25.4 | 60.7 |
|  | 읍면지역 | 394 | 0.6 | 25.2 | 55.5 | 6.7 | 12.0 | 25.9 | 62.2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1.2 | 26.4 | 49.8 | 7.9 | 14.7 | 27.6 | 57.7 |
|  | 중간층 | 1,527 | 1.3 | 27.6 | 52.5 | 7.4 | 11.2 | 28.9 | 59.9 |
|  | 상층 | 122 | 4.5 | 34.4 | 45.1 | 10.8 | 5.3 | 38.9 | 55.9 |

(2) 설문 결과 이유의 분석

문12-1. (문 12 에서 ' 1,2 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 :---: |
| …............................ | ......... |
|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 41.1 |
|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 21.4 |
|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21.1 |
|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 14.6 |
| 기타 | 0.4 |
| 모름/무응답 | 1.3 |
| …........................................................................................................... |  |
| 계(N=861) | 100.0 |

[종합 분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과가 있다는 응답자(N=861)를 대상 으로 가장 큰 성과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 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41.1 \%$ 로 가장 높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21.4\%),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21.1 \%)$,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14.6 \%$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 로스쿨 시행의 성과


## [특성별 분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과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 스의 질 향상’이라는 의견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고,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라는 의견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낮게 조사되었다.
<표 33> 특성별 로스쿨 시행의 성과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전문 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 | 법률 서비스를 <br> 이용하기 쉬워짐 |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begin{aligned} & \text { 변호사 } \\ & \text { 수입료의 } \\ & \text { 하락 } \end{aligned}$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41.1 | 21.4 | 21.1 | 14.6 | 0.4 | 1.3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445 | 43.4 | 20.8 | 19.5 | 15.0 | 0.2 | 1.1 |
|  | $\begin{aligned} & \text { 중소 } \\ & \text { 도시 } \end{aligned}$ | 233 | 42.2 | 20.6 | 20.0 | 14.8 | 0.7 | 1.7 |
|  | 읍면 <br> 지역 | 184 | 34.3 | 24.1 | 26.6 | 13.4 | 0.5 | 1.1 |

2. 국민참여재판

문18.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 참여재판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bigcirc \bigcirc$ 님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분석］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과가 있다는 의견이 $59.7 \%$（매우 성과가 있다［6．0\％］＋대체로 성과가 있다［53．7\％］）로 성과가 없다는 의견 $35.5 \%$（별로 성과가 없다 $31.9 \%+$ 전혀 성과가 없다 $3.6 \%$ ） 보다 $24.2 \%$ 높게 나타났다．한편，대법원이 2010 년에 국민참여재판 피 고인 29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4 \%$ 에 달하는 190 명이 국민참여재판을＇잘 몰라서＇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 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이 문제되어 왔다．120）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21）이 2007．06．01．제정으로 도입되었다．이 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초기 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죄로 배심원이 평결 내린 사건을 재판부가 유 죄로 판단하는 사례122）도 나타나고 있고 1 심에서 무죄로 평결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례123）도 나타나고 있는 등 다소 혼란을 격

120）대법원이 2010년 5월17일－6월4일 사이에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292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4 \%$ 에 달하는 190 명이 국민참여재판을＇잘 몰라서＇신청 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참여재판을 미신청한 피고인의 $38.5 \%$ ，참여재판 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피고인의 $35.7 \%$ 가＇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를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신청자 275 명 가운데＇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라고 답한 피고인은 37 명 $(16.2 \%)$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42 명 $(22.3 \%)$ 이었으며，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피고인 17 명 중＇판사가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2 명（ $14.3 \%$ ）이었고，＇검사가 불 이익을 줄 것 같다＇고 답한 피고인은 3 명 $(21.4 \%$ ）이었다（『［국감］＂되레 불이익 받을 라 $\cdots$ 국민참여재판 기피＂』，중앙일보，2011년 9월 20 일자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6227582）．
121）이 법은＂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 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재판절차 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2）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 1 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 우 제 1 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 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 다면，그와 같은 평결이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 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 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서울고법 2014．5．23．［2013노2133］）． 12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

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 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증거 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124)}$

한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 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 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고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도 무효라는 판례125) 등을 비롯하여 유사한 여러 건의 판례126)가 발견된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을 원하나127), 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좀 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 안에서,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 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3.25. [2009도14065]).
124) 대판 2010.3.25. [2009도14065]
125)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 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 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 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 아야 한다(대판 2011.9.8. [2011도7106]).
126) 대판 2013.01.31. [2012도13896]; 대판 2012.06.14. [2011도15484]; 대판 2012.04.26. [2012도1225] 등의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 행한 경우 절차의 위법이 인정되며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27) 헌재 [2012헌마53]; [2013헌마475]; [2012헌바298]; [2014헌바163], [2008헌바12]; [2012헌마403], [2010헌마156], [2009헌마162], [2014헌바460], [2013헌마282] 등은 모 두 자신의 형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위헌소원 등이었다.
<그림 32>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성과

[특성별 분석]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상층일수록 성과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로는 60 대 이상, 중졸이하 저학력층,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성 과에 대해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계층의 경우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특성별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매우 <br> 성과가 <br> 있다 | $\begin{aligned} & \text { 성과가 } \\ & \text { 있는 } \\ & \text { 편이다 } \end{aligned}$ | 별로 <br> 성과가 <br> 없다 | 전혀 <br> 성과가 <br> 없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br> 있음 |  |  |  |  |  | 성과 <br> 없음 |
| 전 체 |  |  | 3,000 | 6.0 | 53.7 | 31.9 | 3.6 | 4.9 | 59.7 | 35.5 |
| 연령별 | 20대 | 529 | 7.0 | 54.5 | 31.2 | 4.7 | 2.6 | 61.5 | 35.9 |
|  | 30대 | 560 | 8.1 | 56.1 | 31.1 | 2.8 | 1.9 | 64.2 | 33.9 |
|  | 40대 | 644 | 6.1 | 55.4 | 33.1 | 3.4 | 2.0 | 61.5 | 36.5 |
|  | 50대 | 594 | 4.4 | 54.4 | 33.2 | 3.4 | 4.6 | 58.8 | 36.6 |
|  | 60대 이상 | 673 | 4.7 | 48.8 | 30.6 | 3.7 | 12.3 | 53.5 | 34.2 |

제 3 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성과가 <br> 있다 | $\begin{aligned} & \text { 성과가 } \\ & \text { 있는 } \\ & \text { 편이다 } \end{aligned}$ | 별로 <br> 성과가 <br> 없다 | 전혀 성과가 없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br> 있음 |  |  |  |  |  | 성과 <br> 없음 |
| 전 체 |  |  | 3,000 | 6.0 | 53.7 | 31.9 | 3.6 | 4.9 | 59.7 | 35.5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4.5 | 48.9 | 28.1 | 4.4 | 14.1 | 53.4 | 32.5 |
|  | 고졸 | 1,196 | 4.9 | 52.7 | 32.6 | 3.8 | 6.0 | 57.6 | 36.4 |
|  | 대재 이상 | 1,409 | 7.3 | 55.9 | 32.3 | 3.1 | 1.4 | 63.2 | 35.4 |
| 소득별 | $\begin{gathered} 199 \text { 만원 } \\ \text { 이하 } \end{gathered}$ | 379 | 5.5 | 50.6 | 27.5 | 5.7 | 10.7 | 56.1 | 33.2 |
|  | $\begin{gathered} \text { 200~ } \\ \text { 299만원 } \end{gathered}$ | 485 | 7.1 | 53.4 | 30.1 | 4.0 | 5.3 | 60.6 | 34.1 |
|  | $\begin{gathered} \text { 300~ } \\ 399 \text { 만원 } \end{gathered}$ | 655 | 4.9 | 52.7 | 34.5 | 2.5 | 5.3 | 57.6 | 37.1 |
|  | $\begin{gathered} \text { 400~ } \\ \text { 499만원 } \end{gathered}$ | 629 | 4.7 | 53.4 | 34.9 | 3.3 | 3.7 | 58.1 | 38.2 |
|  | 500만원 이상 | 853 | 7.3 | 56.3 | 30.5 | 3.3 | 2.7 | 63.5 | 33.8 |
| 주관적 <br> 계층 수준별 | 하층 | 1,352 | 4.8 | 52.1 | 33.0 | 3.9 | 6.3 | 56.9 | 36.9 |
|  | 중간층 | 1,527 | 6.5 | 55.2 | 31.3 | 3.1 | 3.9 | 61.7 | 34.4 |
|  | 상층 | 122 | 12.9 | 52.9 | 26.5 | 5.9 | 1.9 | 65.8 | 32.4 |

## 제 3 절 현행 법제와 법의식 변화

1. 사형제 폐지의 여부

문15.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과거 10 여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bigcirc \bigcirc$ 님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 하십니까?

| 결 | 과 | \％ |  |
| :---: | :---: | :---: | :---: |
|  | 한다 | 8.0 ר | 34.2 |
|  | 성하는 편이다 | 26.2 － |  |
|  | 대하는 편이다 | 37.7 ר | 65.2 |
|  | 한다 | 27.5 － |  |
|  |  | 0.6 |  |
|  |  | 100.0 |  |

## ［종합 분석］

사형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34.2 \%$ （매우 찬성한다［8．0\％］＋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26．2\％］）로 반대한다는 의견 $65.2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37．7\％］＋매우 반대한다［27．5\％］）보 다 $31.0 \%$ 낮게 나타났다．사형제 폐지와 관련 JTBC가 2012년 발표한 조사결과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2015년에 조사한 결과에서 각각 $69.6 \%$ 와 $63 \%$ 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8)}$

현행『형법』제 41 조는 9 개의 형벌（1）사형，（2）징역，（3）금고，（4）자 격상실，（5）자격정지，（6）벌금，（7）구류，（8）과료，（9）몰수）중에 사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대법원은 사형제도의 존치가 위헌은 아니라

128）JTBC가 2012．9．5에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전국 19 세 이상 성인 남녀 750 명을 대 상으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RDD 조사방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 $95 \%$ ，표본오차 ：$\pm 3.6 \% \mathrm{p}$ ）에 따르면，사형제도가 ‘폐지돼야한다＇는 응답은 $18.5 \%$ 에 불과한 반면，＇존속돼야한다＇는 응답은 $69.6 \%$ 로 나타나，응답자 10 명중 7 명이 사형 제도 존속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형제도가＇존속돼야한다＇는 의견은 2006년 9월 조사에서 $45.1 \%$ ，2008년 3월 조사에서 $57.0 \%, 2009$ 년 12월 조사에서 $66.7 \%$ 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해가 갈수록 사형제도 존속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realmeter．net／2012／09／\％EC\％82\％AC\％ED\％98\％95\％EC\％A0\％9C\％EB\％8F\％84－\％ EC\％A1\％B4\％EC $\% 86 \% 8 \mathrm{D} \% \mathrm{~EB} \% 8 \mathrm{~F} \% \mathrm{BC} \% \mathrm{EC} \% 95 \% \mathrm{BC}-69-6 / 2015$ 년 10월 30일 방문）． 한편，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2015．7．7．－7．9．에 만 19세 이상 남녀 1,100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조사 결과에서도 찬성（27\％），반대 $(63 \%)$ ，모름／응답거절（ $10 \%$ ）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연구소，『데일리 오피니언』제 170호，2015년 7월 2주，12면）．

는 입장이다．${ }^{129)}$ 2008년에도 광주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지만，헌법재판소는 역시 합헌 결정 을 하였다．${ }^{130)}$ 그러나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3 명의 보충의 견과 1 명의 일부위헌의견， 3 명의 위헌의견 등 다양하게 전개됨을 볼 수 있어서 1996년의 합헌판단에 비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1)}$
＜그림 33＞사형제 폐지의 여부


사형제 폐지여부에 대한 응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2008년 대 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9）헌법 제 12 조제 1 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 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1．2．26．［90도2906］）．
130）헌재 2010．2．25．［2008헌가23］
131）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 므로，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 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만 적용되는 한，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더라도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전합）1996．11．28．［95헌바1］）．
<그림 34> 사형제 폐지 여부의 시계열 변화132)

ㅁ찬성 ■반대


## [특성별 분석]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 대 에서 찬성비율이 $40.8 \%$ 로 가장 높았고, 60 대 이상에서는 $27.9 \%$ 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특성별 사형제 폐지의 여부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br> 찬성 <br> 하는 <br>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 <br> 하는 <br>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전 체 |  |  | 3,000 | 8.0 | 26.2 | 37.7 | 27.5 | 0.6 | 34.2 | 65.2 |
| 연령별 | 20대 | 529 | 10.0 | 30.9 | 33.5 | 25.5 | 0.2 | 40.8 | 59.0 |
|  | 30대 | 560 | 8.8 | 25.3 | 38.8 | 26.5 | 0.7 | 34.1 | 65.2 |
|  | 40대 | 644 | 10.0 | 29.3 | 37.9 | 22.4 | 0.4 | 39.3 | 60.3 |
|  | 50대 | 594 | 5.8 | 24.3 | 39.3 | 29.9 | 0.6 | 30.2 | 69.2 |
|  | 60대 이상 | 673 | 6.0 | 22.0 | 38.5 | 32.4 | 1.1 | 27.9 | 71.0 |

132)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62 면.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 \text { (명) } \end{gathered}$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찬성 하는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 <br> 하는 <br>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전 체 |  |  | 3,000 | 8.0 | 26.2 | 37.7 | 27.5 | 0.6 | 34.2 | 65.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5 | 21.8 | 34.1 | 37.0 | 1.6 | 27.3 | 71.1 |
|  | 고졸 | 1,196 | 7.8 | 24.4 | 39.0 | 28.4 | 0.4 | 32.2 | 67.4 |
|  | 대재 이상 | 1,409 | 9.0 | 28.9 | 37.6 | 24.0 | 0.5 | 37.9 | 61.6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683 | 9.5 | 30.1 | 35.8 | 24.2 | 0.4 | 39.6 | 60.0 |
|  | 중도 | 1,462 | 7.9 | 25.8 | 39.1 | 26.5 | 0.7 | 33.7 | 65.6 |
|  | 보수 | 855 | 7.1 | 23.7 | 36.9 | 31.7 | 0.6 | 30.8 | 68.6 |

2. 안락사 허용의 여부

문13. $\bigcirc \bigcirc \bigcirc$ 님은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 하십니까?

| 결 과 | \% | 75.9 |
| :---: | :---: | :---: |
|  | ........... |  |
| 매우 찬성한다 | 16.0 ᄀ |  |
|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 59.9 - |  |
|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 18.6 ᄀ | 22.3 |
| 매우 반대한다 | 3.7 ل |  |
| 모름/무응답 | 1.8 |  |
| 계 $(\mathrm{N}=3,000)$ | 100.0 |  |

## [종합 분석]

안락사(존엄사)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75.9 \%$ (매우 찬성한다[16.0\%]+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59.9\%])로 반대한 다는 의견 $22.3 \%$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18.6\%]+매우 반대한다 [3.7\%]) 보다 $53.6 \%$ 높게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2011.5.25. - 6.24.에 19 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존엄사 찬반에 대하여 조사한 결

과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72.3 \%$ (매우 찬성 $18.3 \%+$ 다소 찬성 $54 \%$ ) 로 나타났다. ${ }^{133)}$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존엄사) 논쟁이 시작된 것은 소위 "보라매병 원 사건"에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 등을 이유 로 환자의 아내가 퇴원을 거세게 요구하자 담당의사 2 명이 퇴원을 허 가한 후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몇 분 만에 사망함에 따라 담당의사 2 명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심 법원은 의사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2 심 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죄의 방조범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을 살인 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보아 환자의 아내가 주도적으로 환자 를 살해하였고 의사들은 환자 아내의 말을 따름으로써 그를 도운 것 으로 보았다. ${ }^{134)}$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무의
133) 보건복지부가 2011.5.25. - 6.24.에 19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존엄사 찬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 $95 \%$, 표본오차 : $\pm 3.1 \%$ )에 따르면, 매우 찬 성( $18.3 \%$ ), 다소 찬성(54\%), 다소 반대( $25.1 \%$ ), 매우 반대( $2.6 \%$ )로 나타났다(보건복 지부,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1, 124면). 이 조사에서 존엄사 찬성 이유(중복 응답)로 가족들의 고통(69.4\%), 고통만 주는 치료(65.8\%), 경제적인 부담 ( $60.2 \%$ ), 환자의 요구 $(45.2 \%)$ 로 나타났으며, 존엄사 반대 이유로 생명 존엄성 훼손 (54.5\%), 신의 영역(21.7\%), 남용 위험(18.4\%), 생명 경시 풍조 만연(5.4\%)로 나타났 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위원장이 2009.6.2.에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 국 성인 남녀 1,020 명을 대상으로 존엄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존엄사 찬성 이유로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43.8\%),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28.3 \%$ ),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 가능 $(25 \%)$ 순서로 나타났고, 존엄사 반대 이유로 자기결 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음(47.9\%), 생명경시 풍조 확산(14.3\%), 종교적 이유 (11.8\%), 남용될 여지가 큼(8.4\%)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9년 6월 3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1244015254\&code=14131301 205년 10월 30일 방문).
134)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 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

제 3 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미한 연명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섣불리 퇴원시킬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자칫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할머니’라고 불리는 연 명치료 중인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해 줄 것 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정말로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면 중단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제거행위는 응급의료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35) 이후 대법원 판결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136)}$

> <그림 35> 안락사 허용의 여부

135)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 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 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 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의식불명의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1)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 미하고, (2)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 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이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여 죽 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 따라서 생명의 연장을 원하 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법 2008.11.28. [2008가합6977]).
136) 대판(전합) 2009.5.21. [2009다17417]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찬성의견 이 2008년 대비 다소 낮아졌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6> 안락사 허용 여부의 시계열 변화137)

## - 찬성 반대



## [특성별 분석]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 록, 주관적 계층이 하층일수록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40 대에서 $80.2 \%$ 로 찬성의견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표 36> 특성별 안락사 허용 여부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 \text { (명) } \end{gathered}$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br> 찬성 <br> 하는 <br>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 <br> 하는 <br>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전 체 |  |  | 3,000 | 16.0 | 59.9 | 18.6 | 3.7 | 1.8 | 75.9 | 22.3 |
| 연령별 | 20 대 | 529 | 12.5 | 63.1 | 18.9 | 3.4 | 2.1 | 75.6 | 22.3 |
|  | 30 대 | 560 | 10.3 | 67.3 | 18.4 | 2.5 | 1.5 | 77.6 | 20.9 |

137)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59 면.

|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br> 찬성 <br> 하는 <br>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 <br> 하는 <br>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전 체 |  |  | 3,000 | 16.0 | 59.9 | 18.6 | 3.7 | 1.8 | 75.9 | 22.3 |
|  | 40대 | 644 | 19.2 | 61.1 | 15.5 | 3.2 | 1.1 | 80.2 | 18.6 |
|  | 50 대 | 594 | 16.4 | 56.2 | 20.4 | 4.6 | 2.3 | 72.6 | 25.1 |
|  | 60대 이상 | 673 | 20.4 | 53.4 | 19.7 | 4.5 | 2.0 | 73.8 | 24.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23.7 | 50.0 | 17.3 | 5.7 | 3.3 | 73.7 | 23.0 | 71.1 |
|  | 고졸 | 15.1 | 58.8 | 20.7 | 3.6 | 1.8 | 73.9 | 24.3 | 67.4 |
|  | 대재 이상 | 14.7 | 63.7 | 17.1 | 3.2 | 1.4 | 78.4 | 20.3 | 61.6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 층 | 1,352 | 17.9 | 59.9 | 16.9 | 3.7 | 1.6 | 77.8 | 20.6 |
|  | 중간층 | 1,527 | 14.7 | 60.4 | 19.8 | 3.3 | 1.7 | 75.1 | 23.1 |
|  | 상 층 | 122 | 12.3 | 53.4 | 22.0 | 7.3 | 5.1 | 65.7 | 29.3 |

3. 노사관계법의 준수 정도
(1) 설문 결과의 분석

문7. ○○님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잘 지켜지는 편이다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모름/무응답 $1.4-$
$40.3-41.7$

응
49.2 -
$3.8 」 53.0$
$\qquad$
계( $\mathrm{N}=3,000$ )
100.0
［종합 분석］
노사관계법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 견이 $41.7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1．4\％］＋잘 지켜지는 편이다［40．3\％］） 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 $53.0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49．2\％］＋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3．8\％］）보다 $11.3 \%$ 낮게 나타났다．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로는 먼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발전법）이 2010년 5월 25 일에 제정되었다．『노사관계발전법』 은＂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38）또한 『경제사회발전노 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원회법）도 있는데，이 법은 勞使政委員會의設置 및運營등에관한法律이란 명칭으로 1999．05．24．제정되었으며，2007．01．2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노사정위원회 법은＂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대통령의 자문에 응 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그 기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우리 사회에서도 평생직장，정년보장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흔들 리면서 ‘파견근로자’라는 것이 생겨났고，이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항 을 규율하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1998．02．20．

138）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로＂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 쟁력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바，노사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 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노사공동 참여 및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이에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 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노사 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정되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 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에는 노사관계에 있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통상임금에 대 한 것으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으며,139) 이 판결에 대하여 기업 측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조 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 상임금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140 \text { )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 많 }}$ 은 관심을 받았던 사건으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쌍용자동차가 2009년 시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 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141)
139) 갑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 로자에게는 전액을, 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 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 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 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통 상임금에 해당한다(대판(전합) 2013.12.18. [2012다89399]).
140)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하도록 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정기 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비교적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법관의 보 충적 해석을 통하여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4.8.28. [2013헌바 $172 \cdot 317$ (병합)]).
141)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갑 주식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을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 으로 갑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 건도 충족하였다(대판 2014.11.13. [2012다14517]).

## ＜그림 37＞노사관계법 준수 정도



노사관계법 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1994년 조사에서는 준수한다는 의견이 $60.1 \%$ 로 비준수한다는 의견 $39.9 \%$ 보다 높았지만，2008년 조사부터 비준수한다（64．0\％）는 의견이 준수한다 （35．9\％）는 의견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2015년 조사에서도 격차는 줄었지만 비준수한다（53．0\％）는 의견이 준수한다（ $41.7 \%$ ）는 의견보다 높 게 나타났다．${ }^{142)}$
＜그림 38＞노사관계법 준수 정도의 시계열 변화143）


[^12]
## (2) 설문 결과 이유의 분석

문7-1. (문7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 분석]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자 $(\mathrm{N}=1,590)$ 를 대상으로 누구 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사업주가 $55.0 \%$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 $35.3 \%$ ), 근로자 $(5.2 \%)$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2008년부터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응답을 삭제한 후부터 사업주( $60.8 \%$ 에서 $55.0 \%$ 로 낮아졌다)와 정부( $27.1 \%$ 에서 $35.3 \%$ 로 높아졌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그림 39> 노사관계법 미준수의 책임


노사관계법 미준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시계 열적으로 살펴보면，2008년 조사부터 사업주나 정부라는 응답율이 크 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37＞노사관계법 미준수 책임의 시계열 변화144）

|  | 1991년 | 1994년 | 2008년 | 2015년 |
| :---: | :---: | :---: | :---: | :---: |
| 사업주 | $27.1 \%$ | $24.3 \%$ | $60.8 \%$ | $55.0 \%$ |
| 근로자 | $2.5 \%$ | $2.5 \%$ | $11.0 \%$ | $5.2 \%$ |
| 정부 | $11.8 \%$ | $16.1 \%$ | $27.1 \%$ | $35.3 \%$ |
| 모두에게 책임 | $52.0 \%$ | $57.1 \%$ | - | - |
| 기타 | $6.6 \%$ | - | $0.2 \%$ | $3.3 \%$ |
| 모름／무응답 | - | - | $0.1 \%$ | $1.2 \%$ |

## ［특성별 분석］

노사관계법 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노사관계 법이＇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은 40 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50 대 이상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직업별로 보면 학생（66．0\％），화이트칼라 （60．2\％）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38＞특성별 노사관계법의 준수 정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잘 <br> 지켜 <br> 지고 <br> 있다 | 잘 지켜 <br> 지는 <br> 편이다 | 잘 지켜 <br> 지지 <br> 않는 <br> 편이다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지켜 } \\ \text { 지고 있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짐 } \end{gathered}$ |  |  |  |  |  | 잘 지켜 지지 <br> 않음 |
|  | 전 체 |  | 3，000 | 1.4 | 40.3 | 49.2 | 3.8 | 5.3 | 41.7 | 53.0 |
| 연령별 | 20 대 | 529 | 1.2 | 33.3 | 55.5 | 6.1 | 3.9 | 34.5 | 61.6 |
|  | 30 대 | 560 | 1.1 | 36.8 | 54.7 | 5.3 | 2.1 | 37.9 | 60.0 |

144）박상철외 2 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112면；이세정•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290면；박상철외 2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143면．

제 3 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 구 분(단위:\%) |  | 응답자 수 <br> (명) | 매우 잘 지켜 지고 있다 | 잘 지켜 <br> 지는 <br> 편이다 | 잘 지켜 <br> 지지 <br> 않는 <br> 편이다 | 전혀 <br> 지켜 <br> 지고 있지 않다 | $\begin{array}{\|l\|l} \text { 모름/ } \\ \text { 무응답 } \end{array}$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잘 지켜짐 |  |  |  |  |  | $\begin{aligned} & \text { 잘 지켜 } \\ & \text { 지지 } \\ & \text { 않음 } \end{aligned}$ |
|  | 전 체 |  | 3,000 | 1.4 | 40.3 | 49.2 | 3.8 | 5.3 | 41.7 | 53.0 |
|  | 40대 | 644 | 1.3 | 38.2 | 54.8 | 3.8 | 1.9 | 39.5 | 58.6 |
|  | 50 대 | 594 | 1.9 | 45.7 | 44.7 | 2.5 | 5.1 | 47.6 | 47.2 |
|  | 60대 이상 | 673 | 1.4 | 45.9 | 38.1 | 2.2 | 12.5 | 47.3 | 40.3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2.2 | 51.2 | 36.6 | 4.4 | 5.7 | 53.4 | 41.0 |
|  | 자영업 | 666 | 1.2 | 42.4 | 45.6 | 2.7 | 8.1 | 43.6 | 48.3 |
|  | 블루칼라 | 588 | 2.4 | 44.3 | 46.0 | 3.1 | 4.2 | 46.7 | 49.1 |
|  | 화이트칼라 | 733 | 0.5 | 37.9 | 54.6 | 5.6 | 1.3 | 38.4 | 60.2 |
|  | 전업주부 | 563 | 1.5 | 41.9 | 47.0 | 2.1 | 7.5 | 43.4 | 49.1 |
|  | 학생 | 185 | 1.7 | 27.3 | 60.4 | 5.6 | 5.0 | 29.0 | 66.0 |
|  | 무직/기타 | 132 | 0.8 | 25.5 | 57.1 | 7.5 | 9.1 | 26.3 | 64.6 |

노사관계법 준수 정도와 비정규직법 성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노 사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비정규직법의 성과가 없 다고 한 비율( $71.4 \%$ )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9> 노사관계법 준수 정도와 비정규직법 성과

| 비정규직법 성과 | 성과있음 | 성과없음 | 모름/무응답 |
| :---: | :---: | :---: | :---: |
| 노사관계법 준수 |  |  |  |

[특성별 분석]
노사관계법 미준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 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이념성향이 진 보적일수록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40> 특성별 노사관계법 미준수 책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사업주 | 정 부 | 근로자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55.0 | 35.3 | 5.2 | 3.3 | 1.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59 | 57.8 | 23.6 | 13.4 | 1.8 | 3.4 |
|  | 고졸 | 598 | 60.6 | 31.0 | 5.1 | 2.4 | 0.9 |
|  | 대재 이상 | 834 | 50.4 | 40.6 | 3.7 | 4.3 | 1.0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713 | 57.4 | 32.4 | 5.3 | 3.9 | 0.9 |
|  | 중소도시 | 495 | 56.3 | 35.4 | 3.4 | 3.0 | 1.8 |
|  | 읍면지역 | 382 | 48.8 | 40.6 | 7.2 | 2.6 | 0.9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353 | 52.9 | 39.1 | 3.4 | 3.4 | 1.2 |
|  | 중도 | 848 | 54.3 | 37.1 | 4.2 | 3.4 | 1.1 |
|  | 보수 | 389 | 58.5 | 27.9 | 9.1 | 3.1 | 1.4 |

4.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의 정도

문8. $\bigcirc \bigcirc$ 님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 :---: |
|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71.9 |
| 현행 법령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 24.1 |
|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3.5 |
| 기타 | 0.1 |
| 모름/무응답 | 0.3 |
| 계 ( $\mathrm{N}=3,000$ ) | 100.0 |

## ［종합 분석］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필요한 규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1.9 \%$ 로 가장 높았 고，＇현행 법령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24.1 \%$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5\％）순으로 나타났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이 2013．9．－11．에 광역시 • 도 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녹 색경영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녹색 경영 수준（환경오염 방지 노력 등）이 낮아진 결과를 알 수 있다．145）

환경오염에 대한 법률은 우선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 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 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기업이 저

145）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3．9．－11．에 광역시－도 500개 제조업체（49인 이하 ：
$254,50-299$ 인 이하 ： 165,300 인 이상 ：81）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와 팩스•이 메일 • 전화 • 우편조사 병행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 하였다（이창훈•한상운•한미진•박시원•안윤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녹색 경영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3．38－39면）．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지르는 환경범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도 있다. ${ }^{146)}$ 그 밖에 환경 오염에 관한 법률들은 환경오염행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부분 직접행위자와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 는데, 해당 법규정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기만 하면 법인의 책임여 부를 따져보지 않고 언제나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 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된 사례가 여러 건147)이 있었다.
<그림 40> 환경오염 기업 규제의 정도


[^13]
## [특성별 분석]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필요한 규제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40 대 이하의 젊 은 연령층이 50 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력수준이 높 을수록, 직업별로는 학생(80.4\%), 화이트칼라(79.7\%)순으로 높게 조사 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 \%$ 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특성별 환경오염 기업의 규제 정도

| 구 분 <br> (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현행 법령 <br> 수준의 <br> 규제를 <br> 유지해야 <br> 한다 |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3,000 | 71.9 | 24.1 | 3.5 | 0.1 | 0.3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8.4 | 36.7 | 4.5 | 0.0 | 0.5 |
|  | 고졸 | (1196) | 70.8 | 25.9 | 2.9 | 0.0 | 0.5 |
|  | 대재 이상 | (1409) | 76.6 | 19.2 | 3.8 | 0.2 | 0.2 |
| 연령별 | 20대 | 529 | 73.6 | 21.2 | 4.6 | 0.0 | 0.7 |
|  | 30대 | 560 | 78.9 | 16.6 | 4.0 | 0.2 | 0.2 |
|  | 40대 | 644 | 76.7 | 19.8 | 3.2 | 0.3 | 0.0 |
|  | 50 대 | 594 | 67.1 | 29.4 | 3.1 | 0.1 | 0.4 |
|  | 60 대 이상 | 673 | 64.4 | 32.2 | 3.0 | 0.0 | 0.5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58.9 | 32.3 | 8.1 | 0.0 | 0.7 |
|  | 자영업 | 666 | 68.0 | 28.0 | 3.3 | 0.1 | 0.7 |
|  | 블루칼라 | 588 | 68.8 | 26.8 | 4.3 | 0.0 | 0.2 |
|  | 화이트칼라 | 733 | 79.7 | 16.8 | 2.8 | 0.4 | 0.3 |
|  | 전업주부 | 563 | 68.7 | 28.0 | 3.1 | 0.0 | 0.2 |
|  | 학생 | 185 | 80.4 | 17.0 | 2.6 | 0.0 | 0.0 |
|  | 무직/기타 | 132 | 77.2 | 19.0 | 3.8 | 0.0 | 0.0 |


| 구 분 <br> (단위:\%) | 응답자 <br> 수 <br> (명) | 현행 <br> 법령보다 <br> 규제를 <br> 강화해야 <br> 한다 | 현행 법령 <br> 수준의 <br> 규제를 <br> 유지해야 <br> 한다 | 현행 <br> 법령보다 <br> 규제를 <br> 완화해야 <br> 한다 |  |  |
| :---: | :---: | :---: | :---: | :---: | :---: | :---: |
| 전 체 | $\mathbf{3 , 0 0 0}$ | $\mathbf{7 1 . 9}$ | $\mathbf{2 4 . 1}$ | $\mathbf{3 . 5}$ | $\mathbf{0 . 1}$ | 기 타 | | 0.3 모름/ |
| :---: |
| 무응답 |

5. 비정규직 보호의 성과

문20. 2007년에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님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37.4 |
| :---: | :---: | :---: |
| 매우 성과가 있다 | 2.1 ᄀ |  |
| 대체로 성과가 있다 | 35.3 - |  |
| 별로 성과가 없다 | 49.3 ᄀ | 60.7 |
| 전혀 성과가 없다 | 11.4 - |  |
| 모름/무응답 | 1.9 |  |
| 계( $\mathrm{N}=3,000$ ) | 100.0 |  |

[종합 분석]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성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60.7 \%$ (별로 성과가 없다[49.3\%]+전혀 성과가 없다[11.4\%])로 성과가 있다는 의견 $37.4 \%$ (매우 성과가 있다[2.1\%]+대체로 성과가 있다[35.3\%])보다 $23.3 \%$

높게 나타나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고용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이 점 점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2006.12.21.에 제정되 었으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림 41> 비정규직보호법 성과

[특성별 분석]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성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성과가 없다는 의 견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0 대 이상에서 '성과가 있다'는 의견이 $43.3 \%$ 로 가장 높았으며, 30 대에서 $31.9 \%$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 별로 보면, ‘성과가 있다'는 의견에 농/수/축산업이 $42.7 \%$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과가 없다'는 의견에 무직/기타(69.2\%), 학생(66.4\%), 화이 트칼라(65.6\%)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특성별 비정규직보호법의 성과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매우 <br> 성과가 <br> 있다 | 대체로 <br> 성과가 <br> 있다 | 별로 <br> 성과가 <br> 없다 | 전혀 <br> 성과가 <br> 없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br> 있음 |  |  |  |  |  | 성과 <br> 없음 |
|  | 전 체 |  | 3,000 | 2.1 | 35.3 | 49.3 | 11.4 | 1.9 | 37.4 | 60.7 |
| 연령별 | 20대 | 529 | 2.4 | 31.0 | 49.5 | 16.8 | . 4 | 33.4 | 66.3 |
|  | 30 대 | 560 | 2.0 | 29.8 | 52.4 | 14.4 | 1.3 | 31.9 | 66.9 |
|  | 40대 | 644 | 2.0 | 35.4 | 50.5 | 11.3 | . 9 | 37.4 | 61.8 |
|  | 50대 | 594 | 2.7 | 36.9 | 49.2 | 9.7 | 1.7 | 39.5 | 58.8 |
|  | 60대 이상 | 673 | 1.7 | 41.6 | 45.6 | 6.1 | 4.9 | 43.3 | 51.7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1.2 | 45.7 | 40.0 | 7.9 | 5.3 | 46.9 | 47.9 |
|  | 고졸 | 1,196 | 2.8 | 34.8 | 50.1 | 9.8 | 2.5 | 37.6 | 59.9 |
|  | 대재 이상 | 1,409 | 1.9 | 32.7 | 51.3 | 13.7 | 0.5 | 34.6 | 65.0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2.1 | 40.6 | 46.8 | 8.4 | 2.1 | 42.7 | 55.2 |
|  | 자영업 | 666 | 2.0 | 37.9 | 47.5 | 9.6 | 2.9 | 39.9 | 57.1 |
|  | 블루칼라 | 588 | 2.5 | 36.6 | 49.6 | 9.8 | 1.5 | 39.1 | 59.4 |
|  | 화이트칼라 | 733 | 2.0 | 32.0 | 50.5 | 15.1 | 0.4 | 34.0 | 65.6 |
|  | 전업주부 | 563 | 2.0 | 37.4 | 49.9 | 7.2 | 3.5 | 39.4 | 57.1 |
|  | 학생 | 185 | 3.0 | 30.0 | 49.9 | 16.5 | 0.5 | 33.0 | 66.4 |
|  | 무직/기타 | 132 | 1.5 | 27.0 | 49.7 | 19.5 | 2.3 | 28.5 | 69.2 |

6. 간통죄의 찬반 여부

문16. 2015 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bigcirc \bigcirc \bigcirc$ 님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결 과 | \％ | 33.3 |
| :---: | :---: | :---: |
| 매우 찬성한다 | 5.6 ᄀ |  |
|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 لـ |  |
|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 38.6 ᄀ | 65.6 |
| 매우 반대한다 | － 27.0 |  |
| 모름／무응답 | 1.1 |  |
| 계（ $\mathrm{N}=3,000$ ） | 100.0 |  |

## ［종합 분석］

간통죄 폐지의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65.6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38．6\％］＋매우 반대한다［27．0\％］）로 찬성 한다는 의견 $33.3 \%$（매우 찬성한다［5．6\％］＋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27．7\％］）보다 $32.3 \%$ 높게 나타나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 은 것을 볼 수 있다．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2015년 국민일보의 조사결과 및 2015년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 도 간통죄 폐지에 관하여 각각 $60 \%$ ，약 $70 \%$（여성 $80.8 \%$ ，남성 $57.8 \%$ ） 및 $53 \%$ 로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8)}$

『형법』은 제 241 조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은 형벌로 처벌한다（『형법』제241조

148）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6．24．－6．27．에 전국 19 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 로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찬성（18．5\％），없어져야 하나 아직 이 르다（ $21.2 \%$ ），반대（ $60 \%$ ）로 나타났다（박선영 • 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간통 죄에 대한 심층분석』，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56 면 참조）．국민일보가 간통죄 폐지 에 관하여 2015．2．25．에 전국 성인 남녀 1,000 명（20대부터 60 대까지 연령 별로 200 명 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신뢰수준 ： $95 \%$ ，표본오차 ：$\pm 3.10 \% \mathrm{p}$ ），여성 $80.8 \%$ ，남성 $57.8 \%$ 가 간통죄 유지를 지지했다고 조사됐다（『［간통죄 폐지－국민일보 1000 명 모바일 설문조사］여론은 달랐다．．．70\％가＂간통죄 유지돼야＂』，국민일보，2015년 2월 27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75229\＆code＝11131100 방문）．한국갤 럽 조사연구소도 간통죄 폐지에 관하여 2015．3．3．－3．5．에 전국 성인 1,003 명을 대 상으로 휴대전화 RRD 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찬성（34\％），반대（53\％）， 모름／응답거절（13\％）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연구소，『데일리 오피니언』 제152호， 2015년 3월 1주，10면）．

제1항). 이 경우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되, 배 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형법』 제 241조제2항).

헌법재판소는 2008년까지 위헌의견이 4 인, 헌법불합치의견이 1 인이 어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합헌결정 을 한 사례149)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에 배우자 있 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 241 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150 )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커
149)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 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 및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 한으로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 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 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8.10.30. [2007헌가17]).
150)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 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 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 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 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 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 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 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 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 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의 처분취소소송 등도 이어지고 있다.151) 다만, 2015년 대 법원의 판례는 간통죄의 폐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구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 중 7 명의 유책주의 입장( 6 명 파탄주의 입장) 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하여 아직 한국 사회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았다.152)

## <그림 42> 간통제 폐지의 찬반



에 위반된다(헌재 2015.2.26. [2009헌바17]).
151) 헌재 2015.4.30. [2013헌마873]
152) 민법 제 840 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 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 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 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 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 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 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 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 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전합) 2014.11.20. [2011므2997]).

## [특성별 분석]

간통제 폐지의 찬반의견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간통제 폐지를 찬성 하는 의견에 대하여 남성(44.5\%)이 여성(22.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 고, 연령별로는 40 대에서 $42.3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 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 수준이 상층일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 수록 간통제 폐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특성별 간통제 폐지의 찬반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찬성 하는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 <br> 하는 <br>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전 체 |  |  | 3,000 | 5.6 | 27.7 | 38.6 | 27.0 | 1.1 | 33.3 | 65.6 |
| 연령별 | 20대 | 529 | 6.0 | 29.1 | 39.5 | 23.6 | 1.9 | 35.0 | 63.0 |
|  | 30 대 | 560 | 4.2 | 28.5 | 38.0 | 28.5 | . 8 | 32.7 | 66.5 |
|  | 40대 | 644 | 9.7 | 32.6 | 34.6 | 22.8 | . 4 | 42.3 | 57.4 |
|  | 50대 | 594 | 3.4 | 29.4 | 40.0 | 26.4 | . 9 | 32.8 | 66.3 |
|  | 60 대 <br> 이상 | 673 | 4.3 | 19.7 | 41.2 | 33.0 | 1.8 | 24.0 | 74.2 |
| 성별 | 남자 | 1,489 | 8.1 | 36.4 | 35.7 | 18.7 | 1.1 | 44.5 | 54.4 |
|  | 여자 | 1,511 | 3.1 | 19.1 | 41.5 | 35.2 | 1.2 | 22.2 | 76.7 |
| 학력별 | 중졸 <br> 이하 | 395 | 5.4 | 20.0 | 36.5 | 36.2 | 1.9 | 25.4 | 72.7 |
|  | 고졸 | 1,196 | 4.1 | 25.8 | 41.4 | 27.0 | 1.6 | 29.9 | 68.4 |
|  | 대재 이상 | 1,409 | 6.9 | 31.4 | 36.8 | 24.4 | 0.5 | 38.3 | 61.2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5.5 | 24.1 | 41.5 | 27.6 | 1.2 | 29.6 | 69.1 |
|  | 중간층 | 1,527 | 5.5 | 30.5 | 36.5 | 26.4 | 1.1 | 36.0 | 62.9 |
|  | 상층 | 122 | 7.6 | 31.4 | 33.5 | 27.5 | 0.0 | 39.0 | 61.0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br> 찬성 <br> 하는 <br>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 <br> 하는 <br>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전 체 |  |  | 3,000 | 5.6 | 27.7 | 38.6 | 27.0 | 1.1 | 33.3 | 65.6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7.5 | 32.8 | 35.9 | 22.5 | 1.2 | 40.3 | 58.4 |
|  | 중도 | 1,462 | 5.3 | 27.2 | 39.2 | 27.2 | 1.1 | 32.5 | 66.4 |
|  | 보수 | 855 | 4.6 | 24.3 | 39.8 | 30.2 | 1.1 | 28.9 | 70.0 |

7. 성매매종사자 처벌의 여부

문17. 최근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bigcirc \bigcirc$ 님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결 과 | \% | 59.5 |
| :---: | :---: | :---: |
|  | 19.9 |  |
| 매우 찬성한다 | $\text { ᄀ } 19.9$ |  |
|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 $39.6{ }^{\text {- }}$ |  |
|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 30.7 ᄀ | 38.4 |
| 매우 반대한다 | 7.7 ل |  |
| 모름/무응답 | 2.2 |  |
| 계 $(\mathrm{N}=3,000)$ | 100.0 |  |

[종합 분석]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 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59.5 \%$ (매우 찬성한다[19.9\%]+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39.6\%])로 반대한다는 의견 $38.4 \%$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30.7\%]+매우 반대한다[7.7\%])보다 $21.1 \%$ 높게 나타나서 성매매종사자 처벌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 한국갤럽 조

사연구소가＇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도 조사대상자의 $61 \%$ 가 성매매처벌에 대하여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53)}$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를 한 양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성 매매처벌법）제 21 조제 1 항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 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되었으며，현재 이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귀추가 주목된다．154）이 사건은 서울북부 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사건이다．155）

153）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2015．3．31．－ 4．2．에 1,1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금지해야 한다（ $61 \%$ ），그럴 일이 아니다 $(33 \%)$ ，모름／응답거절（ $6 \%$ ）로 나타났으며，이 조사결과에서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방치하면 무분별해짐／성 문란／사회 혼란（ $26 \%$ ），옳지 않은 일／ 법적 기준 필요（ $19 \%$ ），미성년자 보호／가출 청소년 위험（ $12 \%$ ），강력한 처벌／공권력 필요（8\％）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연구소，『데일리 오피니언』 제156호，2015년 4월 1 주， 13 면）．
15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제 1 항에 대한 위헌제청에 관하 여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있는 사건（2013헌가2）의 변론보 도자료（2015．4．9）를 참조．
155）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결정문에서는＂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수 수하기는 하나，성교 행위 등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 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행위가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 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단속 적으로 이뤄져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국가의 법집행으로부터 보호해 줄 세력，예컨대 포주나 폭력조직 등에 의존하게 한다＂며＂결국 성매매 여성에 대 한 형사처벌은 성 착취 환경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등을 이유로 밝혔 다（법률신문 2013．01．09．보도자료）．

제 3 장 최근 법제도의 변화와 국민법의식
<그림 43> 성매매처벌의 찬반

[특성별 분석]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6.5 \%$ )이 남성( $52.4 \%$ )보다 처벌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 대(65.0\%)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 수준이 상층일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처벌을 찬성한다는 비율 이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직업별로는 자영업(57.6\%), 블루칼라(59.8\%), 화이트칼라( $53.7 \%$ )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찬성응답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 경제활동세대인 30 대 와 40 대에서 찬성의견이 각각 $56.6 \%$ 와 $52.0 \%$ 로 낮게 나타났다.
<표 44> 특성별 성매매처벌 찬반

|  | 구 분 <br> (단위:\%)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br> 찬성 <br> 하는 <br>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 <br> 하는 <br>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모름/ <br> 무응답 | 종 한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  |  |  | 반 대

제 3 절 현행 법제와 법의식 변화

| 구 분 <br> (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찬성 <br> 한다 | 대체로 <br> 찬성 <br> 하는 <br> 편이다 | 대체로 <br> 반대 <br> 하는 <br> 편이다 | 매우 <br> 반대 <br> 한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 전 체 |  | 3,000 | 19.9 | 39.6 | 30.7 | 7.7 | 2.2 | 59.5 | 38.4 |
|  | 40대 | 644 | 16.1 | 35.9 | 37.6 | 9.2 | 1.2 | 52.0 | 46.8 |
|  | 50대 | 594 | 18.7 | 41.6 | 29.2 | 7.7 | 2.8 | 60.4 | 36.8 |
|  | 60대 이상 | 673 | 21.1 | 43.0 | 25.0 | 7.3 | 3.7 | 64.0 | 32.2 |
| 성별 | 남 자 | 1,489 | 14.3 | 38.1 | 35.6 | 9.7 | 2.4 | 52.4 | 45.3 |
|  | 여 자 | 1,511 | 25.4 | 41.1 | 25.8 | 5.7 | 1.9 | 66.5 | 31.5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22.6 | 46.5 | 20.4 | 5.8 | 4.7 | 69.1 | 26.2 |
|  | 고졸 | 1,196 | 19.2 | 40.7 | 30.5 | 7.4 | 2.1 | 59.9 | 37.9 |
|  | 대재 이상 | 1,409 | 19.7 | 36.7 | 33.6 | 8.4 | 1.5 | 56.4 | 42.0 |
| 직업별 | 농/수산/축산업 | (133) | 24.9 | 47.3 | 20.8 | 4.3 | 2.6 | 72.3 | 25.2 |
|  | 자영업 | (666) | 17.0 | 40.5 | 30.1 | 9.1 | 3.2 | 57.6 | 39.2 |
|  | 블루칼라 | (588) | 15.9 | 43.9 | 31.2 | 6.8 | 2.2 | 59.8 | 38.1 |
|  | 화이트칼라 | (733) | 19.3 | 34.3 | 36.1 | 9.0 | 1.3 | 53.7 | 45.1 |
|  | 전업주부 | (563) | 24.7 | 39.8 | 26.9 | 6.8 | 1.8 | 64.5 | 33.7 |
|  | 학생 | (185) | 24.3 | 39.9 | 27.5 | 6.2 | 2.1 | 64.1 | 33.7 |
|  | 무직/기타 | (132) | 24.1 | 36.1 | 31.4 | 5.1 | 3.2 | 60.3 | 36.5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20.2 | 38.7 | 31.3 | 7.6 | 2.2 | 58.9 | 38.9 |
|  | 중간층 | 1,527 | 19.8 | 40.0 | 30.3 | 7.7 | 2.2 | 59.8 | 38.0 |
|  | 상층 | 122 | 18.7 | 44.1 | 28.3 | 7.9 | 1.0 | 62.8 | 36.2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683 | 19.7 | 38.3 | 33.2 | 7.2 | 1.6 | 58.0 | 40.4 |
|  | 중도 | 1,462 | 20.4 | 38.2 | 30.7 | 8.3 | 2.4 | 58.6 | 39.0 |
|  | 보수 | 855 | 19.2 | 43.0 | 28.6 | 6.9 | 2.2 | 62.2 | 35.5 |

## 8. 김영란법 도입의 성과


[종합 분석]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과가 있다는 의견이 $55.7 \%$ (매우 성과가 있을 것이다[8.7\%]+대체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47.0\%])로 성과가 없다 는 의견 $40.7 \%$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33.7\%]+전혀 성과가 없을 것 이다[7.0\%])보다 $15 \%$ 높게 나타나서 '김영란법 도입'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JTBC의뢰로 리얼미 터가 2015년에 조사한 결과에서도 긍정의견이 $64.0 \%$ 로 나타났다. ${ }^{156 \text { ) }}$
156) JTBC의뢰로 리얼미터가 2015.3.3.에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휴 대전화 $(50 \%)$ 유성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 명 중 6명은 '김영란법' 통 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했다’라는 긍정의견이 $64.0 \%$ 이고, '잘못했다' 라는 부정의견이 $7.3 \%$ 로 조사되었다
(http://www.realmeter.net/2015/03/\�\�\�\�\�\�-64-\�\�\�\�\%9 8\%81\%EB\%9E\%80\%EB\%B2\%95-\%EA\%B5\%AD\%ED\%9A\%8C-\%ED\%86\%B5\%EA\%B3 \%BC- $\% \mathrm{EC} \% 9 \mathrm{E} \% 98 \% \mathrm{ED} \% 95 \% 9 \mathrm{C}-\% \mathrm{EA} \% \mathrm{~B} 2 \% \mathrm{~B} 0 \% \mathrm{EC} \% \mathrm{~A} 0 \% 95 / 2015$ 년 10월 30일 방문).

여기서＇김영란법’이란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5．3．27．제정）을 말한다．이 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총24개조，부칙 3 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 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7)}$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을 금지（제 5 조부터 제 7 조까지，제 22 조제 2 항 및 제 23 조제 1 항부터 제 3 항 까지）하고 있는데，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 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3 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둘째，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14](제 8 조, 제 22 조제 1 항 및 제 23 조제 5 항)하고 있는데, 공직자등이 직무 관 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 은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 회에 100 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 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제 13 조부터 제 15 조까 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 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44> 김영란법 도입 성과의 예상


## [특성별 분석]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을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에서 $60.7 \%$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 (57.9\%), 전업주부(56.0\%), 블루칼라(53.9\%)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특성별 김영란법 도입의 성과 예상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매우 <br> 성과가 <br> 있다 | 대체로 <br> 성과가 <br> 있다 | 별로 <br> 성과가 <br> 없다 | 전혀 <br> 성과가 <br> 없다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br> 있음 |  |  |  |  |  | 성과 <br> 없음 |
|  | 전 체 |  | 3,000 | 8.7 | 47.0 | 33.7 | 7.0 | 3.6 | 55.7 | 40.7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4.3 | 43.8 | 35.7 | 6.1 | 10.2 | 48.1 | 41.8 |
|  | 고졸 | 1,196 | 8.5 | 47.4 | 33.3 | 6.7 | 4.1 | 55.9 | 40.0 |
|  | 대재 이상 | 1,409 | 10.2 | 47.5 | 33.5 | 7.5 | 1.3 | 57.7 | 41.0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3.6 | 47.1 | 38.8 | 5.6 | 4.9 | 50.7 | 44.4 |
|  | 자영업 | 666 | 6.9 | 45.3 | 34.2 | 9.1 | 4.4 | 52.2 | 43.3 |
|  | 블루칼라 | 588 | 8.5 | 45.4 | 35.6 | 6.2 | 4.2 | 53.9 | 41.8 |
|  | 화이트칼라 | 733 | 11.5 | 49.2 | 31.7 | 6.4 | 1.2 | 60.7 | 38.1 |
|  | 전업주부 | 563 | 8.1 | 47.9 | 31.7 | 6.8 | 5.4 | 56.0 | 38.5 |
|  | 학생 | 185 | 9.6 | 48.3 | 36.0 | 4.6 | 1.5 | 57.9 | 40.6 |
|  | 무직/기타 | 132 | 9.4 | 44.3 | 34.7 | 8.3 | 3.4 | 53.7 | 43.0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9.7 | 48.2 | 32.5 | 6.7 | 2.9 | 57.9 | 39.2 |
|  | 중소도시 | 918 | 8.4 | 46.8 | 32.9 | 7.8 | 4.0 | 55.2 | 40.7 |
|  | 읍면지역 | 710 | 7.2 | 44.8 | 37.3 | 6.4 | 4.3 | 52.0 | 43.7 |

##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 제 1 절 지표 개발 배경 및 과정

## 1.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배경

기존에 수행된 국민법의식 조사는 우리 사회의 국민법의식에 대한 인식과 변화 양상 결과를 통해 법의식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 선 진 법치국가 실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수행되어 왔다.
<그림 45> 법의식 실태조사 추진 목적


2015년도 과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 이전 자료들을 검토한 결 과, 국민의 법의식과 관련된 결과분석은 개별 문항에 대한 단일문항 분석으로, 현재 우리 국민의 법의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간결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연구진들의 공감 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법의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민법의식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민법의식 지표는 국민 개개인의 자

질이나 인식 역량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오히려 국민이 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서와 의식을 평가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입법정책 수 립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 되었다．

따라서，새롭게 도입한 국민법의식 지표는 우리 국민의 법의식 수준 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과정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을 위한 절차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 석을 토대로 법의식지표 항목을 차원별로 나누어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음＜그림 46＞은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절차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6＞2015년 국민법의식조사 ‘법의식지표＇개발 과정


위와 같은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과정에서는 국민법의식 종합 지수 를 도출하는 동시에 차원별 구성을 시도하였다．

먼저 초기단계의 차원 개발에서는 선행연구인『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및『성인법의식 지표개발 연구』와『Rule of Law Index』를 참고하여 차원을 구성하였다．이처럼 차원별로 세부항목을 구성한 것

은 차원간 비교와 세부항목 간 비교를 각각 수행함으로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식의 범위를 넓게 보아 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 및 정서, 그리고 법의 실효성 보장 차원을 포함하는 차원으로 개발하였으며, 법치주의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대한 준수와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차원을 개발함으로써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설문을 6개 차원으로 나누어 법에 대한 관심, 법 에 대한 인식/정서, 법에 대한 준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의 실 효성 보장, 법의 제정/집행으로 구성하였다.
(1) 선행연구 검토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을 위해 법의식 지표 개발과 관련된 아래의 선행연구 내용과 방식을 고찰•분석하여 법의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그림 47> 선행연구 검토

##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을 위해

기존 유사연구 검토


## 

$$
\begin{aligned}
& \text { 조차치기: 2008츈 } \\
& \checkmark \text { 연지/열반요소/정서 } \\
& \text { /형동 간령 } 477 \text { 차염 } \\
& 36 \text { 개 항옥 }
\end{aligned}
$$

Rulb of Lew Index
조차지기 : 2014뀬
$\checkmark$ 시흉기함: World Justice Project
9개 차연, 46개 영오
<그림 48> 법의식지표 개발 선행연구의 구성 및 내용


1) 청소년법의식 지표개발연구

국내 법의식 관련 지표개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3월 부터 11월까지 법무부의 지원으로 김해성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 ‘청 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 정책 개선 방향성 설정을 그 기대효과로 들고 있다. 즉, 법의식 영 역을 6개로 나누어 청소년에 대한 법의식 영역별 지표를 조사함으로 써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158)

해당 연구에서는 법의식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되 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는 법적 지식, 법에 대한 인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법적 추론 단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서적 영역에는 법적 동일시감, 친근감, 신뢰감, 위법행위 중 158) 김해성,『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법무부, 2007.11., 3-4면 참조.

화기제159), 법위반에 우호적 태도 등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 한 법적 효능감, 법 사용의사, 법적 관용성 등은 법의식의 행동적 요 소들로 볼 수 있다. ${ }^{160)}$ 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의 법의식 지표 개발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49>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과정161)

| 선행 연구 검토 |  | 문항 개발 |  | 법의식 <br> 검사 |  | 문항 선정 및 수정 |  | 최종 문항 확정 |
| :---: | :---: | :---: | :---: | :---: | :---: | :---: | :---: | :---: |
| 법의식 요소 선정 | $\rightarrow$ | 문항개발 및 논리 서술 | $\rightarrow$ | 시험 <br> 집단을 <br> 대상으로 <br> 조사 | $\rightarrow$ | 조사 내용을 <br> 바탕으로 <br> 문항수정 | $\rightarrow$ | 최종 문항 확정 |

이번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과 정을 참고하여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국민법의식 지 표에도 청소년 법의식 지표에서의 인지영역과 정서영역에 관한 사항 을 일부 수용하였다.
2) 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2008년 법무부 지원으로 김해성 교수팀이 조사한 '성인 법의식 지 표 개발 연구,에서는 준법행동 예측지표를 중심으로 한 지표 개발과 함께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59)『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위법행위 중화기제에 대하여 '자신의 위법행위나 타인의 위범행위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 는 위법행위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중화시켜주는 기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총칭하여 '위법행위 중화기제'라고 볼 수 있다.'(김해성, 앞의 보 고서, 34 면)라고 설명하고 있다.
160) 김해성, 위의 보고서, 23 면.
161) 김해성, 위의 보고서, 6 면 <그림 $1>$ 을 인용.

동 연구에서는 '준법 행동'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조사대상자 중 절반인 500 명은 교도소에 수감 중 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인 법의식 지표 설문은 2007년 수행된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항목에서 법지식 및 법 신뢰도, 법흥미, 법 사 용의사, 법 효능감 등을 많은 부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준법 의식 유형이나 자아 존중감, 주변인에 대한 신뢰 등을 추가함으로써 성인에 적합한 법의식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162)

동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의 구성에 있어서 법인지 영역에 대하여서 는 법지식에 대한 5점 척도 항목과 가부형 항목을 함께 개발하였으 며, 법인지수준, 위법행위 중화기제, 준법의식 유형을 같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법과 개인 영역에서는 법친밀도, 법신뢰도, 법효능감, 법 사용의사, 법소외감, 법필요성, 법절차 참여경험, 법교육 수강여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요소 영역에서는 자신에 대한 태도, 국가•공동체 태도, 시민의식을 하위지표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통제 변인으로서 결혼 여부, 본인 학력, 학업 실패, 연령, 비행친구 유무, 부모 양육태도, 지역사회 변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범죄 경험, 범 죄 시작시기, 부모 학력을 구성함으로써 '준법행동’에 대한 연구변인 을 설정하고 있다. ${ }^{163)}$

동 연구는 설문 개발 과정에서 '법의식'의 판단기준을 준법행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법무부가 2005년부터 수행해 온 법교 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부처 내지 기관에 편중 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 법의식 지표를 개발하고자 노
162) 김해성, 『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준법행동 예측지표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8, 6-8면 참조.
163) 김해성, 위의 보고서, 12 면 참조.

력하였으며，법에 대한 인식•정서 영역에서 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직관적인 인식에 대한 설문으로 수정하여 항목을 개발한 바 있다．

## 3）Rule of Law Index

미국의 World Justice Project164）는＇Rule of Law Index（법치주의 지 수）조사를 통하여 각국의 안전，권리，정의，정치와 관련된 효과적인 법치주의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165）동 조사는 법치 주의가 부패를 줄이고，위생보건을 증진하며，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빈곤 퇴치 내지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다만，법치주의가 가 진 자체적인 특징을 기초로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한 적절한 설문항목 과 분석이 있어야만 법치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ule of Law Index는 법제 실무 측면에서의 정량화된 기 준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의 법치주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Rule of Law Index는 현실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현황을 분석하고 검 토하고자 하며，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설문 을 개발하고 있다．또한，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설문항목을 개발함으로 써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각 국가별로 법치주의를 평가하고 있다．${ }^{166)}$

164）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회장 William H．Neukom가 발의하여 2006년 설립된 World Justice Project는 2009년에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변경되었으 며，계속하여 Rule of Law Index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65）World Justice Project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orldjusticeproject．org／ 이며，2015년의 Rule of Law Index 결과는 http：／／worldjusticeproject．org／publications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166）2014년과 2015년 세계정의기구의 법치주의 지수에 따르면，우리나라는 각각 0．77점과 0．79점을 획득하여 2014년에는 전 세계 순위 99개국 중에서 14위，2015년 에는 102 개국 중에서 11 위를 차지하고 있다（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2014，p．36（http：／／worldjusticeproject．org／publication／rule－law－index－reports／ rule－law－index－2014－report 2015．10．30．최종 검색）；World Justice Project，『Rule of

Rule of Law Index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국민들이 구체적인 법치 주의 관련 사례에 당면했을 때의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반응을 조사함 으로써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Index는 단순히 1 차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 주의에 대한 종합적 지표일 뿐이며，Index 지수는 각 국가별로 1,000 명 의 응답자로 구성된 지역민과 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Index는 각 국가별 조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설문항목 개발에 있어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정치 상황에 있는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매우 정밀하고 구체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World Justice Project가 개발한 Rule of Law Index의 기본 원칙은 다 음과 같다．즉，‘（1）정부，공무원과 수권기관 및 개인과 민간기업들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2）법률은 명확하게 공개되며 안정성을 가지며，공정하다．또한，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안전과 재 산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한다．（3）법률제정，운영，이행과정에 대 하여 접근이 가능하며，공정하고 효율적이다．（4）법률은 독립적이고 윤 리적이며 중립적인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적시에 이행되어야 한 다．＇는 내용이다．${ }^{167)}$

이러한 원칙은 Rule of Law Index의 9개 차원（factors）으로 구체화되 며，일반국민들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한 사례별 법치주의 판단 내용 을 지표화하고 있다． 9 개 차원은 각각 그 세부항목（sub－factor）으로 개 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법치주의 지표 설문을 구성하게 된다．아래의 내용은 각 9 개 차원과 그 세부항목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168）

Law Index 2015』，2015，p． 6 （http：／／worldjusticeproject．org／publication／rule－law－index－ reports／rule－law－index－2015－report 2015．10．30．최종 검색））．
167）World Justice Project，${ }^{『}$ Rule of Law Index 2014』，2014，p．4；World Justice Project，
${ }^{『}$ Rule of Law Index 2015』，2015，p． 10 ．
168）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8；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14．

## 1. 요소 1 (Constrains on Government Powers): 정부권한에 대한 통제

1.1 정부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1.2 정부권한이 입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1.3 정부권한이 사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1.4 정부권한이 독립적 감사와 평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1.5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는다.
1.6 정부권한이 비정부단체에 의한 견제를 받는다.
1.7 권한의 이전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 2. 요소 2 (Absence of Corruption): 부패의 존재

2.1 행정부 공무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2.2 사법부 공무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2.3 경찰과 군인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2.4 입법부 공무원이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다.

## 3. 요소 3 (Open Government): 열린 정부

3.1 법률이 공개되고 접근가능하다.
3.2 법률이 안정적이다.
3.3 정부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국민참여
3.4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4. 요소 4 (Fundamental Rights): 기본권

4.1 평등과 차별금지
4.2 생존권과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4.3 적법절차와 피의자의 권리
4.4 표현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4.5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4.6 자의적 침해로부터 사생활이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4.7 집회, 결사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4.8 노동 기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5. 요소 5 (Order and Security): 질서와 안전

5.1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5.2 민사적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된다.
5.3 국민들이 자력구제로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6. 요소 6 (Regulatory Enforcement): 규제 집행

6.1 정부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6.2 정부규제가 부적절한 영향없이 적용되고 집행된다.
6.3 행정적 절차가 비합리적 지연없이 이행된다.
6.4 적벌절차가 행정절차에서도 존중된다.
6.5 정부가 적절한 보상없는 수용은 하지 않는다.

## 7. 요소 7 (Civil Justice): 민사적 사법절차

7.1 국민들은 민사재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7.2 민사적 사법절차에는 차별이 없다.
7.3 민사적 사법절차에 부패가 없다.
7.4 민사적 사법절차에 정부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5 민사적 사법절차는 비합리적인 지체의 대상이 아니다.
7.6 민사적 사법절차는 효과적으로 이행된다.
7.7 대체적 분쟁 해결(ADR)이 접근가능하고, 공평하고 효과적이다.

## 8. 요소 8 (Criminal Justice): 형사적 사법절차

8.1 범죄수사제도가 효과적이다.
8.2 형사재판제도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다.
8.3 교정제도가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이다.
8.4 형사적 사법제도가 공정하다.
8.5 형사적 사법제도에 부패가 없다.
8.6 형사적 사법제도에 정부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7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 요소 9 Informal Justice (비형식적 사법절차)

9.1 비형식적 사법절차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다.
9.2 비형식적 사법절차는 공정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9.3 비형식적 사법절차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한편，이번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Rule of Law Index 조 사결과 자체 보다는 Index 문항의 구성 요소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한 바 있다．즉，법에 대한 준수 차원이나，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법의 제정 • 집행 설문 문항 개발 과정에 Rule of Law Index에 사용된 설문 요소들을 많은 부분 채택하였다．다만，설문문항 자체는 구체적인 사 례 중심의 설문 보다는 직관적인 인식 및 의식을 통하여 직접적인 법 의식을 묻는 형태를 취하였으며，향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의 정례화 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 를 법의식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설문을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문항 개발 및 구성

국민법의식 지표 설문항목 개발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식 과 Rule of Law Index에서 채택한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한국 법제연구원이 1994년과 2008년 수행하였던 국민법의식연구와의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항을 변형하여 채택하기도 하였다．

즉，1994년 23번 문항＇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169）라는 설문과 2008년의［법에 대한 인식과 정 서］에 관한 7번 문항의＂＂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 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혹은 그렇지 않습니까？＂170）라는 설문의 경우，2015년의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 지표 차원2［법에 대한 인 식•정서］의 29 번 문항＂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로 재구성한 바 있다．또한，2008년의 8번 문항＂＂유전무죄，무전유죄’라 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71)}$ 라는 설문의 경우에도 차원 2 의 28 번 문항＂법은 모든 국

[^15]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로 재구성하였다．국민법의식 지표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은 2008년 39번 문항＂○○님은 우리 헌법에 서 어떤 점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72）라는 설문을 구체화하여 개발한 항목이다．

다음의＜표 46＞은＇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의 설문문항들을 2015년 본 연구에서 국민법의식 지표 설문으로 재구성한 항목들을 표 로 정리한 것이다．

## ＜표 46＞2008년 문항의 지표 설문항목 재구성 현황

| 2008년 설문항목173） | 2015년 국민법의식 지표 설문항목 |  |
| :---: | :---: | :---: |
|  | 차 원 | 설문 문항 |
| 문 7）$○ ○$ 님은 ‘악법도 법 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 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 성하십니까？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차원2 <br> ［법에 대한 <br> 인식•정서］ | 문 29．＂내 생각과 다르더라 <br> 도 법은 지켜야 한다＂ |
| 문 8）$○ ○$ 님은＇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 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차원2 <br> ［법에 대한 인식•정서］ | 문28．＂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
| 문 19）$\bigcirc \bigcirc$ 님은 법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 까？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차원2 <br> ［법에 대한 <br> 인식•정서］ | 문25．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다 |

172）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271면．
173）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11면，115면， 173 면， 179 면， 193 면， 214 면， 217 면， 221 면， 225 면， 236 면， 271 면의 각 설문항목．

| 2008년 설문항목 | 2015년 국민법의식 지표 설문항목 |  |
| :---: | :---: | :---: |
|  | 차 원 | 설문 문항 |
| 문 20) $\bigcirc \bigcirc$ 임은 본인 스스 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차원 1 <br> [법에 대한 관심] | 문24.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 |
| 문 21) ○○님은 우리 사회 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 차원 3 <br> [법에 대한 준수] | 문31. 정부(중앙행정기관)는 <br> 법을 잘 지킨다 |
|  |  | 문3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br> 등)는 법을 잘 지킨다 |
|  |  | 문33.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 을 한다 |
|  |  | 문34.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
|  |  | 문 35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
| 문25) $\bigcirc \bigcirc$ 님이 뺑소니 장 면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 차원2 <br> [법에 대한 <br> 인식•정서] | 문 30 .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 <br> 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
| 문26)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begin{gathered} \text { 차원1 } \\ \text { [법에 대한 관심] } \end{gathered}$ | 문23.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
| 문27) 만일, $\bigcirc \bigcirc$ 님이 횡단 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문28) 최근 학교 내 '집단따 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님의 자녀가 이러한 집 단 따돌림을 당할 경우 가 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2008년 설문항목 | 2015년 국민법의식 지표 설문항목 |  |
| :--- | :--- | :--- |
|  | 차 원 | 설문 문항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법의식 지표를 구 성하고 있는 각 항목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법의식 요 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6 개 차원, 30 개의 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예비조사

개발된 문항이 실제 국민의 법의식을 측정하는데 타당하고 유효한 문항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 지표 문항에 대하여서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참여자들은 총50개 문항(본 문항 기준)에 대해 응답했으 며, 이를 통해 문항별 응답 용이성, 문항 수정/보완 등의 의견 수집 및 통계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50개 문항 중에 서 21 번에서 50 번까지의 30 개 문항은 국민법의식 지표에 관한 설문문 항으로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4) 문항 수정 및 최종 설문항목 확정

예비조사를 통하여 법의식지표 항목은 1 개 문항의 차원을 이동하였 으며, 4 개 문항의 문구를 변경하였다. 그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제1장 의 <그림 5>의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국민법의식 지표의 차원별 항목 구성 은 다음 <그림 50 >과 같다.
<그림 50> 국민법의식 지표 차원별 항목 구성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에 활용된 구체적인 설문 문구는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국민법의식 지표 조사 최종 설문 항목

| 차 원 | 주 제 | 설 문 |
| :---: | :---: | :---: |
| 1 | 법에 <br> 대한 <br> 관심 | 문21.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
|  |  | 문22.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
|  |  | 문23.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 이다 |
|  |  | 문24.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 |
| 2 | 법에 <br> 대한 인식 및 정서 | 문25.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다 |
|  |  | 문26.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
|  |  | 문27.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
|  |  | 문28.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
|  |  | 문29.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
|  |  | 문30.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
| 3 | 법에 <br> 대한 <br> 준수 | 문31.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
|  |  | 문3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
|  |  | 문33.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
|  |  | 문34.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
|  |  | 문35.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


| 차 원 | 주 제 | 설 문 |
| :---: | :---: | :---: |
| 4 | 법에 <br> 의한 <br> 기본권 <br> 보장 | 문36.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
|  |  | 문37. 법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 |
|  |  | 문38. 법은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
|  |  | 문39.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
|  |  | 문40. 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  |  | 문41.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 5 | 법의 실효성 보장 | 문42.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 |
|  |  | 문43. 법은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인다 |
|  |  | 문44. 법은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인다 |
|  |  | 문45.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 |
| 6 | 법의 <br> 제정 및 <br> 집행 | 문46.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 |
|  |  | 문47.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 |
|  |  | 문48.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 한다 |
|  |  | 문49.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한다 |
|  |  | 문50.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 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 |

## 제 2 절 전문가 가중치 산출 방법 및 적용

국민법의식 지표에 활용되는 문항들은 가중치（중요도）부여 후 국민 법의식 지수가 최종적으로 산출되며，금년도 과업에서는 전문가 의견 을 수렴하여 가중치（중요도）를 산출하였다．

## 1．가중치 산정 방법

가중치 부여에 따른 각 항목별 중요도 산정 방식은 가중치（중요도） 산정 주체에 따라 주관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사회적 판단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표 $48>$ 은 산정주체에 따른 각각의 가중치 산정 방법을 표 로 정리한 것이다．

> <표 48> 가중치 산정 주체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법174)

| 구 분 |  | 내 용 |
| :---: | :---: | :---: |
| 중요도 <br> 산정 <br> 주체에 <br> 따라 | 주관적 방법 | • 연구자가 적 변구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관적 <br> 으로 평가지표의 중요도 결정 |
|  | 사회적 판단 <br> 방법 | •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군가 똘과를 활용 <br> （회귀분석，요인분석 등）하여 징요란인의 결정 판단에 따라 <br> 평가 지표의 중요도를 결정 |

174）이정호，＂사회과학에서 측정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한국비지니스 리뷰』제 5 권 제 3 호，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2012．12．， $63-65$ 면；이정호•류춘호• 정태영，＂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산업 혁신연구』제26권 3호，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0．9．，3－8면의 내용을 바탕으 로 재구성하여 가중치산정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임．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 지표 도출을 위하여 국민법의식 지표 관 련 문항들에 대하여 가중치(중요도)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2. 지표 도출을 위한 가중치 산정 절차

본 연구에서는 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여 가 중치(중요도)를 산정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판단 방법을 통해 측 정지표의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이는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판단방법 이 관련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각 측정지표의 중요성 정도를 직접적으 로 수렴함으로써 측정 지표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 영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51> 전문가 가중치 조사 과정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연구 법의식지표 개발과 관련한 수차례의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전문가 가중치 조사 규모를 정하고, 그 설문항 목을 설계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분야별로 법제전문가 명부를 작성 하였으며, 이러한 명부 내 구성원들은 법학박사 또는 변호사, 판사 및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들 중에서 선정하였 다. 이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리스트를 활용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소속기관과 이 메일,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이메일로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 하여 전문가가중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뢰는 100 여명의 법제 전문가에게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전 문가가중치 설문의뢰에 응답한 각 분야별 전문가 54 명의 의견을 바탕 으로 전문가가중치를 확립하였다. 전문가 가중치 산정에 참여한 전문 가들의 구성과 소속은 다음 <표 $49>$ 과 같다.
<표 49> 전문가 가중치 산정 참여 전문가 구성

| 구 성 | 인원수 |
| :---: | :---: |
| 대학(24개) | 26 명 |
| 법조계 | 7 명 |
| 연구기관(8개) | 8 명 |
| 입법 지원 기관 | 2 명 |
| 정부 부처 | 4 명 |
| 정부 관련 기관 | 4 명 |
| 관련 업계 | 3 명 |
| 합 계 | 54 명 |

전문가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52> 문항구성 예시

(1) 각 차원별 중요도의 합계가 100 이 되도록 차원별 가중치 작성 유도

국민법의식 지표는 총 6 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는 바에 따라 각 차원별 중요도를 기재해 주십시오. 6 개 차원에 부여하신 중요도의 합계는 100 이 되어야 합니다.

| 차 원 | 중요도(점) |
| :---: | :---: |
| (1) 법에 대한 관심 | )점 |
| 2 법에 대한 인식/정서 | )점 |
| 3 국민의 법 준수 | ( ) 점 |
| 4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점 |
| 수 법의 실효성 | ( ) 점 |
| 숙 국가기관의 법 제정/집행 | ( ) 점 |

## (2) 개별 차원의 설문 항목별 중요도의 합계가 100 이 되도록 속성별 가중치 작성

국민의 법준수 차원은 총 4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금부터는 각 항목별 중요도를 기재해 주십시오. 4개 항목에 부여하신 중요도의 합계는 100 이 되어야 합니다.

| 차 원 | 중요도(점) |
| :---: | :---: |
| (1)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 ( ) 점 |
| (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 ( ) 점 |
| (3)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 ( ) 점 |
| (4)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 ( ) 점 |
| 합 계 | 100점 |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가중치 설문 항목은 [부록 2]에 전문을 수록하였으며, 총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3. 중요도 산출 결과 예시 및 의의

본 조사에서는 일반국민 3,000 명의 응답결과를 통해 산출된 항목별 지표에 전문가조사를 통해 확정된 중요도를 적용하여 차원별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번 중요도 산출을 위한 전문가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이메일) 조사로 실시됐으며, 6월 1일부터 26 일까지 법 관련 종 사자 54 명의 응답결과를 참조하여 확정하였다.

차원별, 세부항목별 중요도 선정 결과는 아래 <표 $50>$ 과 같다.
<표 50> 국민법의식 지표 최종 중요도 산정 결과

| 차 원 |  | 항 목 |  |
| :---: | :---: | :---: | :---: |
| 차원명 | 차원별 중요도 | 세부 항독명 | 차원 내 중요도 |
| [차원1] <br> 법에 대한 관심 | 14.6\% |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 29.3\% |
|  |  |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 21.2\% |
|  |  |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 23.8\% |
|  |  |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 25.7\% |
| [차원2] <br> 법에 대한 인식/정서 | 15.6\% |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 14.1\% |
|  |  |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 17.3\% |
|  |  |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 16.9\% |
|  |  | 평등, 차별 없이 작용 | 18.0\% |
|  |  |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20.3\% |
|  |  |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 13.4\% |


| 차 원 |  | 항 목 |  |
| :---: | :---: | :---: | :---: |
| 차원명 | 차원별 중요도 | 세부 항목명 | 차원 내 중요도 |
| [차원3] <br> 법에 대한 준수 | 19.0\% | 정부의 법준수 정도 | 18.7\% |
|  |  |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 15.7\% |
|  |  |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 25.6\% |
|  |  | 기업의 법준수 정도 | 16.6\% |
|  |  | 국민의 법준수 정도 | 23.4\% |
| [차원4] <br>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 17.3\% | 신체의 자유 보장 | 17.6\% |
|  |  |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 14.8\% |
|  |  |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 16.4\% |
|  |  | 참정권 보장 | 15.0\% |
|  |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19.8\% |
|  |  |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 16.4\% |
| [차원5] 법의 실효성 보장 | 16.1\% |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 23.3\% |
|  |  | 이웃 간 분쟁 감소 | 16.8\% |
|  |  | 범죄 감소 | 22.4\% |
|  |  | 공무원 부패 방지 | 18.2\% |
|  |  | 정부 권한 통제 | 19.3\% |
| [차원6] <br> 법의 제정/집행 | 17.4\% | 국회의 공정한 입법 | 23.1\% |
|  |  | 법원의 공정한 판결 | 27.7\% |
|  |  | 정부의 공정한 집행 | 22.4\% |
|  |  |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 26.8\% |

산출된 중요도는 지표 산출에 활용하는 목적 외에, 아래와 같은 포 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국민법의식 함양을 위한 개선전략 분석에도 활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 <그림 53> 개선전략 분석 예시


## 제 3 절 국민법의식 지표 결과 분석

## 1. 문항별 분석

'2015 국민법의식 지표'는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조사한 결과로서 이전에 조사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이 불가능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문항별 분석이나 종 합분석에서 이전에 수행된 국민법의식 조사나 다른 국내외 기관들의 유사 조사 결과들과의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5 국민법의식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항목 중에서 입법, 사 법, 행정 주체별 공정성이나 사회 각 구성원과 관련된 국내 조사로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한국종합사회조사'175)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나 지표로는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176)와
175)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 국가주요지표 - 부문별지표 - 기관신뢰도 - 통계 표(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176) http://worldjusticeproject.org/publications

OECD의 'Government at Glance 2015'177),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 2016)'178) 등이 있다. 다 만, 이처럼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조사들은 유사한 설문항목 소재를 채택하고 있지만, 각각의 조사가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이 다 르다. 특히, 설문항목의 구성 방식이나 설문방식에서도 모두 차이가 나며, 조사대상의 범위도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 서, 그 결과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 회조사방법론상의 특징 때문에 각 조사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2015 국민법의식 지표' 결과가 나타내는 의미를 객관 적으로 분석해내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조사들과 의 수평적 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5 국민법의식 지표' 에서는 응답항목을 5점 척도로 개발 하여 조사하였으나, 이전에 수행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응답 항목에 '보통이다'가 없는 4점 척도로 개발되어 조사되었기 때문 에 수평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사항목 간 결과를 분석하 는 것이 이번 지표 결과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 법에 대한 관심
(1)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48.5 \%$ (그런 편이다 $42.5 \%$ +매우 그렇다 $6.0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7.4 \%$ (전혀 그렇지 않다 $2.3 \%+$ 별로 그렇지 않다 $15.1 \%$ )보다
177)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 178) http://www.doingbusiness.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6
$31.1 \%$ p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4.1 \%$ 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판결에 관한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설문 에 대하여 $72.4 \%$ 가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관심이 없다는 응 답은 $27.6 \%$ 를 차지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179) 관심이 없다 는 응답은 2008 년의 $27.6 \%$ 에 비하여 $17.4 \%$ 로 감소한 반면, 관심이 있 다는 응답도 $72.4 \%$ 에서 $48.5 \%$ 로 줄어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통이다'라는 응답항목이 이번 조사에서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그림 54>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
48.5\%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 별로는 남자(61.49점)가 여자(56.00점)보다 5점 이상 높게 나타났고, 학 력이 높을수록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62.78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59.27점), 무직/기타(58.74점), 학생(57.44점), 블루칼라(57.35점), 전업주부(56.68점), 농/축/수산업(50.09점)순으로 나타났다.

[^16]주관적 계층 수준별로는 상층에 가까울수록(하층 56.25 점 $\rightarrow$ 상층 65.38 점)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 특성별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

| 구 분 <br> (단위:\%)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array}{\|l\|} \hline \text { 그렇히 } \\ \text { 않다 } \end{array}$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2.3 | 15.1 | 34.1 | 42.5 | 6.0 | 17.4 | 48.5 | 58.72 |
| 성 별 | 남자 | 1,489 | 1.9 | 11.9 | 32.2 | 46.5 | 7.5 | 13.8 | 54.0 | 61.49 |
|  | 여자 | 1,511 | 2.7 | 18.2 | 36.0 | 38.6 | 4.5 | 20.9 | 43.1 | 56.00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6.8 | 30.0 | 24.0 | 35.2 | 4.1 | 36.8 | 39.3 | 49.91 |
|  | 고졸 | 1,196 | 1.8 | 15.9 | 35.2 | 42.5 | 4.6 | 17.7 | 47.1 | 58.10 |
|  | 대재 이상 | 1,409 | 1.4 | 10.3 | 36.1 | 44.6 | 7.7 | 11.7 | 52.3 | 61.73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6.5 | 29.5 | 24.2 | 37.0 | 2.9 | 36.0 | 39.9 | 50.09 |
|  | 자영업 | 666 | 1.8 | 15.3 | 33.3 | 43.4 | 6.3 | 17.1 | 49.7 | 59.27 |
|  | 블루칼라 | 588 | 2.8 | 16.8 | 33.7 | 41.6 | 5.1 | 19.6 | 46.7 | 57.35 |
|  | 화이트칼라 | 733 | 1.1 | 9.0 | 35.6 | 46.4 | 8.0 | 10.1 | 54.4 | 62.78 |
|  | 전업주부 | 563 | 2.9 | 18.1 | 33.3 | 41.1 | 4.7 | 21.0 | 45.8 | 56.68 |
|  | 학생 | 185 | 1.0 | 15.1 | 42.7 | 35.4 | 5.8 | 16.1 | 41.2 | 57.44 |
|  | 무직/기타 | 132 | 3.9 | 13.1 | 33.5 | 43.1 | 6.4 | 17.0 | 49.5 | 58.74 |
| $\begin{aligned} & \text { 주관적 } \\ & \text { 계층 } \\ & \text { 수준별 } \end{aligned}$ | 하층 | 1,352 | 2.9 | 17.4 | 36.5 | 38.1 | 5.1 | 20.3 | 43.2 | 56.25 |
|  | 중간층 | 1,527 | 1.8 | 13.7 | 32.4 | 45.6 | 6.6 | 15.5 | 52.2 | 60.38 |
|  | 상층 | 122 | 0.8 | 7.8 | 29.2 | 53.5 | 8.7 | 8.6 | 62.2 | 65.38 |

(2)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신규나 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34.0 \%$ (그런 편이다 $28.0 \%$ +매우 그렇다 $6.0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25.6 \%$ (전혀 그렇지 않다 $3.5 \%+$ 별로 그렇지 않다 $22.1 \%$ )보다 $8.4 \%$ 높 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40.5 \%$ 로 조사되었다.

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 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4 번 설문문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 문에 그렇다는 의견은 $23.5 \%$,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1.9 \%$ 로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만 하다.

앞의 21 번 설문문항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48.5 \%$,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7.4 \%$ 로 나 타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로 제정되는 법이나 변경된 법에 대하여서 는 법원 판결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알 수 있다.

향후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나 변경되는 법률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 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5>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평균 : 52.74점
( $n=3,000, \%$ )


신규나 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54.69점)가 여자(50.8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많을수 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관심을 나타내는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54.95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54.15점), 블루칼라(53.51점), 무직/기타(50.72점), 전업주부(50.46점), 학생(50.05점), 농/축/수산업(45.45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구성별로 보면 1 인가구보다 1 세대 이상의 복수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신규나 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52> 특성별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3.5 | 22.1 | 40.5 | 28.0 | 6.0 | 25.6 | 34.0 | 52.74 |
| 성 별 | 남자 | 1,489 | 2.4 | 20.5 | 39.4 | 31.0 | 6.6 | 22.9 | 37.6 | 54.69 |
|  | 여자 | 1,511 | 4.5 | 23.6 | 41.7 | 24.9 | 5.4 | 28.1 | 30.3 | 50.82 |
| 소득별 | 199만원 이하 | 379 | 8.5 | 26.1 | 38.9 | 22.0 | 4.5 | 34.6 | 26.5 | 47.00 |
|  | 200~299만원 | 485 | 4.5 | 27.7 | 39.7 | 22.8 | 5.3 | 32.2 | 28.1 | 49.23 |
|  | 300~399만원 | 655 | 3.0 | 22.7 | 39.3 | 29.3 | 5.7 | 25.7 | 35.0 | 53.00 |
|  | 400~499만원 | 629 | 2.2 | 20.3 | 43.0 | 28.0 | 6.5 | 22.5 | 34.5 | 54.07 |
|  | 500 만원 이상 | 853 | 1.9 | 17.9 | 40.9 | 32.5 | 6.8 | 19.8 | 39.3 | 56.09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11.1 | 28.8 | 33.5 | 20.3 | 6.2 | 39.9 | 26.5 | 45.45 |
|  | 자영업 | 666 | 2.9 | 24.7 | 32.6 | 32.7 | 7.2 | 27.6 | 39.9 | 54.15 |
|  | 블루칼라 | 588 | 3.3 | 21.6 | 38.8 | 30.4 | 5.9 | 24.9 | 36.3 | 53.51 |
|  | 화이트칼라 | 733 | 1.8 | 17.7 | 45.4 | 29.0 | 6.1 | 19.5 | 35.1 | 54.95 |
|  | 전업주부 | 563 | 4.0 | 23.4 | 43.7 | 24.4 | 4.4 | 27.4 | 28.8 | 50.46 |
|  | 학생 | 185 | 4.1 | 21.6 | 50.7 | 17.1 | 6.5 | 25.7 | 23.6 | 50.05 |
|  | 무직/기타 | 132 | 5.6 | 22.9 | 40.3 | 25.6 | 5.6 | 28.5 | 31.2 | 50.72 |
| 지역 <br> 규모별 | 대도시 | 1,372 | 2.1 | 19.8 | 39.5 | 32.1 | 6.5 | 21.9 | 38.6 | 55.23 |
|  | 중소도시 | 918 | 2.6 | 22.0 | 44.4 | 25.4 | 5.6 | 24.6 | 31.0 | 52.32 |
|  | 읍면지역 | 710 | 7.1 | 26.4 | 37.5 | 23.4 | 5.5 | 33.5 | 28.9 | 48.47 |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응답자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전 체 | 3,000 | 3.5 | 22.1 | 40.5 | 28.0 | 6.0 | 25.6 | 34.0 | 52.74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인가구 | 180 | 5.9 | 22.2 | 49.3 | 19.5 | 3.0 | 28.1 | 22.5 | 47.88 |
|  | 1세대 가구 | 787 | 6.0 | 22.0 | 38.5 | 26.9 | 6.6 | 28.0 | 33.5 | 51.51 |
|  | 2세대 가구 | 1,905 | 2.1 | 22.4 | 40.2 | 29.3 | 5.9 | 24.5 | 35.2 | 53.65 |
|  | 3세대 가구 | 127 | 4.3 | 16.9 | 45.9 | 26.2 | 6.8 | 21.2 | 33.0 | 53.59 |

(3)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3.4 \%$ (그런 편이다 $50.0 \%+$ 매우 그렇다 $13.4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9.3 \%$ (전혀 그렿지 않다 $1.0 \%+$ 별로 그렿지 않다 $8.3 \%$ )보다 $54.1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7.3 \%$ 로 조사되었다.
분쟁의 법적 해결 항목에 대한 지수가 66.63점이고 응답자 비율이 $63.4 \%$ 인 것은 제 2 장에서의 설문(불량제품 대처 행동 분석)과 비교하 였을 때 $56.7 \%$ 보다 더욱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분쟁 유형에 따른 법적 해결 의지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쟁 유형에 따른 법적 해결 방법 모색에 대하여서는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결과와 유의미하게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조사의 설문 27번 "횡단보도 교통사고시" 고소하여 법대 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24.3 \%, 28$ 번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17.8 \%$ 가 법 적 해결 방법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던 것180)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17]＜그림 56＞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평균：66．63점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에서도 Factor 7（Civil Justice）은 민사재판의 이용가능성과 대체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공평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설문을 두고 있다． 각각의 설문에 대한 해당 지수는 민사재판에 대하여 2014년 0．52점과 2015년 0．63점，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하여서는 2014년 0．93점과 2015년 0．9점으로서 국민법의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1)}$

따라서，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법의식 지표 설문 항목에서의 결과를 세분화하고，각각의 분쟁 유형에 따른 대처방식과 법적 해결 방법 모색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 대 이상（62．67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69．90점으로 가장 높고，학생（67．47점），블루 칼라（67．01점），자영업（66．37점），무직／기타（63．92점），전업주부（63．78점）， 농／축／수산업（61．79점）순으로 나타났다．

[^18]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58.68점 $\rightarrow$ 대재 이상 69.11점), 소 득이 많을수록(199만원 이하 60.91점 $\rightarrow$ 500만원 이상 69.78점), 지역 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64.98점 $\rightarrow$ 대도시 68.58점)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 특성별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 $\begin{aligned} & \text { T 눈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array}{\|l}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left\lvert\,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right.$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l\|} \hline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1.0 | 8.3 | 27.3 | 50.0 | 13.4 | 9.3 | 63.4 | 66.63 |
| 연령별 | 20대 | 529 | 0.7 | 8.1 | 30.2 | 47.4 | 13.6 | 8.8 | 61.0 | 66.28 |
|  | 30대 | 560 | 0.7 | 6.8 | 25.7 | 52.7 | 14.2 | 7.5 | 66.9 | 68.21 |
|  | 40대 | 644 | 0.5 | 6.9 | 26.4 | 52.1 | 14.1 | 7.4 | 66.2 | 68.11 |
|  | 50대 | 594 | 1.4 | 5.7 | 25.9 | 52.4 | 14.7 | 7.1 | 67.1 | 68.33 |
|  | 60 대 이상 | 673 | 1.6 | 13.5 | 28.4 | 45.6 | 10.9 | 15.1 | 56.5 | 62.67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3.1 | 16.5 | 34.4 | 34.3 | 11.6 | 19.6 | 45.9 | 58.68 |
|  | 고졸 | 1,196 | 0.9 | 8.0 | 28.3 | 50.3 | 12.5 | 8.9 | 62.8 | 66.33 |
|  | 대재 이상 | 1,409 | 0.4 | 6.3 | 24.4 | 54.1 | 14.8 | 6.7 | 68.9 | 69.11 |
| 소득별 | 199만원 이하 | 379 | 3.2 | 12.0 | 33.2 | 41.4 | 10.3 | 15.2 | 51.7 | 60.91 |
|  | 200~299만원 | 485 | 1.5 | 9.6 | 31.7 | 43.6 | 13.6 | 11.1 | 57.2 | 64.56 |
|  | 300~399만원 | 655 | 0.6 | 9.3 | 25.6 | 51.5 | 13.0 | 9.9 | 64.5 | 66.78 |
|  | 400~499만원 | 629 | 0.3 | 8.0 | 26.1 | 53.6 | 12.0 | 8.3 | 65.6 | 67.24 |
|  | 500 만원 이상 | 853 | 0.6 | 5.5 | 24.3 | 53.5 | 16.1 | 6.1 | 69.6 | 69.78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2.0 | 15.5 | 29.5 | 39.3 | 13.7 | 17.5 | 53.0 | 61.79 |
|  | 자영업 | 666 | 1.4 | 7.7 | 28.9 | 48.1 | 13.9 | 9.1 | 62.0 | 66.37 |
|  | 블루칼라 | 588 | 0.8 | 7.6 | 27.3 | 51.4 | 12.8 | 8.4 | 64.2 | 67.01 |
|  | 화이트칼라 | 733 | 0.1 | 7.3 | 21.9 | 54.2 | 16.4 | 7.4 | 70.6 | 69.90 |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응답자 <br>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룋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
|  | 전 체 | 3,000 | 1.0 | 8.3 | 27.3 | 50.0 | 13.4 | 9.3 | 63.4 | 66.63 |
|  | 전업주부 | 563 | 1.3 | 9.8 | 31.8 | 46.6 | 10.5 | 11.1 | 57.1 | 63.78 |
|  | 학생 | 185 | 0.4 | 5.5 | 30.1 | 52.0 | 12.1 | 5.9 | 64.1 | 67.47 |
|  | 무직/기타 | 132 | 3.4 | 11.1 | 23.3 | 50.9 | 11.4 | 14.5 | 62.3 | 63.92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0.6 | 6.1 | 25.6 | 53.9 | 13.8 | 6.7 | 67.7 | 68.58 |
|  | 중소도시 | 918 | 1.1 | 10.1 | 28.6 | 48.0 | 12.2 | 11.2 | 60.2 | 65.00 |
|  | 읍면지역 | 710 | 1.7 | 10.2 | 28.8 | 45.0 | 14.3 | 11.9 | 59.3 | 64.98 |

(4)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문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1.9 \%$ (전혀 그렇지 않다 $4.5 \%+$ 별로 그렇지 않다 $27.4 \%$ ) 로 그렿다는 의견 $23.5 \%$ (그런 편이다 $21.4 \%+$ 매우 그렇다 $2.1 \%$ )보다 $8.4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44.7 \%$ 로 조사되었다.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본인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 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잘 안다는 응답은 $20.5 \%$, 모른다는 응답은 $79.5 \%$ 라는 결과 182 )와 비교하여 보면, 잘 안다 는 응답비율이 $3 \%$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통이다라는 응답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대폭 감소된 바 있다.
2008년의 설문과 비교하여 볼 때 2015년 설문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묻고 있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법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 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182)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79면.
<그림 57>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평균 : 47.31점 ( $n=3,000, \%)$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50.29점)가 여자(44.38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43.02점 $\rightarrow$ 대재 이상 48.46점),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 지역 45.22점 $\rightarrow$ 대도시 48.71점) 인지를 나타내는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49.46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48.70점), 블루칼라(48.25점), 농/축/수산업(47.50점), 학생(45.43점), 무직/기타(44.15점), 전업주부(43.21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계층수준별로는 상층에 가까울수록(하층 45.70 점 $\rightarrow$ 상 층 55.18점)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특성별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4.5 | 27.4 | 44.7 | 21.4 | 2.1 | 31.9 | 23.5 | 47.31 |
| 성 별 | 남 자 | 1,489 | 2.5 | 23.3 | 47.2 | 24.4 | 2.5 | 25.8 | 26.9 | 50.29 |
|  | 여 자 | 1,511 | 6.4 | 31.4 | 42.2 | 18.4 | 1.6 | 37.8 | 20.0 | 44.38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므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4.5 | 27.4 | 44.7 | 21.4 | 2.1 | 31.9 | 23.5 | 47.31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10.3 | 34.8 | 29.3 | 23.7 | 1.9 | 45.1 | 25.6 | 43.02 |
|  | 고졸 | 1,196 | 5.0 | 27.9 | 41.8 | 23.1 | 2.2 | 32.9 | 25.3 | 47.39 |
|  | 대재 이상 | 1,409 | 2.3 | 24.9 | 51.4 | 19.4 | 2.0 | 27.2 | 21.4 | 48.46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4.3 | 29.6 | 40.6 | 22.7 | 2.7 | 33.9 | 25.4 | 47.50 |
|  | 자영업 | 666 | 4.1 | 25.8 | 42.9 | 25.4 | 1.8 | 29.9 | 27.2 | 48.70 |
|  | 블루칼라 | 588 | 4.6 | 27.7 | 40.8 | 24.0 | 2.9 | 32.3 | 26.9 | 48.25 |
|  | 화이트칼라 | 733 | 1.9 | 21.0 | 56.9 | 17.9 | 2.4 | 22.9 | 20.3 | 49.46 |
|  | 전업주부 | 563 | 8.1 | 33.9 | 36.5 | 20.0 | 1.5 | 42.0 | 21.5 | 43.21 |
|  | 학생 | 185 | 4.1 | 31.7 | 43.6 | 19.6 | 1.0 | 35.8 | 20.6 | 45.43 |
|  | 무직/기타 | 132 | 5.0 | 33.2 | 43.5 | 16.7 | 1.6 | 38.2 | 18.3 | 44.15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3.4 | 26.2 | 45.1 | 22.9 | 2.4 | 29.6 | 25.3 | 48.71 |
|  | 중소도시 | 918 | 5.6 | 27.6 | 42.3 | 22.8 | 1.7 | 33.2 | 24.5 | 46.84 |
|  | 읍면지역 | 710 | 5.1 | 29.4 | 46.9 | 16.7 | 1.9 | 34.5 | 18.6 | 45.22 |
| 주관적 <br> 계층 수준별 | 하층 | 1,352 | 5.6 | 29.3 | 43.6 | 19.5 | 1.9 | 34.9 | 21.4 | 45.70 |
|  | 중간층 | 1,527 | 3.6 | 26.5 | 45.6 | 22.4 | 1.9 | 30.1 | 24.3 | 48.12 |
|  | 상층 | 122 | 2.3 | 16.8 | 45.2 | 29.0 | 6.6 | 19.1 | 35.6 | 55.18 |

(2) 법에 대한 인식/정서
(1)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9.8 \%$ (전혀 그렇지 않다 $18.0 \%+$ 별로 그 렇지 않다 $41.8 \%$ )로 그렇다는 의견 $16.7 \%$ (그런 편이다 $15.8 \%+$ 매우 그

렇다 $0.9 \%$ )보다 $43.1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3.5 \%$ 로 조사되었다.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법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6.68 \%$ 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13.1 \%$ 가 어 렵지 않다고 응답183)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2015년에는 '어렵지 않 다'는 응답비율이 $13.1 \%$ 에서 $16.7 \%$ 로 $3.6 \%$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8>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 평균: 34.96점

( $\mathrm{n}=3,000$, \%)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50 대(38.34점), 60 대 이상(38.13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 대 (31.87점)와 40 대(30.74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30.11점 $\rightarrow$ 대도시 38.10점), 주관 적 계층수준별이 상층으로 갈수록(하층 32.00 점 $\rightarrow$ 상층 41.99점) 법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183)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73면.
<표 55> 특성별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18.0 | 41.8 | 23.5 | 15.8 | 0.9 | 59.8 | 16.7 | 34.96 |
| 연령별 | 20대 | 529 | 18.9 | 38.0 | 26.4 | 15.6 | 1.1 | 56.9 | 16.7 | 35.52 |
|  | 30대 | 560 | 22.5 | 41.3 | 23.2 | 12.2 | 0.8 | 63.8 | 13.0 | 31.87 |
|  | 40대 | 644 | 23.4 | 44.1 | 19.5 | 12.4 | 0.7 | 67.5 | 13.1 | 30.74 |
|  | 50대 | 594 | 13.6 | 41.1 | 24.5 | 20.0 | 0.8 | 54.7 | 20.8 | 38.34 |
|  | 60 대 <br> 이상 | 673 | 12.5 | 43.4 | 24.4 | 18.4 | 1.3 | 55.9 | 19.7 | 38.13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13.7 | 40.2 | 26.8 | 18.4 | 0.8 | 53.9 | 19.2 | 38.10 |
|  | $\begin{aligned} & \text { 중소 } \\ & \text { 도시 } \end{aligned}$ | 918 | 17.7 | 46.1 | 20.1 | 14.7 | 1.4 | 63.8 | 16.1 | 34.01 |
|  | $\begin{aligned} & \text { 읍면 } \\ & \text { 지역 } \end{aligned}$ | 710 | 26.7 | 39.3 | 21.4 | 12.1 | 0.5 | 66.0 | 12.6 | 30.11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21.3 | 43.8 | 21.6 | 12.2 | 1.1 | 65.1 | 13.3 | 32.00 |
|  | 중간층 | 1,527 | 15.0 | 41.5 | 24.8 | 17.7 | 0.9 | 56.5 | 18.6 | 37.01 |
|  | 상층 | 122 | 20.5 | 21.8 | 26.9 | 30.8 | 0.0 | 42.3 | 30.8 | 41.99 |

(2)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법이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 지 않다는 의견이 $36.5 \%$ (전혀 그렇지 않다 $9.8 \%+$ 별로 그렇지 않다 $26.7 \%$ )로 그렇다는 의견 $27.2 \%$ (그런 편이다 $24.3 \%+$ 매우 그렇다 $2.9 \%$ )보 다 $9.3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6.2 \%$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나 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그렇 다는 의견이 $34.0 \%$, 그렇지 않다는 의견 $25.6 \%$,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0.5 \%$ 로 조사된 것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 수•처리’하여야 한다．『국민제안규정』 제4조 2항에서는 국민제안 요 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즉，‘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 점，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 팩스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 조제 16 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 털＂이라 한다）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국회법』제82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마련된『국회 입법예 고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서는＇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 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 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이 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 고，184）제 8 조에서는 국민의 의견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84）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도 Chapter 8 （regulatory governance）는 규 제영향평가 의무（Obligation to conduct ex post evaluation of existing regulation），규제의 정당화에 필요한 비용편익에 대한 경제적 분석（Economic assessment of the costs and benefits is required to justify a regulatory decision），규제 결정 전 공청회 이행 （Requirement to conduct public consultation before making a regulatory determination），규제 결정 전 규제적용 대상과의 공개토론（Requirement to consult with regulated entities before making a regulatory determination）등에 대하여 입법절차와 관련된 설문을 두고 있다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gov＿glance－2015－en 2015．10．30．최종 검색）．

이처럼 법제정 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므 로, 앞으로는 국민의 법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 의사 반영 절차에 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입법절차에 국민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그림 59>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평균: 45.97점
( $\mathrm{n}=3,000$, \%)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 이 높을수록(20대 40.74점 $\rightarrow$ 60대 이상 54.45 점), 학력이 낮을수록(대 재 이상 42.37점 $\rightarrow$ 중졸 이하 50.45점),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40.79점 $\rightarrow$ 대도시 49.45점) 법이 국민 의사를 잘 반영한다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전업주부가 49.11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48.87점), 농/축/수산업(48.71점), 블루칼라(48.65점), 무직/기타(41.19점), 화이트칼 라(40.81점), 학생(39.32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계층수준별로는 상층으로 갈수록(하층 42.98점 $\rightarrow$ 상층 49.33점) 법이 국민 의사를 잘 반영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표 56> 특성별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array}{\|l}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9.8 | 26.7 | 36.2 | 24.3 | 2.9 | 36.5 | 27.2 | 45.97 |
| 연령별 | 20대 | 529 | 15.2 | 31.7 | 30.7 | 20.0 | 2.5 | 46.9 | 22.5 | 40.74 |
|  | 30대 | 560 | 15.0 | 29.2 | 34.5 | 19.5 | 1.8 | 44.2 | 21.3 | 41.00 |
|  | 40대 | 644 | 14.0 | 30.7 | 34.5 | 18.5 | 2.3 | 44.7 | 20.8 | 41.10 |
|  | 50대 | 594 | 3.7 | 24.9 | 38.4 | 29.6 | 3.4 | 28.6 | 33.0 | 50.99 |
|  | 60대 이상 | 673 | 2.6 | 18.6 | 41.7 | 32.6 | 4.5 | 21.2 | 37.1 | 54.45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3 | 22.1 | 40.8 | 28.9 | 2.9 | 27.4 | 31.8 | 50.45 |
|  | 고졸 | 1,196 | 5.6 | 26.6 | 38.2 | 26.5 | 3.2 | 32.2 | 29.7 | 48.74 |
|  | 대재 이상 | 1,409 | 14.6 | 28.2 | 33.2 | 21.2 | 2.8 | 42.8 | 24.0 | 42.37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7.4 | 24.5 | 37.5 | 27.2 | 3.4 | 31.9 | 30.6 | 48.71 |
|  | 자영업 | 666 | 5.9 | 25.7 | 38.5 | 26.7 | 3.2 | 31.6 | 29.9 | 48.87 |
|  | 블루칼라 | 588 | 7.4 | 26.8 | 33.3 | 28.8 | 3.7 | 34.2 | 32.5 | 48.65 |
|  | 화이트칼라 | 733 | 15.6 | 28.6 | 35.0 | 18.5 | 2.2 | 44.2 | 20.7 | 40.81 |
|  | 전업주부 | 563 | 6.1 | 24.3 | 40.3 | 26.0 | 3.4 | 30.4 | 29.4 | 49.11 |
|  | 학생 | 185 | 17.6 | 30.0 | 31.5 | 19.1 | 1.7 | 47.6 | 20.8 | 39.32 |
|  | 무직/기타 | 132 | 15.3 | 29.4 | 31.9 | 21.7 | 1.6 | 44.7 | 23.3 | 41.19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7.9 | 22.9 | 35.9 | 30.3 | 3.1 | 30.8 | 33.4 | 49.45 |
|  | 중소도시 | 918 | 8.4 | 29.6 | 39.9 | 18.7 | 3.4 | 38.0 | 22.1 | 44.78 |
|  | 읍면지역 | 710 | 15.3 | 30.5 | 32.1 | 20.1 | 2.1 | 45.8 | 22.2 | 40.79 |
| $\begin{aligned} & \text { 주관적 } \\ & \text { 계층 } \\ & \text { 수준별 } \end{aligned}$ | 하층 | 1,352 | 11.5 | 29.9 | 35.7 | 20.8 | 2.0 | 41.4 | 22.8 | 42.98 |
|  | 중간층 | 1,527 | 8.3 | 23.8 | 37.6 | 26.8 | 3.5 | 32.1 | 30.3 | 48.35 |
|  | 상층 | 122 | 9.2 | 28.9 | 23.7 | 31.7 | 6.5 | 38.1 | 38.2 | 49.33 |

(3)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법이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38.6 \%$ (그런 편이다 $32.8 \%+$ 매우 그렇다 $5.8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26.0 \%$ (전혀 그렇지 않다 $6.3 \%$ +별로 그렇지 않다 $19.7 \%$ )보다 $12.6 \%$ 높 게 나타났으며,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5.4 \%$ 로 조사되었다.

해당 항목의 국민법의식 지수는 53.0점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차원별 국민법의식 지수가 62.51점으로 높 게 나온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향후 구체화된 설문항목을 개 발하여 기본권 외에 일반적인 권리 보호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 외에 일반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소비자나 투자자로서의 권리 보호 등 다양한 권리에 대 한 국민들의 인식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세분화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0>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평균 : 53.00점
( $\mathrm{n}=3,000, \%)$


법이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 면,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56.97점으로 가장 높고, 농/축/수산업(56.85점),

전업주부(56.29점), 블루칼라(55.51점), 무직/기타(48.93점), 학생(48.07점), 화이트칼라(46.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 대(60.62점), 60 대 이상(61.78점) 고 연령층이 40 대 이 하의 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48.10점 $\rightarrow$ 중졸 이하 57.82점), 지 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47.66점 $\rightarrow$ 대도시 56.23점) 법이 국민의 권 리를 보호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7> 특성별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l\|}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6.3 | 19.7 | 35.4 | 32.8 | 5.8 | 26.0 | 38.6 | 53.00 |
| 연령별 | 20대 | 529 | 9.8 | 25.5 | 36.0 | 23.6 | 5.1 | 35.3 | 28.7 | 47.18 |
|  | 30대 | 560 | 10.1 | 25.7 | 35.2 | 26.3 | 2.8 | 35.8 | 29.1 | 46.51 |
|  | 40대 | 644 | 9.7 | 23.7 | 39.6 | 21.8 | 5.1 | 33.4 | 26.9 | 47.21 |
|  | 50대 | 594 | 1.9 | 13.6 | 32.6 | 43.7 | 8.1 | 15.5 | 51.8 | 60.62 |
|  | 60대 이상 | 673 | 1.0 | 11.8 | 33.6 | 46.2 | 7.4 | 12.8 | 53.6 | 61.78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2.2 | 15.7 | 35.4 | 41.7 | 4.9 | 17.9 | 46.6 | 57.82 |
|  | 고졸 | 1,196 | 2.8 | 16.7 | 36.6 | 36.8 | 7.1 | 19.5 | 43.9 | 57.18 |
|  | 대재 이상 | 1,409 | 10.5 | 23.3 | 34.4 | 26.8 | 4.9 | 33.8 | 31.7 | 48.10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3.9 | 21.4 | 26.1 | 40.5 | 8.0 | 25.3 | 48.5 | 56.85 |
|  | 자영업 | 666 | 3.6 | 14.3 | 38.1 | 38.6 | 5.4 | 17.9 | 44.0 | 56.97 |
|  | 블루칼라 | 588 | 5.4 | 18.1 | 34.0 | 33.9 | 8.5 | 23.5 | 42.4 | 55.51 |
|  | 화이트칼라 | 733 | 9.9 | 26.9 | 35.8 | 23.8 | 3.7 | 36.8 | 27.5 | 46.12 |
|  | 전업주부 | 563 | 3.7 | 17.5 | 35.2 | 37.2 | 6.4 | 21.2 | 43.6 | 56.29 |
|  | 학생 | 185 | 9.6 | 23.0 | 36.3 | 27.9 | 3.2 | 32.6 | 31.1 | 48.07 |
|  | 무직/기타 | 132 | 13.1 | 17.8 | 35.1 | 28.1 | 5.8 | 30.9 | 33.9 | 48.93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  |  |  |  | 그렇다 |  |
|  | 체 |  | 3,000 | 6.3 | 19.7 | 35.4 | 32.8 | 5.8 | 26.0 | 38.6 | 53.00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5.2 | 16.8 | 33.3 | 37.0 | 7.6 | 22.0 | 44.6 | 56.23 |
|  | 중소도시 | 918 | 6.0 | 18.9 | 39.5 | 31.5 | 4.2 | 24.9 | 35.7 | 52.29 |
|  | 읍면지역 | 710 | 8.8 | 26.4 | 34.3 | 26.3 | 4.2 | 35.2 | 30.5 | 47.66 |

(4) 평등, 차별 없이 적용

법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 다는 의견이 $39.0 \%$ (전혀 그렇지 않다 $13.7 \%+$ 별로 그렇지 않다 $25.3 \%$ ) 로 그렇다는 의견 $28.4 \%$ (그런 편이다 $24.4 \%+$ 매우 그렇다 $4.0 \%$ )보다 $10.6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2.5 \%$ 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 무 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 는 설문의 경우 $65.2 \%$ 가 동의, $34.8 \%$ 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185 )한 것에 비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 자체만 본다면 $65.2 \%$ 에서 $39.9 \%$ 로 줄어든 것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의견도 $34.8 \%$ 에서 $28.4 \%$ 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008년의 설문 방식과는 다르게 응답문 항에 '보통이다'를 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85)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5면.
＜그림 61＞평등，차별 없이 적용

평균 ：44．95점
（ $\mathrm{n}=3,000, \%$ ）


World Justice Project가 수행한 Rule of Law Index에서는 평등과 관 련한 내용을 3 개의 설문으로 나누고 있으며，Factor 4 （Fundamental Rights）4．1과 Factor 7 （Civil Justice）7．2，Factor 8 （Criminal Justice） 8.4 에 사안별로 구성되어 있다．기본권에 대한＇4．1 평등，차별없는 적용＇ 에서 한국의 지수는 2014년 0．7점，2015년 0．65점을 기록하고 있다．또 한，＇7．2 민사재판에서의 차별없는 적용＇에서는 2014년 0．68점，2015년 0.71 점으로，＇ 8.4 형사재판에서의 차별없는 적용＇에서는 2014년 0．68점， 2015년 0．64점으로 나타났다．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의 평균 종 합 지수는 2014년 0．77점，2015년 0．7점으로 평등에 대한 지수와 유사 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186）이처럼 평균 종합지수나 Factor별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Rule of Law Index에서의 결과와 달리 2015년 국 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50점 미만인 44．95점으로 나타나 평균 종합 지수인 52．88점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19]법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 대(52.70점), 60 대 이상(54.59점)이 40 대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사별/기타가 48.38점으로 가장 높고, 기혼(46.88점), 미혼(38.05점)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51.87점으로 가장 높고, 전업주부(49.21점), 블루칼라(48.93점), 자영업(47.77점), 무직/ 기타(40.56점), 학생(38.72점), 화이트칼라(37.01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39.53점 $\rightarrow$ 중졸 이하 52.07점), 지 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40.07점 $\rightarrow$ 대도시 48.59점) 법이 모든 국민 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8> 특성별 평등, 차별 없이 작용

| 구 분(단위:\%)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13.7 | 25.3 | 32.5 | 24.4 | 4.0 | 39.0 | 28.4 | 44.95 |
| 연령별 | 20대 | 529 | 20.0 | 28.9 | 30.0 | 18.2 | 3.0 | 48.9 | 21.2 | 38.86 |
|  | 30 대 | 560 | 22.2 | 26.7 | 29.2 | 18.4 | 3.4 | 48.9 | 21.8 | 38.54 |
|  | 40대 | 644 | 21.2 | 27.8 | 30.6 | 17.7 | 2.7 | 49.0 | 20.4 | 38.29 |
|  | 50 대 | 594 | 4.9 | 21.8 | 36.8 | 30.9 | 5.7 | 26.7 | 36.6 | 52.70 |
|  | 60대 이상 | 673 | 2.5 | 22.1 | 35.1 | 35.1 | 5.2 | 24.6 | 40.3 | 54.59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1 | 22.8 | 35.8 | 31.0 | 5.2 | 27.9 | 36.2 | 52.07 |
|  | 고졸 | 1,196 | 7.5 | 24.1 | 37.6 | 26.5 | 4.2 | 31.6 | 30.7 | 48.98 |
|  | 대재 이상 | 1,409 | 21.5 | 26.9 | 27.1 | 20.9 | 3.6 | 48.4 | 24.5 | 39.53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9.4 | 15.3 | 39.3 | 30.6 | 5.4 | 24.7 | 36.0 | 51.87 |
|  | 자영업 | 666 | 9.7 | 25.2 | 34.4 | 25.7 | 5.0 | 34.9 | 30.7 | 47.77 |
|  | 블루칼라 | 588 | 10.5 | 21.7 | 34.3 | 28.3 | 5.1 | 32.2 | 33.4 | 48.93 |
|  | 화이트칼라 | 733 | 23.3 | 29.3 | 26.4 | 18.1 | 2.9 | 52.6 | 21.0 | 37.01 |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렁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전 체 | 3,000 | 13.7 | 25.3 | 32.5 | 24.4 | 4.0 | 39.0 | 28.4 | 44.95 |
|  | 전업주부 | 563 | 7.2 | 25.6 | 33.8 | 29.9 | 3.5 | 32.8 | 33.4 | 49.21 |
|  | 학생 | 185 | 19.0 | 27.8 | 35.3 | 15.3 | 2.6 | 46.8 | 17.9 | 38.72 |
|  | 무직/기타 | 132 | 20.4 | 24.7 | 31.2 | 19.5 | 4.1 | 45.1 | 23.6 | 40.56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12.0 | 20.9 | 32.8 | 29.4 | 5.0 | 32.9 | 34.4 | 48.59 |
|  | 중소도시 | 918 | 12.4 | 29.8 | 32.6 | 22.8 | 2.4 | 42.2 | 25.2 | 43.28 |
|  | 읍면지역 | 710 | 18.8 | 28.0 | 31.7 | 17.1 | 4.4 | 46.8 | 21.5 | 40.07 |
| 혼인 상태별 | 미혼 | 672 | 22.4 | 27.6 | 28.5 | 18.2 | 3.2 | 50.0 | 21.4 | 38.05 |
|  | 기혼 | 2,233 | 11.4 | 24.5 | 33.6 | 26.0 | 4.4 | 35.9 | 30.4 | 46.88 |
|  | 별거/사별/기타 | 94 | 6.6 | 27.4 | 32.8 | 32.2 | 1.0 | 34.0 | 33.2 | 48.38 |

(5)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8.9 \%$ (그런 편이다 $54.3 \%+$ 매우 그렿다 $14.6 \%$ )로 그렿지 않다는 의견 $5.0 \%$ (전혀 그렇지 않다 $0.4 \%+$ 별로 그렿지 않다 $4.6 \%$ )보다 $63.9 \%$ 높게 나 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6.0 \%$ 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에 대한 설문에서 $57.3 \%$ 가 찬성하였던 것187)과 비교하여 보더라 도 국민의 준법에 대한 의식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차원 3] 법에 대한 준수 35 번 문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 을 잘 지킨다'에 대한 국민법의식지수가 55.16점인 것과 비교하여 보 더라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법에 대한 준수 필

[^20]요성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준수 정도와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준법수준의 실질적 인 지수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 리 사회 전반의 법의식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2>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평균 : 69.50점 (n=3,000,\%)
68.9\%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 령이 높을수록(20대 65.51점 $\rightarrow$ 60대 이상 72.70점) 높게 나타났고, 혼 인상태별로는 별거/사별/기타가 74.38점으로 가장 높고, 기혼(70.74점), 미혼(64.70점)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75.79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72.07점), 전업주부(69.57점), 블루칼라(69.18점), 화이트칼라(67.36점), 학생(66.90점), 무직/기타(66.80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구성별로는 1 인 가구(64.54점)보다 1 세대 이상의 복수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1세대, 2 세대 가구 각 69.72점, 3 세대 가구 71.79점) 가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9> 특성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begin{array}{\|c\|} \hline \text { 전혀 } \\ \text { 그ㄹㅓㅓㅇㅈㅣ } \\ \text { 않다 } \end{array}$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ㄹㅓㅓㅈㅣ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렿다 |  |
|  | 전 체 |  | 3,000 | 0.4 | 4.6 | 26.0 | 54.3 | 14.6 | 5.0 | 68.9 | 69.50 |
| 연령별 | 20대 | 529 | 1.0 | 6.5 | 32.5 | 49.4 | 10.6 | 7.5 | 60.0 | 65.51 |
|  | 30 대 | 560 | 0.7 | 5.0 | 30.3 | 53.4 | 10.6 | 5.7 | 64.0 | 67.06 |
|  | 40대 | 644 | 0.5 | 4.8 | 27.5 | 50.8 | 16.3 | 5.3 | 67.1 | 69.42 |
|  | 50대 | 594 | 0.2 | 3.4 | 20.9 | 60.1 | 15.4 | 3.6 | 75.5 | 71.79 |
|  | 60 대 이상 | 673 | 0.0 | 3.8 | 20.2 | 57.3 | 18.7 | 3.8 | 76.0 | 72.70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0.0 | 2.1 | 19.5 | 51.5 | 26.9 | 2.1 | 78.4 | 75.79 |
|  | 자영업 | 666 | 0.2 | 4.1 | 20.9 | 57.1 | 17.8 | 4.3 | 74.9 | 72.07 |
|  | 블루칼라 | 588 | 0.7 | 4.6 | 24.4 | 57.9 | 12.4 | 5.3 | 70.3 | 69.18 |
|  | 화이트칼라 | 733 | 0.5 | 5.6 | 30.6 | 50.4 | 12.9 | 6.1 | 63.3 | 67.36 |
|  | 전업주부 | 563 | 0.0 | 4.5 | 25.4 | 57.4 | 12.7 | 4.5 | 70.1 | 69.57 |
|  | 학생 | 185 | 1.2 | 4.6 | 30.5 | 52.6 | 11.0 | 5.8 | 63.6 | 66.90 |
|  | 무직/기타 | 132 | 1.5 | 5.3 | 36.2 | 38.5 | 18.5 | 6.8 | 57.0 | 66.80 |
| 혼인 <br> 상태별 | 미 혼 | 672 | 1.4 | 6.6 | 33.4 | 48.8 | 9.7 | 8.0 | 58.5 | 64.70 |
|  | 기 혼 | 2,233 | 0.2 | 4.2 | 24.0 | 55.9 | 15.8 | 4.4 | 71.7 | 70.74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1.9 | 20.3 | 56.0 | 21.7 | 1.9 | 77.7 | 74.38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 인가구 | 180 | 2.0 | 7.0 | 32.9 | 46.8 | 11.2 | 9.0 | 58.0 | 64.54 |
|  | 1세대 가구 | 787 | 0.3 | 6.0 | 25.2 | 51.6 | 16.9 | 6.3 | 68.5 | 69.72 |
|  | 2세대 가구 | 1,905 | 0.4 | 3.9 | 25.7 | 56.4 | 13.6 | 4.3 | 70.0 | 69.72 |
|  | 3세대 가구 | 127 | 0.0 | 4.2 | 25.0 | 50.2 | 20.6 | 4.2 | 70.8 | 71.79 |

(6) 주위에 범죄 발생시 신고

주위에 범죄 발생시 신고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71.9 \%$ (그 런 편이다 $52.1 \%+$ 매우 그렇다 $19.8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4.3 \%$ (전

혀 그렇지 않다 $0.2 \%+$ 별로 그렇지 않다 $4.1 \%$ ）보다 $67.6 \%$ 높게 나타났 다．단，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3.7 \%$ 로 조사되었다．

이는＇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의＂만일，$\bigcirc \bigcirc$ 님이 뺑소니 장면을 목격하셨다면，어떻게 하시겠습니까？＂설문에서 응답자의 $79.8 \%$ 가 당 연히＂신고한다＂， $14.1 \%$ 의 응답자가＂경우에 따라 신고한다＂고 대답한 반면， $6 \%$ 의 응답자만이＂신고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결과188）와 유사 하다．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6 \%$ 에서 $4.3 \%$ 로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신고 정신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3＞주위에 범죄 발생시 신고

평균 ：71．82점
（ $\mathrm{n}=3,000, \%$ ）


범죄의 신고는 범죄 수사와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 죄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189）즉，『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아 동복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188）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214면．
189）강석구•권창국，『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12．， 21면 참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한편，『공익신고자 보호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마련되 어 있어서 신고자의 신변안전 보호가 가능하며，이를 통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위에 범죄 발생시 신고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학력별 로는 대재 이상（73．46점）에서 높게 나타났고，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76．39점으로 가장 높고，화이트칼라（74．09점），학생（74．04점），무직／기타 （72．79점），자영업（71．58점），전업주부（69．57점），블루칼라（69．45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74．36점）에서，가구구성별로 보면 3세 대 가구（76．15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 （보수 70．87점 $\rightarrow$ 진보 72．70점）에 가까울수록 범죄 발생시 곧바로 신 고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0＞특성별 주위에 범죄 발생시 신고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별로 <br> 그렇지 <br> 않다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0.2 | 4.1 | 23.7 | 52.1 | 19.8 | 4.3 | 71.9 | 71.8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0.5 | 5.6 | 25.2 | 49.4 | 19.3 | 6.1 | 68.7 | 70.36 |
|  | 고졸 | 1，196 | 0.1 | 4.3 | 25.8 | 53.6 | 16.2 | 4.4 | 69.8 | 70.36 |
|  | 대재 이상 | 1，409 | 0.2 | 3.5 | 21.5 | 51.6 | 23.1 | 3.7 | 74.7 | 73.46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0.0 | 2.9 | 22.5 | 40.6 | 34.0 | 2.9 | 74.6 | 76.39 |
|  | 자영업 | 666 | 0.2 | 3.6 | 24.1 | 54.1 | 18.1 | 3.8 | 72.2 | 71.58 |
|  | 블루칼라 | 588 | 0.4 | 5.3 | 24.6 | 55.6 | 14.1 | 5.7 | 69.7 | 69.45 |
|  | 화이트칼라 | 733 | 0.3 | 3.8 | 20.0 | 51.3 | 24.7 | 4.1 | 76.0 | 74.09 |
|  | 전업주부 | 563 | 0.0 | 5.1 | 27.8 | 50.8 | 16.3 | 5.1 | 67.1 | 69.57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0.2 | 4.1 | 23.7 | 52.1 | 19.8 | 4.3 | 71.9 | 71.82 |
|  | 학생 | 185 | 0.0 | 2.7 | 20.9 | 54.0 | 22.4 | 2.7 | 76.4 | 74.04 |
|  | 무직/기타 | 132 | 0.6 | 3.0 | 25.9 | 45.6 | 24.9 | 3.6 | 70.5 | 72.79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0.3 | 4.2 | 22.1 | 54.7 | 18.7 | 4.5 | 73.4 | 71.84 |
|  | 중소도시 | 918 | 0.0 | 4.6 | 27.0 | 52.8 | 15.5 | 4.6 | 68.3 | 69.81 |
|  | 읍면지역 | 710 | 0.3 | 3.4 | 22.5 | 46.1 | 27.6 | 3.7 | 73.7 | 74.36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 인가구 | 180 | 1.0 | 5.6 | 29.8 | 38.8 | 24.8 | 6.6 | 63.6 | 70.20 |
|  | 1세대 가구 | 787 | 0.0 | 4.9 | 20.3 | 54.1 | 20.7 | 4.9 | 74.8 | 72.63 |
|  | 2세대 가구 | 1,905 | 0.2 | 3.8 | 24.9 | 52.5 | 18.6 | 4.0 | 71.1 | 71.35 |
|  | 3 세대 가구 | 127 | 0.0 | 1.8 | 18.3 | 53.3 | 26.6 | 1.8 | 79.9 | 76.15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0.3 | 4.5 | 21.6 | 51.4 | 22.3 | 4.8 | 73.7 | 72.70 |
|  | 중도 | 1,462 | 0.2 | 3.4 | 24.4 | 52.4 | 19.6 | 3.6 | 72.0 | 71.96 |
|  | 보수 | 855 | 0.1 | 5.1 | 24.3 | 52.3 | 18.3 | 5.2 | 70.6 | 70.87 |

(3) 법에 대한 준수
(1) 정부 법준수 정도

정부의 법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 41.7\%(전혀 그렿지 않다 $12.7 \%+$ 별로 그렇지 않다 $29.0 \%$ )로 그렿다는 의견 $25.9 \%$ (그런 편이다 $24.5 \%+$ 매우 그렇다 $1.4 \%$ )보다 $15.8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2.4 \%$ 로 조사되었다.
정부 법준수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는 43.17점으로서 차원 평균인 48.13점을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차원 6]의 '정부의 공정한 집행'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5 \%$ 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의 정부 공정성 신뢰도 설문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23.6 \%$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6.3 \%$ 인 것190） 과 비교하여 볼 때에는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정부，국회，대법원 등에 대한 주요 기관별 신뢰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91)}$ 2012년 기준 중앙정부의 신뢰도는 $53.9 \%$ 로 나타나 있다．

Rule of Law Index에서는 한국의 경우 Factor 6 （Regulatory Enforcement） ＇6．3 비합리적 지연없이 이행되는가＇，＇6．4 적법절차＇에 따라 이행되는가 에 대하여 2014년 0．84점，0．72점에서 2015년 0．95점，0．81점으로 조사192） 되었다．

각 조사분석의 결과가 모두 상이한 것은 각 설문항목의 설문 목적 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이에 대하여서는 지속적 인 조사를 통하여 각 지표간 관계를 도출해가야 할 것이다．
＜그림 64＞정부 법준수 정도

평균 ：43．17졈
（ $n=3,000, \%$ ）


[^21]정부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 수록 $(20$ 대 37.55점 $\rightarrow 60$ 대 이상 50.86점),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39.42점 $\rightarrow$ 중졸 이하 47.86점),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37.32점 $\rightarrow$ 대도시 47.05점)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47.28점으로 가장 높고, 전업주부(46.62점), 블 루칼라(45.21점), 농/축/수산업(41.58점), 무직/기타(38.75점), 화이트칼라 (37.64점), 학생(37.64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사 별/기타가 기혼과 미혼보다 정부는 법을 잘 지킨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 특성별 정부 법준수 정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end{aligned}$ <br>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br> 그렇지 <br> 않다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l\|} \hline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12.7 | 29.0 | 32.4 | 24.5 | 1.4 | 41.7 | 25.9 | 43.17 |
| 연령별 | 20대 | 529 | 19.8 | 31.3 | 28.7 | 19.2 | 0.9 | 51.1 | 20.1 | 37.55 |
|  | 30 대 | 560 | 20.1 | 27.8 | 32.6 | 18.6 | 1.0 | 47.9 | 19.6 | 38.13 |
|  | 40대 | 644 | 16.5 | 31.8 | 33.9 | 16.7 | 1.0 | 48.3 | 17.7 | 38.47 |
|  | 50 대 | 594 | 5.9 | 27.5 | 31.4 | 33.8 | 1.4 | 33.4 | 35.2 | 49.33 |
|  | 60대 이상 | 673 | 3.5 | 27.0 | 34.4 | 32.7 | 2.4 | 30.5 | 35.1 | 50.86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6.5 | 29.0 | 34.4 | 26.8 | 3.3 | 35.5 | 30.1 | 47.86 |
|  | 고졸 | 1,196 | 7.5 | 31.3 | 31.7 | 28.3 | 1.1 | 38.8 | 29.4 | 46.05 |
|  | 대재 이상 | 1,409 | 19.0 | 27.1 | 32.3 | 20.5 | 1.1 | 46.1 | 21.6 | 39.42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11.6 | 33.8 | 32.0 | 22.0 | 0.7 | 45.4 | 22.7 | 41.58 |
|  | 자영업 | 666 | 7.7 | 27.8 | 34.5 | 27.8 | 2.2 | 35.5 | 30.0 | 47.28 |
|  | 블루칼라 | 588 | 10.9 | 29.7 | 28.6 | 29.3 | 1.5 | 40.6 | 30.8 | 45.21 |
|  | 화이트칼라 | 733 | 19.0 | 29.3 | 35.0 | 15.7 | 1.0 | 48.3 | 16.7 | 37.64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end{aligned}$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rray}{\|l} \text { 별로 } \\ \text { 그러d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12.7 | 29.0 | 32.4 | 24.5 | 1.4 | 41.7 | 25.9 | 43.17 |
|  | 전업주부 | 563 | 8.8 | 28.2 | 32.0 | 29.7 | 1.3 | 37.0 | 31.0 | 46.62 |
|  | 학생 | 185 | 19.7 | 29.3 | 31.8 | 19.2 | 0.0 | 49.0 | 19.2 | 37.64 |
|  | 무직/기타 | 132 | 20.2 | 29.9 | 26.1 | 22.2 | 1.5 | 50.1 | 23.7 | 38.75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11.3 | 23.1 | 33.1 | 31.3 | 1.2 | 34.4 | 32.5 | 47.05 |
|  | 중소도시 | 918 | 9.9 | 36.2 | 32.0 | 20.2 | 1.7 | 46.1 | 21.9 | 41.91 |
|  | 읍면지역 | 710 | 19.3 | 31.3 | 31.3 | 16.8 | 1.2 | 50.6 | 18.0 | 37.32 |
| 혼인 상태별 | 미혼 | 672 | 20.2 | 31.1 | 29.8 | 18.2 | 0.8 | 51.3 | 19.0 | 37.08 |
|  | 기혼 | 2,233 | 10.9 | 28.4 | 33.2 | 25.9 | 1.6 | 39.3 | 27.5 | 44.78 |
|  | 별거/사별/기타 | 94 | 4.7 | 30.7 | 30.3 | 34.3 | 0.0 | 35.4 | 34.3 | 48.58 |

(2) 지자체 법준수 정도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9.3 \%$ (전혀 그렇지 않다 $10.1 \%+$ 별로 그렇지 않다 $29.2 \%$ )로 그렇다는 의견 $23.7 \%$ (그런 편이다 $20.4 \%$ +매우 그렇다 $3.3 \%$ )보다 $15.6 \%$ 높게 나타났 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7.0 \%$ 로 조사되었다.

해당 국민법의식 지수는 44.44점으로서 정부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가 43.17점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는 약간 높은 수준 이지만, 차원3 [법에 대한 준수] 평균인 48.13점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신뢰도 는 2012년 기준으로 $56.0 \%$ 로 나타났다. 193)
193)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 국가주요지표 - 부문별지표 - 기관신뢰도 - 통계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 2015.10.30. 최종 검색)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낮 을수록(대재 이상 41.34점 $\rightarrow$ 중졸 이하 49.51점), 지역규모가 클수록 (읍면지역 40.56점 $\rightarrow$ 대도시 46.58점), 주관적 계층수준이 상층일수록 (하층 42.55점 $\rightarrow$ 상층 48.28점)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48.35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47.88점), 블루 칼라(45.87점), 농/축/수산업(42.57점), 학생(40.32점), 화이트칼라(39.76점), 무직/기타(37.57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사별/기타(47.48점)이 기혼(45.77점)과 미혼 (39.56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잘 지킨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표 62> 특성별 지자체 법준수 정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매우 <br> 그렇다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10.1 | 29.2 | 37.0 | 20.4 | 3.3 | 39.3 | 23.7 | 44.44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4.2 | 26.9 | 37.3 | 29.6 | 2.0 | 31.1 | 31.6 | 49.51 |
|  | 고졸 | 1,196 | 5.9 | 31.7 | 36.7 | 22.4 | 3.3 | 37.6 | 25.7 | 46.41 |
|  | 대재 이상 | 1,409 | 15.3 | 27.7 | 37.2 | 16.2 | 3.7 | 43.0 | 19.9 | 41.34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6.7 | 38.2 | 33.1 | 22.0 | 0.0 | 44.9 | 22.0 | 42.57 |
|  | 자영업 | 666 | 5.9 | 28.8 | 37.7 | 23.2 | 4.5 | 34.7 | 27.7 | 47.88 |
|  | 블루칼라 | 588 | 8.3 | 31.5 | 33.0 | 22.6 | 4.5 | 39.8 | 27.1 | 45.87 |
|  | 화이트칼라 | 733 | 14.7 | 29.7 | 39.6 | 13.6 | 2.3 | 44.4 | 15.9 | 39.76 |
|  | 전업주부 | 563 | 8.1 | 23.3 | 39.8 | 24.5 | 4.3 | 31.4 | 28.8 | 48.35 |
|  | 학생 | 185 | 13.8 | 31.1 | 35.5 | 19.0 | 0.5 | 44.9 | 19.5 | 40.32 |
|  | 무직/기타 | 132 | 19.5 | 30.2 | 31.4 | 18.2 | 0.7 | 49.7 | 18.9 | 37.57 |
| 지역 <br> 규모별 | 대도시 | 1,372 | 9.1 | 25.9 | 38.4 | 22.8 | 3.8 | 35.0 | 26.6 | 46.58 |
|  | 중소도시 | 918 | 8.8 | 31.3 | 37.5 | 18.7 | 3.6 | 40.1 | 22.3 | 44.23 |
|  | 읍면지역 | 710 | 13.6 | 32.7 | 33.6 | 18.2 | 2.0 | 46.3 | 20.2 | 40.56 |
| 혼인 <br> 상태별 | 미혼 | 672 | 15.6 | 32.0 | 34.3 | 15.0 | 3.2 | 47.6 | 18.2 | 39.56 |
|  | 기혼 | 2,233 | 8.7 | 28.3 | 37.7 | 22.0 | 3.4 | 37.0 | 25.4 | 45.77 |
|  | 별거/사별/기타 | 94 | 3.3 | 30.5 | 41.3 | 22.8 | 2.1 | 33.8 | 24.9 | 47.48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11.5 | 30.6 | 36.5 | 18.8 | 2.6 | 42.1 | 21.4 | 42.55 |
|  | 중간층 | 1,527 | 8.6 | 28.5 | 37.9 | 21.3 | 3.8 | 37.1 | 25.1 | 45.80 |
|  | 상층 | 122 | 12.8 | 21.5 | 31.5 | 28.2 | 6.0 | 34.3 | 34.2 | 48.28 |

（3）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40.9 \%$（그런 편이다 $34.4 \%+$ 매우 그렇다 $6.5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22.9 \%$（전혀 그렇지 않다 $5.6 \%$＋별로 그렇지 않다 $17.3 \%$ ）보다 $18.0 \%$ 높게 나타났 다．단，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6.2 \%$ 로 조사되었다．

이는 차원6［법의 제정／집행］48번 문항의＇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설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3 \%$ 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나타난＇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 한다는 응답이 $55.3 \%$ 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 $44.7 \%$ 에 비해서 다 소 높게 나타난 바 있다．194）

한편，＇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조사한 대법원의 신뢰도는 2012년 기 $69.2 \%$ 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195)}$

Rule of Law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의 민사적 사법절차에 대한 신속성 및 효율성 평가지수는 0．8점을 나타내고 있으며，2014년 0．74점 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형사적 사법 절차에 대한 지수는 2014년과 동일하게 2015년에도 0．76점을 기록하 였다．${ }^{196)}$

[^22]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그림 66>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는 50 대(59.51점), 60 대 이상(60.15점)이 40 대 이하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57.79점으로 가장 높고, 전업주부(57.26점), 블루 칼라(56.06점), 농/축/수산업(54.84점), 학생(53.18점), 화이트칼라(50.29점), 무직/기타(49.49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50.58점 $\rightarrow$ 대도시 57.26점)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가구구성별로는 1 인 가구보다 1 세대 이상의 복수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의견이 더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3> 특성별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전체 |  |  | 3,000 | 5.6 | 17.3 | 36.2 | 34.4 | 6.5 | 22.9 | 40.9 | 54.74 |
| 연령별 | 20 대 | 529 | 7.3 | 17.0 | 39.8 | 31.1 | 4.7 | 24.3 | 35.8 | 52.25 |
|  | 30 대 | 560 | 10.1 | 18.8 | 34.3 | 31.9 | 4.9 | 28.9 | 36.8 | 50.70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전체 |  |  | 3,000 | 5.6 | 17.3 | 36.2 | 34.4 | 6.5 | 22.9 | 40.9 | 54.74 |
|  | 40대 | 644 | 8.3 | 19.3 | 40.3 | 27.3 | 4.8 | 27.6 | 32.1 | 50.25 |
|  | 50대 | 594 | 1.9 | 16.3 | 32.5 | 40.2 | 9.0 | 18.2 | 49.2 | 59.51 |
|  | 60대 이상 | 673 | 1.2 | 15.1 | 34.4 | 40.5 | 8.8 | 16.3 | 49.3 | 60.15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3.6 | 20.6 | 37.4 | 29.8 | 8.6 | 24.2 | 38.4 | 54.84 |
|  | 자영업 | 666 | 2.9 | 15.5 | 35.6 | 39.4 | 6.6 | 18.4 | 46.0 | 57.79 |
|  | 블루칼라 | 588 | 4.7 | 17.8 | 34.4 | 34.9 | 8.3 | 22.5 | 43.2 | 56.06 |
|  | 화이트칼라 | 733 | 8.9 | 20.0 | 36.4 | 30.5 | 4.2 | 28.9 | 34.7 | 50.29 |
|  | 전업주부 | 563 | 4.5 | 14.5 | 36.1 | 37.2 | 7.7 | 19.0 | 44.9 | 57.26 |
|  | 학생 | 185 | 5.4 | 15.5 | 44.6 | 29.9 | 4.6 | 20.9 | 34.5 | 53.18 |
|  | 무직/기타 | 132 | 11.4 | 19.6 | 35.2 | 27.3 | 6.5 | 31.0 | 33.8 | 49.49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4.8 | 15.6 | 32.7 | 39.5 | 7.4 | 20.4 | 46.9 | 57.26 |
|  | 중소도시 | 918 | 4.5 | 18.3 | 39.6 | 31.2 | 6.4 | 22.8 | 37.6 | 54.20 |
|  | 읍면지역 | 710 | 8.6 | 19.0 | 38.9 | 28.5 | 5.0 | 27.6 | 33.5 | 50.58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 인가구 | 180 | 8.1 | 30.0 | 30.6 | 25.5 | 5.8 | 38.1 | 31.3 | 47.71 |
|  | 1 세대 가구 | 787 | 5.4 | 17.2 | 35.3 | 36.1 | 6.1 | 22.6 | 42.2 | 55.09 |
|  | 2세대 가구 | 1,905 | 5.0 | 16.1 | 37.3 | 34.8 | 6.7 | 21.1 | 41.5 | 55.52 |
|  | 3세대 가구 | 127 | 11.8 | 16.9 | 34.4 | 30.0 | 7.0 | 28.7 | 37.0 | 50.87 |

(4) 기업의 법준수 정도

기업의 법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2.7 \%$ (전 혀 그렇지 않다 $15.5 \%+$ 별로 그렿지 않다 $37.2 \%$ )로 그렿다는 의견 $16.2 \%$ (그런 편이다 $14.0 \%+$ 매우 그렿다 $2.2 \%$ )보다 $36.5 \%$ 높게 나타났 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1.2 \%$ 로 조사되었다.

법에 대한 준수 차원이 48.1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34 번 문항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에 대한 설문의 결과가 37.57 점으로서, 정부(43.17점)나 지자체(44.44점)의 법 준수 지 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률 상승 및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땅 콩회항 사건이나 대기업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 관련 이 슈가 비대칭적 정의감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이어져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97) 즉, 사회규범으로서의 정의가 사회적 인 이슈에 따라 법에 대한 준수 차원의 국민법의식 영역에 반영된 결 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7> 기업의 법준수 정도
평균 : 37.57점
( $\mathrm{n}=3,000, \%$ )


기업의 법준수에 대한 국민법의식지수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업의 준법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과 적용 요건 등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 }^{198)}$

[^23]기업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학력이 낮을 수록（대재 이상 34．28점 $\rightarrow$ 중졸 이하 43．30점），지역규모가 클수록（읍 면지역 34．75점 $\rightarrow$ 대도시 38．97점），주관적 계층수준이 상층일수록（하 층 36．01점 $\rightarrow$ 상층 39．50점）기업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41．18점으로 가장 높고，농／축／수산업（41．08점）， 자영업（39．98점），블루칼라（38．96점），무직／기타（34．74점），학생（33．10점）， 화이트칼라（32．50점）순으로 나타났다．
＜표 64＞특성별 기업의 법준수 정도

| 구 분（단위：\％）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러d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15.5 | 37.2 | 31.2 | 14.0 | 2.2 | 52.7 | 16.2 | 37.57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7.0 | 35.4 | 36.8 | 19.0 | 1.8 | 42.4 | 20.8 | 43.30 |
|  | 고졸 | 1，196 | 10.9 | 40.1 | 31.0 | 15.7 | 2.2 | 51.0 | 17.9 | 39.56 |
|  | 대재 이상 | 1，409 | 21.7 | 35.1 | 29.9 | 11.1 | 2.2 | 56.8 | 13.3 | 34.28 |

『형사정책연구』81，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3．， $65-89$ 면에서는 준법감시제도가 기 업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미국의 준법감시프로그램에 대한 양형지 침（Guideline Manual）과 독일의 질서위반법 제 103 조의 기업주 감독의무 등의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양벌규정에 대한 사업주의 감독의무와 면책기 준을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한편，박성용，＂기업의 준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 도개선 방안 고찰＂，『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총 $28,2012.7 ., 89-109$ 에서는 기업의 준법활동은 효과적인 제재방안 마련과 기업 스스로의 의식변화，자체준법시 스템인 내부통제제도를 통하여 활성화 된다고 보고，양벌규정 개선과 내부통제제도 의 자율성 제고를 통하여 기업의 준법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그리고， 윤상민，＂준법감시제도를 통한 기업범죄예방，＂『법학연구』53，한국법학회，2014．3．， 217－237면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서의 준법감시제도를 소개하고，이를 채택하 고 있는 법률들을 정리하는 한편，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강화하고 독 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구 분(단위:\%)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그렇지 않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gathered} \text { 그ㄹㅓㅚㅈㅣ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15.5 | 37.2 | 31.2 | 14.0 | 2.2 | 52.7 | 16.2 | 37.57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11.3 | 35.1 | 35.2 | 14.8 | 3.6 | 46.4 | 18.4 | 41.08 |
|  | 자영업 | 666 | 10.6 | 39.6 | 30.9 | 17.1 | 1.8 | 50.2 | 18.9 | 39.98 |
|  | 블루칼라 | 588 | 14.3 | 37.0 | 30.8 | 14.2 | 3.7 | 51.3 | 17.9 | 38.96 |
|  | 화이트칼라 | 733 | 21.6 | 38.8 | 29.3 | 8.7 | 1.6 | 60.4 | 10.3 | 32.50 |
|  | 전업주부 | 563 | 11.3 | 34.4 | 34.2 | 18.6 | 1.5 | 45.7 | 20.1 | 41.18 |
|  | 학생 | 185 | 20.4 | 39.2 | 29.9 | 8.9 | 1.7 | 59.6 | 10.6 | 33.10 |
|  | 무직/기타 | 132 | 26.3 | 26.9 | 30.6 | 13.7 | 2.4 | 53.2 | 16.1 | 34.74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15.6 | 34.0 | 31.8 | 15.9 | 2.6 | 49.6 | 18.5 | 38.97 |
|  | 중소도시 | 918 | 13.4 | 40.8 | 29.3 | 14.8 | 1.7 | 54.2 | 16.5 | 37.66 |
|  | 읍면지역 | 710 | 17.8 | 38.5 | 32.6 | 9.3 | 1.9 | 56.3 | 11.2 | 34.75 |
| 주관적 <br> 계층 수준별 | 하층 | 1,352 | 17.4 | 37.1 | 31.0 | 12.9 | 1.6 | 54.5 | 14.5 | 36.01 |
|  | 중간층 | 1,527 | 13.4 | 37.9 | 31.4 | 14.9 | 2.5 | 51.3 | 17.4 | 38.80 |
|  | 상층 | 122 | 19.8 | 28.3 | 31.5 | 15.2 | 5.3 | 48.1 | 20.5 | 39.50 |

(5)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그렿다는 의견이 $39.9 \%$ (그 런 편이다 $37.3 \%+$ 매우 그렇다 $2.6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9.6 \%$ (전 혀 그렇지 않다 $2.4 \%+$ 별로 그렇지 않다 $17.2 \%$ )보다 $20.3 \%$ 높게 나타 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40.5 \%$ 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구성원의 법준수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39.9 \%$ 이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40.5 \%$ 로 나타난 것은 국민 $80 \%$ 이상이 국민 을 포함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법준수 정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 고 있음을 알수 있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의＂○○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설문과 비교하더라도 2008년 에 $37.1 \%$ 의 응답자가＂잘 지켜진다＂고 응답 199）한 것에 비하여 $2.8 \%$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는 제2장의＇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에 대한 응답이 $49.5 \%$ 로서 2008년의 $37.1 \%$ 보다 $12.4 \%$ 상승한 것과도 유 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에서의 설문5）＇본인 스스로의 준법 정 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 지킨다는 의견이 $91.7 \%$ 로 나타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이러한 현상은 준법의식과 준법행동이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은 아니라는＇이중성＇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200）
＜그림 68＞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평균 ：55．16점
（ $\mathrm{n}=3, \mathbf{0 0 0}$ \％）


199）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93면．
200）황승흠，＂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총 22（2），2010．2．，81－86면에서는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나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하여 본인 스스로의 준법의식은 높다는 등의 생각을＇이중성＇으로 판단하고 준법의식과 준법행동의 일치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견해는 김준석•조진만•엄기홍，＂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서울행정학회』，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2011．2．，346면에서도 유 사하게 드러나고 있다．즉 부패인식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부패정 도가 실제 부패도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20대 49.21점 $\rightarrow$ 60대 이상 62.19점),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52.02점 $\rightarrow$ 중졸 이하 60.39점), 주관적 계층수준이 상층일수록 (하층 53.92점 $\rightarrow$ 상층 57.16점)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에 대한 점수 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63.93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58.38점), 전업주부(58.19점), 블루칼라(56.31점), 화이트칼라(50.12점), 무직/기타 (49.21점), 학생(48.54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구성별로 보면 1 인 가구보다 1 세대 이상의 복수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우리 사회 구성 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5> 특성별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br> 않다 |  |  |  |  |  | 그렇다 |  |
|  | 저 체 |  | 3,000 | 2.4 | 17.2 | 40.5 | 37.3 | 2.6 | 19.6 | 39.9 | 55.16 |
| 연령별 | 20대 | 529 | 4.9 | 25.2 | 40.4 | 27.1 | 2.4 | 30.1 | 29.5 | 49.21 |
|  | 30 대 | 560 | 3.8 | 21.4 | 45.2 | 27.8 | 1.9 | 25.2 | 29.7 | 50.63 |
|  | 40대 | 644 | 2.9 | 19.3 | 46.4 | 29.6 | 1.9 | 22.2 | 31.5 | 52.06 |
|  | 50 대 | 594 | 0.5 | 11.9 | 36.9 | 48.3 | 2.5 | 12.4 | 50.8 | 60.10 |
|  | 60대 이상 | 673 | 0.3 | 10.1 | 34.3 | 51.0 | 4.2 | 10.4 | 55.2 | 62.19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0.8 | 10.6 | 38.8 | 45.9 | 3.9 | 11.4 | 49.8 | 60.39 |
|  | 고졸 | 1,196 | 1.5 | 15.4 | 39.4 | 40.6 | 3.1 | 16.9 | 43.7 | 57.09 |
|  | 대재 이상 | 1,409 | 3.5 | 20.6 | 41.9 | 32.1 | 1.9 | 24.1 | 34.0 | 52.05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0.7 | 8.3 | 30.7 | 55.4 | 5.0 | 9.0 | 60.4 | 63.93 |
|  | 자영업 | 666 | 0.9 | 13.2 | 40.7 | 41.7 | 3.5 | 14.1 | 45.2 | 58.38 |
|  | 블루칼라 | 588 | 1.7 | 17.2 | 38.1 | 40.2 | 2.8 | 18.9 | 43.0 | 56.31 |
|  | 화이트칼라 | 733 | 4.3 | 20.1 | 48.1 | 25.8 | 1.7 | 24.4 | 27.5 | 50.12 |


| (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2.4 | 17.2 | 40.5 | 37.3 | 2.6 | 19.6 | 39.9 | 55.16 |
|  | 전업주부 | 563 | 1.5 | 13.8 | 37.9 | 44.1 | 2.8 | 15.3 | 46.9 | 58.19 |
|  | 학생 | 185 | 2.7 | 30.6 | 37.1 | 29.1 | 0.5 | 33.3 | 29.6 | 48.54 |
|  | 무직/기타 | 132 | 6.9 | 25.4 | 34.3 | 30.8 | 2.6 | 32.3 | 33.4 | 49.21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 인가구 | 180 | 2.6 | 21.2 | 49.1 | 26.1 | 1.0 | 23.8 | 27.1 | 50.40 |
|  | 1 세대 가구 | 787 | 2.2 | 15.3 | 40.6 | 38.7 | 3.1 | 17.5 | 41.8 | 56.31 |
|  | 2 세대 가구 | 1,905 | 2.4 | 17.6 | 39.4 | 38.1 | 2.5 | 20.0 | 40.6 | 55.16 |
|  | 3세대 가구 | 127 | 1.8 | 17.4 | 44.5 | 32.9 | 3.5 | 19.2 | 36.4 | 54.70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2.6 | 19.5 | 39.3 | 36.9 | 1.7 | 22.1 | 38.6 | 53.92 |
|  | 중간층 | 1,527 | 2.1 | 15.5 | 41.7 | 37.5 | 3.3 | 17.6 | 40.8 | 56.09 |
|  | 상층 | 122 | 3.4 | 13.4 | 38.7 | 40.1 | 4.4 | 16.8 | 44.5 | 57.16 |

(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1) 신체의 자유 보장

법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 견이 $57.1 \%$ (그런 편이다 $52.0 \%+$ 매우 그렇다 $5.1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3.8 \%$ (전혀 그렇지 않다 $3.2 \%+$ 별로 그렿지 않다 $10.6 \%$ )보다 $43.3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9.1 \%$ 로 조사되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가 61.28 점으로 차원 4 [법에 의 한 기본권 보장]의 평균인 62.51점보다 낮게 나온 것은 국민의 신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차원 6 의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 행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가 41.63 점으로 낮게 나오고 $44.4 \%$ 만이 공 정하게 집행된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헌법은 제 12 조 1 항에서＇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다시 제3항에서는＇누구든지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방법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 본다면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는 그 관련성이 강한 편이다．신체의 자유 보장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는 61.28 점으로 차원 4 ［법에 의한 기본 권］보장의 평균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으나，차원6［법의 제정／집행］의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와 비교는 41．63점으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다．

## ＜그림 69＞신체의 자유 보장



Rule of Law Index의 Factor 8 （Criminal Justice）8．7에서는 형사상 적 법절차에 대하여 설문을 두고 있으며，한국의 경우에 2014년 0．77점， 2015년 0．7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201）

[^24]신체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 (67.90점), 60 대 이상(68.09점)이 40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65.85점으로 가장 높고, 농/축/수산업(63.49점), 블루칼라(63.44점), 전업주부(63.44점), 학생(59.19점), 화이트칼라(55.13점), 무직/기타(54.11점)순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는 1 인가구보다 1 세대 이상의 복수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점수가 더 높고, 주관적 계층수준별로는 상층과 하층보다 중 간층(62.72점)이 신체의 자유 보장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표 66> 특성별 신체의 자유 보장

| 구 분 <br> (단위:\%)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3.2 | 10.6 | 29.1 | 52.0 | 5.1 | 13.8 | 57.1 | 61.28 |
| 연령별 | 20대 | 529 | 5.6 | 13.6 | 32.1 | 43.7 | 5.0 | 19.2 | 48.7 | 57.19 |
|  | 30대 | 560 | 5.7 | 15.3 | 32.6 | 43.4 | 3.0 | 21.0 | 46.4 | 55.65 |
|  | 40대 | 644 | 4.3 | 13.5 | 38.3 | 40.4 | 3.5 | 17.8 | 43.9 | 56.29 |
|  | 50대 | 594 | 0.8 | 5.6 | 21.7 | 65.1 | 6.9 | 6.4 | 72.0 | 67.90 |
|  | 60대 이상 | 673 | 0.3 | 5.9 | 21.6 | 65.4 | 6.8 | 6.2 | 72.2 | 68.09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3.0 | 7.0 | 26.7 | 59.6 | 3.7 | 10.0 | 63.3 | 63.49 |
|  | 자영업 | 666 | 1.3 | 7.9 | 22.9 | 61.9 | 6.0 | 9.2 | 67.9 | 65.85 |
|  | 블루칼라 | 588 | 2.0 | 9.4 | 27.2 | 55.6 | 5.8 | 11.4 | 61.4 | 63.44 |
|  | 화이트칼라 | 733 | 5.0 | 16.8 | 34.1 | 40.5 | 3.5 | 21.8 | 44.0 | 55.13 |
|  | 전업주부 | 563 | 2.7 | 7.4 | 29.6 | 54.1 | 6.2 | 10.1 | 60.3 | 63.44 |
|  | 학생 | 185 | 3.8 | 10.3 | 35.6 | 45.9 | 4.4 | 14.1 | 50.3 | 59.19 |
|  | 무직/기타 | 132 | 9.9 | 12.5 | 32.2 | 42.1 | 3.3 | 22.4 | 45.4 | 54.11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3.2 | 10.6 | 29.1 | 52.0 | 5.1 | 13.8 | 57.1 | 61.28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인가구 | 180 | 4.4 | 18.8 | 36.3 | 37.3 | 3.1 | 23.2 | 40.4 | 54.01 |
|  | 1세대 가구 | 787 | 3.1 | 12.5 | 29.4 | 51.0 | 4.0 | 15.6 | 55.0 | 60.03 |
|  | 2세대 가구 | 1,905 | 2.9 | 8.9 | 28.4 | 54.1 | 5.7 | 11.8 | 59.8 | 62.71 |
|  | 3세대 가구 | 127 | 6.5 | 12.2 | 28.9 | 48.5 | 4.0 | 18.7 | 52.5 | 57.82 |
| 주관적 <br> 계층 수준별 | 하층 | 1,352 | 3.6 | 11.3 | 30.7 | 50.2 | 4.1 | 14.9 | 54.3 | 59.99 |
|  | 중간층 | 1,527 | 2.7 | 9.6 | 27.8 | 53.9 | 6.0 | 12.3 | 59.9 | 62.72 |
|  | 상층 | 122 | 5.0 | 15.4 | 27.8 | 48.2 | 3.5 | 20.4 | 51.7 | 57.46 |

(2)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51.9 \%$ (그런 편이다 $42.2 \%+$ 매우 그렇다 $9.7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2.6 \%$ (전혀 그렇지 않다 $2.4 \%$ +별로 그렇지 않다 $10.2 \%$ )보다 $39.3 \%$ 높게 나 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5.5 \%$ 로 조사되었다.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에 대하여서는 국민법의식 지수가 61.66점 으로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평균인 62.51점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청원 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청원의 상대방은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정부 는 향후 국민의 청원권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절차 마련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다.
＜그림 70＞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에서는 Factor 3 （Open Government）3．3에서 정부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국민참여에 관한 설문 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2014년에는 0．65점，2015년에는 0．7점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민법의식지수와 비교해 볼 때 조금 높게 분석되어 있다．${ }^{2022)}$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연 령별로는 60 대 이상（66．38점）이 가장 높고， 30 대（56．2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65．29점으로 가장 높고，농／축／수산업（63．92점）， 블루칼라（63．73점），학생（62．77점），전업주부（61．86점），무직／기타（58．28점）， 화이트칼라（56．48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57．82점 $\rightarrow$ 대도시 63．82점）점수 가 높고，혼인상태별로는 별거／사별／기타（63．54점）가 기혼（62．76점）과 미 혼（57．75점）보다 법은 이의 제기 및 청원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5]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표 67> 특성별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left.\begin{array}{c|c|c|c|c|c|c|c|c|c|c|c|}\hline \begin{array}{c}\text { 구 분 } \\ \text { (단위:\%) }\end{array} & \begin{array}{c}\text { 응답자 } \\ \text { 수 } \\ \text { (명) }\end{array} & \begin{array}{c}\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end{array} \\ \hline\end{array} \begin{array}{c}\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end{array}\right)$
(3)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0.7 \%$ (그런 편이다 $46.3 \%+$ 매우 그렇다 $14.4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9.7 \%$ (전혀

그렇지 않다 $2.0 \%$＋별로 그렇지 않다 $7.7 \%$ ）보다 $51 \%$ 높게 나타났다． 단，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9.6 \%$ 로 조사되었다．

헌법 제2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제 19 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 정함으로 인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는 차원4［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평균인 62．51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전체 평균인 52．88점 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반국민들이 국내에서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 유는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1＞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 $\mathrm{n}=3,000, \%$ ）
60．7\％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 Factor 4（Fundamental Rights） 4．5에서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하여 한국의 지수는 2014년 0．64점， 2015년 0．69점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민법의식지수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203）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연령별로 는 50 대（70．82점）， 60 대 이상（71．09점）이 40 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134；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 132.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69.94점으로 가장 높고, 농/축/수산업(68.19점), 블루칼라(68.16점), 전업주부(66.27점), 학생(63.03점), 무직/기타(62.04점), 화이트칼라(60.93점)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67.03점으 로 가장 높고, 별거/사별/기타(66.50점), 미혼(61.85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구성별로 보면 1 인가구보다 1 세대 이상의 복수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법은 종교/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8> 특성별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별로 <br> 그렇지 <br> 않다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  |  |  |  | 그렇다 |  |
|  | 체 |  | 3,000 | 2.0 | 7.7 | 29.6 | 46.3 | 14.4 | 9.7 | 60.7 | 65.85 |
| 연령별 | 20대 | 529 | 2.5 | 9.7 | 33.0 | 42.8 | 12.1 | 12.2 | 54.9 | 63.10 |
|  | 30대 | 560 | 4.5 | 9.0 | 36.0 | 39.3 | 11.2 | 13.5 | 50.5 | 60.88 |
|  | 40대 | 644 | 3.4 | 8.3 | 34.5 | 43.2 | 10.7 | 11.7 | 53.9 | 62.36 |
|  | 50대 | 594 | 0.1 | 6.1 | 21.9 | 54.1 | 17.7 | 6.2 | 71.8 | 70.82 |
|  | 60대 이상 | 673 | 0.0 | 5.7 | 23.7 | 51.1 | 19.4 | 5.7 | 70.5 | 71.09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0.8 | 7.9 | 25.4 | 49.6 | 16.3 | 8.7 | 65.9 | 68.19 |
|  | 자영업 | 666 | 0.9 | 6.5 | 22.8 | 51.5 | 18.3 | 7.4 | 69.8 | 69.94 |
|  | 블루칼라 | 588 | 1.4 | 7.5 | 24.6 | 49.8 | 16.6 | 8.9 | 66.4 | 68.16 |
|  | 화이트칼라 | 733 | 3.9 | 9.0 | 36.9 | 39.8 | 10.4 | 12.9 | 50.2 | 60.93 |
|  | 전업주부 | 563 | 1.3 | 6.8 | 31.1 | 47.1 | 13.6 | 8.1 | 60.7 | 66.27 |
|  | 학생 | 185 | 3.0 | 6.6 | 35.5 | 44.9 | 9.9 | 9.6 | 54.8 | 63.03 |
|  | 무직/기타 | 132 | 2.9 | 11.6 | 34.7 | 36.0 | 14.8 | 14.5 | 50.8 | 62.04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렁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렁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c}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2.0 | 7.7 | 29.6 | 46.3 | 14.4 | 9.7 | 60.7 | 65.85 |
| $\begin{gathered} \text { 혼인 } \\ \text { 상태별 } \end{gathered}$ | 미혼 | 672 | 3.8 | 9.6 | 32.8 | 43.4 | 10.5 | 13.4 | 53.9 | 61.85 |
|  | 기혼 | 2,233 | 1.6 | 6.9 | 29.0 | 47.1 | 15.5 | 8.5 | 62.6 | 67.03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13.4 | 22.2 | 49.5 | 14.9 | 13.4 | 64.4 | 66.50 |
| $\begin{gathered} \text { 가구 } \\ \text { 구성별 } \end{gathered}$ | 1 인가구 | 180 | 3.6 | 13.1 | 33.3 | 39.3 | 10.6 | 16.7 | 49.9 | 60.06 |
|  | 1세대 가구 | 787 | 2.3 | 8.4 | 29.7 | 44.2 | 15.4 | 10.7 | 59.6 | 65.45 |
|  | 2세대 가구 | 1,905 | 1.6 | 7.0 | 29.1 | 47.7 | 14.6 | 8.6 | 62.3 | 66.65 |
|  | 3세대 가구 | 127 | 3.4 | 5.5 | 31.8 | 48.6 | 10.8 | 8.9 | 59.4 | 64.47 |

(4) 참정권 보장

참정권 보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2.6 \%$ (그런 편이다 $46.2 \%+$ 매우 그렇다 $16.4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8.1 \%$ (전혀 그렇지 않다 $1.8 \%$ +별로 그렇지 않다 $6.3 \%$ )보다 $54.5 \%$ 높게 나타났다. 단, 보 통이다라는 의견은 $29.3 \%$ 로 조사되었다.

헌법 제 24 조에서는 선거권, 제 25 조에는 공무담임권, 제 72 조 및 제 130조 2항에는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 제정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도 가능하다. 이러한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능 동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이다.

참정권 보장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는 67.3점으로서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평균 62.51점이나 전체 평균 52.88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참정권 보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62．6\％

46.2
29.3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에서는 Factor 3 （Open Government）의＇3．3 국민참여＇，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2014년에는 0．65점，2015년에는 0．7점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민법의식 지수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204）다만，Rule of Law Index에서의 설문은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접근권으로서의 국민참여에 대하여 묻고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범위라는 차이가 있다．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연령별로는 50 대 （71．84점）， 60 대 이상（71．34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70．60점으로 가장 높고，블루칼라（68．44점），전업 주부（67．94점），농／축／수산업（67．48점），학생（67．05점），무직／기타（64．51점）， 화이트칼라（63．43점）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클수록（읍면지역 64．55점 $\rightarrow$ 대도시 68．65점）참정권 보 장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주관적 계층수준별로는 중간층（68．27점）이

[^26]하층과 상층보다 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9> 특성별 참정권 보장

| 구 분(단위:\%)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그렇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1.8 | 6.3 | 29.3 | 46.2 | 16.4 | 8.1 | 62.6 | 67.30 |
| 연령별 | 20대 | 529 | 2.4 | 6.9 | 31.1 | 43.7 | 16.0 | 9.3 | 59.7 | 65.97 |
|  | 30 대 | 560 | 4.4 | 8.6 | 33.0 | 42.2 | 11.8 | 13.0 | 54.0 | 62.10 |
|  | 40대 | 644 | 2.4 | 5.3 | 35.9 | 44.7 | 11.7 | 7.7 | 56.4 | 64.51 |
|  | 50 대 | 594 | 0.0 | 5.2 | 24.8 | 47.3 | 22.6 | 5.2 | 69.9 | 71.84 |
|  | 60대 이상 | 673 | 0.2 | 5.8 | 22.3 | 52.0 | 19.7 | 6.0 | 71.7 | 71.34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0.8 | 5.9 | 32.0 | 45.4 | 16.0 | 6.7 | 61.4 | 67.48 |
|  | 자영업 | 666 | 0.8 | 4.6 | 25.9 | 48.7 | 20.0 | 5.4 | 68.7 | 70.60 |
|  | 블루칼라 | 588 | 0.8 | 5.9 | 28.4 | 48.4 | 16.5 | 6.7 | 64.9 | 68.44 |
|  | 화이트칼라 | 733 | 3.1 | 8.2 | 33.8 | 41.4 | 13.4 | 11.3 | 54.8 | 63.43 |
|  | 전업주부 | 563 | 1.4 | 6.2 | 27.3 | 49.4 | 15.7 | 7.6 | 65.1 | 67.94 |
|  | 학생 | 185 | 1.6 | 7.2 | 29.9 | 44.3 | 17.1 | 8.8 | 61.4 | 67.05 |
|  | 무직/기타 | 132 | 6.4 | 5.3 | 30.1 | 40.7 | 17.7 | 11.7 | 58.4 | 64.51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1.8 | 5.4 | 27.9 | 46.2 | 18.7 | 7.2 | 64.9 | 68.65 |
|  | 중소도시 | 918 | 1.3 | 7.0 | 27.8 | 48.5 | 15.4 | 8.3 | 63.9 | 67.42 |
|  | 읍면지역 | 710 | 2.3 | 7.2 | 33.9 | 43.3 | 13.3 | 9.5 | 56.6 | 64.55 |
| 주관적 <br> 계층 수준별 | 하 층 | 1,352 | 1.9 | 6.7 | 30.1 | 47.2 | 14.1 | 8.6 | 61.3 | 66.24 |
|  | 중간층 | 1,527 | 1.6 | 5.8 | 28.8 | 45.3 | 18.5 | 7.4 | 63.8 | 68.27 |
|  | 상 층 | 122 | 2.6 | 8.1 | 25.2 | 47.0 | 17.1 | 10.7 | 64.1 | 66.98 |

（5）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44.4 \%$（그런 편이다 $38.3 \%+$ 매우 그렇다 $6.1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7.4 \%$（전혀 그렇지 않다 $4.2 \%$＋별로 그렇지 않다 $13.2 \%$ ）보다 $27.0 \%$ 높 게 나타났다．단，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8.3 \%$ 로 조사되었다．
헌법 제 21 조 제 1 항에서는＂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 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밖에도 집회에 관 하여서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결사에 관하여서는『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 장을 묻는 본 설문에서의 국민법의식 지수는 57．22로서 차원 내에서 도 가장 하위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3＞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Rule of Law Index에서는 Factor 4 （Fundamental Rights）의 4．4와 4.7 설문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각 묻고 있으며，한 국의 경우 2014년 0．75점과 0．73점，2015년에는 0．77점，0．72점으로 국

민법의식지수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205）이러한 차이는 직관적인 인식을 묻는 국민법의식지수 설문과 달리 Rule of Law Index의 설문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응답자의 행위판단을 묻는 방 식을 취하고 있어서 다소 다른 결과를 나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 대（62．82점）， 60 대 이상（62．94점）이 40 대 이하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60．87점으로 가장 높고，블루칼라（60．49점），농／축／ 수산업（59．32점），전업주부（58．68점），학생（53．63점），화이트칼라（51．85점）， 무직／기타（50．84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53．21점 $\rightarrow$ 중졸 이하 62．82점），이념 성향이 보수에 가까울수록（진보 53．57점 $\rightarrow$ 보수 63．86점）법이 언론／출 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0＞특성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205）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134；World Justice Project，${ }^{『}$ Rule of Law Index 2015』，p． 132.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 \text { (명) } \end{gathered}$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별로 <br> 그렇지 <br> 않다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c}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4.2 | 13.2 | 38.3 | 38.3 | 6.1 | 17.4 | 44.4 | 57.2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1.0 | 10.1 | 34.6 | 45.1 | 9.2 | 11.1 | 54.3 | 62.82 |
|  | 고졸 | 1,196 | 1.9 | 11.0 | 38.3 | 42.5 | 6.3 | 12.9 | 48.8 | 60.10 |
|  | 대재 이상 | 1,409 | 7.0 | 15.9 | 39.3 | 32.8 | 5.0 | 22.9 | 37.8 | 53.21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1.6 | 17.8 | 31.2 | 40.6 | 8.8 | 19.4 | 49.4 | 59.32 |
|  | 자영업 | 666 | 1.6 | 11.6 | 35.4 | 44.3 | 7.0 | 13.2 | 51.3 | 60.87 |
|  | 블루칼라 | 588 | 2.5 | 9.4 | 39.3 | 41.5 | 7.4 | 11.9 | 48.9 | 60.49 |
|  | 화이트칼라 | 733 | 7.7 | 16.3 | 40.7 | 31.3 | 3.9 | 24.0 | 35.2 | 51.85 |
|  | 전업주부 | 563 | 2.6 | 11.8 | 39.9 | 39.8 | 5.9 | 14.4 | 45.7 | 58.68 |
|  | 학생 | 185 | 7.1 | 17.7 | 34.8 | 34.6 | 5.9 | 24.8 | 40.5 | 53.63 |
|  | 무직/기타 | 132 | 10.9 | 15.3 | 39.7 | 27.8 | 6.3 | 26.2 | 34.1 | 50.84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7.3 | 16.4 | 36.5 | 34.3 | 5.5 | 23.7 | 39.8 | 53.57 |
|  | 중도 | 1,462 | 4.6 | 14.3 | 41.9 | 34.8 | 4.4 | 18.9 | 39.2 | 55.05 |
|  | 보수 | 855 | 1.1 | 8.6 | 33.4 | 47.4 | 9.5 | 9.7 | 56.9 | 63.86 |

(6)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56.3 \%$ (그 런 편이다 $48.6 \%+$ 매우 그렇다 $7.7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8.9 \%$ (전혀 그렇지 않다 $1.9 \%+$ 별로 그렇지 않다 $7.0 \%$ )보다 $47.4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4.8 \%$ 로 조사되었다.
헌법 제 23 조 제 1 항과 제 22 조 제 2 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저작자•발 명가 - 예술가들의 무체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헌 법 제 13 조 제 2 항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여 재 산권 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광업권•농지소

유권 등)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재산권 행 사가 일정부분 제한되기도 한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는 63.29점으로서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인 52.88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림 74>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로 보면 50 대(67.71점), 60 대 이상(68.51점)이 40 대 이하보다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66.75점으로 가장 높고, 농/축/수산업(65.89점), 블루칼라(64.86점), 전업주부(64.07점), 학생(60.62점), 화이트칼라(59.62점), 무직/기타(57.05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60.15점 $\rightarrow$ 대도시 64.63점)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71> 특성별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  |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그렇지 않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1.9 | 7.0 | 34.8 | 48.6 | 7.7 | 8.9 | 56.3 | 63.29 |
| 연령별 | 20대 | 529 | 2.4 | 9.2 | 38.4 | 42.9 | 7.2 | 11.6 | 50.1 | 60.84 |
|  | 30 대 | 560 | 4.2 | 8.6 | 39.7 | 43.0 | 4.5 | 12.8 | 47.5 | 58.72 |
|  | 40대 | 644 | 2.3 | 9.2 | 42.0 | 39.9 | 6.5 | 11.5 | 46.4 | 59.74 |
|  | 50 대 | 594 | 0.1 | 5.2 | 27.8 | 57.5 | 9.4 | 5.3 | 66.9 | 67.71 |
|  | 60대 이상 | 673 | 0.6 | 3.5 | 27.4 | 58.1 | 10.4 | 4.1 | 68.5 | 68.51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0.8 | 5.1 | 31.0 | 56.1 | 7.0 | 5.9 | 63.1 | 65.89 |
|  | 자영업 | 666 | 0.8 | 5.3 | 28.2 | 57.5 | 8.2 | 6.1 | 65.7 | 66.75 |
|  | 블루칼라 | 588 | 1.1 | 7.0 | 32.2 | 50.5 | 9.1 | 8.1 | 59.6 | 64.86 |
|  | 화이트칼라 | 733 | 3.1 | 9.8 | 40.5 | 38.9 | 7.7 | 12.9 | 46.6 | 59.62 |
|  | 전업주부 | 563 | 1.8 | 4.9 | 35.1 | 51.4 | 6.7 | 6.7 | 58.1 | 64.07 |
|  | 학생 | 185 | 1.6 | 8.8 | 40.2 | 44.4 | 5.0 | 10.4 | 49.4 | 60.62 |
|  | 무직/기타 | 132 | 5.3 | 9.2 | 43.9 | 35.2 | 6.4 | 14.5 | 41.6 | 57.05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1.9 | 6.1 | 33.2 | 49.3 | 9.5 | 8.0 | 58.8 | 64.63 |
|  | 중소도시 | 918 | 1.8 | 6.6 | 33.2 | 51.9 | 6.5 | 8.4 | 58.4 | 63.72 |
|  | 읍면지역 | 710 | 1.9 | 9.5 | 40.2 | 42.8 | 5.6 | 11.4 | 48.4 | 60.15 |

(5) 법의 실효성 보장
(1)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법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 이 $42.4 \%$ (그런 편이다 $37.0 \%+$ 매우 그렇다 $5.4 \%$ )로 그렇지 않다는 의 견 $28.1 \%$ (전혀 그렇지 않다 $5.6 \%$ +별로 그렇지 않다 $22.5 \%$ )보다 $14.3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9.5 \%$ 로 조사되었다.

법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가에 대하여 묻고 있는 본 설문문항 지수가 53.51점으로 나타난 것은 차원1 [법에 대한 관심]의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지수가 47.31점인 것과도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실제로 국민 개개인 간의 생활관계에 대한 사법 영역에서, 그 리고 우리 주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나 분쟁 등과 같은 공법 영역에서 모두 우리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 생 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법률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법과의 거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홍보프로그램과 교육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75>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법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 보면, 연령별로는 50 대(59.57점), 60 대 이상(59.62점)이 40 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61.47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56.88점), 블루칼라(54.62점), 전업주부(54.56점), 학생(49.91점), 화이트칼라(49.13점), 무직/기타(48.44점)순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49.96점 $\rightarrow$ 중졸 이하 59.16점), 주 관적 계층수준이 상층일수록(하층 51.47점 $\rightarrow$ 상층 55.26 점) 법이 국민 의 일상생활을 반영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2> 특성별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 구 분(단위:\%)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그렁지 않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5.6 | 22.5 | 29.5 | 37.0 | 5.4 | 28.1 | 42.4 | 53.51 |
| 연령별 | 20대 | 529 | 7.6 | 25.4 | 30.2 | 31.4 | 5.5 | 33.0 | 36.9 | 50.45 |
|  | 30대 | 560 | 9.1 | 25.8 | 33.4 | 28.0 | 3.8 | 34.9 | 31.8 | 47.91 |
|  | 40대 | 644 | 7.3 | 26.0 | 34.7 | 27.8 | 4.2 | 33.3 | 32.0 | 48.91 |
|  | 50대 | 594 | 2.7 | 18.3 | 24.9 | 46.4 | 7.7 | 21.0 | 54.1 | 59.57 |
|  | 60대 이상 | 673 | 2.4 | 17.8 | 24.7 | 49.2 | 5.9 | 20.2 | 55.1 | 59.6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4.1 | 15.2 | 25.7 | 49.9 | 5.0 | 19.3 | 54.9 | 59.16 |
|  | 고졸 | 1,196 | 2.7 | 21.6 | 30.3 | 40.5 | 4.9 | 24.3 | 45.4 | 55.82 |
|  | 대재 이상 | 1,409 | 8.6 | 25.3 | 29.8 | 30.3 | 6.0 | 33.9 | 36.3 | 49.96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5.8 | 9.4 | 25.5 | 51.7 | 7.6 | 15.2 | 59.3 | 61.47 |
|  | 자영업 | 666 | 2.9 | 20.4 | 29.2 | 41.2 | 6.3 | 23.3 | 47.5 | 56.88 |
|  | 블루칼라 | 588 | 5.5 | 22.0 | 26.4 | 40.7 | 5.4 | 27.5 | 46.1 | 54.62 |
|  | 화이트칼라 | 733 | 8.0 | 27.2 | 30.6 | 28.5 | 5.7 | 35.2 | 34.2 | 49.13 |
|  | 전업주부 | 563 | 4.8 | 20.5 | 30.5 | 40.1 | 4.1 | 25.3 | 44.2 | 54.56 |
|  | 학생 | 185 | 6.7 | 24.6 | 36.7 | 26.6 | 5.5 | 31.3 | 32.1 | 49.91 |
|  | 무직/기타 | 132 | 8.9 | 27.4 | 28.1 | 32.3 | 3.3 | 36.3 | 35.6 | 48.44 |
| 주관적 <br> 계층 수준별 | 하 층 | 1,352 | 6.5 | 23.8 | 31.0 | 34.6 | 4.1 | 30.3 | 38.7 | 51.47 |
|  | 중간층 | 1,527 | 4.7 | 21.7 | 28.1 | 39.2 | 6.3 | 26.4 | 45.5 | 55.18 |
|  | 상 층 | 122 | 7.8 | 17.6 | 30.0 | 35.2 | 9.5 | 25.4 | 44.7 | 55.26 |

（2）이웃 간 분쟁 감소
법의 이웃 간 분쟁 감소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48.8 \%$（그 런 편이다 $40.8 \%+$ 매우 그렇다 $8.0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8.0 \%$（전 혀 그렇지 않다 $3.6 \%+$ 별로 그렇지 않다 $14.4 \%$ ）보다 $30.8 \%$ 높게 나타 났다．단，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3.2 \%$ 로 조사되었다．

이웃 간 분쟁 감소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는 58．83점으로서 차원5 ［법의 실효성 보장］의 평균 55．34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정부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하여서 일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다．아파트 등 층간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아래 층에 소음 의 제거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소음발생주체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 217 조 제 1 항의 규정과 『주택법』 제 44 조의 2 의 규 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206）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 년 4월 10 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에서 지켜야할 생활 소음 의 기준을 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인접세대와의 냄새나 연기에 대한 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법적 기준 마련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6）소음，매연，진동，오수의 유입 등에 대한 이처럼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토지사용 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이익 침해에 대해 민법 제 217 조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청주지법 1998．2．26．선고 97카합613．）．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그림 76> 이웃 간 분쟁 감소


법의 이웃 간 분쟁 감소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로 50 대(66.45점), 60 대 이상(66.35점)이 40 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63.71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63.20점), 블루칼라(61.23점), 전업주부(59.32점), 학생(55.21점), 무직/기타(54.07점), 화이트칼라(53.46점)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54.32점 $\rightarrow$ 중졸 이하 63.80점), 지역규 모가 클수록(읍면지역 54.13점 $\rightarrow$ 대도시 61.69점) 분쟁 감소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사별/기타(65.42점)가 미 혼(52.67점)과 기혼(60.41점)보다 법이 이웃 간의 분쟁을 감소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3> 특성별 이웃 간 분쟁 감소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c} \text { 프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그렇다 |  |
|  | 전 체 | 3,000 | 3.6 | 14.4 | 33.2 | 40.8 | 8.0 | 18.0 | 48.8 | 58.83 |
| 연령별 | 20대 | 529 | 6.2 | 18.4 | 34.6 | 33.3 | 7.5 | 24.6 | 40.8 | 54.39 |
|  | 30 대 | 560 | 6.7 | 21.0 | 34.9 | 33.1 | 4.3 | 27.7 | 37.4 | 51.82 |


| 구 분 <br> (단위:\%)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3.6 | 14.4 | 33.2 | 40.8 | 8.0 | 18.0 | 48.8 | 58.83 |
|  | 40대 | 644 | 4.0 | 17.5 | 38.8 | 34.7 | 5.0 | 21.5 | 39.7 | 54.75 |
|  | 50 대 | 594 | 1.1 | 7.8 | 28.2 | 50.0 | 12.9 | 8.9 | 62.9 | 66.45 |
|  | 60 대 이상 | 673 | 0.6 | 8.6 | 29.9 | 50.6 | 10.3 | 9.2 | 60.9 | 65.35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1.7 | 9.6 | 31.4 | 46.4 | 10.9 | 11.3 | 57.3 | 63.80 |
|  | 고졸 | 1,196 | 1.8 | 10.6 | 31.9 | 47.3 | 8.5 | 12.4 | 55.8 | 62.51 |
|  | 대재 이상 | 1,409 | 5.6 | 18.9 | 34.9 | 33.7 | 6.9 | 24.5 | 40.6 | 54.32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3.0 | 9.9 | 26.6 | 50.4 | 10.2 | 12.9 | 60.6 | 63.71 |
|  | 자영업 | 666 | 1.9 | 10.5 | 30.7 | 46.6 | 10.2 | 12.4 | 56.8 | 63.20 |
|  | 블루칼라 | 588 | 3.1 | 12.7 | 29.8 | 45.1 | 9.4 | 15.8 | 54.5 | 61.23 |
|  | 화이트칼라 | 733 | 5.2 | 20.2 | 36.4 | 31.9 | 6.3 | 25.4 | 38.2 | 53.46 |
|  | 전업주부 | 563 | 2.6 | 12.2 | 36.7 | 42.4 | 6.1 | 14.8 | 48.5 | 59.32 |
|  | 학생 | 185 | 4.8 | 17.3 | 36.3 | 35.6 | 6.1 | 22.1 | 41.7 | 55.21 |
|  | 무직/기타 | 132 | 7.7 | 19.5 | 31.3 | 32.0 | 9.6 | 27.2 | 41.6 | 54.07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3.4 | 10.9 | 31.9 | 43.4 | 10.5 | 14.3 | 53.9 | 61.69 |
|  | 중소도시 | 918 | 2.7 | 15.1 | 35.4 | 40.0 | 6.7 | 17.8 | 46.7 | 58.20 |
|  | 읍면지역 | 710 | 5.0 | 20.1 | 33.1 | 36.6 | 5.0 | 25.1 | 41.6 | 54.13 |
| 혼인 상태별 | 미 혼 | 672 | 7.5 | 19.4 | 34.7 | 31.6 | 6.7 | 26.9 | 38.3 | 52.67 |
|  | 기 혼 | 2,233 | 2.5 | 13.1 | 33.0 | 43.0 | 8.4 | 15.6 | 51.4 | 60.41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10.0 | 27.8 | 52.7 | 9.5 | 10.0 | 62.2 | 65.42 |

(3) 범죄 감소

범죄 감소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56.5 \%$ (그런 편이다 $43.7 \%+$ 매우 그렇다 $12.8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5.5 \%$ (전혀 그렇지 않다 $4.1 \%+$ 별로 그렇지 않다 $11.4 \%$ )보다 $41.0 \%$ 높게 나타났다. 단, 보 통이다라는 의견은 $28.0 \%$ 로 조사되었다.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속（swiftness），확실（certainty）， 엄중（severity）한 처벌을 통하여 장래의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 다＇는 처벌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이론207）이 있다．이러한 범죄와 처벌 에 대한 기본법인 『형법』과 다양한 관련 법규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법부가 처벌에 대한 판단을 정한다．

법이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국민법의식 지 수는 62．4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이는 차원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법이 우리 사회 의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 ：62．45점
（ $n=3,000, \%$ ）
56．5\％


범죄 감소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연령이 높을수록（20대 55.38 점 $\rightarrow 60$ 대 이상 70．61점），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57.85 점 $\rightarrow$ 중졸 이하 68．44점），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59．77점 $\rightarrow$ 대도시 65．00점）범죄 감소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07）서준배，＂범죄 억제력의 효과적 발현 모델 연구＂，『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경찰대학，2013．7， 80 면．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68.79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66.75점), 전업주부(65.18점), 블루칼라(63.58점), 무직/기타(59.12점), 화이트칼라 (56.62점), 학생(55.97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사별/기타(69.47점)가 미혼(55.33점)과 기 혼(64.29점)보다 법이 범죄를 줄여준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74> 특성별 범죄 감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그렇지 않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4.1 | 11.4 | 28.0 | 43.7 | 12.8 | 15.5 | 56.5 | 62.45 |
| 연령별 | 20대 | 529 | 8.8 | 17.9 | 26.1 | 37.5 | 9.8 | 26.7 | 47.3 | 55.38 |
|  | 30 대 | 560 | 7.5 | 15.2 | 33.0 | 35.3 | 9.1 | 22.7 | 44.4 | 55.80 |
|  | 40대 | 644 | 4.4 | 12.2 | 34.2 | 41.1 | 8.2 | 16.6 | 49.3 | 59.10 |
|  | 50대 | 594 | 0.9 | 6.7 | 24.3 | 50.0 | 18.0 | 7.6 | 68.0 | 69.38 |
|  | 60대 이상 | 673 | 0.0 | 6.5 | 22.8 | 52.4 | 18.3 | 6.5 | 70.7 | 70.61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0.7 | 7.8 | 25.2 | 49.7 | 16.6 | 8.5 | 66.3 | 68.44 |
|  | 고졸 | 1,196 | 2.2 | 9.8 | 25.2 | 47.9 | 14.9 | 12.0 | 62.8 | 65.88 |
|  | 대재 이상 | 1,409 | 6.6 | 13.8 | 31.2 | 38.3 | 10.0 | 20.4 | 48.3 | 57.85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0.8 | 11.9 | 20.3 | 45.6 | 21.5 | 12.7 | 67.1 | 68.79 |
|  | 자영업 | 666 | 1.3 | 8.2 | 26.3 | 50.3 | 13.8 | 9.5 | 64.1 | 66.75 |
|  | 블루칼라 | 588 | 3.3 | 10.9 | 28.0 | 43.8 | 14.0 | 14.2 | 57.8 | 63.58 |
|  | 화이트칼라 | 733 | 6.7 | 15.2 | 31.4 | 38.4 | 8.3 | 21.9 | 46.7 | 56.62 |
|  | 전업주부 | 563 | 2.9 | 9.3 | 27.1 | 45.5 | 15.2 | 12.2 | 60.7 | 65.18 |
|  | 학생 | 185 | 8.6 | 15.6 | 28.0 | 38.9 | 8.9 | 24.2 | 47.8 | 55.97 |
|  | 무직/기타 | 132 | 9.0 | 10.7 | 30.0 | 35.7 | 14.7 | 19.7 | 50.4 | 59.12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l\|} \hline \text { 그ㄹㅓㅝㅇㅣ } \\ \text { 않다 } \end{array}$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3,000 | 4.1 | 11.4 | 28.0 | 43.7 | 12.8 | 15.5 | 56.5 | 62.45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3.9 | 9.7 | 25.1 | 45.2 | 16.1 | 13.6 | 61.3 | 65.00 |
|  | 중소도시 | 918 | 3.5 | 11.9 | 31.6 | 44.4 | 8.7 | 15.4 | 53.1 | 60.70 |
|  | 읍면지역 | 710 | 5.2 | 14.1 | 29.0 | 39.7 | 11.9 | 19.3 | 51.6 | 59.77 |
| 혼인상태별 | 미혼 | 672 | 8.7 | 16.5 | 29.0 | 36.4 | 9.4 | 25.2 | 45.8 | 55.33 |
|  | 기혼 | 2,233 | 2.9 | 10.1 | 27.7 | 45.6 | 13.7 | 13.0 | 59.3 | 64.29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5.7 | 27.7 | 49.5 | 17.0 | 5.7 | 66.5 | 69.47 |

(4) 공무원 부패 방지

법의 공무원 부패 방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36.0 \%$ (그런 편이다 $31.5 \%+$ 매우 그렇다 $4.5 \%$ )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30.2 \%$ (전혀 그렇지 않다 $9.3 \%+$ 별로 그렇지 않다 $20.9 \%$ )보다 $5.8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3.8 \%$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 3 장의 19 번 설문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 지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하여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55.7 \%$ 로 나타난 것과 유의미하게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즉, 현재 법이 가진 기능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향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부패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부패정도와 부패인식에 관한 국내외 조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도 조사'와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대표적 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4년 발표한 부패인식지수208）는 55점으로 175 개국 중에서 43 위를 차지한 바 있다．209）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 식도 조사＇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실태를 일반국민（ 1,400 명） 과 기업인（700명），주한외국인（400명）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 고 있으며，일반국민의＇부패하다＇라는 응답이 $69.4 \%$ 에 이르고 있다． 특히，부패인식점수가 2．63점（10점에 가까울 수록＇거의 부패하지 않 음＇）으로 분석되어 공직자 부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약칭）』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패•공익신고를 받고 있다．210）또한，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 탁금지법’으로 약칭）』에 근거한＇청탁금지법 홈페이지＇211）도 운영하고 있으며，부패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 15 조 제 7 항에서는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에서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신고의 요건•방식 내지 신고 접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직 제 정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7]211）http：／／www．isga．modoo．at（2015．10．30．검 색）

평균:50.27점 (n=3,000,\%)


법의 공무원 부패 방지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보 50대(57.65점), 60 대 이상(58.94점)이 40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58.83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54.89점), 블루칼라(53.11점), 전업주부(52.44점), 무직/기타(44.90점), 학생(44.21점), 화이트칼라(43.05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45.08점 $\rightarrow$ 중졸 이하 61.19점), 지 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48.21점 $\rightarrow$ 대도시 51.53점), 주관적 계층수 준이 상층일수록(하층 48.46점 $\rightarrow 52.48$ 점) 법은 공무원 부패를 방지한 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5> 특성별 공무원 부패 방지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 \text { (명)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9.3 | 20.9 | 33.8 | 31.5 | 4.5 | 30.2 | 36.0 | 50.27 |
| 연령별 | 20대 | 529 | 14.4 | 25.3 | 30.4 | 25.9 | 4.0 | 39.7 | 29.9 | 44.93 |
|  | 30 대 | 560 | 17.2 | 24.0 | 31.8 | 23.6 | 3.4 | 41.2 | 27.0 | 42.99 |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ㄹㅓㅚㅈㅣ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l\|}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9.3 | 20.9 | 33.8 | 31.5 | 4.5 | 30.2 | 36.0 | 50.27 |
|  | 40대 | 644 | 13.6 | 24.0 | 33.3 | 26.6 | 2.5 | 37.6 | 29.1 | 45.09 |
|  | 50대 | 594 | 1.4 | 18.2 | 34.9 | 39.4 | 6.1 | 19.6 | 45.5 | 57.65 |
|  | 60대 이상 | 673 | 1.5 | 14.4 | 37.3 | 40.2 | 6.5 | 15.9 | 46.7 | 58.94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2.4 | 10.9 | 34.9 | 42.9 | 8.8 | 13.3 | 51.7 | 61.19 |
|  | 고졸 | 1,196 | 4.6 | 21.5 | 36.1 | 33.9 | 4.0 | 26.1 | 37.9 | 52.77 |
|  | 대재 이상 | 1,409 | 15.2 | 23.2 | 31.5 | 26.3 | 3.8 | 38.4 | 30.1 | 45.08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4.6 | 12.2 | 37.2 | 35.5 | 10.6 | 16.8 | 46.1 | 58.83 |
|  | 자영업 | 666 | 4.7 | 20.0 | 31.9 | 37.6 | 5.7 | 24.7 | 43.3 | 54.89 |
|  | 블루칼라 | 588 | 7.7 | 20.9 | 29.8 | 34.8 | 6.9 | 28.6 | 41.7 | 53.11 |
|  | 화이트칼라 | 733 | 15.6 | 24.7 | 33.8 | 23.5 | 2.3 | 40.3 | 25.8 | 43.05 |
|  | 전업주부 | 563 | 7.0 | 17.5 | 38.0 | 34.0 | 3.6 | 24.5 | 37.6 | 52.44 |
|  | 학생 | 185 | 13.8 | 24.1 | 35.0 | 25.6 | 1.4 | 37.9 | 27.0 | 44.21 |
|  | 무직/기타 | 132 | 12.7 | 23.8 | 37.2 | 23.8 | 2.5 | 36.5 | 26.3 | 44.90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8.9 | 19.9 | 32.2 | 34.1 | 4.9 | 28.8 | 39.0 | 51.53 |
|  | 중소도시 | 918 | 7.6 | 22.7 | 35.3 | 31.1 | 3.4 | 30.3 | 34.5 | 49.97 |
|  | 읍면지역 | 710 | 12.2 | 20.7 | 34.7 | 27.1 | 5.4 | 32.9 | 32.5 | 48.21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10.6 | 22.4 | 33.2 | 30.2 | 3.6 | 33.0 | 33.8 | 48.46 |
|  | 중간층 | 1,527 | 8.2 | 19.5 | 34.7 | 32.6 | 5.0 | 27.7 | 37.6 | 51.69 |
|  | 상층 | 122 | 8.1 | 22.5 | 29.1 | 32.1 | 8.2 | 30.6 | 40.3 | 52.48 |

(5) 정부 권한 통제

법의 정부 권한 통제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35.6 \%$ (그런 편이다 $32.7 \%+$ 매우 그렿다 $2.9 \%$ )로 그렿지 않다는 의견 $25.8 \%$ (전혀 그렇지 않다 $8.3 \%+$ 별로 그렇지 않다 $17.5 \%$ )보다 $9.8 \%$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8.6 \%$ 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3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을, 헌법 제66조에서는 행정권을,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35.6 \%$ 만이 법이 정부의 권한을 통제(제한)한다고 답 하고 있으며, $25.8 \%$ 의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향후 정부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9> 정부 권한 통제
평균 : 51.07점

```
(n=3,000,%)
```



법이 정부의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는가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설문 목적은 정부가 가진 권한에 대하여 법적 형식과 절차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World Justice Project가 수행 한 Rule of Law Index의 Factor 1 'Constrains on Government' 내지 Factor 6 'regulatory enforcement'의 설문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Rule of Law Index 해당 설문들은 정부의 권한이 헌법에 규 정되어 입법부•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제되는지, 독립적 감 사와 평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제되는지 등을 판단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의 합리적 집행과 행정절차에서의 적법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212) 다만, 본 조사연구에서는 하 나의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형태를 따고 있어서 Rule of Law Index에서 취하고 있는 사례별 설문에 대한 응답과는 달 리 직관적인 느낌과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의 정부 권한 통제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50 대(58.70점), 60 대 이상(59.62점)이 40 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60.95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54.98점), 블루칼라(53.67점), 전업주부(53.44점), 학생(46.01점), 무직/기타(45.26점), 화이트칼라(44.15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45.96점 $\rightarrow$ 중졸 이하 60.79점), 지 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48.14점 $\rightarrow$ 대도시 52.75점), 주관적 계층수 준이 상층일수록(하층 49.48점 $\rightarrow$ 상층 52.73점) 법은 정부권한을 통제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6> 특성별 정부 권한 통제

| 구 분 <br> (단위:\%)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end{aligned}$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 않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8.3 | 17.5 | 38.6 | 32.7 | 2.9 | 25.8 | 35.6 | 51.07 |
| 연령별 | 20대 | 529 | 14.0 | 20.7 | 35.9 | 26.2 | 3.1 | 34.7 | 29.3 | 45.90 |
|  | 30대 | 560 | 15.1 | 22.6 | 37.0 | 22.8 | 2.5 | 37.7 | 25.3 | 43.72 |

212) 이렇게 볼 때, 동 설문은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2015의 regulatory governance와는 다소 다른 의미로 파악된다. 즉, 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는 Chapter 8 (regulatory governance)에서 규제영향평가 의무, 규제의 정당화에 필요한 비용편익에 대한 경제적 분석, 규제 결정 전 공청회 이행, 규제 결정 전 규제적용 대상으로 부터의 의견수렴 등에 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절차의 유무를 집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 glance-2015-en 2015. 10. 30. 최종 검색), 이는 본 보고서의 조사 설문 목적과는 다 소 거리가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array}{\|l\|} \hline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8.3 | 17.5 | 38.6 | 32.7 | 2.9 | 25.8 | 35.6 | 51.07 |
|  | 40대 | 644 | 11.1 | 21.5 | 42.6 | 22.9 | 1.9 | 32.6 | 24.8 | 45.73 |
|  | 50대 | 594 | 1.7 | 14.1 | 34.8 | 46.7 | 2.7 | 15.8 | 49.4 | 58.70 |
|  | 60대 이상 | 673 | 1.2 | 10.1 | 41.6 | 43.0 | 4.1 | 11.3 | 47.1 | 59.6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1.9 | 9.0 | 38.7 | 44.9 | 5.6 | 10.9 | 50.5 | 60.79 |
|  | 고졸 | 1,196 | 4.4 | 18.0 | 37.8 | 37.4 | 2.4 | 22.4 | 39.8 | 53.88 |
|  | 대재 이상 | 1,409 | 13.4 | 19.6 | 39.3 | 25.2 | 2.5 | 33.0 | 27.7 | 45.96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3.0 | 8.0 | 39.1 | 41.9 | 8.0 | 11.0 | 49.9 | 60.95 |
|  | 자영업 | 666 | 4.6 | 15.7 | 37.5 | 39.6 | 2.6 | 20.3 | 42.2 | 54.98 |
|  | 블루칼라 | 588 | 5.3 | 18.0 | 36.9 | 36.2 | 3.5 | 23.3 | 39.7 | 53.67 |
|  | 화이트칼라 | 733 | 13.9 | 22.6 | 38.4 | 22.9 | 2.1 | 36.5 | 25.0 | 44.15 |
|  | 전업주부 | 563 | 6.3 | 14.3 | 41.9 | 34.3 | 3.2 | 20.6 | 37.5 | 53.44 |
|  | 학생 | 185 | 13.4 | 20.8 | 35.2 | 29.5 | 1.0 | 34.2 | 30.5 | 46.01 |
|  | 무직/기타 | 132 | 15.2 | 15.8 | 43.1 | 24.4 | 1.5 | 31.0 | 25.9 | 45.26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7.5 | 16.4 | 36.8 | 36.3 | 3.0 | 23.9 | 39.3 | 52.75 |
|  | 중소도시 | 918 | 7.6 | 18.3 | 39.7 | 32.3 | 2.2 | 25.9 | 34.5 | 50.82 |
|  | 읍면지역 | 710 | 10.7 | 18.9 | 40.7 | 26.3 | 3.3 | 29.6 | 29.6 | 48.14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9.4 | 19.4 | 37.5 | 31.4 | 2.4 | 28.8 | 33.8 | 49.48 |
|  | 중간층 | 1,527 | 7.2 | 15.8 | 40.2 | 33.9 | 2.8 | 23.0 | 36.7 | 52.35 |
|  | 상층 | 122 | 8.9 | 19.6 | 31.5 | 31.7 | 8.3 | 28.5 | 40.0 | 52.73 |

(6) 법의 제정/집행
(1) 국회의 공정한 입법

국회의 공정한 입법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4.2 \%$ (전 혀 그렇지 않다 $15.9 \%+$ 별로 그렿지 않다 $28.3 \%$ )로 그렿다는 의견
$26.6 \%$ (그런 편이다 $24.5 \%+$ 매우 그렇다 $2.1 \%$ )보다 $17.6 \%$ 높게 나타났 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9.3 \%$ 로 조사되었다.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님은 다음 각 부분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라는 설문 에 $36.8 \%$ 가 공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3.2 \%$ 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 한 바 있다.213) 이와 비교하여 볼 때 2015년에는 공정하지 않다는 응 답비율은 $63.2 \%$ 에서 $44.2 \%$ 로 $19 \%$ 감소하였으며, 공정하다는 응답비 율이 $36.8 \%$ 에서 $26.6 \%$ 로 $10.2 \%$ 감소하였다. 2008 년 조사에서는 '보통 이다'라는 응답항목이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사회답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국회 입법조사 처이며, ‘신속•정확•중립•객관•기밀'원칙에 따라 다양한 입법자료 를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입법지원 기관 인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는 "보고서에 의견이나 입장 표 명을 하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찬반양론만 을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다.214)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 입법지원시스템에서는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나 견해, 대안, 개선방안 등을 표현"215)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 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213)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 한국법제연구원, 2008, 78면.
214) 중앙일보, "입법조사처 ' 5 대 원칙'이 국회 법안 빛낸다", 2015.10.16.기사
(http:// news.joins.com/article/18869084 2015.10.30. 검색)
215) 중앙일보, "입법조사처 '5대 원칙"이 국회 법안 빛낸다", 2015.10.16.기사
(http:// news.joins.com/article/18869084 2015.11.13. 검색)


국회의 공정한 입법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50대 (49.13점) 60 대 이상(49.89점)이 40 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45.88점으로 가장 높고, 블루칼라(45.50점), 자영업(45.16점), 농/축/수산업(43.64점), 학생(38.70점), 무직/기타(37.07점), 화이트칼라(35.25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37.37점 $\rightarrow$ 중졸 이하 49.08점), 지 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37.49점 $\rightarrow$ 대도시 45.17점) 국회가 공정한 입법을 수행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7> 특성별 국회의 공정한 입법

| 구 분 <br> (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별로 <br> 그렇지 <br> 않다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15.9 | 28.3 | 29.3 | 24.5 | 2.1 | 44.2 | 26.6 | 42.12 |
| 연령별 | 20대 | 529 | 21.8 | 28.0 | 27.9 | 19.6 | 2.6 | 49.8 | 22.2 | 38.29 |
|  | 30 대 | 560 | 27.8 | 26.4 | 26.2 | 18.6 | 1.0 | 54.2 | 19.6 | 34.68 |
|  | 40대 | 644 | 20.9 | 30.7 | 29.3 | 17.3 | 1.8 | 51.6 | 19.1 | 37.12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전혀 <br> 그렇지 <br> 않다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rray}{\|l\|}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array}$ |  |  |  |  |  | 그렇다 |  |
|  | 체 |  | 3,000 | 15.9 | 28.3 | 29.3 | 24.5 | 2.1 | 44.2 | 26.6 | 42.12 |
|  | 50대 | 594 | 6.7 | 27.5 | 30.5 | 33.3 | 2.1 | 34.2 | 35.4 | 49.13 |
|  | 60대 이상 | 673 | 4.9 | 28.3 | 31.8 | 32.4 | 2.6 | 33.2 | 35.0 | 49.89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7.5 | 25.6 | 33.3 | 30.6 | 3.1 | 33.1 | 33.7 | 49.08 |
|  | 고졸 | 1,196 | 9.5 | 30.5 | 30.9 | 26.9 | 2.1 | 40.0 | 29.0 | 45.41 |
|  | 대재 이상 | 1,409 | 23.7 | 27.1 | 26.7 | 20.7 | 1.7 | 50.8 | 22.4 | 37.37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9.7 | 30.7 | 37.6 | 19.4 | 2.6 | 40.4 | 22.0 | 43.64 |
|  | 자영업 | 666 | 11.1 | 28.1 | 31.8 | 27.2 | 1.8 | 39.2 | 29.0 | 45.16 |
|  | 블루칼라 | 588 | 11.9 | 27.8 | 29.0 | 29.0 | 2.3 | 39.7 | 31.3 | 45.50 |
|  | 화이트칼라 | 733 | 26.2 | 27.8 | 26.6 | 17.6 | 1.8 | 54.0 | 19.4 | 35.25 |
|  | 전업주부 | 563 | 10.8 | 28.6 | 28.9 | 29.5 | 2.2 | 39.4 | 31.7 | 45.88 |
|  | 학생 | 185 | 19.0 | 30.9 | 28.8 | 19.2 | 2.2 | 49.9 | 21.4 | 38.70 |
|  | 무직/기타 | 132 | 25.1 | 26.4 | 25.9 | 20.4 | 2.2 | 51.5 | 22.6 | 37.07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14.7 | 24.5 | 28.3 | 30.2 | 2.2 | 39.2 | 32.4 | 45.17 |
|  | 중소도시 | 918 | 12.9 | 35.0 | 28.9 | 20.9 | 2.2 | 47.9 | 23.1 | 41.13 |
|  | 읍면지역 | 710 | 22.1 | 26.8 | 31.5 | 18.1 | 1.5 | 48.9 | 19.6 | 37.49 |

(2) 법원의 공정한 판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3.3 \%$ (전 혀 그렇지 않다 $13.8 \%+$ 별로 그렇지 않다 $29.5 \%$ )로 그렇다는 의견 $26.0 \%$ (그런 편이다 $22.0 \%+$ 매우 그렇다 $4.0 \%$ )보다 $17.3 \%$ 높게 나타났 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0.7 \%$ 로 조사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문29)의 "○○님은 권력 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95.6 \%$ 의 응답 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바 있고, 1991년에는 94.2\%, 1994년에는 $93.3 \%$ 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216 )

그러나, 2015년 본 연구에서는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 지 않고 판결한다"로 설문한 결과 그렇다는 의견이 $26.6 \%$ 로서 2008년 이전의 조사결과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본 연구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문항을 추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응 답자의 $43.3 \%$ 만이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 은 다소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그림 81> 법원의 공정한 판결

평균 : 43.22점
( $\mathrm{n}=3,000, \%$ )


이번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지수를 처음 개발 하였기 때문에 국민법의식지수 자체의 시계열 분석은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내외 유사한 조사들과 비교하여 분석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Rule of Law Index 2015에 따르면 민사적 사법절차에 대한 신속성 및 효율성 평가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닜으며, 해당 지수는 0.8 로 7 위를 차지하였다. 2014년

[^28]0.74 로 10 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217）형사적 사법절차에 대한 지수는 2014년과 동일하게 2015년 에도 0.76 을 기록하였으나 Austrailia，HongKong，United Kingdom， Germany의 순위가 상승하여 오히려 순위는 13 위로 밀려나게 되었다．218）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 2016）＇의＇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에서는 4위를 기록하 였다． 219 ）

그러나，OECD가 조사한 Government at Glance 2015의 ‘사법체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서는 사법제도 신뢰도가 $27 \%$ 인 것으 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42 개국 중 39 위를 나타내고 있다．220）이러한 상 반된 결과에 대하여 대법원은＂OECD가 조사에 포함한 설문의＇재판 제도（judicial system）＇는 법원뿐 아니라，검찰 및 이와 관계된 법조계 전반을 의미했다＂고 반론한 바 있으며，＇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221）

한편，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연령별로 50 대（51．00점）， 60 대 이상（51．21점）이 40 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가 47．86점으로 가장 높고，전업주부（47．04점）， 자영업（46．22점），농／축／수산업（45．77점），학생（36．58점），화이트칼라（36．35점）， 무직／기타（36．02점）순으로 나타났다．

217）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26；World Justice Project，${ }^{『}$ Rule of Law Index 2015』，p． 30 ．
218）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28；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 31 ．
219）The World Bank，『Doing Business Report 2016』，p． 5 （http：／／www．doingbusiness． 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6 2015．10．30．최종 검색）
220）연합뉴스，‘韓 사법제도 신뢰도 42 개국중 39 위．．．법치 이뤄지고 있나（종합）＇，
2015．8．9．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5／0200000000AKR2015080517 7551009．HTML？input $=1179 \mathrm{~m}$ 2015．10．30．최종 검색）
221）한국일보，‘한국 사법제도，국제기구 평가 제각각＇，2015．11．11．
（http：／／www．hankookilbo．com／v／3847e0db436943be84df678a350cbf7e 2015．10．30．최종 검색）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38.59 점 $\rightarrow$ 중졸 이하 51.05점), 지역규 모가 클수록(읍면지역 38.91점 $\rightarrow$ 대도시 45.74점), 주관적 계층수준이 상층일수록(하층 41.63점 $\rightarrow$ 상층 46.42점) 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8> 특성별 법원의 공정한 판결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gathered}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13.8 | 29.5 | 30.7 | 22.0 | 4.0 | 43.3 | 26.0 | 43.22 |
| 연령별 | 20대 | 529 | 20.3 | 31.2 | 29.8 | 15.3 | 3.3 | 51.5 | 18.6 | 37.53 |
|  | 30 대 | 560 | 23.0 | 29.4 | 29.1 | 15.2 | 3.4 | 52.4 | 18.6 | 36.64 |
|  | 40대 | 644 | 19.3 | 32.0 | 29.2 | 16.0 | 3.5 | 51.3 | 19.5 | 38.09 |
|  | 50대 | 594 | 5.0 | 27.6 | 30.8 | 31.4 | 5.2 | 32.6 | 36.6 | 51.00 |
|  | 60대 이상 | 673 | 3.6 | 27.4 | 33.9 | 30.4 | 4.6 | 31.0 | 35.0 | 51.21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8 | 24.5 | 34.5 | 30.1 | 5.1 | 30.3 | 35.2 | 51.05 |
|  | 고졸 | 1,196 | 8.0 | 32.3 | 31.3 | 24.4 | 4.1 | 40.3 | 28.5 | 46.09 |
|  | 대재 이상 | 1,409 | 21.1 | 28.5 | 29.1 | 17.7 | 3.7 | 49.6 | 21.4 | 38.59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7.5 | 31.9 | 32.5 | 25.9 | 2.1 | 39.4 | 28.0 | 45.77 |
|  | 자영업 | 666 | 10.4 | 28.4 | 32.4 | 23.5 | 5.3 | 38.8 | 28.8 | 46.22 |
|  | 블루칼라 | 588 | 10.7 | 27.8 | 28.0 | 26.7 | 6.9 | 38.5 | 33.6 | 47.86 |
|  | 화이트칼라 | 733 | 21.2 | 31.5 | 29.4 | 16.6 | 1.3 | 52.7 | 17.9 | 36.35 |
|  | 전업주부 | 563 | 8.5 | 28.1 | 34.4 | 24.6 | 4.3 | 36.6 | 28.9 | 47.04 |
|  | 학생 | 185 | 20.7 | 33.4 | 27.5 | 15.8 | 2.6 | 54.1 | 18.4 | 36.58 |
|  | 무직/기타 | 132 | 23.8 | 29.5 | 27.7 | 16.8 | 2.2 | 53.3 | 19.0 | 36.02 |
| 지역 <br> 규모별 | 대도시 | 1,372 | 12.9 | 26.9 | 29.1 | 26.5 | 4.6 | 39.8 | 31.1 | 45.74 |
|  | 중소도시 | 918 | 11.7 | 32.8 | 32.6 | 18.5 | 4.5 | 44.5 | 23.0 | 42.79 |
|  | 읍면지역 | 710 | 18.4 | 30.1 | 31.2 | 17.9 | 2.4 | 48.5 | 20.3 | 38.91 |


| $\begin{array}{c}\text { 구 분 } \\ \text { (단위:\%) }\end{array}$ | $\begin{array}{c}\text { 응단자 } \\ \text { 수 } \\ \text { (명) }\end{array}$ | $\begin{array}{c}\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end{array}$ | $\begin{array}{c}\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end{array}$ | 보통 | $\begin{array}{c}\text { 대체로 } \\ \text { 그렇다 }\end{array}$ | $\begin{array}{c}\text { 매우 } \\ \text { 겋다 }\end{array}$ | $\begin{array}{c}\text { 종 합 }\end{array}$ |  | $\begin{array}{c}\text { 그렇지 } \\ \text { 100젆 }\end{array}$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다 |  |  |  |  |  |  |  |  |  |$)$

(3) 정부의 공정한 집행

정부의 공정한 집행을 묻는 질문에 그렿지 않다는 의견이 $41.5 \%$ (전 혀 그렇지 않다 $14.1 \%+$ 별로 그렇지 않다 $27.4 \%$ )로 그렇다는 의견 $24.9 \%$ (그런 편이다 $21.5 \%+$ 매우 그렇다 $3.4 \%$ )보다 $16.6 \%$ 높게 나타났 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3.6 \%$ 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는 43.18점으로서 차원3 [법에 대한 준수]에서 정부의 법준수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 답이 $41.7 \%$, 지수가 43.17점으로 조사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2> 정부의 공정한 집행

평균: 43.18점
( $n=3,000, \%$ )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정부에 대한 주요 기관별 신뢰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22）2012년 기준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지방자치정부 $56.0 \%$ ，중앙정부 $53.9 \%$ 로 나타났다．223）

정부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연령별로 50대 （50．42점）， 60 대 이상（51．88점）이 40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고，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38.19 점 $\rightarrow$ 중졸 이하 51．38점），지역규모가 클수 록（읍면지역 40．18점 $\rightarrow$ 대도시 45．56점），주관적 계층수준이 상층일수 록（하층 41．27점 $\rightarrow$ 상층 46．31점）공정한 집행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50．87점으로 가장 높고，블루칼라（47．35점）， 전업주부（46．82점），자영업（45．40점），학생（37．33점），화이트칼라（36．42점）， 무직／기타（35．78점）순으로 조사되었다．

222）주요 기관별 신뢰도 통계표
（단위 ：\％）

|  | 대법원 | 대기업 | 지방자치정부 | 중앙정부 | 국회 |
| :---: | :---: | :---: | :---: | :---: | :---: |
| 2003 | 71.5 | 60.7 | 46.3 | 43.4 | 21.3 |
| 2004 | 75.7 | 62.0 | 49.4 | 42.4 | 17.9 |
| 2005 | 79.9 | 70.4 | 55.6 | 47.5 | 20.6 |
| 2006 | 78.7 | 74.5 | 57.6 | 52.3 | 26.0 |
| 2007 | 78.6 | 74.0 | 57.7 | 53.0 | 25.2 |
| 2008 | 75.2 | 69.8 | 54.8 | 51.1 | 27.0 |
| 2009 | 76.0 | 71.0 | 56.2 | 52.3 | 21.7 |
| 2010 | 75.2 | 74.7 | 59.8 | 57.8 | 29.1 |
| 2011 | 75.7 | 69.0 | 56.2 | 56.1 | 31.0 |
| 2012 | 69.2 | 65.2 | 56.0 | 53.9 | 26.1 |

출 처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국가주요지표－부문별지표－기관신뢰도－ 통계표（한국사회과학자료원，『한국종합사회조사』，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cd＝2985 2015．10．30．최종 검색）

223）OECD，『Government at a Glance $\sqrt{\Perp}$ ，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gov＿glance－2015－en 2015．10．30．최종 검색）
<표 79> 특성별 정부의 공정한 집행

| 구 분(단위:\%) |  | 응답자 | 전혀 | 별로 |  |  |  | 종 | 합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br> (명) | 그렇지 않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그렇다 | 그렇다 | $\begin{gathered}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그렇다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14.1 | 27.4 | 33.6 | 21.5 | 3.4 | 41.5 | 24.9 | 43.18 |
| 연령별 | 20대 | 529 | 21.7 | 29.6 | 28.5 | 17.0 | 3.2 | 51.3 | 20.2 | 37.60 |
|  | 30 대 | 560 | 24.3 | 27.7 | 30.1 | 14.6 | 3.2 | 52.0 | 17.8 | 36.16 |
|  | 40대 | 644 | 17.8 | 30.7 | 35.1 | 14.2 | 2.2 | 48.5 | 16.4 | 38.07 |
|  | 50대 | 594 | 5.3 | 24.9 | 36.4 | 29.6 | 3.8 | 30.2 | 33.4 | 50.42 |
|  | 60 대 이상 | 673 | 3.7 | 24.6 | 36.7 | 30.4 | 4.6 | 28.3 | 35.0 | 51.88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8 | 22.7 | 37.4 | 28.0 | 6.0 | 28.5 | 34.0 | 51.38 |
|  | 고졸 | 1,196 | 7.7 | 28.8 | 36.9 | 23.6 | 3.0 | 36.5 | 26.6 | 46.34 |
|  | 대재 이상 | 1,409 | 21.8 | 27.6 | 29.8 | 17.8 | 3.0 | 49.4 | 20.8 | 38.19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8.4 | 20.1 | 36.8 | 29.2 | 5.6 | 28.5 | 34.8 | 50.87 |
|  | 자영업 | 666 | 10.1 | 27.1 | 36.8 | 23.3 | 2.8 | 37.2 | 26.1 | 45.40 |
|  | 블루칼라 | 588 | 10.0 | 26.4 | 33.6 | 24.0 | 5.9 | 36.4 | 29.9 | 47.35 |
|  | 화이트칼라 | 733 | 22.4 | 29.0 | 31.4 | 15.0 | 2.3 | 51.4 | 17.3 | 36.42 |
|  | 전업주부 | 563 | 9.1 | 26.8 | 34.9 | 26.2 | 3.0 | 35.9 | 29.2 | 46.82 |
|  | 학생 | 185 | 20.4 | 31.8 | 27.8 | 18.0 | 2.0 | 52.2 | 20.0 | 37.33 |
|  | 무직/기타 | 132 | 23.8 | 29.3 | 29.9 | 14.0 | 3.0 | 53.1 | 17.0 | 35.78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13.1 | 24.0 | 34.7 | 24.2 | 4.1 | 37.1 | 28.3 | 45.56 |
|  | 중소도시 | 918 | 12.1 | 32.8 | 32.6 | 20.3 | 2.2 | 44.9 | 22.5 | 41.93 |
|  | 읍면지역 | 710 | 18.5 | 27.2 | 33.0 | 17.6 | 3.7 | 45.7 | 21.3 | 40.18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15.3 | 29.1 | 32.5 | 21.4 | 1.7 | 44.4 | 23.1 | 41.27 |
|  | 중간층 | 1,527 | 12.7 | 26.3 | 35.2 | 21.2 | 4.5 | 39.0 | 25.7 | 44.62 |
|  | 상층 | 122 | 16.8 | 23.3 | 26.2 | 25.2 | 8.5 | 40.1 | 33.7 | 46.31 |

(4)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집행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집행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4.4 \%$ (전혀 그렇지 않다 $14.0 \%+$ 별로 그렇지 않다 $30.4 \%$ )로 그렇다는 의견 $22.1 \%$ (그런 편이다 $19.2 \%$ +매우 그렇다 $2.9 \%$ )보다 $22.3 \%$ 높게 나 타났다. 단,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3.6 \%$ 로 조사되었다.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법의식 지수는 41.63점으로 차 원6 [법의 제정/집행]의 평균인 42.53점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가가중치에 따른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사는 수사지 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므로 향후 정부, 특히 수사기 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 여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224)
<그림 83>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평균 : 41.63점
( $\mathrm{n}=3,000, \%$ )

224)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0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평가제'를 시행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관 련 법률안의 발의 의지를 보였다(데일리한국, "변협,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권 력 견제 하겠다"", 2015.10.21. 기사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 dh20151021113930137800.htm 2015.10.30. 최종 검색).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응답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로 50 대(48.66점), 60 대 이상(48.92점)이 40 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이 48.11점으로 가장 높고, 블루칼라(45.16점), 자영업(44.96점), 전업주부(43.96점), 학생(36.69점), 무직/기타(36.44점), 화이트칼라(35.01점)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이 47.04점으로 진보성향(40.56점)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대재 이상 36.65 점 $\rightarrow$ 중졸 이하 49.86점),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38.30점 $\rightarrow$ 대도시 43.74점) 수 사기관이 공정한 집행을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0> 수사기관의 공정한 집행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그렇다 } \end{gather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체 |  | 3,000 | 14.0 | 30.4 | 33.6 | 19.2 | 2.9 | 44.4 | 22.1 | 41.63 |
| 연령별 | 20대 | 529 | 20.9 | 29.4 | 32.2 | 15.4 | 2.2 | 50.3 | 17.6 | 37.13 |
|  | 30대 | 560 | 22.9 | 31.6 | 30.0 | 14.5 | 0.9 | 54.5 | 15.4 | 34.76 |
|  | 40대 | 644 | 17.5 | 34.6 | 31.7 | 14.1 | 2.1 | 52.1 | 16.2 | 37.22 |
|  | 50 대 | 594 | 6.2 | 26.6 | 38.5 | 24.0 | 4.8 | 32.8 | 28.8 | 48.66 |
|  | 60대 이상 | 673 | 4.9 | 29.4 | 35.0 | 26.5 | 4.2 | 34.3 | 30.7 | 48.9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6.4 | 23.8 | 38.1 | 27.6 | 4.1 | 30.2 | 31.7 | 49.86 |
|  | 고졸 | 1,196 | 7.8 | 32.2 | 36.4 | 20.4 | 3.3 | 40.0 | 23.7 | 44.79 |
|  | 대재 이상 | 1,409 | 21.4 | 30.7 | 29.9 | 15.8 | 2.2 | 52.1 | 18.0 | 36.65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11.3 | 23.2 | 35.3 | 22.3 | 7.9 | 34.5 | 30.2 | 48.11 |
|  | 자영업 | 666 | 9.6 | 31.7 | 32.3 | 22.2 | 4.2 | 41.3 | 26.4 | 44.96 |
|  | 블루칼라 | 588 | 9.9 | 30.8 | 31.7 | 24.0 | 3.6 | 40.7 | 27.6 | 45.16 |
|  | 화이트칼라 | 733 | 22.6 | 31.2 | 31.1 | 13.7 | 1.4 | 53.8 | 15.1 | 35.01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 \\ \text { 수 } \end{gathered}$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전혀 } \\ \text { 그렇지 } \\ \text { 않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br> 환산 <br>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룋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전 체 |  |  | 3,000 | 14.0 | 30.4 | 33.6 | 19.2 | 2.9 | 44.4 | 22.1 | 41.63 |
|  | 전업주부 | 563 | 9.6 | 29.0 | 39.5 | 19.8 | 2.1 | 38.6 | 21.9 | 43.96 |
|  | 학생 | 185 | 18.6 | 31.7 | 35.2 | 13.4 | 1.1 | 50.3 | 14.5 | 36.69 |
|  | 무직/기타 | 132 | 22.3 | 28.6 | 32.5 | 14.6 | 2.1 | 50.9 | 16.7 | 36.44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13.0 | 26.9 | 35.2 | 21.8 | 3.0 | 39.9 | 24.8 | 43.74 |
|  | 중소도시 | 918 | 11.5 | 35.2 | 32.8 | 18.6 | 1.9 | 46.7 | 20.5 | 41.06 |
|  | 읍면지역 | 710 | 19.3 | 30.7 | 31.4 | 14.7 | 3.9 | 50.0 | 18.6 | 38.30 |
| 이념 성향별 | 진보 | 683 | 19.0 | 26.4 | 30.3 | 21.8 | 2.4 | 45.4 | 24.2 | 40.56 |
|  | 중도 | 1,462 | 15.4 | 32.9 | 34.5 | 14.7 | 2.5 | 48.3 | 17.2 | 38.97 |
|  | 보수 | 855 | 7.6 | 29.3 | 34.5 | 24.7 | 4.0 | 36.9 | 28.7 | 47.04 |

## 2. 차원별 분석

(1) 법에 대한 관심
[종합 분석]
법에 대한 관심지수는 100 점 만점에 56.40 점으로 나타났으며, 차원 을 구성하고 있는 4 개 항목별 지수를 산출한 결과,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이 66.63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언론에 보 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58.72점),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 심'(52.74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는 보통(50점)보다 낮은 수준인 47.31점으로 4개 항목 중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84> 법에 대한 관심 차원 분석 결과


법에 대한 관심 차원에 속한 4개 항목의 지수 산출 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를 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항목은 법에 대한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데 반해 평가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항목은 법에 대한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고 평가지수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항목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가지수는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항목은 중요도와 평가지수가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항목의 지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이나 판례에 대한 관심 항목의 지수가 낮 은 것은 법률 제•개정 정보나 판례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에 필요 한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 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운영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하고 있으며,225) 경제적 자력이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226)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홍보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 워주는 부분으로써, 향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법률 관련 정보에 대 한 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그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5> 포트폴리오 분석 - 법에 대한 관심

225)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찾 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법 령정보센터 - 법령 캘린더'에서는 일자별로 어떤 법이 시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이 달의 주요 시행법령’ 사이트(http://www.moleg.go.kr/monthlylaw) 도 개설하여 매월 시행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226)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 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http://www.klac.or.kr)

## [특성별 분석]

법에 대한 관심지수는 남자(58.70점)가 여자(54.14점)보다 높은 것으 로 분석 되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주관적 계층 수준이 상층에 가까울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9.39점), 자영업(57.16점), 블루칼라(56.50점) 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농/축/수산업(51.22점), 전업주부 (53.59점)의 법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법에 대한 관심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4 개 항목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특히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여부 항목에 대한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주관적 계층 수준이 상층에 가까울수록 4 개 항목에 대한 지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 는 화이트칼라 계층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법에 대한 관심수준이 모 두 높았다.

모든 계층에서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항목에 대한 평가 지수가 높은 반면, 새로운 법률에 대한 관심이나. 기본적인 법률지식 인지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이 특징이다.
<표 81> 특성별 법에 대한 관심 차원 분석 결과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1] 법에 대한 관심 | 언론에 <br> 보도된 법 <br> 판결에 <br> 대한 관심 | 신규/ <br> 변경된 <br> 법률에 <br> 대한 <br> 관심 | 분쟁 <br> 발생시 <br> 법적 <br> 해결방법 모색 | 일상에 <br> 필요한 <br> 법률지식 <br> 인지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56.40 | 58.72 | 52.74 | 66.63 | 47.31 |
| 성 별 | 남자 | 1,489 | 58.70 | 61.49 | 54.69 | 67.92 | 50.29 |
|  | 여자 | 1,511 | 54.14 | 56.00 | 50.82 | 65.36 | 44.38 |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1] 법에 대한 관심 | 언론에 <br> 보도된 법 <br> 판결에 <br> 대한 관심 | 신규/ <br> 변경된 <br> 법률에 <br> 대한 <br> 관심 | 분쟁 <br> 발생시 <br> 법적 <br> 해결방법 <br> 모색 | 일상에 <br> 필요한 <br> 법률지식 <br> 인지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56.40 | 58.72 | 52.74 | 66.63 | 47.31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49.13 | 49.91 | 44.74 | 58.68 | 43.02 |
|  | 고졸 | 1,196 | 56.21 | 58.10 | 52.96 | 66.33 | 47.39 |
|  | 대재 이상 | 1,409 | 58.60 | 61.73 | 54.79 | 69.11 | 48.46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51.22 | 50.09 | 45.45 | 61.79 | 47.50 |
|  | 자영업 | 666 | 57.16 | 59.27 | 54.15 | 66.37 | 48.70 |
|  | 블루칼라 | 588 | 56.50 | 57.35 | 53.51 | 67.01 | 48.25 |
|  | 화이트칼라 | 733 | 59.39 | 62.78 | 54.95 | 69.90 | 49.46 |
|  | 전업주부 | 563 | 53.59 | 56.68 | 50.46 | 63.78 | 43.21 |
|  | 학생 | 185 | 55.18 | 57.44 | 50.05 | 67.47 | 45.43 |
|  | 무직/기타 | 132 | 54.52 | 58.74 | 50.72 | 63.92 | 44.15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58.76 | 62.14 | 55.23 | 68.58 | 48.71 |
|  | 중소도시 | 918 | 54.90 | 55.62 | 52.32 | 65.00 | 46.84 |
|  | 읍면지역 | 710 | 53.81 | 56.14 | 48.47 | 64.98 | 45.22 |
| 주관적 <br> 계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54.47 | 56.25 | 50.34 | 65.43 | 45.70 |
|  | 중간층 | 1,527 | 57.64 | 60.38 | 54.18 | 67.63 | 48.12 |
|  | 상층 | 122 | 62.36 | 65.38 | 61.32 | 67.33 | 55.18 |

(2) 법에 대한 인식/정서
[종합 분석]
법에 대한 인식/정서지수는 100 점 만점에 53.66점으로 나타났으며,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6개 평가항목별 지수 산출 결과, ‘주위에 범죄

발생시 신고'가 71.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69.50점), '일반 국민의 권리보호'(53.00점), '국민 의사 를 반영한 법제정’(45.97점), ‘평등, 차별 없이 적용’(44.95점),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34.96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항목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 가지수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항목은 중요도와 평가지수가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에서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 나 내용으로 쓰여 있다'에 대한 지수가 34.96 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서 는 향후 법률 용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227)

이에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어려운 법령용서나 문장을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즉, 어려운 한자어나 생소한 법률용어를 쉬운 한자어나 우 리말로 정비하며,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 등 1 천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어 왔다228). 또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제교육포털'229)에 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마련되어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할 때 가이드라인 삼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내용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정부는 국민 들이 법을 친근하고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그 효과를 분석하여 반영해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27) 2008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응답자의 $13.2 \%$ 만이 법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던 것과도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28) 경기일보, '어려운 법률용어 좀 더 알기 쉬워졌나요', 2015.10.8. 기사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50991 2015.10.30. 최종 검색)
229) http://edu.klaw.go.kr(2015.10.30. 최종 검색)
<그림 86>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 분석 결과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은 세부 항목들 간 점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며,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에 속한 6개 항목의 지수 산출 결 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를 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에 대한 인식/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데 반해 평 가지수가 낮은 항목으로는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평등, 차별 없이 적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등 3 개 항목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항목은 법에 대한 인식/정서에 미치 는 영향력도 높고 평가지수도 평균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에 속한 6개 항목의 지수 산출 결과와 전 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를 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에 대한 인식/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데 반해 평가지수 가 낮은 항목으로는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평등, 차별 없이 적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등 3 개 항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와 차별없는 법적용을 위하여 사법부와 행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국민의 뜻과 의견을 반영한

입법을 해 나가려는 국회와 행정부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87> 포트폴리오 분석 - 법에 대한 인식/정서


## [특성별 분석]

법에 대한 인식/정서지수는 50 대 이상 연령층에서 40 대 이하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미혼자보다는 미혼자 이외 계층에서,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57.95점), 전업주부 (55.38점), 블루칼라(55.10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화이 트칼라(49.77점), 학생(50.31점), 무직/기타(50.56점) 직업군은 법에 대한 인식/정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50 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6 개 항목 중 4 개 항목에 대한 지수가 40 대 이하 젊은 세대에 비해 10 점 가량 높았으 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주위에 범죄 발생시 신고 2개 항목 은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직업군이 법의 '일반 국민의 권리보호' 항목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 4 장 국민법의식 지표와 국민법의식

한편, 학력이 낮을수록 법에 대한 인식/정서 평가지수가 높은 경향 을 보였으며, 이는 화이트칼라, 학생 등 고학력 직업군의 법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2> 특성별 법에 대한 인식/정서 차원 분석 결과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차원2] <br> 법에 <br> 대한 <br> 인식/ <br> 정서 | 어렵지 <br> 않은 법 <br> 관련 <br> 용어/ <br> 내용 | 국민 <br> 의사를 <br> 반영한 <br> 법제정 | 일반 <br> 국민의 <br> 권리 <br> 보호 | 평등, <br> 차별 <br> 없이 <br> 작용 | 법은 <br> 반드시 <br> 지켜야 <br> 하는 것 | 범죄 <br> 발생 시 <br> 즉시 <br>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53.66 | 34.96 | 45.97 | 53.00 | 44.95 | 69.50 | 71.82 |
| 연령별 | 20대 | 529 | 50.01 | 35.52 | 40.74 | 47.18 | 38.86 | 65.51 | 72.25 |
|  | 30대 | 560 | 49.76 | 31.87 | 41.00 | 46.51 | 38.54 | 67.06 | 72.89 |
|  | 40대 | 644 | 50.11 | 30.74 | 41.10 | 47.21 | 38.29 | 69.42 | 72.43 |
|  | 50대 | 594 | 58.06 | 38.34 | 50.99 | 60.62 | 52.70 | 71.79 | 71.11 |
|  | 60대 이상 | 673 | 59.29 | 38.13 | 54.45 | 61.78 | 54.59 | 72.70 | 70.63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6.58 | 35.61 | 50.45 | 57.82 | 52.07 | 70.25 | 70.36 |
|  | 고졸 | 1,196 | 55.83 | 36.44 | 48.74 | 57.18 | 48.98 | 70.68 | 70.36 |
|  | 대재 이상 | 1,409 | 51.00 | 33.51 | 42.37 | 48.10 | 39.53 | 68.29 | 73.46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57.95 | 35.17 | 48.71 | 56.85 | 51.87 | 75.79 | 76.39 |
|  | 자영업 | 666 | 55.91 | 35.50 | 48.87 | 56.97 | 47.77 | 72.07 | 71.58 |
|  | 블루칼라 | 588 | 55.10 | 36.47 | 48.65 | 55.51 | 48.93 | 69.18 | 69.45 |
|  | 화이트칼라 | 733 | 49.77 | 32.98 | 40.81 | 46.12 | 37.01 | 67.36 | 74.09 |
|  | 전업주부 | 563 | 55.38 | 35.93 | 49.11 | 56.29 | 49.21 | 69.57 | 69.57 |
|  | 학생 | 185 | 50.31 | 34.82 | 39.32 | 48.07 | 38.72 | 66.90 | 74.04 |
|  | 무직/기타 | 132 | 50.56 | 32.25 | 41.19 | 48.93 | 40.56 | 66.80 | 72.79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56.02 | 38.10 | 49.45 | 56.23 | 48.59 | 70.04 | 71.84 |
|  | 중소도시 | 918 | 52.61 | 34.01 | 44.78 | 52.29 | 43.28 | 69.38 | 69.81 |
|  | 읍면지역 | 710 | 50.46 | 30.11 | 40.79 | 47.66 | 40.07 | 68.61 | 74.36 |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2] <br> 법에 <br> 대한 <br> 인식/ <br> 정서 | 어렵지 <br> 않은 법 <br> 관련 <br> 용어/ <br> 내용 | 국민 <br> 의사를 <br> 반영한 <br> 법제정 | 일반 <br> 국민의 <br> 권리 <br> 보호 | 평등, <br> 차별 <br> 없이 <br> 작용 | $\begin{aligned} & \text { 법은 } \\ & \text { 반드시 } \\ & \text { 지켜야 } \\ & \text { 하는 것 } \end{aligned}$ | 범죄 <br> 발생 시 <br> 즉시 <br>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53.66 | 34.96 | 45.97 | 53.00 | 44.95 | 69.50 | 71.82 |
| 혼인 상태별 | 미혼 | 672 | 49.20 | 33.55 | 40.49 | 46.44 | 38.05 | 64.70 | 71.90 |
|  | 기혼 | 2,233 | 54.86 | 35.51 | 47.30 | 54.80 | 46.88 | 70.74 | 71.72 |
|  | 별거/사별/ 기타 | 94 | 57.07 | 31.85 | 53.56 | 57.02 | 48.38 | 74.38 | 73.62 |

(3) 법에 대한 준수
[종합 분석]
법에 대한 준수지수는 100 점 만점에 48.13점으로 나타났으며, 차원 을 구성하고 있는 5 개 평가항목별 지수 산출 결과, ‘우리 사회의 법준 수 정도’(55.16점)와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54.74점)에 대한 평가가 보통(50점)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자체’(44.44점), ‘정부’(43.17점), ‘기업’(37.57점)의 법준수 정 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8> 법에 대한 준수 차원 분석 결과


법에 대한 준수 차원에 속한 5 개 항목의 지수 산출 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를 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 과, '국민의 법준수 정도'와 '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2 개 항목은 법에 대한 준수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고 평가지수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의 법준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제2장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정도' 설문에서 $49.6 \%$ 가, '본인은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항목에서 $91.7 \%$ 가 잘 지 킨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유의미하게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정부의 법준수 정도', '기업의 법준수 정 도'는 평가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법에 대한 준수에 관하여 우리국 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업의 법준수 정도'가 가장 낮게 산출되었으며, 이 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이윤추구 행위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적 행 위가 나타난 것과 연관이 있으므로 향후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 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9> 포트폴리오 분석 - 법에 대한 준수


한편,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국회, 대법원, 대기업 등에 대한 주요 기관별 신뢰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30) 2012년 기준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대법원 $69.2 \%$, 대기업 $65.2 \%$, 지방자치정부 $56.0 \%$, 중앙정부 $53.9 \%$, 국 회 $26.1 \%$ 로 조사되어,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 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국회 - 중앙정부 - 지 자체 - 대기업 - 법원 순서로 신뢰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2015년의 본 조사에서는 기업 - 정부 - 지자체 - 법원 - 국민 순으로 준법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차이는 본 조사연구에서의 설문에는 단순한 주체별 신뢰도가 아니라 '법을 잘 지킨다'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성별 분석]
법에 대한 준수차원의 평가지수는 50 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40 대 이 하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적일
230) 주요 기관별 신뢰도 통계표
(단위 : \%)

|  | 대법원 | 대기업 | 지방자치정부 | 중앙정부 | 국회 |
| :---: | :---: | :---: | :---: | :---: | :---: |
| 2003 | 71.5 | 60.7 | 46.3 | 43.4 | 21.3 |
| 2004 | 75.7 | 62.0 | 49.4 | 42.4 | 17.9 |
| 2005 | 79.9 | 70.4 | 55.6 | 47.5 | 20.6 |
| 2006 | 78.7 | 74.5 | 57.6 | 52.3 | 26.0 |
| 2007 | 78.6 | 74.0 | 57.7 | 53.0 | 25.2 |
| 2008 | 75.2 | 69.8 | 54.8 | 51.1 | 27.0 |
| 2009 | 76.0 | 71.0 | 56.2 | 52.3 | 21.7 |
| 2010 | 75.2 | 74.7 | 59.8 | 57.8 | 29.1 |
| 2011 | 75.7 | 69.0 | 56.2 | 56.1 | 31.0 |
| 2012 | 69.2 | 65.2 | 56.0 | 53.9 | 26.1 |

출 처 :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 국가주요지표 - 부문별지표 - 기관신뢰도 통계표(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5 2015.10.30. 최종 검색)

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각 주체들의 법준수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 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전업주부 농/축/수산 업 직업군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화이트칼라, 학생, 무직/기 타 직업군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50 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5 개 항목 모두 40 대 이하 젊은 세대에 비해 10점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념 성향에 따라 법준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표 83> 특성별 법에 대한 준수 차원 분석 결과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3] <br> 법에 <br> 대한 <br> 준수 | 정부의 <br> 법준수 <br> 정도 |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 법원의 <br> 법에 <br> 따른 <br> 판결 | 기업의 <br> 법준수 <br> 정도 | 국민의 법준수 정도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48.13 | 43.17 | 44.44 | 54.74 | 37.57 | 55.16 |
| 연령별 | 20대 | 529 | 43.78 | 37.55 | 39.99 | 52.25 | 34.08 | 49.21 |
|  | 30 대 | 560 | 43.51 | 38.13 | 40.16 | 50.70 | 32.01 | 50.63 |
|  | 40대 | 644 | 44.08 | 38.47 | 39.86 | 50.25 | 34.02 | 52.06 |
|  | 50대 | 594 | 53.30 | 49.33 | 49.55 | 59.51 | 42.68 | 60.10 |
|  | 60대 이상 | 673 | 54.71 | 50.86 | 51.35 | 60.15 | 43.84 | 62.19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2.64 | 47.86 | 49.51 | 57.37 | 43.30 | 60.39 |
|  | 고졸 | 1,196 | 50.50 | 46.05 | 46.41 | 57.65 | 39.56 | 57.09 |
|  | 대재 이상 | 1,409 | 44.86 | 39.42 | 41.34 | 51.53 | 34.28 | 52.05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50.19 | 41.58 | 42.57 | 54.84 | 41.08 | 63.93 |
|  | 자영업 | 666 | 51.37 | 47.28 | 47.88 | 57.79 | 39.98 | 58.38 |
|  | 블루칼라 | 588 | 49.57 | 45.21 | 45.87 | 56.06 | 38.96 | 56.31 |
|  | 화이트칼라 | 733 | 43.22 | 37.64 | 39.76 | 50.29 | 32.50 | 50.12 |
|  | 전업주부 | 563 | 51.34 | 46.62 | 48.35 | 57.26 | 41.18 | 58.19 |
|  | 학생 | 185 | 43.77 | 37.64 | 40.32 | 53.18 | 33.10 | 48.54 |
|  | 무직/기타 | 132 | 43.03 | 38.75 | 37.57 | 49.49 | 34.74 | 49.21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3] <br> 법에 <br> 대한 <br> 준수 | 정부의 <br> 법준수 <br> 정도 |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 법원의 <br> 법에 <br> 따른 <br> 판결 | 기업의 법준수 정도 | 국민의 법준수 정도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48.13 | 43.17 | 44.44 | 54.74 | 37.57 | 55.16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50.31 | 47.05 | 46.58 | 57.26 | 38.97 | 56.18 |
|  | 중소도시 | 918 | 47.49 | 41.91 | 44.23 | 54.20 | 37.66 | 54.08 |
|  | 읍면지역 | 710 | 44.77 | 37.32 | 40.56 | 50.58 | 34.75 | 54.58 |
| 혼인 <br> 상태별 | 미혼 | 672 | 43.18 | 37.08 | 39.56 | 50.89 | 33.12 | 49.44 |
|  | 기혼 | 2,233 | 49.47 | 44.78 | 45.77 | 55.88 | 38.66 | 56.67 |
|  | 별거/사별/기타 | 94 | 51.79 | 48.58 | 47.48 | 55.08 | 43.39 | 60.00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683 | 47.53 | 42.57 | 43.87 | 53.94 | 36.87 | 54.80 |
|  | 중도 | 1,462 | 45.59 | 39.59 | 41.82 | 52.42 | 35.19 | 53.11 |
|  | 보수 | 855 | 52.97 | 49.78 | 49.36 | 59.35 | 42.21 | 58.95 |

(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종합 분석]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지수는 100 점 만점에 62.51점으로 나타났으 며,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6개 평가항목별 지수 산출 결과, '참정권 보장'이 67.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65.85점),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63.29점), ‘이의 제기 및 청 원권리 보장’(61.66점), ‘신체의 자유 보장’(61.28점). ‘언론/출판/집회/결 사의 자유 보장’(57.22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은 다른 항목들 에 비해 평가점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90>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차원 분석 결과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차원에 속한 5 개 항목의 지수 산출 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를 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참정권 보장',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등 3 개 항목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가지수는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항목은 중요도와 평가지수가 모두 평 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체의 자유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2 개 항목은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데 반해 평가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헌법 제 12 조와 제 21 조 1 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 한 평가지수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91> 포트폴리오 분석 -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특성별 분석]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지수는 50 대 이상 고연령층, 지역규모가 클수록, 기혼, 직업별로는 자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연령별로는 30 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5 개 항목 모두 평가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직업군 의 항목별 지수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84> 특성별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차원 분석 결과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4]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 $\begin{aligned} & \text { 신체의 } \\ & \text { 자유 } \\ & \text { 보장 } \end{aligned}$ | 이의 <br> 제기 및 청원 권리 <br> 보장 | 종교 <br> /사상의 <br> 자유 <br> 보장 | 참정권 보장 | 언론/출 <br> 판/집회/ <br> 결사의 <br> 자유 <br> 보장 | 재산권 <br> 행사의 <br> 자유 <br>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3,000 | 62.51 | 61.28 | 61.66 | 65.85 | 67.30 | 57.22 | 63.29 |
| 연령별 | 20대 | 529 | 59.60 | 57.19 | 60.01 | 63.10 | 65.97 | 52.71 | 60.84 |


| 구 분(단위:\%) |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4] <br> 법에 <br> 의한 <br> 기본권 <br> 보장 | $\begin{aligned} & \text { 신체의 } \\ & \text { 자유 } \\ & \text { 보장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이의 } \\ \text { 제기 및 } \\ \text { 청원 } \\ \text { 권리 } \\ \text { 보장 } \end{gathered}$ | 종교 <br> /사상의 <br> 자유 <br> 보장 | 참정권 보장 | 언론/출 <br> 판/집회/ <br> 결사의 <br> 자유 <br> 보장 | 재산권 <br> 행사의 <br> 자유 <br>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62.51 | 61.28 | 61.66 | 65.85 | 67.30 | 57.22 | 63.29 |
|  | 30대 | 560 | 57.35 | 55.65 | 56.24 | 60.88 | 62.10 | 52.02 | 58.72 |
|  | 40대 | 644 | 59.05 | 56.29 | 58.70 | 62.36 | 64.51 | 54.31 | 59.74 |
|  | 50대 | 594 | 67.67 | 67.90 | 66.11 | 70.82 | 71.84 | 62.82 | 67.71 |
|  | 60대 이상 | 673 | 67.87 | 68.09 | 66.38 | 71.09 | 71.34 | 62.94 | 68.51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64.49 | 63.49 | 63.92 | 68.19 | 67.48 | 59.32 | 65.89 |
|  | 자영업 | 666 | 66.31 | 65.85 | 65.29 | 69.94 | 70.60 | 60.87 | 66.75 |
|  | 블루칼라 | 588 | 64.66 | 63.44 | 63.73 | 68.16 | 68.44 | 60.49 | 64.86 |
|  | 화이트칼라 | 733 | 57.61 | 55.13 | 56.48 | 60.93 | 63.43 | 51.85 | 59.62 |
|  | 전업주부 | 563 | 63.50 | 63.44 | 61.86 | 66.27 | 67.94 | 58.68 | 64.07 |
|  | 학생 | 185 | 60.66 | 59.19 | 62.77 | 63.03 | 67.05 | 53.63 | 60.62 |
|  | 무직/기타 | 132 | 57.42 | 54.11 | 58.28 | 62.04 | 64.51 | 50.84 | 57.05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63.93 | 62.55 | 63.82 | 66.45 | 68.65 | 59.02 | 64.63 |
|  | 중소도시 | 918 | 63.16 | 62.83 | 61.41 | 67.19 | 67.42 | 57.73 | 63.72 |
|  | 읍면지역 | 710 | 58.94 | 56.80 | 57.82 | 62.96 | 64.55 | 53.09 | 60.15 |
| 혼인 상태별 | 미혼 | 672 | 58.03 | 55.23 | 57.75 | 61.85 | 64.21 | 51.80 | 59.36 |
|  | 기혼 | 2,233 | 63.80 | 62.95 | 62.76 | 67.03 | 68.22 | 58.82 | 64.41 |
|  | 별거/사별/기타 | 94 | 63.92 | 64.68 | 63.54 | 66.50 | 67.52 | 58.00 | 64.72 |

(5) 법의 실효성 보장

## [종합 분석]

법의 실효성 보장지수는 100점 만점에 55.34점으로 나타났으며, 차 원을 구성하고 있는 5 개 평가항목별 지수 산출 결과, '범죄 감소’가
62.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웃 간 분쟁 감 소’(58.83점),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53.51점), ‘정부 권한 통제’(51.07점), '공무원 부패 방지'(50.27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나 공무원 등 행정기관의 통제 효과에 대한 인 식은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2> 법의 실효성 보장 차원 분석 결과


법의 실효성 보장 차원에 속한 5 개 항목의 지수 산출 결과와 전문 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를 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 감소' 항목은 법의 실효성 보장에 대한 인식/정서에 미치 는 영향력도 높고 평가지수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웃 간 분쟁 감소' 항목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가지수는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정부 권한 통제', '공무원 부패 방지' 등 2 개 항목 은 중요도와 평가지수가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보고 서 제 3 장의 19 번 설문에서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 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항목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 라는 응답이 $55.7 \%$ 의 비율을 나타낸 것과도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겠다.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항목은 법의 실효성 보장에 대한 인식/정서 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데 반해 평가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법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관계, 거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과 형벌에 대한 문제, 행정과 소송에 관련된 문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과의 거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93> 포트폴리오 분석 - 법의 실효성 보장

[특성별 분석]
법의 실효성 보장지수는 50 대 이상 연령층이 40 대 이하보다 10 점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미혼 이 외의 계층에서 점수가 높았다.

모든 항목에서 50 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5 개 항목 모두 40 대 이하 젊은 세대에 비해 10 점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세대별 법의 실효성

보장에 대한 태도가 엇갈렸으며, 화이트칼라, 학생, 무직/기타 직업군 은 모든 항목의 지수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공무원 부패 방지', ‘정부권한 통제' 등 행정부 견제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5> 특성별 법의 실효성 보장 차원 분석 결과

| 구 분 <br> (단위:\%) |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 & \text { (명) } \end{aligned}$ | [차원5] <br> 법의 <br> 실효성 <br> 보장 |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 이웃 간 <br> 분쟁 <br> 감소 | 범죄 <br> 감소 | 공무원 <br> 부패 <br> 방지 | 정부 <br> 권한 <br> 통제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55.34 | 53.51 | 58.83 | 62.45 | 50.27 | 51.07 |
| 연령별 | 20대 | 529 | 50.34 | 50.45 | 54.39 | 55.38 | 44.93 | 45.90 |
|  | 30대 | 560 | 48.63 | 47.91 | 51.82 | 55.80 | 42.99 | 43.72 |
|  | 40대 | 644 | 50.87 | 48.91 | 54.75 | 59.10 | 45.09 | 45.73 |
|  | 50대 | 594 | 62.41 | 59.57 | 66.45 | 69.38 | 57.65 | 58.70 |
|  | 60대 이상 | 673 | 62.92 | 59.62 | 65.35 | 70.61 | 58.94 | 59.6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62.70 | 59.16 | 63.80 | 68.44 | 61.19 | 60.79 |
|  | 고졸 | 1,196 | 58.27 | 55.82 | 62.51 | 65.88 | 52.77 | 53.88 |
|  | 대재 이상 | 1,409 | 50.80 | 49.96 | 54.32 | 57.85 | 45.08 | 45.96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62.90 | 61.47 | 63.71 | 68.79 | 58.83 | 60.95 |
|  | 자영업 | 666 | 59.42 | 56.88 | 63.20 | 66.75 | 54.89 | 54.98 |
|  | 블루칼라 | 588 | 57.28 | 54.62 | 61.23 | 63.58 | 53.11 | 53.67 |
|  | 화이트칼라 | 733 | 49.47 | 49.13 | 53.46 | 56.62 | 43.05 | 44.15 |
|  | 전업주부 | 563 | 57.14 | 54.56 | 59.32 | 65.18 | 52.44 | 53.44 |
|  | 학생 | 185 | 50.37 | 49.91 | 55.21 | 55.97 | 44.21 | 46.01 |
|  | 무직/기타 | 132 | 50.52 | 48.44 | 54.07 | 59.12 | 44.90 | 45.26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57.54 | 56.02 | 61.69 | 65.00 | 51.53 | 52.75 |
|  | 중소도시 | 918 | 54.13 | 50.88 | 58.20 | 60.70 | 49.97 | 50.82 |
|  | 읍면지역 | 710 | 52.68 | 52.07 | 54.13 | 59.77 | 48.21 | 48.14 |


|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응답자 } \\ & \text { 수 } \end{aligned}$ <br> (명) | [차원5] <br> 법의 <br> 실효성 <br> 보장 |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 $\begin{gathered} \text { 이웃 간 } \\ \text { 분쟁 } \\ \text { 감소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범죄 } \\ & \text { 감소 } \end{aligned}$ | 공무원 <br> 부패 <br> 방지 | 정부 <br> 권한 <br> 통제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3,000 | 55.34 | 53.51 | 58.83 | 62.45 | 50.27 | 51.07 |
| 혼인 상태별 | 미혼 | 672 | 49.45 | 49.48 | 52.67 | 55.33 | 44.04 | 44.87 |
|  | 기혼 | 2,233 | 56.98 | 54.78 | 60.41 | 64.29 | 52.03 | 52.83 |
|  | 별거/사별/기타 | 94 | 58.63 | 52.18 | 65.42 | 69.47 | 52.81 | 53.42 |

(6) 법의 제정/집행
[종합분석]

법의 제정/집행지수는 100점 만점에 42.53점으로 나타났으며,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4개 평가항목별 지수 산출 결과, 4개 항목 모두 편차 없이 40점 초반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4> 법의 제정/집행 차원 분석 결과


법의 제정/집행 차원에 속한 4 개 항목의 지수 산출 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를 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 항목은 법의 제정/집행에 대한 인식/정서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고 평가지수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공정한 집행’ 항목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가 지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닜으며, '국회의 공정한 입법' 항목은 중요도 와 평가지수가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 항목은 중요도는 높은 반면, 평가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사기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사는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므로 향후 수사 기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
<그림 95> 포트폴리오 분석 - 법의 제정/집행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대법원 등에 대한 주요 기관별 신뢰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31）2012년 기준으로 각 기 관에 대한 신뢰도는 대법원 $69.2 \%$ 로 조사되어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Rule of Law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의 행정•입법•사법 주체의 공정성（Absence of Corruption）에 대하여 정부 0．77점，사법부 0．9점，경 찰•군인 0.88 점，의회 0.72 점으로 조사되고 있다．232）한편，민사적 사 법절차에 대한 신속성 및 효율성 평가지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해당 지수는 0.8 로 7 위를 차지하였다．233）2014년 0.74 로 10 위를 기록234）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적 사법절차에 대한 지수는 2014년과 동일하게 2015년에도 0．76을 기록하였으나 Austrailia，HongKong，United Kingdom，Germany의 순위 가 상승하여 오히려 순위는 13위로 밀려났다．235）
［특성별 분석］
법의 제정／집행지수는 연령이 많을수록，학력이 낮을수록，지역규모 가 클수록，주관적 계층수준이 상층에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났다．반 면，화이트칼라，학생，무직／기타 직업군의 법의 제정／집행 지수는 다 른 계층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9]<표 86> 법의 제정/집행 차원 분석 결과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6] <br> 법의 <br> 제정/집행 | 국회의 <br> 공정한 <br> 입법 | 법원의 <br> 공정한 <br> 판결 | 정부의 <br> 공정한 <br> 집행 | 수사 <br> 기관의 <br> 공정한 <br> 집행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3,000 | 42.53 | 42.12 | 43.22 | 43.18 | 41.63 |
| 연령별 | 20대 | 529 | 37.61 | 38.29 | 37.53 | 37.60 | 37.13 |
|  | 30 대 | 560 | 35.58 | 34.68 | 36.64 | 36.16 | 34.76 |
|  | 40대 | 644 | 37.63 | 37.12 | 38.09 | 38.07 | 37.22 |
|  | 50대 | 594 | 49.81 | 49.13 | 51.00 | 50.42 | 48.66 |
|  | 60 대 이상 | 673 | 50.44 | 49.89 | 51.21 | 51.88 | 48.92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0.35 | 49.08 | 51.05 | 51.38 | 49.86 |
|  | 고졸 | 1,196 | 45.64 | 45.41 | 46.09 | 46.34 | 44.79 |
|  | 대재 이상 | 1,409 | 37.70 | 37.37 | 38.59 | 38.19 | 36.65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47.05 | 43.64 | 45.77 | 50.87 | 48.11 |
|  | 자영업 | 666 | 45.45 | 45.16 | 46.22 | 45.40 | 44.96 |
|  | 블루칼라 | 588 | 46.48 | 45.50 | 47.86 | 47.35 | 45.16 |
|  | 화이트칼라 | 733 | 35.75 | 35.25 | 36.35 | 36.42 | 35.01 |
|  | 전업주부 | 563 | 45.90 | 45.88 | 47.04 | 46.82 | 43.96 |
|  | 학생 | 185 | 37.27 | 38.70 | 36.58 | 37.33 | 36.69 |
|  | 무직/기타 | 132 | 36.32 | 37.07 | 36.02 | 35.78 | 36.44 |
| $\begin{aligned} & \text { 지역 } \\ & \text { 규모별 } \end{aligned}$ | 대도시 | 1,372 | 45.03 | 45.17 | 45.74 | 45.56 | 43.74 |
|  | 중소도시 | 918 | 41.75 | 41.13 | 42.79 | 41.93 | 41.06 |
|  | 읍면지역 | 710 | 38.70 | 37.49 | 38.91 | 40.18 | 38.30 |
| 혼인 <br> 상태별 | 미혼 | 672 | 36.37 | 36.58 | 36.48 | 36.70 | 35.81 |
|  | 기혼 | 2,233 | 44.27 | 43.71 | 45.15 | 44.96 | 43.29 |
|  | 별거/사별/기타 | 94 | 45.13 | 43.87 | 45.70 | 47.15 | 43.94 |


| 구 분 <br> (단위:\%) | 응답자 <br> 수 <br> (명) | [차원6] <br> 법의 <br> 제정/집행 | 국회의 <br> 공정한 <br> 입법 | 법원의 <br> 공정한 <br> 판결 | 정부의 <br> 공정한 <br> 집행 | 수사 <br> 기관의 |
| :---: | :---: | :---: | :---: | :---: | :---: | :---: |
| 공정한 <br> 집행 |  |  |  |  |  |  |
| 전 체 | $\mathbf{3 , 0 0 0}$ | $\mathbf{4 2 . 5 3}$ | $\mathbf{4 2 . 1 2}$ | $\mathbf{4 3 . 2 2}$ | $\mathbf{4 3 . 1 8}$ | $\mathbf{4 1 . 6 3}$ |
| 주관적 <br> 계 층 <br> 수준별 | 하층 | 1,352 | 41.00 | 40.14 | 41.63 | 41.27 |

## 3. 종합 분석

(1) 차원간 종합 분석

2015년 국민법의식 지표 설문에 대한 국민법의식지수는 100 점 만점 기준 52.88 점으로 나타났다. 6 개 차원별 법의식지표를 분석한 결과,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지표가 62.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법에 대한 관심’(56.40점), ‘법의 실효성 보장’(55.34점), ‘법에 대 한 인식/정서'(5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에 대한 준수'(48.13점)와 ‘법의 제정/집행'(42.53점)지표는 50 점 미만으로 다른 4개 차원에 비해 법의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법의 제정/집행’은 법의 제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 기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 식을 조사한 것이라면, '법에 대한 준수'는 각 주체별 준법 수준에 대 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을 지수화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은 각 주체별 준법수준과 공정성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법에 대한 준수' 차원의 지수 가 ‘법의 제정/집행’ 차원의 지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은 법원과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준법수준을 다른 주체들(기업/지자체/정부)에 비 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96> 종합 분석 결과

( $\mathrm{n}=3,000,100$ 점 만점 평균)

(2) 특성별 종합 분석

특성별로 보면 국민법의식지수는 50 대 이상 연령층이 40 대 이하 연 령층에 비해 10 점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규 모가 클수록, 혼인상태별로는 미혼(48.35점)보다는 미혼 이외 계층(기 혼 54.17점, 별거/사별/기타 54.42점)의 법의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 다. 저학력층의 경우 고학력에 비해 법에 대한 관심은 낮았지만, 기본 권보장, 실효성 보장, 제정/집행 등 사법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별 결과를 각 차원별로 분석해보면, 50 대 이상 고연령층 은 법에 대한 관심을 제외한 5 개 차원에서 40 대 이하 젊은 세대에 비 해 10 점 이상 높았으며, 지역규모가 클수록 모든 차원에서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87> 특성별 종합 분석 결과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br> 수 <br> (명) | 국민법 <br> 의식 <br> 지수 | [차원1] <br> 법에 <br> 대한 <br> 관심 | [차원2] <br> 법에 <br> 대한 <br> 인식/ <br> 정서 | [차원3] <br> 법에 <br> 대한 <br> 준수 | [차원4] <br> 법에 의한 <br> 기본권 보장 | [차원5] <br> 법의 <br> 실효성 <br> 보장 | [차원6] <br> 법의 <br> 제정/ <br> 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52.88 | 56.40 | 53.66 | 48.13 | 62.51 | 55.34 | 42.53 |
| 연령별 | 20대 | 529 | 49.08 | 54.79 | 50.01 | 43.78 | 59.60 | 50.34 | 37.61 |
|  | 30대 | 560 | 48.33 | 57.24 | 49.76 | 43.51 | 57.35 | 48.63 | 35.58 |
|  | 40대 | 644 | 49.64 | 58.22 | 50.11 | 44.08 | 59.05 | 50.87 | 37.63 |
|  | 50대 | 594 | 58.09 | 58.13 | 58.06 | 53.30 | 67.67 | 62.41 | 49.81 |
|  | 60 대 이상 | 673 | 58.13 | 53.72 | 59.29 | 54.71 | 67.87 | 62.92 | 50.44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56.12 | 49.13 | 56.58 | 52.64 | 65.12 | 62.70 | 50.35 |
|  | 고졸 | 1,196 | 55.20 | 56.21 | 55.83 | 50.50 | 65.69 | 58.27 | 45.64 |
|  | 대재 이상 | 1,409 | 50.00 | 58.60 | 51.00 | 44.86 | 59.09 | 50.80 | 37.70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55.03 | 58.76 | 56.02 | 50.31 | 63.93 | 57.54 | 45.03 |
|  | 중소도시 | 918 | 52.15 | 54.90 | 52.61 | 47.49 | 63.16 | 54.13 | 41.75 |
|  | 읍면지역 | 710 | 49.65 | 53.81 | 50.46 | 44.77 | 58.94 | 52.68 | 38.70 |
| 혼인 상태별 | 미혼 | 672 | 48.35 | 55.78 | 49.20 | 43.18 | 58.03 | 49.45 | 36.37 |
|  | 기혼 | 2,233 | 54.17 | 56.86 | 54.86 | 49.47 | 63.80 | 56.98 | 44.27 |
|  | 별거/사별/기타 | 94 | 54.42 | 50.16 | 57.07 | 51.79 | 63.92 | 58.63 | 45.13 |

(3) 다른 조사들과의 비교 분석

2015년 국민법의식 지수가 52.88점으로 분석된 것은 보통(50점) 수 준 보다 조금 높지만, 올해 처음으로 개발되어 적용된 만큼 현재 우 리 국민의 법의식 수준의 높고 낮음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다

만, 전국의 성인 국민 3,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일반적으 로 국내 설문응답자의 경우에 '보통이다'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법의식 지표 산출 결과가 평균치인 50점에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법의식 지수가 52.88점으로 보통 수 준(50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2015년 조사된 국민법의식 지수는 다음에 수행될 국민법의식 지 수들과 연계하여 평가가 가능할 것이지만, 유사한 조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입법, 사법, 행정 주체별 공정성이나 사회 각 구성원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로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한국종합사 회조사' 등이 있으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는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와 OECD의 'Government at Glance 2015',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 2016)' 등이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기관별 신뢰도는 2012년 기준으로 대법원 $69.2 \%$, 대기업 $65.2 \%$, 지방자치정부 $56.0 \%$, 중앙정부 $53.9 \%$, 국회 $26.1 \%$ 로 조사되어 대법원에 대한 신뢰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236)

한편, 2015년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0.79 점을 획득하여 우리나라는 102 개국 중에서 1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4년에 0.77점으로 세계 순위가 99개국 중에서 14 위였던 것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Rule of Law Index 2015에 따르면, 민사재판에 대한 신속성 및 효율성 평가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

[^30]으로 나타났으며，한국의 민사재판부는 0.8 로 7 위를 차지하였다．237）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 2016）＇238）에서는 대한민국（Korea，Rep．）이 Singapore，New Zealand， Denmark에 이어 사업하기 쉬운 나라（easy of doing business）4위로 조사 된 바 있다．

그러나， OECD 가 조사한 Government at Glance 2015의 ‘사법체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서는 사법제도 신뢰도가 $27 \%$ 인 것으 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42 개국 중 39 위를 나타내고 있다．239）

이와 같이，국내외의 다양한 조사에서 유사하거나 상반된 결과들은 각각의 조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이 다르고，이에 따라 설문항목 의 구성 방식과 설문방식，조사대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2015 국민법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단위로 법전문가를 제외한 일반국민 3，000 명을 대상으로 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였으며，240）설문48）＇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과 설문50）＇수사기관（검 찰，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 다．＇같이 재판과정과 수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구분하여 설문함으로 써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한 바 있다．

237）World Justice Project，${ }^{『}$ Rule of Law Index 2014』，p．134；World Justice Project，${ }^{『}$ Rule of Law Index 2015』，p． 132 ．
238）The World Bank，『Doing Business Report 2016』，p．5（http：／／www．doingbusiness． 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6 2015．10．30．최종 검색）
239）연합뉴스，‘韓 사법제도 신뢰도 42 개국중 39 위．．．법치 이뤄지고 있나（종합）’， 2015．8．9．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5／0200000000AKR2015 0805177551009．HTML？input $=1179 \mathrm{~m}$ 2015．10．30．최종 검색）
240）OECD의 Government at Glance 2015는 갤럽이 우리나라 국민 1,000 명을 대상으 로＇재판제도를 신뢰하느냐＇라는 설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며（한국일보，＇한국 사법제도，국제기구 평가 제각각＇을 참고），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는 3 대 대도시의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1,000 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상황 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가 경험칙에 기초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pp．14－15 참고）．
(4) 소 결

아래의 <그림 97>에서와 같이 지수 산출 결과 50점 미만으로 나타 난 항목들(주황색 표시부분)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법에 대한 거리를 아직도 멀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법을 제정•집행하는 주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나 주체별 준법 정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의 실효성 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 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법에 대한 준수, 법의 제정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법에 대한 준수 차원에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의 법준수 여부 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강했으며, 법의 제정/집행과 관련해서는 입 법, 행정, 사법 주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7> 차원별 국민법의식 지표 분포도


또한, 각 차원별로 산출된 지수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 도를 축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아래의 <그림 98 >과 같이 법에 대한 준수, 법의 제정/집행 2 개의 차원이 평가 지수가 낮고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영 역으로 평가된 바 있다.
<그림 98> 포트폴리오 분석에 따른 차원별 국민법의식 지표 결과


법에 대한 준수(차원3)와 법의 제정/집행(차원6) 2개 차원은 법의식 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데 반해 평가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고,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차원4) 차원은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고 해당 차원의 지수도 다른 차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에 대한 관심(차원1), 법에 대한 인식/정서(차원2), 법의 실효 성 보장(차원5) 등 3 개 차원은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차원별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본다면, 국민법의식 지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법 제정 및 집행, 준수와 관련된 주체들에 대하여 불신을 감소시켜 나갈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국민이 법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을 좁히고, 각 주체별로 법 제정•집행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별 준법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특 히, 국회, 정부, 지자체 등 입법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법제도와 국민법의식의 상 호 조화를 통하여 선진법치국가 실현이 중요하다. 이에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는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 의식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국가법제도의 주요 이슈에 관한 분 석을 활용하여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새로 개발하여 도입한 국민법의식 지표는 국민 법의식과 그 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제도의 개선과 선진법치국가 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국민의 가 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종래 개발되어 활용되어 온 설문항목 중에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적절한 것을 선정 하여 활용하였다. 예컨대, (1)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2) 여성의 지위, (3) 병역의무이행자의 지위, (4) 사회적 약자의 지위, (5) 법에 대한 인 상, (6) 생활에서의 법경험(법률관련 인지경로, 계약서 숙지정도), (7) 준법정도(우리 사회의 준법정도, 자신의 준법정도), 88 법 생활과 권리 의식(불량품 구매 시 대처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 다. 조사결과에서는 가족 내 의사결정주체가 부모(부부)공동이라는 응 답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군가산 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이유로는 사회 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에 대 한 인상은 권위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 대 이상 의 고 연령층에서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법률관련 정보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다는 비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 계약서 숙지정도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이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많아졌으며 매우 자세히 읽는 응답의 비율은 감소 추세였다. 준법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준법정도보다 자신 의 준법정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법을 비준수하 는 이유로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불량 품을 구입시 대처방법에는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와 '한번 산 것이 니 어쩔 수 없다'는 대조적인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의식 수준과 법의식의 변화 정도를 알기 위하여 (i) 로스쿨제도, (ii) 국민 참여재판, (iii) 사형제 폐지, (iv) 안락사 허용, (v) 노사관계법, (vi)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 (vii) 비정규직 보호법, (viii) 간통죄, (ix) 성 매매종사자 처벌, (x) 김영란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 함시켰다. 조사결과에서는 로스쿨제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응 답이 많았는데,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은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형제는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고, 안락사(존엄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계열적으로는 찬성의견의 비율에서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노사관계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 았고, 그 책임에는 사업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직 업별로 보면 무직/기타와 학생 집단이 성과가 없다고 많이 응답하였 다. 간통죄 폐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찬 성율이 높았다. 성매매종사자 처벌은 찬성의견이 많았고, 여성이 남성 보다 찬성율이 더 높았다. 김영란법 도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을 것 이라고 예측하는 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서는 국민법의식 수준을 종합 적으로 수치화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국민법의식 지표(6개 분야의 30개 설문 문항)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에서는 2015년 국민법의식 지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52.88점으로 나타났으며, 6개 차원별 법의식 지수를 분석한 결과,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지수가 62.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에 대한 관심'(56.40점), ‘법의 실효성 보장’(55.34점), ‘법에 대한 인식/정서’(53.66점)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법에 대한 준수’(48.13점)와 ‘법의 제정/집행’(42.53점) 지수는 50점 미만으로 다른 4개 차원에 비해 법의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법의식지수는 50 대 이상 연령층이 40 대 이하 연령층에 비해 10 점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혼인상태별로는 미혼(48.35점)보다는 미혼 이외 계 층(기혼 54.17점, 별거/사별/기타 54.42점)의 법의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학력층의 경우 고학력에 비해 법에 대한 관심은 낮았지만, 기본권보장, 실효성 보장, 제정/집행 등 사법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이 높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차원별로 분석해보면, 50 대 이상 고연령층은 법에 대한 관심을 제외한 5 개 차 원에서 40 대 이하 젊은 세대에 비해 10 점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지 역규모가 클수록 모든 차원에서의 지수가 높았다.
3.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에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국민의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강화가 계속하여 높아지 고 있으며 국가법제도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국민의 가치관 변 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가 국가법제도에 따 라 규율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 인식에서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보호 또는 배려 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법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정부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제고할 필요성이 나타났 다. 한편,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관련해서는 국가법제도에 대한 권 위적 인식이 높고 법률 관련 정보의 주된 접근 방법으로 시계열적으 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언론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약 서의 숙지 등에 대하여는 다소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법제도 관련 정보 를 보다 쉽게 접근하거나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결과에서는 현행 주요 이슈 법제 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련하여 쟁점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로스쿨제도, 환경오염유발 기업규제, 안락사 허용, 비정규직 보호 법 및 간통죄에 관련하여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정 내지는 보완이 필 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서 이들 분야의 국가법제도의 개선 및 집행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조사분야 중에서 사형제도, 성 매매종사자 처벌, 김영란법 도입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여론이 우세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사형을 집행하고 성매매를 범죄로 처벌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새로 도입한 국민 법의식 지표 조사결과에서는 국민법의식 지수가 52.88점으로 나타나 국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 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이 평균 이상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 났다. 향후 국민법의식 지수를 높이는 과제는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 의를 실현하고 선진국가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야별로 수치화 한 국민법의식 지수를 보면, '법에 대한 준수'와 '법의 제정/집행'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향 후 이들 분야에서 법집행의 실효성 강화 및 입법 과정 또는 법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관련 국가법제 도의 개선 등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박상철외 2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1.
박상철외 2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4.

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8.
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 2008.

김해성，『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법무부，2007．11．
김해성，『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준법행동 예측지표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8.

김해성，＂비대칭적 정의감＂의 의미와 요인에 관한 연구＂，『시민교육연 구』제47권 3호，2015．9．

김희재，＂국민생활시간조사 실시간 분석을 위한 연구＂，『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Vol 6．No5，2004．10．

문혜선•이정동，＂국가종합과학기술지수의 도출과 적용：종합지수를 통한 주요 선진국과의 국가과학기술활동 비교＂，『기술혁신 연 구』제 13 권 제 1 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6．

최성호•문혜선，＂국가기술사업화지표 개발 방안 연구＂，『기술혁신 학 회지』제9권 제1호，기술혁신학회，2006．3．

서준배，＂범죄 억제력의 효과적 발현 모델 연구＂，『경찰학연구』제 13 권 제2호，경찰대학，2013．7．

이정호，＂사회과학에서 측정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한 국비지니스리뷰』 제5권 제3호，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2．12．

이정호•류춘호•정태영，＂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산업혁신연구』 제26권 3호，경성대학 교 산업개발연구소，2010．9．

병무청，『군가산점 여론조사 결과보고』， 2009 ．
보건복지부，『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1.
조윤미，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 제 10 호，2012．10．

이창훈 • 한상운 • 한미진 • 박시원 • 안윤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녹색 경영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3.

신의기•강은영，『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12.

박선영 • 송효진 • 구미영 • 김정혜•유혜경，『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최효미•이상호•성재민•배기준，『패널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 기법 연구－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방법－』，한국노동연구원， 2012.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데일리 오피니언』제152호，2015년 3월 1주．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데일리 오피니언』 제153호，2015년 3월 2주．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데일리 오피니언』 제156호，2015년 4월 1주．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데일리 오피니언』제170호，2015년 7월 2주．
한국사회과학자료원，『한국종합사회조사』（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국가주요지표－부문별지표－기관신뢰도－통계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cd＝2985））

OECD，『Government at a Glance， 2015 edition』， 2015.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863\＃）

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 2014.
（http：／／worldjusticeproject．org／publication／rule－law－index－reports／rule－1 aw－index－2014－report）

World Justice Project，${ }^{『}$ Rule of Law Index 2015』， 2015. （http：／／worldjusticeproject．org／publication／rule－law－index－reports／rule－1 aw－index－2015－report）

The World Bank，『Doing Business Report 2016』
（http：／／www．doingbusiness．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6

질 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nec．go．kr／portal／main．do）
SBS뉴스（http：／／news．sbs．co．kr）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중앙일보（http：／／article．joins．com）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YTN사이언스(http://science. ytn.co.kr)

아시아경제(http://view.asiae.co.kr)

연합뉴스TV(http://news.naver.com)

스포츠동아(http://sports.donga.com)

이투데이(http://www.etoday.co.kr)

뉴스1(http://news1.kr)

매일경제(http://news.mk.co.kr)

비즈니스포스트(http://www.businesspost.co.kr)

경향신문(http://news.khan.co.kr)

MK 뉴스(http://news.mk.co.kr)

MBC TV(http://imnews.imbc.com)

MBN(http://star.mbn.co.kr)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동아일 보(http://news.donga.com)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
머니투 데이(http://the300.mt.co.kr)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
세계일보(http://www.segye.com)
서울경제(http://economy.hankooki.com)
YTN(http://www.ytn.co.kr)
비즈니스워치(http://www.bizwatch.co.kr)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아시아투데이(http://www.asiatoday.co.kr)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서울신문(http://www.seoul.co.kr)
뉴시스(http://www.newsis.com)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KBS TV(http://news.kbs.co.kr)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
신동아(http://shindonga.donga.com)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

참 고 문 헌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JTBC(http://news.jtbc.joins.com)
교육부(http://www.moe.go.kr)

다음(http://www.daum.net/)
법률소비자연맹(http://www.goodlaw.org)
이행덕 블로그(http://eargood.blog.me/40204048372)

법률저널(http://www.lec.co.kr/)
한국방송공사(http://news.kbs.co.kr/)
국민일보(http://news.kmib.co.kr/)
국방부(http://www.mnd.go.kr/)
리얼미터 (http://www.realmeter.net/)


## I. 응답자의 특성

| 표 본 특 성 |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 | :---: | :---: |
| 전 체 |  | 3,000 | 100.0 |
| 성별 | 남자 | 1,489 | 49.6 |
|  | 여자 | 1,511 | 50.4 |
| 연령별 | 20 대 | 529 | 17.6 |
|  | 30 대 | 560 | 18.7 |
|  | 40 대 | 644 | 21.5 |
|  | 50 대 | 594 | 19.8 |
|  | 60 대 이상 | 673 | 22.4 |
| 학력별 | 중졸 이하 | 395 | 13.2 |
|  | 고졸 | 1,196 | 39.9 |
|  | 대재 이상 | 1,409 | 47.0 |
| 소득별 | 199만원 이하 | 379 | 12.6 |
|  | 200~299만원 | 485 | 16.2 |
|  | 300~399만원 | 655 | 21.8 |
|  | 400~499만원 | 629 | 21.0 |
|  | 500 만원 이상 | 853 | 28.4 |
| 직업별 | 농/축/수산업 | 133 | 4.4 |
|  | 자영업 | 666 | 22.2 |
|  | 블루칼라 | 588 | 19.6 |
|  | 화이트칼라 | 733 | 24.4 |
|  | 전업주부 | 563 | 18.8 |
|  | 학생 | 185 | 6.2 |
|  | 무직/기타 | 132 | 4.4 |


| 표 본 특 성 |  | 응답자 수(명) | 비율(\%) |
| :---: | :---: | :---: | :---: |
| 전 | 체 | 3,000 |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483 | 49.4 |
|  | 충청권 | 311 | 10.4 |
|  | 호남권 | 302 | 10.1 |
|  | 경상권 | 779 | 26.0 |
|  | 강원/제주 | 125 | 4.2 |
| 지역 규모별 | 대도시 | 1,372 | 45.7 |
|  | 중소도시 | 918 | 30.6 |
|  | 읍면지역 | 710 | 23.7 |
| $\begin{aligned} & \text { 혼인 } \\ & \text { 상태별 } \end{aligned}$ | 미혼 | 672 | 22.4 |
|  | 기혼 | 2,233 | 74.4 |
|  | 별거/사별/기타 | 94 | 3.1 |
| $\begin{aligned} & \text { 가구 } \\ & \text { 구성별 } \end{aligned}$ | 1인가구 | 180 | 6.0 |
|  | 1세대 가구 | 787 | 26.2 |
|  | 2세대 가구 | 1,905 | 63.5 |
|  | 3 세대 가구 | 127 | 4.2 |
| 주관적 계층수준별 | 하층 | 1,352 | 45.1 |
|  | 중간층 | 1,527 | 50.9 |
|  | 상층 | 122 | 4.1 |
| 이념 <br> 성향별 | 진보 | 683 | 22.8 |
|  | 중도 | 1,462 | 48.7 |
|  | 보수 | 855 | 28.5 |

## ․ 조사지점

지역크기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부암동 |
| :---: | :---: | :---: | :---: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종로1.2.3.4가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혜화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중구 | 명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중구 | 신당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중구 | 신당제 5 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중구 | 중림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청파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이촌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왕십리도선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성수 1 가제 1 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능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광장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구의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면목제 5 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동선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보문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월곡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번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번제3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창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창제3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방학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월계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상계3.4동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상계6.7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상계8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상계9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불광제1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불광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갈현제1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갈현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도화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합정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상암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신월4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화곡제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화곡제8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우장산동 |

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행정구역 명칭이 ‘읍', '면'인 경우는 지역구모 구 분을 ‘읍면지역’으로 함. 단, 2008년 조사에서는 시/군/구 단위가 ‘군’이 아니 면 모두 중소도시로 구분하였음.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预로구 | 수궁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영등포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대방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신림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대학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삼성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서초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내곡동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도곡1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도곡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오륜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송파2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강일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명일제1동 |
| 대도시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둔촌제1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중구 | 영주제 2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서구 | 동대신제3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서구 | 남부민제1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동구 | 수정제4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동구 | 좌천제4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범천제 2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온천제 1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온천제 3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안락제 2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남구 | 용호제4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남구 | 문현제3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좌제2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반송제 2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신평제2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감천제 2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서제1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녹산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거제제 2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거제제4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연산제 5 동 |
| 대도시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연산제9동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중구 | 동인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동구 | 도평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동구 | 불로.봉무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서구 | 비산4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서구 | 평리2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서구 | 상중이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북구 | 침산3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북구 | 태전2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북구 | 구암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만촌1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지산2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고산3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진천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상인2동 |
| 대도시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도원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중구 | 신포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중구 | 송월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동구 | 송현3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동구 | 송림6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남구 | 숭의4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남구 | 학익1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남구 | 주안3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남구 | 주안6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남구 | 관교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연수2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간석1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만수1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만수3동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입면/동 |
| :--- | :--- | :--- | :---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부평1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산곡1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서구 | 가좌2동 |
| 대도시 | 인천광역시 | 옹진군 | 연평면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동구 | 동명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동구 | 학운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서구 | 상무2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북구 | 신안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북구 | 일곡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북구 | 건국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북구 | 양산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비아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신가동 |
| 대도시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삼도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동구 | 가양1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동구 | 산내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중구 | 태평2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서구 | 복수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서구 | 용문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온천1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전민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관평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회덕동 |
| 대도시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법1동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중구 | 학성동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중구 | 반구2동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중구 | 병영2동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남구 | 옥동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남구 | 야음장생포동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동구 | 남목1동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북구 | 강동동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북구 | 효문동 |
| 대도시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언양읍 |
| 읍면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연기면 | 연기면 |
| 읍면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 부강면 |
| 중소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 한솔동 | 한솔동 |
| 중소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아름동 | 아름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수원시팔달구 | 매산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수원시팔달구 | 화서1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성남시수정구 | 신흥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성남시수정구 | 복정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성남시수정구 | 시흥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성남시중원구 | 은행 1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성남시중원구 | 상대원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성남시분당구 | 서현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안양시만안구 | 안양1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안양시만안구 | 박달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안양시동안구 | 비산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안양시동안구 | 부흥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안양시동안구 | 달안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부천시원미구 | 원미1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부천시원미구 | 중3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부천시소사구 | 심곡본1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광명시 | 광명 5 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광명시 | 철산4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광명시 | 하안 2동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
| 중소도시 | 경기도 | 광명시 | 학온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평택시 | 서정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평택시 | 신장1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 | 본오1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 | 본오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 | 원곡본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 성사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고양시덕야우 | 신도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 행신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고양시일산서구 | 일산3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고양시일산서구 | 탄현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구리시 | 동구동 |
| 읍면지역 | 경기도 | 남양주시 | 오남읍 |
| 중소도시 | 경기도 | 오산시 | 세마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오산시 | 대원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시흥시 | 신천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시흥시 | 매화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시흥시 | 군자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시흥시 | 월곶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시흥시 | 과림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군포시 | 군포2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군포시 | 금정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군포시 | 재궁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의왕시 | 부곡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의왕시 | 청계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용인시수지구 | 동천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용인시수지구 | 상현2동 |
| 읍면지역 | 경기도 | 파주시 | 문산읍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중소도시 | 경기도 | 파주시 | 금촌1동 |
| 중소도시 | 경기도 | 파주시 | 운정1동 |
| 읍면지역 | 경기도 | 이천시 | 설성면 |
| 읍면지역 | 경기도 | 안성시 | 공도읍 |
| 읍면지역 | 경기도 | 안성시 | 보개면 |
| 읍면지역 | 경기도 | 화성시 | 향남읍 |
| 읍면지역 | 경기도 | 화성시 | 비봉면 |
| 읍면지역 | 경기도 | 화성시 | 장안면 |
| 읍면지역 | 경기도 | 포천시 | 화현면 |
| 중소도시 | 경기도 | 포천시 | 선단동 |
| 읍면지역 | 경기도 | 여주시 | 흥천면 |
| 읍면지역 | 경기도 | 가평군 | 상면 |
| 읍면지역 | 경기도 | 양평군 | 단월면 |
| 읍면지역 | 경기도 | 양평군 | 용문면 |
| 읍면지역 | 강원도 | 춘천시 | 북산면 |
| 읍면지역 | 강원도 | 원주시 | 부론면 |
| 읍면지역 | 강원도 | 강릉시 | 구정면 |
| 중소도시 | 강원도 | 강릉시 | 중앙동 |
| 중소도시 | 강원도 | 속초시 | 교동 |
| 중소도시 | 강원도 | 삼척시 | 남양동 |
| 읍면지역 | 강원도 | 영월군 | 김삿갓면 |
| 읍면지역 | 강원도 | 평창군 | 방림면 |
| 읍면지역 | 강원도 | 정선군 | 사북읍 |
| 읍면지역 | 강원도 | 인제군 | 상남면 |
| 중소도시 | 충청북도 | 청주시상당구 | 영운동 |
| 중소도시 | 충청북도 | 청주시상당구 | 금천동 |
| 중소도시 | 충청북도 | 충주시 | 교현2동 |
| 중소도시 | 충청북도 | 충주시 | 호암.직동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읍면지역 | 충청북도 | 제천시 | 금성면 |
| 중소도시 | 충청북도 | 제천시 | 의암동 |
| 읍면지역 | 충청북도 | 옥천군 | 청산면 |
| 읍면지역 | 충청북도 | 옥천군 | 군북면 |
| 읍면지역 | 충청북도 | 진천군 | 이월면 |
| 읍면지역 | 충청북도 | 음성군 | 소이면 |
| 읍면지역 | 충청북도 | 단양군 | 단성면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천안시서북구 | 입장면 |
| 중소도시 | 충청남도 | 공주시 | 옥룡동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보령시 | 오천면 |
| 중소도시 | 충청남도 | 보령시 | 대천5동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논산시 | 가야곡면 |
| 중소도시 | 충청남도 | 당진시 | 당진3동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부여군 | 세도면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서천군 | 문산면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청양군 | 청양읍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홍성군 | 홍동면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홍성군 | 서부면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홍성군 | 구항면 |
| 읍면지역 | 충청남도 | 예산군 | 신양면 |
| 중소도시 | 전라북도 | 전주시덕진구 | 팔복동 |
| 중소도시 | 전라북도 | 군산시 | 구암동 |
| 중소도시 | 전라북도 | 익산시 | 인화동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남원시 | 사매면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남원시 | 보절면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김제시 | 공덕면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완주군 | 고산면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진안군 | 동향면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진안군 | 성수면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임실군 | 지사면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순창군 | 유등면 |
| 읍면지역 | 전라북도 | 부안군 | 동진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순천시 | 서면 |
| 중소도시 | 전라남도 | 나주시 | 송월동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광양시 | 옥룡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담양군 | 대전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구례군 | 마산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화순군 | 동복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영암군 | 시종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무안군 | 운남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함평군 | 학교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영광군 | 묘량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장성군 | 서삼면 |
| 읍면지역 | 전라남도 | 진도군 | 의신면 |
| 중소도시 | 경상북도 | 포항시북구 | 장량동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경주시 | 외동읍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경주시 | 서면 |
| 중소도시 | 경상북도 | 경주시 | 황오동 |
| 중소도시 | 경상북도 | 김천시 | 지좌동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구미시 | 선산읍 |
| 중소도시 | 경상북도 | 구미시 | 상모사곡동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상주시 | 모서면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문경시 | 문경읍 |
| 중소도시 | 경상북도 | 경산시 | 서부2동 |
| 중소도시 | 경상북도 | 경산시 | 북부동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군위군 | 부계면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영양군 | 청기면 |


| 지역크기 | 구 분 | 시군/구 | 읍면/동 |
| :---: | :---: | :---: | :---: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청도군 | 각북면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울진군 | 북면 |
| 읍면지역 | 경상북도 | 울릉군 | 서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창원시의창구 | 대산면 |
| 중소도시 | 경상남도 | 창원시성산구 | 웅남동 |
| 중소도시 | 경상남도 | 창원시마산합포구 | 가포동 |
| 중소도시 | 경상남도 | 창원시마산합포구 | 문화동 |
| 중소도시 | 경상남도 | 진주시 | 천전동 |
| 중소도시 | 경상남도 | 진주시 | 상대1동 |
| 중소도시 | 경상남도 | 진주시 | 상평동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거제시 | 하청면 |
| 중소도시 | 경상남도 | 거제시 | 옥포1동 |
| 중소도시 | 경상남도 | 거제시 | 수양동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의령군 | 낙서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창녕군 | 도천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창녕군 | 부곡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남해군 | 삼동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하동군 | 고전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하동군 | 금남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산청군 | 금서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합천군 | 율곡면 |
| 읍면지역 | 경상남도 | 합천군 | 청덕면 |
| 읍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애월읍 |
| 중소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봉개동 |
| 중소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연동 |
| 읍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안덕면 |
| 중소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서홍동 |
| 중소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대천동 |

## III. 기본빈도표

## 법에 대한 가치관, 인식 및 법생활

※단 위 : 명(\%)
문1) $○$ ○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 (1) 공평하다 | 427 | $(14.2)$ |
| :--- | ---: | ---: |
| (2) 민주적이다 | 638 | $(21.3)$ |
| (3) 불공평하다 | 731 | $(24.4)$ |
| (4) 권위적이다 | 1128 | $(37.6)$ |
| (5) 기타 | 54 | $(1.8)$ |
| (6) 모름/무응답 | 22 | $(0.7)$ |

문2) ○○님은 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2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1)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2111
(2) 인터넷 629
(3)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46
(4) 정부 홍보물 10
(5) 주위 사람 189
(6) 학교 13
(7) 기타 1
(8) 모름/무응답 1
(70.4)
(0.3)
(6.3)
(0.4)
(0.0)

문2) ○○님은 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2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2$ 순위)
(1)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2801
(2) 인터넷 1586
(3)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178
(4) 정부 홍보물 131
(5) 주위 사람 1206
(6) 학교 46
(7) 기타
(8) 모름/무응답

문3) $○ ○$ 님은 보험이나 펀드를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매우 자세히 읽는다
(2) 대충 읽는다
(3) 별로 읽지 않는다 1068
(4) 전혀 읽지 않는다
(5) 모름/무응답

문4) $\bigcirc \bigcirc$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68 | $(2.3)$ |
| :--- | ---: | ---: |
| (2) 잘 지켜지는 편이다 | 1415 | $(47.2)$ |
| (3)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1397 | $(46.6)$ |
|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104 | $(3.5)$ |
| (5) 모름/무응답 | 16 | $(0.5)$ |

문4-1) (문4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107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168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637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284
(7) 기타 30
(8) 모름/무응답 8

문5) $\bigcirc \bigcirc$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킨다

416 (13.9)
(2) 잘 지키는 편이다
(3)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239
(4) 전혀 지키지 않는다

4 (0.1)
(5) 모름/무응답

문5-1) (문5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22 (9.0)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56 (23.2)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87 \quad$ (36.1)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23 (9.7)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19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34
(7) 기타

1
(0.4)

문6) $○ ○$ 님은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1237 (41.2)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1242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357
(4)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115
(5) 기타

27
(11.9)

22
(6) 모름/무응답

문7) $○ ○$ 님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42
(1.4)
(2) 잘 지켜지는 편이다
(3)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1475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115
(3.8)
(5) 모름/무응답
159

문7-1) (문7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업주 | 874 | $(55.0)$ |
| :--- | ---: | ---: |
| (2) 근로자 | 83 | $(5.2)$ |
| (3) 정부 | 561 | $(35.3)$ |
| (4) 기타 | 53 | $(3.3)$ |
| (5) 모름/무응답 | 19 | $(1.2)$ |

문8) $○ ○$ 님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157
(2) 현행 법령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725
(3)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05
(4) 기타

3
(3.5)
(5) 모름/무응답

10

문9) ○○님은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렿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352 (11.7)
(2)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3)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162
(5) 모름/무응답

문9-1) (문9에서 ' 1,2 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334 (16.5)
(2)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262 (13.0)
(3) 사회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 부족 765 (37.8)
(4) 국민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352 (17.4)
(5)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298 (14.8)
(6) 기타 7
(0.4)
(7) 모름/무응답

2 (0.1)

문10) $○$ ○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혹은 그렿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126
(2)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1178
(3)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1325
(4)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343

28
(5) 모름/무응답

문10-1) (문 10 에서 ' 1,2 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3)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5)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6) 기타

3 (0.2)
(7) 모름/무응답

1 (0.1)

문11) ○○님의 가정에서는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합니까?
(1) 아버지
296
(2) 어머니
150
(3) 남편
401 (13.4)
(4) 아내 173
(5) 부모 공동 의사 234
(6) 부부 공동 의사 1292
(7) 자녀 15
(8) 가족 모두 402
(9) 기타 35
(10) 모름/무응답
2 (0.1)

문12)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
니다. ○○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성과가 있다 | 41 | $(1.4)$ |
| :--- | ---: | ---: |
| (2) 성과가 있는 편이다 | 820 | $(27.3)$ |
| (3) 별로 성과가 없다 | 1530 | $(51.0)$ |
| (4) 전혀 성과가 없다 | 233 | $(7.8)$ |
| (5) 모름/무응답 | 376 | $(12.5)$ |

문 12-1) (문 12 에서 ' 1,2 번' 응답자에 게만)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egin{array}{lr}\text { (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 & 126 \\ \text { (2)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 & 354 \\ \text { (3)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 182 \\ \text { (4)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 & 184 \\ \text { (5) 기타 } & 4 \\ \text { (6) 모름/무응답 } & 11\end{array}$
$\begin{array}{lr}\text { (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 & 126 \\ \text { (2)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 & 354 \\ \text { (3)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 182 \\ \text { (4)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 & 184 \\ \text { (5) 기타 } & 4 \\ \text { (6) 모름/무응답 } & 11\end{array}$
$\begin{array}{lr}\text { (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 & 126 \\ \text { (2)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 & 354 \\ \text { (3)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 182 \\ \text { (4)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 & 184 \\ \text { (5) 기타 } & 4 \\ \text { (6) 모름/무응답 } & 11\end{array}$
$\begin{array}{lr}\text { (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 & 126 \\ \text { (2)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 & 354 \\ \text { (3)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 182 \\ \text { (4)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 & 184 \\ \text { (5) 기타 } & 4 \\ \text { (6) 모름/무응답 } & 11\end{array}$
$\begin{array}{lr}\text { (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 & 126 \\ \text { (2)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 & 354 \\ \text { (3)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 182 \\ \text { (4)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 & 184 \\ \text { (5) 기타 } & 4 \\ \text { (6) 모름/무응답 } & 11\end{array}$
$\begin{array}{lr}\text { (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 & 126 \\ \text { (2)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 & 354 \\ \text { (3)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 182 \\ \text { (4)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 & 184 \\ \text { (5) 기타 } & 4 \\ \text { (6) 모름/무응답 } & 11\end{array}$

문13) ○○님은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 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110
(5) 모름/무응답 54

## 주요 법 관련 현안

※단 위 : 명(\%)
문14)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님은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 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644 (21.5)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1700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505
(4) 매우 반대한다 78
(5) 모름/무응답 73

문15)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과거 10 여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bigcirc \bigcirc$ 님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 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41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786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1131
(4) 매우 반대한다 824
(5) 모름/무응답

문16)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OO님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167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830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1159
(4) 매우 반대한다
(5) 모름/무응답 34

문17) 최근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OO 님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597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1188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920
(4) 매우 반대한다

230
(5) 모름/무응답 65

문18)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 참여재판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O \bigcirc$ 님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성과가 있다
179
(2) 대체로 성과가 있다 1611
(3) 별로 성과가 없다 956
(4) 전혀 성과가 없다 107
(5) 모름/무응답
147

문19)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 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이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 님은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성과가 있을 것이다

262
(2) 대체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

1409
(3)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1012
(4) 전혀 성과가 없을 것이다 209
(5) 모름/무응답

문20) 2007년에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 님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성과가 있다 64
(2) 대체로 성과가 있다 1057
(3) 별로 성과가 없다 1480
(4) 전혀 성과가 없다 341
(5) 모름/무응답

문21) [법에 대한 관심]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렿다68

453
1023
1276
180
(2.3)
(42.5)
(6.0)

문22) [법에 대한 관심]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04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렿다

179
(6.0)

문23) [법에 대한 관심]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0
(2) 별로 그렇지 않다
250
(1.0)
(3) 보통이다
818
(8.3)
(4) 대체로 그렇다
1499
(27.3)
(5) 매우 그렇다
403

문24) [법에 대한 관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4
(2) 별로 그렇지 않다
822 (27.4)
(3) 보통이다
1340 (44.7)
(4) 대체로 그렇다
642 (21.4)
(5) 매우 그렿다
62 (2.1)

문25)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은 국민이 윕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541 | $(18.0)$ |
| :--- | ---: | ---: |
| (2) 별로 그렿지 않다 | 1253 | $(41.8)$ |
| (3) 보통이다 | 704 | $(23.5)$ |
| (4) 대체로 그렿다 | 474 | $(15.8)$ |
| (5) 매우 그렇다 | 28 | $(0.9)$ |

문26)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94 (9.8)
(2) 별로 그렇지 않다
802 (26.7)
(3) 보통이다
1086 (36.2)
(4) 대체로 그렇다
729 (24.3)
(5) 매우 그렿다
89 (2.9)

문27)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89 (6.3)
(2) 별로 그렿지 않다
592 (19.7)
(3) 보통이다
1063 (35.4)
(4) 대체로 그렇다
983 (32.8)
(5) 매우 그렿다
173
(5.8)

문28) 법에 대한 인식/정서 -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1) 전혀 그렿지 않다
412 (13.7)
(2) 별로 그렇지 않다 759
(3) 보통이다
974 (32.5)
(4) 대체로 그렇다
$734 \quad$ (24.4)
(5) 매우 그렿다
121 (4.0)

문29) [법에 대한 인식/정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
(2) 별로 그렇지 않다 139
(3) 보통이다 780
(0.4)
(4.6)
(4) 대체로 그렇다 1630
(5) 매우 그렇다

문30) [법에 대한 인식/정서]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 \quad(0.2)$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711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31) [법에 대한 준수]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82 (12.7)
(2) 별로 그렇지 않다

872
(29.0)
(3) 보통이다 971
(32.4)
(4) 대체로 그렇다

734
(5) 매우 그렇다

41

문32) [법에 대한 준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02 (10.1)
(2) 별로 그렇지 않다 875 (29.2)
(3) 보통이다 1110 (37.0)
(4) 대체로 그렇다 614
(20.4)
(5) 매우 그렇다

99
(3.3)

문33) [법에 대한 준수]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68
(2) 별로 그렇지 않다 518
(3) 보통이다 1087
(4) 대체로 그렇다 1031
(5) 매우 그렇다
196

문34) [법에 대한 준수]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63
(2) 별로 그렇지 않다
1115
(3) 보통이다 937
420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렿다
65

문35) [법에 대한 준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1
(2) 별로 그렿지 않다
516 (17.2)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렿다

문36)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96 \quad(3.2)$
(2) 별로 그렇지 않다

318 (10.6)
(3) 보통이다

874 (29.1)
(4) 대체로 그렿다
(5) 매우 그렇다

문37)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1
(2.4)
(2) 별로 그렇지 않다 306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38)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0
(2.0)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39)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1) 전혀 그렿지 않다 54
(2) 별로 그렇지 않다 189
(3) 보통이다 878
(4) 대체로 그렇다 1386
(5) 매우 그렇다 493

문40)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26
(2) 별로 그렇지 않다 395
(3) 보통이다 1148
(4) 대체로 그렿다 1148
(5) 매우 그렇다 183
(4.2)
(13.2)
(6.1)

문41)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6
(2) 별로 그렇지 않다
211
(3) 보통이다 1045
(4) 대체로 그렇다 1458
(5) 매우 그렇다

문42)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169 | $(5.6)$ |
| :--- | ---: | ---: |
| (2) 별로 그렿지 않다 | 675 | $(22.5)$ |
| (3) 보통이다 | 884 | $(29.5)$ |
| (4) 대체로 그렇다 | 1109 | $(37.0)$ |
| (5) 매우 그렇다 | 163 | $(5.4)$ |

문43)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인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107 | $(3.6)$ |
| :--- | ---: | ---: |
| (2) 별로 그렇지 않다 | 432 | $(14.4)$ |
| (3) 보통이다 | 997 | $(33.2)$ |
| (4) 대체로 그렇다 | 1223 | $(40.8)$ |
| (5) 매우 그렇다 | 241 | $(8.0)$ |

문44)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22
(4.1)
(2) 별로 그렇지 않다

342 (11.4)
(3) 보통이다

841 (28.0)
(4) 대체로 그렇다

1310
(43.7)
(5) 매우 그렇다

385
(12.8)

문45)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79
(2) 별로 그렇지 않다
628
(3) 보통이다
1012
(4) 대체로 그렇다
945
(5) 매우 그렇다
136

문46)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49 | $(8.3)$ |
| :--- | ---: | ---: |
| (2) 별로 그렇지 않다 | 526 | $(17.5)$ |
| (3) 보통이다 | 1159 | $(38.6)$ |
| (4) 대체로 그렇다 | 980 | $(32.7)$ |
| (5) 매우 그렇다 | 86 | $(2.9)$ |

문47) [법의 제정/집행]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78 (15.9)
(2) 별로 그렇지 않다
848
(28.3)
(3) 보통이다
878
(4) 대체로 그렇다
735
(5) 매우 그렇다
61
(2.1)

문48) [법의 제정/집행]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15 (13.8)
(2) 별로 그렇지 않다
885
(3) 보통이다
920
(4) 대체로 그렇다
660
(30.7)
(5) 매우 그렇다
120

부 록

문49) [법의 제정/집행]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22
(2) 별로 그렇지 않다 823
(27.4)
(3) 보통이다 1009
(33.6)
(4) 대체로 그렇다 644
(21.5)
(5) 매우 그렇다 102

문50) [법의 제정/집행]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20
(2) 별로 그렇지 않다
911
(14.0)
(3) 보통이다
1007
(4) 대체로 그렇다
575
(5) 매우 그렇다
87
IV. 교차집계표
[ 표 1 ] 법에 대한 느낌
문)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명) | 공평 <br> 하다 | $\begin{aligned} & \text { 민주적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불공평 } \\ & \text { 하다 } \end{aligned}$ | 권위적 이다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긍정 } \\ \text { (공평+민주)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부정 } \\ \text { (불공평+권위적) } \end{gathered}$ |
| 전 체 |  | 3,000 | 14.2 | 21.3 | 24.4 | 37.6 | 1.8 | 0.7 | 35.5 | 62.0 |
| 성 별 | 남 자 | 1,489 | 13.9 | 21.1 | 25.9 | 36.9 | 1.7 | 0.5 | 35.0 | 62.8 |
|  | 여 자 | 1,511 | 14.6 | 21.4 | 22.9 | 38.3 | 2.0 | 0.9 | 36.0 | 61.2 |
| 연 령 별 | 20 대 | 529 | 13.2 | 21.9 | 25.8 | 37.6 | 1.3 | 0.2 | 35.1 | 63.4 |
|  | 300 대 | 560 | 11.0 | 18.7 | 25.7 | 41.4 | 2.5 | 0.6 | 29.7 | 67.1 |
|  | 40 대 | 644 | 10.1 | 17.5 | 26.4 | 44.3 | 1.2 | 0.4 | 27.6 | 70.7 |
|  | 500 대 | 594 | 16.1 | 23.4 | 22.1 | 35.6 | 2.3 | 0.5 | 39.5 | 57.7 |
|  | 60 대 이 상 | 673 | 20.0 | 24.6 | 22.2 | 29.8 | 1.8 | 1.6 | 44.6 | 52.0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21.5 | 23.3 | 25.7 | 24.9 | 2.1 | 2.5 | 44.8 | 50.6 |
|  | 고 졸 | 1,196 | 15.2 | 22.5 | 23.6 | 35.9 | 2.1 | 0.7 | 37.7 | 59.5 |
|  | 대 재 이 상 | 1,409 | 11.4 | 19.6 | 24.6 | 42.6 | 1.5 | 0.2 | 31.0 | 67.2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 하 | 379 | 20.3 | 19.6 | 25.1 | 31.5 | 1.2 | 2.3 | 39.9 | 56.6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12.9 | 18.2 | 29.4 | 35.6 | 3.0 | 0.9 | 31.1 | 65.0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4.6 | 24.9 | 24.7 | 33.7 | 1.6 | 0.6 | 39.5 | 58.4 |
|  | 400~499 만 원 | 629 | 14.2 | 22.6 | 22.1 | 38.4 | 2.1 | 0.5 | 36.8 | 60.5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2.1 | 20.0 | 22.6 | 43.8 | 1.4 | 0.1 | 32.1 | 66.4 |
| 직 업 별 | 농/ 축 / 수 산 업 | 133 | 24.4 | 19.8 | 20.0 | 33.0 | 0.7 | 2.1 | 44.2 | 53.0 |
|  | 자 영 업 | 666 | 12.1 | 20.9 | 25.5 | 38.9 | 2.0 | 0.6 | 33.0 | 64.4 |
|  | 블 루 칼 라 | 588 | 13.1 | 22.5 | 27.2 | 33.5 | 2.7 | 1.0 | 35.6 | 60.7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1.4 | 19.5 | 24.4 | 42.8 | 1.6 | 0.2 | 30.9 | 67.2 |
|  | 전 업 주 부 | 563 | 15.9 | 24.7 | 20.1 | 36.3 | 1.7 | 1.3 | 40.6 | 56.4 |
|  | 학 생 | 185 | 16.5 | 23.2 | 25.7 | 33.6 | 1.1 | 0.0 | 39.7 | 59.3 |
|  | 무 직 / 기 타 | 132 | 25.3 | 11.7 | 26.5 | 35.8 | 0.8 | 0.0 | 37.0 | 62.3 |
| 혼 인 | 미 혼 | 672 | 12.5 | 21.2 | 26.9 | 37.9 | 1.3 | 0.1 | 33.7 | 64.8 |
|  | 기 혼 | 2,233 | 14.4 | 21.7 | 23.7 | 37.5 | 1.9 | 0.8 | 36.1 | 61.2 |
|  | 별 거/사 별/기타 | 94 | 23.8 | 10.6 | 22.2 | 37.1 | 4.2 | 2.1 | 34.4 | 59.3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15.7 | 13.7 | 36.6 | 31.3 | 2.2 | 0.6 | 29.4 | 67.9 |
|  | 1 세 대 가 구 | 787 | 17.8 | 19.9 | 24.7 | 34.7 | 1.8 | 1.1 | 37.7 | 59.4 |
|  | $2 \text { 세 대 가 구 }$ | 1,905 | 12.7 | 22.8 | 23.0 | 39.1 | 1.8 | 0.5 | 35.5 | 62.1 |
|  | 3 세 대 가 구 | 127 | 13.2 | 16.9 | 25.0 | 42.4 | 0.8 | 1.7 | 30.1 | 67.4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4.2 | 20.7 | 26.5 | 35.3 | 2.1 | 1.2 | 34.9 | 61.8 |
|  | 중 간 층 | 1,527 | 14.0 | 21.0 | 22.8 | 40.2 | 1.6 | 0.4 | 35.0 | 63.0 |
|  | 상 층 | 122 | 18.1 | 31.0 | 19.6 | 30.5 | 0.8 | 0.0 | 49.1 | 50.1 |
| $\begin{aligned} & \text { 이 념 } \\ & \text { 성 향 별 } \end{aligned}$ | 진 보 | 683 | 13.7 | 25.1 | 24.4 | 34.5 | 1.8 | 0.4 | 38.8 | 58.9 |
|  | 중 도 | 1,462 | 12.1 | 17.7 | 27.0 | 40.8 | 1.5 | 0.9 | 29.8 | 67.8 |
|  | 보 수 | 855 | 18.3 | 24.3 | 19.9 | 34.6 | 2.3 | 0.7 | 42.6 | 54.5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5.5 | 22.8 | 22.8 | 35.3 | 3.6 | 0.0 | 38.3 | 58.1 |
|  | 부 산 | 212 | 17.0 | 36.0 | 13.1 | 33.4 | 0.5 | 0.0 | 53.0 | 46.5 |
|  | 대 구 | 146 | 17.1 | 20.3 | 18.7 | 42.6 | 1.3 | 0.0 | 37.4 | 61.3 |
|  | 인 천 | 170 | 11.1 | 8.9 | 36.4 | 32.4 | 9.5 | 1.7 | 20.0 | 68.8 |
|  | 광 주 | 82 | 16.4 | 23.0 | 26.5 | 31.2 | 1.9 | 1.1 | 39.4 | 57.6 |
|  | 대 전 | 89 | 10.0 | 26.7 | 24.7 | 38.7 | 0.0 | 0.0 | 36.6 | 63.4 |
|  | 울 산 | 67 | 6.7 | 44.5 | 23.2 | 25.7 | 0.0 | 0.0 | 51.2 | 48.8 |
|  | 세 종 | 10 | 23.2 | 29.2 | 7.8 | 39.8 | 0.0 | 0.0 | 52.3 | 47.7 |
|  | 경 기 | 707 | 10.1 | 22.0 | 24.8 | 42.0 | 0.2 | 1.0 | 32.1 | 66.8 |
|  | 강 원 | 91 | 21.6 | 10.6 | 36.4 | 27.5 | 1.9 | 1.9 | 32.3 | 63.9 |
|  | 충 早 | 92 | 13.9 | 16.8 | 30.3 | 39.0 | 0.0 | 0.0 | 30.7 | 69.3 |
|  | 충 남 | 120 | 19.2 | 20.0 | 21.6 | 38.4 | 0.7 | 0.0 | 39.2 | 60.0 |
|  | 전 家 | 107 | 23.1 | 34.1 | 9.9 | 30.4 | 2.4 | 0.0 | 57.2 | 40.4 |
|  | 전 남 | 113 | 15.2 | 16.0 | 19.4 | 44.9 | 1.4 | 3.0 | 31.3 | 64.3 |
|  |  | 161 | 11.2 | 6.8 | 28.8 | 53.2 | 0.0 | 0.0 | 17.9 | 82.1 |
|  | 경 남 | 193 | 18.3 | 14.1 | 31.0 | 32.4 | 1.6 | 2.6 | 32.4 | 63.4 |
|  | 제 주 | 34 | 7.2 | 18.0 | 42.8 | 26.8 | 3.4 | 1.8 | 25.2 | 69.6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2.4 | 20.8 | 25.3 | 38.2 | 2.6 | 0.7 | 33.2 | 63.5 |
|  | 충 청 권 | 311 | 15.1 | 21.3 | 24.6 | 38.7 | 0.3 | 0.0 | 36.4 | 63.3 |
|  | 호 남 권 | 302 | 18.3 | 24.3 | 18.0 | 36.0 | 1.9 | 1.4 | 42.6 | 54.0 |
|  | 경 상 권 | 779 | 15.3 | 22.3 | 22.7 | 38.3 | 0.8 | 0.6 | 37.6 | 61.0 |
|  | 강 원 / 제 주 | 125 | 17.7 | 12.6 | 38.1 | 27.3 | 2.3 | 1.9 | 30.3 | 65.4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14.6 | 24.2 | 22.9 | 35.0 | 3.1 | 0.3 | 38.8 | 57.9 |
|  | 중 소 도 시 | 918 | 13.7 | 19.9 | 26.5 | 38.7 | 0.6 | 0.6 | 33.6 | 65.2 |
|  | 읍 면 지 역 | 710 | 14.2 | 17.5 | 24.4 | 41.2 | 0.9 | 1.8 | 31.7 | 65.6 |

[ 표 2 ] 생활법률정보 인지경로(1순위)
문) 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1순위)

[ 표 2-1] 생활법률정보 인지경로(1+2순위)
문) 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1+2순위)

[ 표 3] 계약서 숙지 정도
문) 보험이나 펀드를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 [ 표 4]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문)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 4-1] 우리 사회의 법 비준수 이유

문)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 5 ] 법준수 자가 진단
문)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5-1 ]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문)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법을 } \\ \text { 잘 } \\ \text { 몰라서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법을 } \\ & \text { 지키는 } \\ & \text { 것이 } \\ & \text { 번거롤고 } \\ & \text { 불편해서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법대로 } \\ & \text { 살면 } \\ & \text { 손해를 } \\ & \text { 보니까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지키지 } \\ \text { 않아도 } \\ \text { 처벌받지 } \\ \text { 않은겅오 } \\ \text { 생각되기 } \\ \text { 때문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법을 } \\ \text { 지키진않는 } \\ \text { 사람이 더 } \\ \text { 많아서 } \end{gathered}$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9.0 | 23.2 | 36.1 | 9.7 | 7.6 | 14.1 | 0.4 |
| 성 별 | 남 자 | 1,489 | 9.5 | 23.6 | 34.4 | 11.9 | 8.9 | 11.1 | 0.5 |
|  | 여 자 | 1,511 | 7.9 | 22.3 | 39.7 | 4.9 | 4.8 | 20.4 | 0.0 |
| 연령별 | 20 대 | 529 | 17.7 | 17.2 | 35.7 | 10.2 | 13.4 | 5.8 | 0.0 |
|  | 30 대 | 560 | 4.6 | 23.6 | 31.9 | 10.9 | 9.7 | 17.3 | 1.9 |
|  | 40 대 | 644 | 10.0 | 27.3 | 37.9 | 7.0 | 2.1 | 15.7 | 0.0 |
|  | 5 0 대 | 594 | 5.0 | 14.3 | 44.4 | 14.9 | 2.2 | 19.3 | 0.0 |
|  | 60 대 이 상 | 673 | 2.5 | 37.3 | 30.8 | 5.2 | 7.4 | 16.8 | 0.0 |
| 학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3.6 | 33.0 | 27.0 | 6.8 | 9.9 | 19.7 | 0.0 |
|  | 고 졸 | 1,196 | 7.2 | 24.7 | 38.7 | 9.1 | 6.5 | 13.7 | 0.0 |
|  | 대 재 이 상 | 1,409 | 11.7 | 19.7 | 36.1 | 10.8 | 8.0 | 13.0 | 0.7 |
| 소득 별 | 199 만원 이하 | 379 | 10.5 | 42.0 | 24.0 | 0.0 | 9.1 | 14.4 | 0.0 |
|  | 200~299 만 원 | 485 | 2.9 | 12.7 | 38.3 | 7.7 | 11.5 | 26.9 | 0.0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9.8 | 30.2 | 30.0 | 9.2 | 4.6 | 14.7 | 1.5 |
|  | 400~499 만 원 | 629 | 6.4 | 18.3 | 41.0 | 14.1 | 10.2 | 10.0 | 0.0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4.3 | 22.1 | 39.4 | 10.0 | 4.9 | 9.3 | 0.0 |
| 직업별 | 농/ 축 / 수 산 업 | 133 | 10.8 | 28.9 | 20.3 | 10.0 | 10.1 | 20.0 | 0.0 |
|  | 자 영 업 | 666 | 7.5 | 32.7 | 35.3 | 1.9 | 5.4 | 17.2 | 0.0 |
|  | 블 루 칼 라 | 588 | 3.8 | 21.1 | 38.8 | 10.0 | 11.1 | 14.1 | 1.2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1.2 | 16.0 | 39.0 | 14.5 | 5.0 | 14.2 | 0.0 |
|  | 전 업 주 부 | 563 | 3.3 | 24.0 | 44.5 | 4.5 | 3.6 | 20.1 | 0.0 |
|  | 학 생 | 185 | 34.5 | 25.4 | 16.4 | 17.0 | 6.6 | 0.0 | 0.0 |
|  | 무 직 / 기 타 | 132 | 10.6 | 20.0 | 31.0 | 20.6 | 17.9 | 0.0 | 0.0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12.9 | 17.5 | 35.4 | 9.3 | 12.7 | 11.3 | 1.0 |
|  | 기 | 2,233 | 6.9 | 26.3 | 37.1 | 9.6 | 4.3 | 15.9 | 0.0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36.0 | 0.0 | 32.0 | 32.0 | 0.0 | 0.0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5.9 | 51.8 | 13.2 | 0.0 | 10.0 | 19.1 | 0.0 |
|  | 1 세 대 가 구 | 787 | 8.6 | 16.3 | 35.8 | 8.5 | 9.4 | 21.4 | 0.0 |
|  | 2 세 대 가 구 | 1,905 | 9.3 | 23.2 | 38.4 | 11.1 | 7.0 | 11.0 | 0.0 |
|  | 3 세 대 가 구 | 127 | 13.7 | 15.5 | 41.0 | 10.9 | 0.0 | 6.8 | 12.0 |
| 주관적 <br> 계 층 <br> 수준별 | 하 층 | 1,352 | 5.0 | 20.0 | 40.9 | 12.6 | 6.1 | 14.7 | 0.7 |
|  | 중 간 층 | 1,527 | 12.4 | 28.1 | 32.4 | 6.5 | 8.3 | 12.3 | 0.0 |
|  | 상 층 | 122 | 20.5 | 8.7 | 17.8 | 9.6 | 18.3 | 25.2 | 0.0 |
| 이 념 성향 별 | 진 보 | $683$ | 8.2 | 18.9 | 28.6 | 15.7 | 8.0 | 20.6 | 0.0 |
|  | 중 | 1,462 | 9.3 | 24.1 | 36.8 | 6.7 | 7.2 | 15.2 | 0.7 |
|  | 보 수 | 855 | 9.3 | 26.1 | 42.6 | 9.4 | 7.9 | 4.8 | 0.0 |
| 지역별 | 서 울 | 606 | 15.1 | 21.1 | 30.3 | 3.0 | 3.0 | 27.4 | 0.0 |
|  | 부 산 | 212 | 10.0 | 15.3 | 49.9 | 20.0 | 0.0 | 4.9 | 0.0 |
|  | 대 구 | 146 | 24.6 | 50.3 | 8.6 | 8.0 | 8.6 | 0.0 | 0.0 |
|  | 인 천 | 170 | 5.0 | 10.0 | 55.0 | 15.0 | 10.0 | 5.0 | 0.0 |
|  | 광 주 | 82 | 0.0 | 41.8 | 25.3 | 6.4 | 20.0 | 6.4 | 0.0 |
|  | 대 전 | 89 | 0.0 | 0.0 | 43.5 | 13.3 | 15.0 | 28.2 | 0.0 |
|  | 울 산 | 67 | 20.5 | 0.0 | 59.7 | 0.0 | 19.9 | 0.0 | 0.0 |
|  | 세 종 | 10 | 0.0 | 61.5 | 38.5 | 0.0 | 0.0 | 0.0 | 0.0 |
|  | 경 기 | 707 | 4.6 | 23.3 | 34.9 | 16.3 | 9.2 | 11.6 | 0.0 |
|  | 강 원 | 91 | 0.0 | 27.9 | 58.0 | 0.0 | 0.0 | 0.0 | 14.2 |
|  | 충 북 | 92 | 10.4 | 19.0 | 51.3 | 0.0 | 10.0 | 9.3 | 0.0 |
|  | 충 남 | 120 | 9.5 | 9.6 | 33.0 | 14.7 | 9.5 | 23.7 | 0.0 |
|  | 전 空 | 107 | 9.0 | 27.6 | 27.1 | 8.6 | 0.0 | 27.7 | 0.0 |
|  | 전 남 | 113 | 0.0 | 58.0 | 23.2 | 0.0 | 18.8 | 0.0 | 0.0 |
|  | 경 早 | 161 | 0.0 | 27.1 | 33.8 | 5.6 | 5.2 | 28.2 | 0.0 |
|  | 경 남 | 193 | 24.7 | 33.8 | 33.3 | 0.0 | 8.2 | 0.0 | 0.0 |
|  | 제 주 | 34 | 37.5 | 31.3 | 0.0 | 0.0 | 0.0 | 31.3 | 0.0 |
| 권역별 | 수 도 권 | 1,483 | 8.4 | 20.1 | 37.1 | 11.4 | 7.2 | 15.9 | 0.0 |
|  | 충 청 권 | 311 | 7.8 | 11.5 | 39.5 | 10.4 | 10.4 | 20.3 | 0.0 |
|  | 호 남 권 | 302 | 3.3 | 39.5 | 25.6 | 6.1 | 12.5 | 13.0 | 0.0 |
|  | 경 상 권 | 779 | 13.2 | 27.1 | 35.8 | 9.2 | 5.6 | 9.1 | 0.0 |
|  | 강 원 / 제 주 | 125 | 7.7 | 28.6 | 46.1 | 0.0 | 0.0 | 6.4 | 11.2 |
| 지 역 <br> 규모 별 | 대 도 시 | 1,372 | 11.0 | 21.5 | 37.2 | 9.6 | 7.4 | 13.1 | 0.0 |
|  | 중 소 도 시 | 918 | 6.9 | 28.8 | 36.1 | 8.8 | 8.2 | 11.2 | 0.0 |
|  | 읍 면 지 역 | 710 | 7.8 | 19.1 | 33.7 | 11.0 | 7.1 | 19.8 | 1.6 |

[ 표 6] 불량품 구매시 대처 반응
문)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표 7 ] 노사관계법 준수도
문)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매우 잘 } \\ \text { 지켜지고 } \\ \text { 있다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니는 } \\ \text { 평이단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ㅈㅏㅏ } \\ & \text { 지켜지지 } \\ & \text { 읺는 } \\ & \text { 편이다 } \end{aligned}$ | $\begin{array}{\|c\|} \text { 전혀 } \\ \text { 지켜지고 } \\ \text { 있지 않다 } \end{array}$ |  |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쳘짐 |  |  |  |  |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지켜ㅊㅣㅣㅈㅣ } \\ \text { 않음 } \end{gathered}$ |
|  | 전 체 |  | 3,000 | 1.4 | 40.3 | 49.2 | 3.8 | 5.3 | 41.7 | 53.0 |
|  | 남 자 | 1,489 | 1.3 | 40.0 | 50.7 | 4.5 | 3.5 | 41.3 | 55.2 |
| 성 블 | 여 자 | 1,511 | 1.5 | 40.6 | 47.7 | 3.2 | 7.1 | 42.1 | 50.9 |
| 연 령 별 | 20 대 | 529 | 1.2 | 33.3 | 55.5 | 6.1 | 3.9 | 34.5 | 61.6 |
|  | 30 대 | 560 | 1.1 | 36.8 | 54.7 | 5.3 | 2.1 | 37.9 | 60.0 |
|  | 40 대 | 644 | 1.3 | 38.2 | 54.8 | 3.8 | 1.9 | 39.5 | 58.6 |
|  | 50 대 | 594 | 1.9 | 45.7 | 44.7 | 2.5 | 5.1 | 47.6 | 47.2 |
|  | 60 대 이 상 | 673 | 1.4 | 45.9 | 38.1 | 2.2 | 12.5 | 47.3 | 40.3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2.2 | 43.4 | 35.9 | 4.3 | 14.2 | 45.6 | 40.2 |
|  | 고 졸 | 1,196 | 1.8 | 41.6 | 47.7 | 2.3 | 6.6 | 43.4 | 50.0 |
|  | 대 재 이 상 | 1,409 | 0.8 | 38.3 | 54.1 | 5.1 | 1.7 | 39.1 | 59.2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 하 | 379 | 1.5 | 41.2 | 40.5 | 3.5 | 13.2 | 42.7 | 44.0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1.6 | 38.9 | 49.4 | 3.4 | 6.7 | 40.5 | 52.8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5 | 43.5 | 47.9 | 3.2 | 3.9 | 45.0 | 51.1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0.9 | 40.6 | 49.1 | 4.7 | 4.7 | 41.5 | 53.8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4 | 38.0 | 53.9 | 4.1 | 2.6 | 39.4 | 58.0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2.2 | 51.2 | 36.6 | 4.4 | 5.7 | 53.4 | 41.0 |
|  | 자 영 업 | 666 | 1.2 | 42.4 | 45.6 | 2.7 | 8.1 | 43.6 | 48.3 |
|  | 블 루 칼 라 | 588 | 2.4 | 44.3 | 46.0 | 3.1 | 4.2 | 46.7 | 49.1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0.5 | 37.9 | 54.6 | 5.6 | 1.3 | 38.4 | 60.2 |
|  | 전 업 주 부 | 563 | 1.5 | 41.9 | 47.0 | 2.1 | 7.5 | 43.4 | 49.1 |
|  | 학 생 | 185 | 1.7 | 27.3 | 60.4 | 5.6 | 5.0 | 29.0 | 66.0 |
|  | 무 직 / 기 타 | 132 | 0.8 | 25.5 | 57.1 | 7.5 | 9.1 | 26.3 | 64.6 |
| 혼 인 | 미 혼 | 672 | 1.5 | 32.1 | 57.2 | 6.4 | 2.9 | 33.6 | 63.6 |
|  | 기 혼 | 2,233 | 1.4 | 43.1 | 46.9 | 3.1 | 5.5 | 44.5 | 50.0 |
| 상 태 별 | 별 거/ 사 별 / 기타 | 94 | 0.0 | 32.1 | 45.5 | 4.1 | 18.4 | 32.1 | 49.6 |
| $\begin{array}{ll} \text { 가 } & \text { 구 } \\ \text { 구 성 } & \text { 별 } \end{array}$ |  | 180 | 0.5 | 30.9 | 53.4 | 6.6 | 8.6 | 31.4 | 60.0 |
|  | 1 세 대 가 구 | 787 | 1.3 | 40.2 | 48.1 | 2.9 | 7.6 | 41.5 | 51.0 |
|  | 2 세 대 가 구 | 1,905 | 1.6 | 42.0 | 48.6 | 3.7 | 4.1 | 43.6 | 52.3 |
|  | 3 세 대 가 구 | 127 | 0.7 | 29.1 | 57.7 | 7.7 | 4.8 | 29.8 | 65.4 |
| 주 관 적 | 하 층 | 1,352 | 0.8 | 38.4 | 50.7 | 4.0 | 6.2 | 39.2 | 54.7 |
| 계 층 | 중 간 층 | 1,527 | 1.6 | 42.2 | 48.1 | 3.5 | 4.5 | 43.8 | 51.6 |
| 수 준 별 | 상 층 | 122 | 5.2 | 37.6 | 45.2 | 6.3 | 5.7 | 42.8 | 51.5 |
| 이 념 | 진 보 | 683 | 2.3 | 41.6 | 46.6 | 5.0 | 4.4 | 43.9 | 51.6 |
|  | 중 <br> 도 | 1,462 | 1.2 | 35.6 | 54.4 | 3.6 | 5.2 | 36.8 | 58.0 |
| 성 향 별 | 보 수 | 855 | 0.9 | 47.3 | 42.2 | 3.3 | 6.2 | 48.2 | 45.5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0.7 | 38.3 | 52.4 | 4.7 | 3.9 | 39.0 | 57.1 |
|  | 부 산 | 212 | 3.8 | 48.8 | 42.9 | 2.9 | 1.5 | 52.6 | 45.8 |
|  | 대 구 | 146 | 0.6 | 54.4 | 35.8 | 4.0 | 5.2 | 55.0 | 39.8 |
|  | 인 천 | 170 | 0.6 | 30.7 | 60.0 | 2.9 | 5.8 | 31.3 | 62.9 |
|  | 광 주 | 82 | 7.1 | 42.2 | 41.3 | 3.9 | 5.4 | 49.3 | 45.2 |
|  | 대 전 | 89 | 1.0 | 51.6 | 35.6 | 7.9 | 3.9 | 52.6 | 43.5 |
|  | 울 산 | 67 | 2.3 | 53.3 | 41.8 | 2.6 | 0.0 | 55.6 | 44.4 |
|  | 세 총 | 10 | 12.7 | 40.0 | 16.8 | 5.3 | 25.2 | 52.7 | 22.1 |
|  | 경 기 | 707 | 0.5 | 30.2 | 59.5 | 3.6 | 6.3 | 30.7 | 63.1 |
|  | 강 원 | 91 | 0.0 | 28.9 | 56.0 | 8.5 | 6.7 | 28.9 | 64.5 |
|  | 충 북 | 92 | 1.0 | 37.6 | 45.5 | 1.0 | 15.0 | 38.6 | 46.5 |
|  | 충 남 | 120 | 4.6 | 50.8 | 40.7 | 2.4 | 1.5 | 55.4 | 43.1 |
|  | 전 早 | 107 | 0.8 | 69.4 | 27.3 | 1.6 | 0.8 | 70.2 | 28.9 |
|  | 전 남 | 113 | 3.1 | 44.6 | 39.2 | 4.0 | 9.1 | 47.7 | 43.2 |
|  | 경 북 | 161 | 1.3 | 48.5 | 44.1 | 5.0 | 1.2 | 49.8 | 49.1 |
|  | 경 남 | 193 | 0.5 | 40.2 | 51.4 | 2.6 | 5.2 | 40.7 | 54.0 |
|  | 제 주 | 34 | 0.0 | 17.1 | 33.0 | 4.7 | 45.2 | 17.1 | 37.7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0.6 | 33.5 | 56.6 | 3.9 | 5.3 | 34.1 | 60.5 |
|  | 충 청 권 | 311 | 2.8 | 46.8 | 39.9 | 3.6 | 7.0 | 49.6 | 43.5 |
|  | 호 남 권 | 302 | 3.4 | 52.7 | 35.6 | 3.1 | 5.2 | 56.1 | 38.7 |
|  | 경 상 권 | 779 | 1.8 | 48.1 | 43.8 | 3.5 | 2.9 | 49.9 | 47.3 |
|  | 강 원 제 주 | 125 | 0.0 | 25.7 | 49.7 | 7.5 | 17.1 | 25.7 | 57.2 |
| 규 모 별 | 대 도 시 | 1,372 | 1.7 | 42.5 | 47.8 | 4.2 | 3.8 | 44.2 | 52.0 |
|  | 중 소 도 시 | 918 | 1.4 | 37.8 | 50.5 | 3.4 | 6.8 | 39.2 | 53.9 |
|  | 읍 면 지 역 | 710 | 0.8 | 39.1 | 50.0 | 3.8 | 6.3 | 39.9 | 53.8 |

## [ 표 7-1 ] 노사관계법 비준수 집단

문) 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명) | 사업주 | 근로자 | 정 부 | 기 타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3,000 | 55.0 | 5.2 | 35.3 | 3.3 | 1.2 |
| 성 별 | 남 자 | 1,489 | 52.6 | 5.9 | 36.5 | 4.0 | 0.9 |
|  | 여 자 | 1,511 | 57.5 | 4.5 | 34.0 | 2.6 | 1.5 |
| 연 렁 별 | 20 대 | 529 | 50.6 | 3.5 | 40.8 | 4.1 | 1.0 |
|  | 30 대 | 560 | 49.8 | 3.3 | 44.0 | 1.9 | 1.0 |
|  | 40 대 | 644 | 56.3 | 3.9 | 34.5 | 4.7 | 0.7 |
|  | 50 대 | 594 | 61.8 | 7.0 | 26.4 | 3.3 | 1.5 |
|  | 60 대 이 상 | 673 | 57.8 | 9.6 | 28.3 | 2.3 | 2.0 |
| 학 럭 별 | 중 졸 이 하 | 395 | 57.8 | 13.4 | 23.6 | 1.8 | 3.4 |
|  | 고 졸 | 1,196 | 60.6 | 5.1 | 31.0 | 2.4 | 0.9 |
|  | 대 재 이 상 | 1,409 | 50.4 | 3.7 | 40.6 | 4.3 | 1.0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 하 | 379 | 52.5 | 11.0 | 32.5 | 2.7 | 1.4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57.3 | 6.1 | 32.6 | 2.3 | 1.7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57.2 | 6.3 | 34.1 | 2.0 | 0.3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55.1 | 3.8 | 38.2 | 1.8 | 1.1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53.0 | 3.0 | 36.5 | 6.0 | 1.5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47.4 | 11.2 | 41.4 | 0.0 | 0.0 |
|  | 자 영 업 | 666 | 55.1 | 9.1 | 29.5 | 3.9 | 2.4 |
|  | 블 루 칼 라 | 588 | 66.0 | 4.0 | 28.5 | 1.4 | 0.0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49.8 | 2.4 | 42.5 | 4.0 | 1.3 |
|  | 전 업 주 부 | 563 | 57.1 | 5.8 | 33.1 | 3.1 | 0.8 |
|  | 학 생 | 185 | 53.7 | 5.2 | 35.5 | 4.9 | 0.8 |
|  | 무 직 / 기 타 | 132 | 44.2 | 3.4 | 45.4 | 4.4 | 2.7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50.7 | 3.8 | 40.1 | 3.8 | 1.5 |
|  | 기 | 2,233 | 56.3 | 5.6 | 33.8 | 3.2 | 1.1 |
|  | 별 거 / 사 별 / 기타 | 94 | 63.5 | 8.1 | 26.4 | 2.0 | 0.0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48.2 | 5.4 | 40.4 | 3.8 | 2.1 |
|  | 1 세 대 가 구 | 787 | 52.4 | 6.5 | 36.7 | 3.6 | 0.8 |
|  | 2 세 대 가 구 | 1,905 | 57.3 | 4.7 | 33.6 | 3.1 | 1.2 |
|  | 3 세 대 가 구 | 127 | 49.1 | 4.1 | 41.5 | 3.9 | 1.4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층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56.7 | 5.3 | 34.6 | 1.9 | 1.5 |
|  | 중 간 층 | 1,527 | 53.7 | 5.3 | 35.6 | 4.4 | 1.0 |
|  | 상 층 | 122 | 50.3 | 3.4 | 39.6 | 6.8 | 0.0 |
| $\begin{aligned} & \text { 이 념 } \\ & \text { 성 향 별 } \end{aligned}$ | 진 보 | 683 | 52.9 | 3.4 | 39.1 | 3.4 | 1.2 |
|  | 중 도 | 1,462 | 54.3 | 4.2 | 37.1 | 3.4 | 1.1 |
|  | 보 수 | 855 | 58.5 | 9.1 | 27.9 | 3.1 | 1.4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59.4 | 6.2 | 27.9 | 4.9 | 1.6 |
|  | 부 산 | 212 | 64.1 | 8.5 | 24.2 | 3.2 | 0.0 |
|  | 대 구 | 146 | 55.2 | 3.2 | 36.6 | 3.3 | 1.6 |
|  | 인 천 | 170 | 59.8 | 4.6 | 34.6 | 0.9 | 0.0 |
|  | 광 주 | 82 | 48.8 | 4.3 | 42.6 | 4.4 | 0.0 |
|  | 대 전 | 89 | 32.2 | 0.0 | 60.9 | 6.9 | 0.0 |
|  | 울 산 | 67 | 51.8 | 0.0 | 45.5 | 2.7 | 0.0 |
|  | 세 종 | 10 | 59.4 | 11.3 | 18.0 | 0.0 | 11.3 |
|  | 경 기 | 707 | 54.3 | 2.1 | 39.1 | 2.6 | 2.0 |
|  | 강 원 | 91 | 58.2 | 1.5 | 35.5 | 4.8 | 0.0 |
|  | 충 북 | 92 | 53.4 | 0.0 | 40.8 | 5.9 | 0.0 |
|  | 충 남 | 120 | 44.7 | 3.6 | 50.0 | 1.7 | 0.0 |
|  | 전 晃 | 107 | 43.1 | 11.6 | 45.2 | 0.0 | 0.0 |
|  | 전 남 | 113 | 36.3 | 2.0 | 56.5 | 5.2 | 0.0 |
|  | 경 早 | 161 | 52.4 | 20.3 | 26.1 | 1.3 | 0.0 |
|  | 경 남 | 193 | 57.3 | 9.8 | 28.0 | 1.9 | 2.9 |
|  | 제 주 | 34 | 74.0 | 13.0 | 0.0 | 13.0 | 0.0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56.9 | 4.0 | 34.2 | 3.3 | 1.6 |
|  | 충 청 권 | 311 | 44.1 | 1.5 | 49.7 | 4.5 | 0.2 |
|  | 호 남 권 | 302 | 42.0 | 5.3 | 49.1 | 3.6 | 0.0 |
|  | 경 상 권 | 779 | 57.3 | 9.9 | 29.4 | 2.4 | 1.1 |
|  | 강 원 / 제 주 | 125 | 61.0 | 3.6 | 29.1 | 6.3 | 0.0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57.4 | 5.3 | 32.4 | 3.9 | 0.9 |
|  | 중 소 도 시 | 918 | 56.3 | 3.4 | 35.4 | 3.0 | 1.8 |
|  | 읍 면 지 역 | 710 | 48.8 | 7.2 | 40.6 | 2.6 | 0.9 |

[ 표 8]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규제
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9]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 정도
문)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9-1]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문)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각하 십니까?

[ 표 10 ] 여성의 불리한 대우 정도
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10-1]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문) 그렇다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gathered} \text { 여성 관련 } \\ \text { 법 규정 } \\ \text { 자체의 } \\ \text { 미비 다는 } \\ \text { 결함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여성의 } \\ \text { 궐리의식 } \\ \text { 부족 뜨는 } \\ \text { 법생활의 불 } \\ \text { 철저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남성 } \\ \text { 충심의 } \\ \text { 가부장적 } \\ \text { 문화 } \end{gathered}$ |  | $\begin{aligned} & \text { 남녀의 } \\ & \text { 사횡, } \\ & \text { 경제적 } \\ & \text { 지위 차이 } \end{aligned}$ | 기 타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1,304 | 18.8 | 15.2 | 32.9 | 14.4 | 18.4 | 0.2 | 0.1 |
| 성 별 | 남 자 | 494 | 17.2 | 17.5 | 32.9 | 15.2 | 16.7 | 0.2 | 0.2 |
| 싱 를 | 여 자 | 810 | 19.8 | 13.8 | 33.0 | 13.9 | 19.4 | 0.2 | 0.0 |
| 연 렁 별 | 20 대 | 217 | 15.9 | 14.9 | 35.6 | 14.5 | 19.1 | 0.0 | 0.0 |
|  | 300 대 | 284 | 20.6 | 14.6 | 28.3 | 15.4 | 20.4 | 0.7 | 0.0 |
|  | 40 대 | 355 | 18.2 | 14.9 | 34.7 | 14.3 | 17.6 | 0.2 | 0.0 |
|  | 500 대 | 223 | 21.0 | 18.6 | 32.3 | 12.1 | 16.0 | 0.0 | 0.0 |
|  | 60 대 이 상 | 225 | 18.1 | 13.3 | 34.1 | 15.3 | 18.8 | 0.0 | 0.5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111 | 15.9 | 13.5 | 38.1 | 15.2 | 16.4 | 0.0 | 0.9 |
|  | 고 졸 | 498 | 21.6 | 14.6 | 33.1 | 11.3 | 19.4 | 0.0 | 0.0 |
|  | 대 재 이 상 | 695 | 17.2 | 15.9 | 32.0 | 16.5 | 18.0 | 0.4 | 0.0 |
| 소 득 별 | 199 만원 이하 | 129 | 13.7 | 16.9 | 36.3 | 12.1 | 19.6 | 0.6 | 0.8 |
|  | 200~299만 원 | 189 | 20.4 | 14.9 | 31.4 | 16.2 | 17.1 | 0.0 | 0.0 |
|  | $300 \sim 399$ 만 원 | 282 | 16.9 | 15.7 | 31.0 | 15.2 | 21.3 | 0.0 | 0.0 |
|  | 400~499 만 원 | 291 | 20.3 | 14.6 | 35.2 | 13.8 | 15.8 | 0.3 | 0.0 |
|  | 500 만 원 이 상 | 413 | 19.9 | 14.9 | 32.3 | 14.1 | 18.5 | 0.2 | 0.0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33 | 12.9 | 22.5 | 53.1 | 8.7 | 2.7 | 0.0 | 0.0 |
|  | 자 영 업 | 225 | 17.7 | 18.9 | 33.2 | 13.4 | 16.8 | 0.0 | 0.0 |
|  | 블 루 칼 라 | 256 | 23.2 | 15.0 | 23.3 | 17.7 | 20.4 | 0.0 | 0.4 |
|  | 화 이 트 칼 라 | 357 | 18.6 | 15.1 | 33.2 | 13.7 | 18.7 | 0.7 | 0.0 |
|  | 전 업 주 부 | 296 | 19.0 | 13.4 | 36.6 | 12.9 | 18.0 | 0.0 | 0.0 |
|  | 학 생 | 76 | 16.0 | 11.8 | 43.1 | 6.4 | 22.7 | 0.0 | 0.0 |
|  | 무 직 / 기 타 | 60 | 10.9 | 11.9 | 29.3 | 28.3 | 19.6 | 0.0 | 0.0 |
| 혼 인 | 미 혼 | 287 | 14.0 | 14.6 | 36.1 | 16.5 | 18.2 | 0.6 | 0.0 |
|  | 기 혼 | 977 | 19.6 | 15.4 | 32.3 | 13.7 | 18.8 | 0.1 | 0.1 |
| 상 태 별 | 별거/사별/기타 | 40 | 33.5 | 14.1 | 26.5 | 14.9 | 11.0 | 0.0 | 0.0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text { 인 가 구 }$ | 79 | 22.6 | 10.6 | 32.1 | 20.9 | 13.7 | 0.0 | 0.0 |
|  | 1 세 대 가 구 | 315 | 14.5 | 15.5 | 35.9 | 14.3 | 19.0 | 0.5 | 0.3 |
|  | $2 \text { 세 대 가 구 }$ | 857 | 19.9 | 15.4 | 31.9 | 14.1 | 18.6 | 0.1 | 0.0 |
|  | $3 \text { 세 대 가 구 }$ | 53 | 20.4 | 17.6 | 33.2 | 9.8 | 19.1 | 0.0 | 0.0 |
| 계 층 수 준 별 <br> 이 념 <br> 성 향 별 | 하 층 | 586 | 17.5 | 11.6 | 34.4 | 16.1 | 19.8 | 0.3 | 0.2 |
|  | 중 간 층 | 655 | 20.6 | 17.5 | 31.2 | 13.5 | 17.1 | 0.1 | 0.0 |
|  | 상 층 | 63 | 11.6 | 24.7 | 36.9 | 7.2 | 19.6 | 0.0 | 0.0 |
|  | 진 보 | 316 | 21.0 | 19.6 | 26.0 | 15.2 | 17.8 | 0.5 | 0.0 |
|  | 중 도 | 695 | 19.6 | 14.1 | 32.5 | 14.6 | 19.1 | 0.0 | 0.0 |
|  | 보 수 | 294 | 14.5 | 13.0 | 41.4 | 13.0 | 17.4 | 0.3 | 0.4 |
| 지 역 별 | 서 울 | 268 | 21.1 | 16.5 | 33.3 | 12.6 | 16.5 | 0.0 | 0.0 |
|  | 부 산 | 130 | 9.4 | 8.8 | 41.3 | 18.4 | 20.5 | 0.8 | 0.8 |
|  | 대 구 | 65 | 22.4 | 14.7 | 40.2 | 9.1 | 13.6 | 0.0 | 0.0 |
|  | 인 천 | 75 | 41.5 | 6.5 | 29.3 | 9.3 | 13.3 | 0.0 | 0.0 |
|  | 광 주 | 42 | 19.4 | 45.4 | 13.6 | 9.8 | 11.9 | 0.0 | 0.0 |
|  | 대 전 | 35 | 14.8 | 17.7 | 17.4 | 20.3 | 29.8 | 0.0 | 0.0 |
|  | 울 산 | 51 | 6.1 | 11.6 | 45.5 | 15.2 | 21.6 | 0.0 | 0.0 |
|  | 세 종 | 5 | 20.6 | 57.2 | 18.4 | 0.0 | 3.8 | 0.0 | 0.0 |
|  | 경 기 | 328 | 21.7 | 11.9 | 30.0 | 17.5 | 18.9 | 0.0 | 0.0 |
|  | 강 원 | 40 | 34.4 | 6.7 | 36.7 | 1.9 | 18.0 | 2.2 | 0.0 |
|  | 충 북 | 43 | 14.2 | 15.8 | 31.8 | 26.3 | 12.0 | 0.0 | 0.0 |
|  | 중 남 | 45 | 16.3 | 24.6 | 26.5 | 14.4 | 18.3 | 0.0 | 0.0 |
|  | 전 북 | 33 | 5.2 | 39.3 | 34.5 | 10.4 | 10.6 | 0.0 | 0.0 |
|  | 전 남 | 39 | 2.4 | 25.3 | 38.5 | 12.5 | 19.5 | 1.8 | 0.0 |
|  | 경 旦 | 26 | 14.9 | 10.9 | 48.5 | 7.3 | 18.4 | 0.0 | 0.0 |
|  | 경 남 | 65 | 12.5 | 12.5 | 36.0 | 14.1 | 25.0 | 0.0 | 0.0 |
|  | 제 주 | 13 | 0.0 | 3.8 | 9.0 | 18.2 | 69.0 | 0.0 | 0.0 |
| 권 역 별 | 수 도 권 | 672 | 23.7 | 13.1 | 31.3 | 14.6 | 17.3 | 0.0 | 0.0 |
|  | 충 청 권 | 129 | 15.4 | 21.1 | 25.4 | 19.4 | 18.7 | 0.0 | 0.0 |
|  | 호 남 권 | 114 | 9.5 | 36.8 | 28.1 | 10.9 | 14.1 | 0.6 | 0.0 |
|  | 경 상 권 | 336 | 12.4 | 11.2 | 41.3 | 14.4 | 20.1 | 0.3 | 0.3 |
|  | 강 원 / 제 주 | 53 | 26.0 | 6.0 | 29.9 | 5.9 | 30.6 | 1.7 | 0.0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666 | 19.7 | 15.2 | 33.9 | 13.5 | 17.4 | 0.2 | 0.2 |
|  | 중 소 도 시 | 367 | 19.9 | 16.0 | 27.9 | 17.4 | 18.6 | 0.2 | 0.0 |
|  | 읍 면 지 역 | 271 | 15.2 | 14.1 | 37.4 | 12.5 | 20.5 | 0.3 | 0.0 |

[ 표 11]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권
문) 가정에서는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합니까?

[ 표 12] 로스쿨제도의 성과 정도
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12-1]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성과
문)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표 13] 안락사 허용에 대한 의견
문)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표 14］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
문）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혹은 반대하십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룬눈위: } \\ & \text { (단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매우 찬성한다 | $\begin{gathered} \text { 대체로 } \\ \text { 찬성하는 } \\ \text { 편이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ㅂㅏㅏ대하는 } \\ & \text { 편이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매우 } \\ \text { 반대한다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 성 |  |  |  |  |  | 반 대 |
| 전 체 |  |  | 3，000 | 21.5 | 56.7 | 16.8 | 2.6 | 2.4 | 78.2 | 19.4 |
| 성 별 | 남 자 | 1，489 | 29.7 | 54.3 | 13.1 | 2.0 | 0.8 | 84.0 | 15.1 |
|  | 여 자 | 1，511 | 13.3 | 58.9 | 20.5 | 3.2 | 4.0 | 72.2 | 23.7 |
| 연 령 별 | 20 대 | 529 | 31.5 | 47.3 | 16.4 | 3.6 | 1.3 | 78.8 | 20.0 |
|  | 30 대 | 560 | 19.5 | 53.7 | 23.4 | 1.6 | 1.8 | 73.2 | 25.0 |
|  | 40 대 | 644 | 20.4 | 60.6 | 14.4 | 3.6 | 1.0 | 81.0 | 18.0 |
|  | 50 대 | 594 | 20.7 | 58.6 | 16.7 | 2.1 | 1.9 | 79.3 | 18.8 |
|  | 60 대 이 상 | 673 | 16.8 | 61.1 | 14.2 | 2.1 | 5.8 | 77.9 | 16.3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20.2 | 61.9 | 11.3 | 1.3 | 5.3 | 82.1 | 12.6 |
|  | 고 졸 | 1，196 | 20.2 | 57.4 | 17.1 | 2.1 | 3.3 | 77.6 | 19.2 |
|  | 대 재 이 상 | 1，409 | 22.9 | 54.6 | 18.2 | 3.4 | 1.0 | 77.5 | 21.6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 하 | 379 | 21.0 | 60.3 | 12.1 | 2.1 | 4.4 | 81.3 | 14.2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22.9 | 59.2 | 12.9 | 2.2 | 2.7 | 82.1 | 15.1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20.6 | 55.4 | 17.8 | 3.1 | 3.1 | 76.0 | 20.9 |
|  | 400～499 만 원 | 629 | 20.2 | 55.8 | 19.1 | 2.8 | 2.1 | 76.0 | 21.9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22.4 | 55.2 | 18.7 | 2.4 | 1.2 | 77.6 | 21.1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23.8 | 63.1 | 8.0 | 1.5 | 3.6 | 86.9 | 9.5 |
|  | 자 영 업 | 666 | 24.8 | 58.7 | 12.4 | 2.5 | 1.5 | 83.5 | 14.9 |
|  | 블 루 칼 라 | 588 | 19.3 | 58.1 | 18.4 | 1.7 | 2.5 | 77.4 | 20.1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22.5 | 54.1 | 19.8 | 2.9 | 0.7 | 76.6 | 22.7 |
|  | 전 업 주 부 | 563 | 12.7 | 58.8 | 19.2 | 2.7 | 6.6 | 71.5 | 21.9 |
|  | 학 생 | 185 | 33.8 | 47.3 | 15.5 | 2.7 | 0.6 | 81.1 | 18.2 |
|  | 무 직／기 타 | 132 | 25.9 | 51.7 | 16.4 | 5.6 | 0.5 | 77.6 | 22.0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30.0 | 48.5 | 17.2 | 2.9 | 1.4 | 78.5 | 20.1 |
|  | 기 | 2，233 | 18.8 | 59.0 | 17.1 | 2.5 | 2.6 | 77.8 | 19.6 |
|  | 별 거／사 별／기타 | 94 | 23.6 | 58.9 | 9.0 | 1.7 | 6.8 | 82.5 | 10.7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28.2 | 54.0 | 12.3 | 2.0 | 3.5 | 82.2 | 14.3 |
|  | 1 세 대 가 구 | 787 | 21.9 | 59.5 | 13.9 | 1.9 | 2.8 | 81.4 | 15.8 |
|  | 2 세 대 가 구 | 1，905 | 20.3 | 56.5 | 18.1 | 3.0 | 2.1 | 76.8 | 21.1 |
|  | 3 세 대 가 구 | 127 | 26.8 | 44.9 | 23.6 | 1.4 | 3.4 | 71.7 | 25.0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층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20.7 | 59.9 | 14.1 | 2.5 | 2.8 | 80.6 | 16.6 |
|  | 중 간 층 | 1，527 | 21.7 | 54.2 | 19.2 | 2.5 | 2.3 | 75.9 | 21.7 |
|  | 상 층 | 122 | 26.7 | 51.8 | 16.9 | 3.7 | 0.8 | 78.5 | 20.6 |
| 이 념 성 향 별 | 진 보 | 683 | 19.1 | 56.8 | 18.1 | 3.7 | 2.3 | 75.9 | 21.8 |
|  | 중 도 | 1，462 | 20.8 | 56.1 | 18.3 | 2.4 | 2.4 | 76.9 | 20.7 |
|  | 보 수 | 855 | 24.4 | 57.5 | 13.3 | 2.1 | 2.6 | 81.9 | 15.4 |
| 지역 별 | 서 울 | 606 | 14.2 | 57.4 | 21.5 | 3.0 | 3.9 | 71.6 | 24.5 |
|  | 부 산 | 212 | 18.4 | 58.3 | 20.4 | 0.9 | 2.0 | 76.7 | 21.3 |
|  | 대 구 | 146 | 25.7 | 56.8 | 10.1 | 2.0 | 5.3 | 82.5 | 12.1 |
|  | 인 천 | 170 | 24.7 | 53.0 | 17.1 | 3.5 | 1.8 | 77.7 | 20.6 |
|  | 광 주 | 82 | 23.2 | 59.0 | 16.8 | 1.0 | 0.0 | 82.2 | 17.8 |
|  | 대 전 | 89 | 18.8 | 60.5 | 15.8 | 4.9 | 0.0 | 79.3 | 20.7 |
|  | 울 산 | 67 | 16.8 | 63.7 | 14.5 | 5.0 | 0.0 | 80.5 | 19.5 |
|  | 세 종 | 10 | 40.8 | 49.8 | 7.3 | 0.0 | 2.0 | 90.6 | 7.3 |
|  | 경 기 | 707 | 17.5 | 57.2 | 19.5 | 3.1 | 2.7 | 74.7 | 22.6 |
|  | 강 원 | 91 | 21.4 | 56.2 | 15.8 | 2.1 | 4.5 | 77.6 | 17.9 |
|  | 충 昂 | 92 | 34.9 | 47.0 | 11.4 | 3.9 | 2.8 | 81.9 | 15.3 |
|  | 충 남 | 120 | 30.8 | 55.6 | 9.1 | 3.0 | 1.5 | 86.4 | 12.1 |
|  | 전 易 | 107 | 11.7 | 69.3 | 19.0 | 0.0 | 0.0 | 81.0 | 19.0 |
|  | 전 남 | 113 | 31.0 | 55.7 | 11.7 | 0.0 | 1.6 | 86.7 | 11.7 |
|  | 경 昂 | 161 | 33.7 | 55.3 | 8.6 | 1.8 | 0.6 | 89.0 | 10.4 |
|  | 경 남 | 193 | 32.5 | 55.0 | 10.5 | 1.1 | 1.0 | 87.5 | 11.6 |
|  | 제 주 | 34 | 34.7 | 22.3 | 25.1 | 12.5 | 5.4 | 57.0 | 37.6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7.0 | 56.8 | 20.0 | 3.1 | 3.1 | 73.8 | 23.1 |
|  | 충 청 권 | 311 | 28.9 | 54.3 | 11.6 | 3.7 | 1.5 | 83.2 | 15.3 |
|  | 호 남 권 | 302 | 22.0 | 61.4 | 15.7 | 0.3 | 0.6 | 83.4 | 16.0 |
|  | 경 상 권 | 779 | 26.3 | 57.0 | 13.0 | 1.7 | 1.9 | 83.3 | 14.7 |
|  | 강 원／제 주 | 125 | 25.0 | 47.0 | 18.4 | 4.9 | 4.7 | 72.0 | 23.3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18.3 | 57.5 | 18.6 | 2.7 | 2.8 | 75.8 | 21.3 |
|  | 중 소 도 시 | 918 | 21.9 | 55.3 | 17.8 | 2.7 | 2.4 | 77.2 | 20.5 |
|  | 읍 면 지 역 | 710 | 27.0 | 56.7 | 12.3 | 2.2 | 1.8 | 83.7 | 14.5 |

[ 표 15]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
문)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표 16]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
문)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표 17］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의견
문）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혹은 반대하십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대체로 | 대체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 | 반대하는 편이다 | 반대한다 | 모르응답 | 찬 성 | 반 대 |
| 전 체 |  | 3，000 | 19.9 | 39.6 | 30.7 | 7.7 | 2.2 | 59.5 | 38.4 |
| 성 별 | 남 자 | 1，489 | 14.3 | 38.1 | 35.6 | 9.7 | 2.4 | 52.4 | 45.3 |
|  | 여 자 | 1，511 | 25.4 | 41.1 | 25.8 | 5.7 | 1.9 | 66.5 | 31.5 |
| 연 령 별 | $20 \text { 대 }$ | 529 | 24.0 | 41.0 | 26.8 | 6.5 | 1.7 | 65.0 | 33.3 |
|  | 30 대 | 560 | 20.3 | 36.3 | 34.8 | 7.4 | 1.2 | 56.6 | 42.2 |
|  | 40 대 | 644 | 16.1 | 35.9 | 37.6 | 9.2 | 1.2 | 52.0 | 46.8 |
|  | 50 대 | 594 | 18.7 | 41.6 | 29.2 | 7.7 | 2.8 | 60.3 | 36.9 |
|  | 60 대 이 상 | 673 | 21.1 | 43.0 | 25.0 | 7.3 | 3.7 | 64.1 | 32.3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22.6 | 46.5 | 20.4 | 5.8 | 4.7 | 69.1 | 26.2 |
|  | 고 졸 | 1，196 | 19.2 | 40.7 | 30.5 | 7.4 | 2.1 | 59.9 | 37.9 |
|  | 대 재 이 상 | 1，409 | 19.7 | 36.7 | 33.6 | 8.4 | 1.5 | 56.4 | 42.0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24.0 | 44.3 | 19.4 | 8.9 | 3.3 | 68.3 | 28.3 |
|  | 200～299 만 원 | 485 | 20.0 | 42.5 | 29.5 | 6.4 | 1.6 | 62.5 | 35.9 |
|  | 300～399만 원 | 655 | 19.5 | 38.8 | 32.5 | 7.2 | 2.0 | 58.3 | 39.7 |
|  | 400～499 만 원 | 629 | 16.7 | 39.4 | 33.4 | 8.4 | 2.1 | 56.1 | 41.8 |
|  | 500 만 원 이상 | 853 | 20.8 | 36.7 | 32.8 | 7.6 | 2.1 | 57.5 | 40.4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24.9 | 47.3 | 20.8 | 4.3 | 2.6 | 72.2 | 25.1 |
|  | 자 영 업 | 666 | 17.0 | 40.5 | 30.1 | 9.1 | 3.2 | 57.5 | 39.2 |
|  | 블 루 칼 라 | 588 | 15.9 | 43.9 | 31.2 | 6.8 | 2.2 | 59.8 | 38.0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9.3 | 34.3 | 36.1 | 9.0 | 1.3 | 53.6 | 45.1 |
|  | 전 업 주 부 | 563 | 24.7 | 39.8 | 26.9 | 6.8 | 1.8 | 64.5 | 33.7 |
|  | 학 생 | 185 | 24.3 | 39.9 | 27.5 | 6.2 | 2.1 | 64.2 | 33.7 |
|  | 무 직／기 타 | 132 | 24.1 | 36.1 | 31.4 | 5.1 | 3.2 | 60.2 | 36.5 |
|  | 미 혼 | 672 | 20.8 | 39.0 | 31.0 | 7.4 | 1.8 | 59.8 | 38.4 |
|  | 기 | 2，233 | 19.5 | 40.0 | 30.8 | 7.7 | 2.0 | 59.5 | 38.5 |
| 상 태 별 | 별거／사별／기타 | 94 | 23.5 | 35.6 | 25.1 | 7.4 | 8.3 | 59.1 | 32.5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 180 | 26.8 | 32.8 | 24.7 | 11.8 | 3.9 | 59.6 | 36.5 |
|  | 1 세 대 가 구 | 787 | 20.1 | 42.7 | 27.3 | 8.1 | 1.9 | 62.8 | 35.4 |
|  | $2 \text { 세 대 가 구 }$ | 1，905 | 18.9 | 39.5 | 32.8 | 6.8 | 2.0 | 58.4 | 39.6 |
|  | $3 \text { 세 대 가 구 }$ | 127 | 25.0 | 31.7 | 27.9 | 11.6 | 3.7 | 56.7 | 39.5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전 } \\ & \text { 계 } \\ & \text { 수 준 블 } \end{aligned}$ | 하 층 | 1，352 | 20.2 | 38.7 | 31.3 | 7.6 | 2.2 | 58.9 | 38.9 |
|  | 중 간 층 | 1，527 | 19.8 | 40.0 | 30.3 | 7.7 | 2.2 | 59.8 | 38.0 |
|  | 상 층 | 122 | 18.7 | 44.1 | 28.3 | 7.9 | 1.0 | 62.8 | 36.2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19.7 | 38.3 | 33.2 | 7.2 | 1.6 | 58.0 | 40.4 |
|  | 눙 도 | 1，462 | 20.4 | 38.2 | 30.7 | 8.3 | 2.4 | 58.6 | 39.0 |
|  | 보 人 | 855 | 19.2 | 43.0 | 28.6 | 6.9 | 2.2 | 62.2 | 35.5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8.5 | 42.2 | 32.0 | 4.5 | 2.8 | 60.7 | 36.5 |
|  | 부 산 | 212 | 15.1 | 49.9 | 27.7 | 6.8 | 0.5 | 65.0 | 34.5 |
|  | 대 구 | 146 | 21.8 | 31.7 | 24.7 | 6.6 | 15.2 | 53.5 | 31.3 |
|  | 인 천 | 170 | 16.3 | 44.2 | 28.3 | 9.5 | 1.8 | 60.5 | 37.8 |
|  | 광 주 | 82 | 37.6 | 32.4 | 24.0 | 5.0 | 1.0 | 70.0 | 29.0 |
|  | 대 전 | 89 | 18.8 | 43.3 | 34.9 | 3.0 | 0.0 | 62.1 | 37.9 |
|  | 울 산 | 67 | 11.9 | 36.9 | 42.1 | 9.1 | 0.0 | 48.8 | 51.2 |
|  | 세 총 | 10 | 25.2 | 29.8 | 21.8 | 17.8 | 5.3 | 55.0 | 39.6 |
|  | 경 기 | 707 | 17.8 | 33.4 | 37.4 | 10.0 | 1.3 | 51.2 | 47.4 |
|  | 강 원 | 91 | 32.9 | 37.8 | 20.5 | 7.0 | 1.8 | 70.7 | 27.5 |
|  | 충 草 | 92 | 19.7 | 22.3 | 35.3 | 18.0 | 4.8 | 42.0 | 53.3 |
|  | 충 남 | 120 | 9.9 | 43.0 | 39.4 | 7.8 | 0.0 | 52.9 | 47.2 |
|  | 전 북 | 107 | 23.1 | 33.1 | 27.3 | 16.5 | 0.0 | 56.2 | 43.8 |
|  | 전 남 | 113 | 38.6 | 41.1 | 10.8 | 6.3 | 3.2 | 79.7 | 17.1 |
|  | 경 早 | 161 | 12.4 | 55.4 | 24.2 | 8.0 | 0.0 | 67.8 | 32.2 |
|  | 경 남 | 193 | 24.5 | 47.0 | 25.8 | 2.1 | 0.5 | 71.5 | 27.9 |
|  | 제 주 | 34 | 41.5 | 21.7 | 26.9 | 8.2 | 1.8 | 63.2 | 35.1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7.9 | 38.3 | 34.1 | 7.7 | 2.0 | 56.2 | 41.8 |
|  | 충 청 권 | 311 | 15.8 | 36.5 | 36.3 | 9.8 | 1.6 | 52.3 | 46.1 |
|  | 호 남 권 | 302 | 32.9 | 35.9 | 20.2 | 9.5 | 1.5 | 68.8 | 29.7 |
|  | 경 상 권 | 779 | 17.8 | 45.8 | 27.2 | 6.1 | 3.1 | 63.6 | 33.3 |
|  | 강 원／제 주 | 125 | 35.3 | 33.4 | 22.2 | 7.3 | 1.8 | 68.7 | 29.5 |
| 지 역 <br> 규모 별 | 대 도 시 | 1，372 | 18.9 | 41.8 | 30.3 | 5.9 | 3.2 | 60.7 | 36.2 |
|  | 중 소 도 시 | 918 | 16.7 | 36.5 | 34.9 | 10.8 | 1.1 | 53.2 | 45.7 |
|  | 읍 면 지 역 | 710 | 26.0 | 39.5 | 25.9 | 7.1 | 1.5 | 65.5 | 33.0 |

［ 표 18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
문）＇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  |  |  | 대체로 | 별로 | 저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성과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성과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성과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성과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성과 } \\ & \text { 있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성과 } \\ & \text { 없음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6.0 | 53.7 | 31.9 | 3.6 | 4.9 | 59.7 | 35.5 |
| 성 별 | 남 자 | 1，489 | 6.7 | 54.3 | 31.4 | 4.3 | 3.2 | 61.0 | 35.7 |
|  | 여 자 | 1，511 | 5.2 | 53.1 | 32.3 | 2.8 | 6.5 | 58.3 | 35.1 |
| 연 령 별 | 20 대 | 529 | 7.0 | 54.5 | 31.2 | 4.7 | 2.6 | 61.5 | 35.9 |
|  | 300 대 | 560 | 8.1 | 56.1 | 31.1 | 2.8 | 1.9 | 64.2 | 33.9 |
|  | $\begin{array}{lll}4 & 0 & \text { 대 } \\ 5 & 0\end{array}$ | 644 | 6.1 | 55.4 | 33.1 | 3.4 | 2.0 | 61.5 | 36.5 |
|  | 500 대 | 594 | 4.4 | 54.4 | 33.2 | 3.4 | 4.6 | 58.8 | 36.6 |
|  | 60 대 이 상 | 673 | 4.7 | 48.8 | 30.6 | 3.7 | 12.3 | 53.5 | 34.3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4.5 | 48.9 | 28.1 | 4.4 | 14.1 | 53.4 | 32.5 |
|  | 고 졸 | 1，196 | 4.9 | 52.7 | 32.6 | 3.8 | 6.0 | 57.6 | 36.4 |
|  | 대 재 이 상 | 1，409 | 7.3 | 55.9 | 32.3 | 3.1 | 1.4 | 63.2 | 35.4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5.5 | 50.6 | 27.5 | 5.7 | 10.7 | 56.1 | 33.2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7.1 | 53.4 | 30.1 | 4.0 | 5.3 | 60.5 | 34.1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4.9 | 52.7 | 34.5 | 2.5 | 5.3 | 57.6 | 37.0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4.7 | 53.4 | 34.9 | 3.3 | 3.7 | 58.1 | 38.2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7.3 | 56.3 | 30.5 | 3.3 | 2.7 | 63.6 | 33.8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5.0 | 47.9 | 36.5 | 2.2 | 8.4 | 52.9 | 38.7 |
|  | 자 영 업 | 666 | 4.1 | 52.7 | 32.1 | 3.6 | 7.5 | 56.8 | 35.7 |
|  | 블 루 칼 라 | 588 | 6.6 | 53.6 | 29.8 | 4.9 | 5.1 | 60.2 | 34.7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8.1 | 56.0 | 31.9 | 3.2 | 0.8 | 64.1 | 35.1 |
|  | 전 업 주 부 | 563 | 5.4 | 52.4 | 32.3 | 2.4 | 7.6 | 57.8 | 34.7 |
|  | 학 생 | 185 | 5.7 | 59.2 | 31.4 | 2.1 | 1.6 | 64.9 | 33.5 |
|  | 무 직／기 타 | 132 | 4.8 | 50.0 | 34.0 | 8.0 | 3.2 | 54.8 | 42.0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8.1 | 54.9 | 30.2 | 4.5 | 2.4 | 63.0 | 34.7 |
|  | 기 | 2，233 | 5.4 | 53.7 | 32.4 | 3.2 | 5.3 | 59.1 | 35.6 |
|  | 별거／사 별／기타 | 94 | 4.6 | 44.8 | 30.8 | 5.3 | 14.4 | 49.4 | 36.1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6.5 | 49.2 | 34.2 | 2.8 | 7.3 | 55.7 | 37.0 |
|  | 1 세 대 가 구 | 787 | 6.1 | 50.6 | 31.9 | 4.1 | 7.2 | 56.7 | 36.0 |
|  | 2 세 대 가 구 | 1，905 | 5.9 | 55.5 | 31.5 | 3.5 | 3.7 | 61.4 | 35.0 |
|  | 3 세 대 가 구 | 127 | 5.9 | 52.4 | 34.2 | 2.2 | 5.4 | 58.3 | 36.4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층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4.8 | 52.1 | 33.0 | 3.9 | 6.3 | 56.9 | 36.9 |
|  | 중 간 층 | 1，527 | 6.5 | 55.2 | 31.3 | 3.1 | 3.9 | 61.7 | 34.4 |
|  | 상 층 | 122 | 12.9 | 52.9 | 26.5 | 5.9 | 1.9 | 65.8 | 32.4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8.8 | 54.0 | 30.1 | 3.3 | 3.8 | 62.8 | 33.4 |
|  | 중 도 | 1，462 | 5.2 | 54.5 | 32.9 | 3.2 | 4.1 | 59.7 | 36.1 |
|  | 보 수 | 855 | 5.0 | 52.1 | 31.5 | 4.4 | 7.1 | 57.1 | 35.9 |
| 지역 별 | 서 울 | 606 | 7.7 | 55.9 | 27.7 | 3.7 | 5.0 | 63.6 | 31.4 |
|  | 부 산 | 212 | 5.8 | 62.5 | 27.8 | 0.5 | 3.4 | 68.3 | 28.3 |
|  | 대 구 | 146 | 7.3 | 45.9 | 32.4 | 3.9 | 10.4 | 53.2 | 36.3 |
|  | 인 천 | 170 | 5.9 | 49.5 | 35.9 | 2.9 | 5.8 | 55.4 | 38.8 |
|  | 광 주 | 82 | 7.9 | 63.0 | 26.2 | 2.0 | 0.9 | 70.9 | 28.2 |
|  | 대 전 | 89 | 1.0 | 53.6 | 41.6 | 1.0 | 2.8 | 54.6 | 42.6 |
|  | 울 산 | 67 | 16.6 | 67.5 | 15.9 | 0.0 | 0.0 | 84.1 | 15.9 |
|  | 세 종 | 10 | 4.0 | 32.3 | 48.8 | 12.8 | 2.0 | 36.3 | 61.6 |
|  | 경 기 | 707 | 5.2 | 50.5 | 35.7 | 4.1 | 4.5 | 55.7 | 39.8 |
|  | 강 원 | 91 | 10.5 | 58.8 | 17.5 | 2.9 | 10.3 | 69.3 | 20.4 |
|  | 충 曷 | 92 | 3.8 | 56.8 | 28.2 | 2.8 | 8.4 | 60.6 | 31.0 |
|  | 충 남 | 120 | 3.9 | 49.3 | 43.7 | 0.8 | 2.3 | 53.2 | 44.5 |
|  | 전 易 | 107 | 4.0 | 53.7 | 36.5 | 1.7 | 4.1 | 57.7 | 38.2 |
|  | 전 남 | 113 | 9.6 | 46.2 | 34.2 | 3.3 | 6.7 | 55.8 | 37.5 |
|  | 경 早 | 161 | 2.4 | 50.3 | 33.8 | 9.8 | 3.8 | 52.7 | 43.6 |
|  | 경 남 | 193 | 3.2 | 59.6 | 28.9 | 4.2 | 4.1 | 62.8 | 33.1 |
|  | 제 주 | 34 | 3.3 | 38.5 | 36.8 | 12.6 | 8.7 | 41.8 | 49.4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6.3 | 52.6 | 32.4 | 3.8 | 4.9 | 58.9 | 36.2 |
|  | 충 청 권 | 311 | 3.1 | 52.2 | 38.7 | 1.8 | 4.2 | 55.3 | 40.5 |
|  | 호 남 권 | 302 | 7.2 | 53.4 | 32.8 | 2.4 | 4.2 | 60.6 | 35.2 |
|  | 경 상 권 | 779 | 5.7 | 56.6 | 29.2 | 3.9 | 4.7 | 62.3 | 33.1 |
|  | 강 원／제 주 | 125 | 8.5 | 53.3 | 22.8 | 5.5 | 9.9 | 61.8 | 28.3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7.1 | 55.9 | 29.5 | 2.7 | 4.8 | 63.0 | 32.2 |
|  | 중 소 도 시 | 918 | 4.7 | 49.9 | 35.3 | 5.2 | 4.8 | 54.6 | 40.5 |
|  | 읍 면 지 역 | 710 | 5.4 | 54.3 | 32.1 | 3.1 | 5.1 | 59.7 | 35.2 |

[ 표 19 ] 김영란법 도입 효과에 대한 의견
문)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성과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성과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별로 } \\ \text { 성과가 } \\ \text { 없다 } \end{gathered}$ | 전혀 성과가 없다 |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성과 } \\ & \text { 있음 } \end{aligned}$ |  |  |  |  |  | $\begin{aligned} & \text { 성과 } \\ & \text { 앖음 } \end{aligned}$ |
| 전 체 |  |  | 3,000 | 8.7 | 47.0 | 33.7 | 7.0 | 3.6 | 55.7 | 40.7 |
| 성 별 | 남 자 | 1,489 | 9.6 | 47.6 | 32.9 | 7.7 | 2.2 | 57.2 | 40.6 |
|  | 여 자 | 1,511 | 7.8 | 46.3 | 34.6 | 6.3 | 5.0 | 54.1 | 40.9 |
| 연 렁 별 | 20 대 | 529 | 11.2 | 45.0 | 34.4 | 7.0 | 2.3 | 56.2 | 41.4 |
|  | 300 대 | 560 | 8.7 | 44.9 | 35.7 | 8.4 | 2.3 | 53.6 | 44.1 |
|  | 400 대 | 644 | 9.4 | 50.0 | 31.8 | 6.9 | 1.8 | 59.4 | 38.7 |
|  | 500 대 | 594 | 8.7 | 45.3 | 34.7 | 8.2 | 3.1 | 54.0 | 42.9 |
|  | 60 대 이 상 | 673 | 6.1 | 48.8 | 32.5 | 4.8 | 7.8 | 54.9 | 37.3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4.3 | 43.8 | 35.7 | 6.1 | 10.2 | 48.1 | 41.8 |
|  | 고 졸 | 1,196 | 8.5 | 47.4 | 33.3 | 6.7 | 4.1 | 55.9 | 40.0 |
|  | 대 재 이 상 | 1,409 | 10.2 | 47.5 | 33.5 | 7.5 | 1.3 | 57.7 | 41.0 |
| 소 득 별 | 199 만원 이하 | 379 | 5.2 | 45.4 | 34.7 | 6.2 | 8.4 | 50.6 | 40.9 |
|  | 200~299 만 원 | 485 | 7.2 | 49.2 | 30.7 | 7.6 | 5.2 | 56.4 | 38.3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7.6 | 44.5 | 37.5 | 7.4 | 2.9 | 52.1 | 44.9 |
|  | 400~499 만 원 | 629 | 8.7 | 46.2 | 36.1 | 6.1 | 2.8 | 54.9 | 42.2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2.0 | 48.8 | 30.4 | 7.2 | 1.6 | 60.8 | 37.6 |
| 직 업 별 | 농/ 축 / 수 산 업 | 133 | 3.6 | 47.1 | 38.8 | 5.6 | 4.9 | 50.7 | 44.4 |
|  | 자 영 업 | 666 | 6.9 | 45.3 | 34.2 | 9.1 | 4.4 | 52.2 | 43.3 |
|  | 블 루 칼 라 | 588 | 8.5 | 45.4 | 35.6 | 6.2 | 4.2 | 53.9 | 41.8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1.5 | 49.2 | 31.7 | 6.4 | 1.2 | 60.7 | 38.1 |
|  | 전 업 주 부 | 563 | 8.1 | 47.9 | 31.7 | 6.8 | 5.4 | 56.0 | 38.5 |
|  | 학 생 | 185 | 9.6 | 48.3 | 36.0 | 4.6 | 1.5 | 57.9 | 40.6 |
|  | 무 직 / 기 타 | 132 | 9.4 | 44.3 | 34.7 | 8.3 | 3.4 | 53.7 | 43.0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10.2 | 45.8 | 34.6 | 7.4 | 2.0 | 56.0 | 42.0 |
|  | 기 | 2,233 | 8.4 | 47.4 | 33.7 | 6.9 | 3.6 | 55.8 | 40.6 |
|  | 별거/사별/기타 | 94 | 6.1 | 45.9 | 27.4 | 6.3 | 14.3 | 52.0 | 33.7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10.7 | 43.3 | 31.4 | 7.6 | 7.0 | 54.0 | 39.0 |
|  | 1 세 대 가 구 | 787 | 6.8 | 45.8 | 35.2 | 7.3 | 4.8 | 52.6 | 42.5 |
|  | 2 세 대 가 구 | 1,905 | 9.0 | 48.1 | 33.3 | 6.9 | 2.7 | 57.1 | 40.2 |
|  | 3 세 대 가 구 | 127 | 13.9 | 42.1 | 33.7 | 5.5 | 4.9 | 56.0 | 39.2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 & \text { 숭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7.8 | 46.9 | 34.2 | 7.2 | 3.8 | 54.7 | 41.4 |
|  | 중 간 층 | 1,527 | 9.2 | 47.3 | 32.9 | 7.0 | 3.7 | 56.5 | 39.9 |
|  | 상 층 | 122 | 12.5 | 42.7 | 40.1 | 4.6 | 0.0 | 55.2 | 44.7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9.6 | 47.9 | 32.3 | 8.0 | 2.2 | 57.5 | 40.3 |
|  | 중 도 | 1,462 | 8.1 | 47.1 | 33.8 | 7.1 | 3.8 | 55.2 | 40.9 |
|  | 보 수 | 855 | 9.1 | 45.9 | 34.8 | 5.9 | 4.3 | 55.0 | 40.7 |
| 지역 별 | 서 울 | 606 | 8.8 | 53.6 | 28.0 | 6.9 | 2.6 | 62.4 | 34.9 |
|  | 부 산 | 212 | 11.6 | 48.4 | 35.0 | 2.4 | 2.5 | 60.0 | 37.4 |
|  | 대 구 | 146 | 14.0 | 54.9 | 23.8 | 4.7 | 2.6 | 68.9 | 28.5 |
|  | 인 천 | 170 | 6.4 | 37.1 | 41.1 | 8.8 | 6.5 | 43.5 | 49.9 |
|  | 광 주 | 82 | 9.1 | 46.5 | 33.3 | 6.0 | 5.2 | 55.6 | 39.3 |
|  | 대 전 | 89 | 4.1 | 38.5 | 38.6 | 18.8 | 0.0 | 42.6 | 57.4 |
|  | 울 산 | 67 | 19.8 | 26.2 | 51.7 | 2.3 | 0.0 | 46.0 | 54.0 |
|  | 세 종 | 10 | 3.3 | 52.8 | 34.0 | 9.8 | 0.0 | 56.1 | 43.8 |
|  | 경 기 | 707 | 10.0 | 49.4 | 31.3 | 5.7 | 3.5 | 59.4 | 37.0 |
|  | 강 원 | 91 | 16.5 | 45.2 | 27.0 | 3.0 | 8.3 | 61.7 | 30.0 |
|  | 충 북 | 92 | 5.6 | 35.1 | 42.4 | 15.1 | 1.9 | 40.7 | 57.5 |
|  | 충 남 | 120 | 5.5 | 33.8 | 50.8 | 8.4 | 1.5 | 39.3 | 59.2 |
|  | 전 早 | 107 | 2.5 | 35.4 | 51.4 | 5.0 | 5.7 | 37.9 | 56.4 |
|  | 전 남 | 113 | 7.3 | 51.4 | 29.0 | 8.1 | 4.2 | 58.7 | 37.1 |
|  | 경 早 | 161 | 6.7 | 46.8 | 35.4 | 6.8 | 4.4 | 53.5 | 42.2 |
|  | 경 남 | 193 | 3.7 | 54.9 | 34.6 | 6.9 | 0.0 | 58.6 | 41.5 |
|  | 제 주 | 34 | 3.2 | 6.9 | 18.2 | 31.9 | 39.8 | 10.1 | 50.1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9.1 | 49.7 | 31.1 | 6.6 | 3.5 | 58.8 | 37.7 |
|  | 충 청 권 | 311 | 5.0 | 36.2 | 44.3 | 13.4 | 1.1 | 41.2 | 57.7 |
|  | 호 남 권 | 302 | 6.1 | 44.4 | 38.1 | 6.4 | 5.0 | 50.5 | 44.5 |
|  | 경 상 권 | 779 | 9.8 | 49.0 | 34.3 | 4.8 | 2.1 | 58.8 | 39.1 |
|  | 강 원 / 제 주 | 125 | 12.9 | 34.8 | 24.6 | 10.8 | 16.9 | 47.7 | 35.4 |
| 지 역 <br> 규 모 별 | 대 도 시 | 1,372 | 9.7 | 48.2 | 32.5 | 6.7 | 2.9 | 57.9 | 39.2 |
|  | 중 소 도 시 | 918 | 8.4 | 46.8 | 32.9 | 7.8 | 4.0 | 55.2 | 40.7 |
|  | 읍 면 지 역 | 710 | 7.2 | 44.8 | 37.3 | 6.4 | 4.3 | 52.0 | 43.7 |

## ［ 표 20］비정규보호법 도입 효과에 대한 의견

문）‘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대체로 | 별로 | 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명） | 성과가 있다 | $\begin{aligned} & \text { 내제도 } \\ & \text { 성과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들도 } \\ & \text { 성과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선혀 } \\ & \text { 성과가 } \\ & \text { 없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모름/ } \\ & \text { 무응답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성과 } \\ & \text { 있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성과 } \\ & \text { 없음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2.1 | 35.3 | 49.3 | 11.4 | 1.9 | 37.4 | 60.7 |
|  | 남 자 | 1，489 | 2.5 | 34.3 | 49.6 | 12.5 | 1.1 | 36.8 | 62.1 |
|  | 여 자 | 1，511 | 1.8 | 36.2 | 49.0 | 10.2 | 2.7 | 38.0 | 59.2 |
| 연 령 별 | 20 대 | 529 | 2.4 | 31.0 | 49.5 | 16.8 | 0.4 | 33.4 | 66.3 |
|  | 30 대 | 560 | 2.0 | 29.8 | 52.4 | 14.4 | 1.3 | 31.8 | 66.8 |
|  | 40 대 | 644 | 2.0 | 35.4 | 50.5 | 11.3 | 0.9 | 37.4 | 61.8 |
|  | 500 대 | 594 | 2.7 | 36.9 | 49.2 | 9.7 | 1.7 | 39.6 | 58.9 |
|  | 60 대 이 상 | 673 | 1.7 | 41.6 | 45.6 | 6.1 | 4.9 | 43.3 | 51.7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1.2 | 45.7 | 40.0 | 7.9 | 5.3 | 46.9 | 47.9 |
|  | 고 졸 | 1，196 | 2.8 | 34.8 | 50.1 | 9.8 | 2.5 | 37.6 | 59.9 |
|  | 대 재 이 상 | 1，409 | 1.9 | 32.7 | 51.3 | 13.7 | 0.5 | 34.6 | 65.0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3 | 45.3 | 39.0 | 9.8 | 4.6 | 46.6 | 48.8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1.8 | 35.0 | 50.7 | 9.6 | 2.9 | 36.8 | 60.3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2.1 | 33.2 | 52.5 | 10.8 | 1.5 | 35.3 | 63.3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1.5 | 30.9 | 53.0 | 13.2 | 1.4 | 32.4 | 66.2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3.3 | 35.7 | 48.0 | 12.1 | 0.9 | 39.0 | 60.1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2.1 | 40.6 | 46.8 | 8.4 | 2.1 | 42.7 | 55.2 |
|  | 자 영 업 | 666 | 2.0 | 37.9 | 47.5 | 9.6 | 2.9 | 39.9 | 57.1 |
|  | 블 루 칼 라 | 588 | 2.5 | 36.6 | 49.6 | 9.8 | 1.5 | 39.1 | 59.4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2.0 | 32.0 | 50.5 | 15.1 | 0.4 | 34.0 | 65.6 |
|  | 전 업 주 부 | 563 | 2.0 | 37.4 | 49.9 | 7.2 | 3.5 | 39.4 | 57.1 |
|  | 학 생 | 185 | 3.0 | 30.0 | 49.9 | 16.5 | 0.5 | 33.0 | 66.4 |
|  | 무 직／기 타 | 132 | 1.5 | 27.0 | 49.7 | 19.5 | 2.3 | 28.5 | 69.2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2.1 | 30.8 | 49.4 | 17.1 | 0.6 | 32.9 | 66.5 |
|  | 기 혼 | 2，233 | 2.2 | 36.4 | 49.6 | 9.9 | 1.9 | 38.6 | 59.5 |
|  | 별거／사 별／기타 | 94 | 0.0 | 40.4 | 42.6 | 5.8 | 11.2 | 40.4 | 48.4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1.5 | 36.6 | 46.5 | 11.1 | 4.2 | 38.1 | 57.6 |
|  | 1 세 대 가 구 | 787 | 1.9 | 37.8 | 46.9 | 10.7 | 2.8 | 39.7 | 57.6 |
|  | 2 세 대 가 구 | 1，905 | 2.4 | 34.6 | 50.5 | 11.1 | 1.4 | 37.0 | 61.6 |
|  | 3 세 대 가 구 | 127 | 0.8 | 27.1 | 51.4 | 19.2 | 1.6 | 27.9 | 70.6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층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7 | 34.0 | 48.3 | 13.4 | 2.6 | 35.7 | 61.7 |
|  | 중 간 층 | 1，527 | 2.3 | 36.2 | 50.4 | 9.6 | 1.5 | 38.5 | 60.0 |
|  | 상 층 | 122 | 4.0 | 37.5 | 47.8 | 10.5 | 0.2 | 41.5 | 58.3 |
| 이 념 성 향 별 | 진 보 | 683 | 2.6 | 35.7 | 46.0 | 14.7 | 1.0 | 38.3 | 60.7 |
|  | 중 도 | 1，462 | 1.8 | 33.8 | 51.6 | 10.6 | 2.1 | 35.6 | 62.2 |
|  | 보 수 | 855 | 2.3 | 37.3 | 48.0 | 10.0 | 2.3 | 39.6 | 58.0 |
| 지역 별 | 서 울 | 606 | 1.3 | 37.2 | 47.3 | 12.9 | 1.3 | 38.5 | 60.2 |
|  | 부 산 | 212 | 4.9 | 41.7 | 47.0 | 6.3 | 0.0 | 46.6 | 53.3 |
|  | 대 구 | 146 | 4.6 | 40.9 | 34.7 | 16.6 | 3.3 | 45.5 | 51.3 |
|  | 인 천 | 170 | 2.9 | 20.0 | 57.6 | 15.3 | 4.1 | 22.9 | 72.9 |
|  | 광 주 | 82 | 3.0 | 43.5 | 48.4 | 5.0 | 0.0 | 46.5 | 53.4 |
|  | 대 전 | 89 | 3.0 | 39.3 | 47.9 | 9.8 | 0.0 | 42.3 | 57.7 |
|  | 울 산 | 67 | 6.7 | 40.2 | 47.6 | 5.5 | 0.0 | 46.9 | 53.1 |
|  | 세 종 | 10 | 5.3 | 34.2 | 31.7 | 20.2 | 8.7 | 39.5 | 51.9 |
|  | 경 기 | 707 | 1.6 | 26.7 | 57.6 | 11.5 | 2.6 | 28.3 | 69.1 |
|  | 강 원 | 91 | 2.0 | 32.5 | 45.4 | 16.3 | 3.9 | 34.5 | 61.7 |
|  | 충 昂 | 92 | 1.0 | 28.2 | 54.8 | 12.3 | 3.7 | 29.2 | 67.1 |
|  | 충 남 | 120 | 1.5 | 37.6 | 53.2 | 6.9 | 0.8 | 39.1 | 60.1 |
|  | 전 早 | 107 | 1.7 | 47.9 | 47.1 | 3.3 | 0.0 | 49.6 | 50.4 |
|  | 전 남 | 113 | 1.6 | 33.9 | 47.5 | 13.1 | 3.9 | 35.5 | 60.6 |
|  | 경 早 | 161 | 1.8 | 50.5 | 39.7 | 7.4 | 0.6 | 52.3 | 47.1 |
|  | 경 남 | 193 | 0.5 | 37.7 | 44.0 | 15.7 | 2.1 | 38.2 | 59.7 |
|  | 제 주 | 34 | 1.5 | 46.2 | 34.9 | 12.2 | 5.3 | 47.7 | 47.1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6 | 30.2 | 53.4 | 12.5 | 2.2 | 31.8 | 65.9 |
|  | 충 청 권 | 311 | 1.9 | 35.2 | 51.4 | 9.8 | 1.7 | 37.1 | 61.2 |
|  | 호 남 권 | 302 | 2.0 | 41.5 | 47.6 | 7.4 | 1.5 | 43.5 | 55.0 |
|  | 경 상 권 | 779 | 3.3 | 42.3 | 42.5 | 10.7 | 1.2 | 45.6 | 53.2 |
|  | 강 원／제 주 | 125 | 1.8 | 36.2 | 42.5 | 15.2 | 4.2 | 38.0 | 57.7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2.9 | 36.8 | 47.3 | 11.5 | 1.4 | 39.7 | 58.8 |
|  | 중 소 도 시 | 918 | 1.4 | 33.8 | 51.6 | 11.4 | 1.7 | 35.2 | 63.0 |
|  | 읍 면 지 역 | 710 | 1.6 | 34.0 | 50.2 | 10.9 | 3.2 | 35.6 | 61.1 |

[ 표 21 ] 언론에 보도된 법 판결에 대한 관심
문) [법에 대한 관심] TV 또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진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르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 $\frac{\text { 환산 }}{\text { (점) }}$ |
| 전 체 |  | 3,000 | 2.3 | 15.1 | 34.1 | 42.5 | 6.0 | 17.4 | 48.5 | 58.72 | 3.35 |
|  | 남 자 | 1,489 | 1.9 | 11.9 | 32.2 | 46.5 | 7.5 | 13.8 | 54.0 | 61.49 | 3.46 |
|  | 여 자 | 1,511 | 2.7 | 18.2 | 36.0 | 38.6 | 4.5 | 20.9 | 43.1 | 56.00 | 3.24 |
| 연 령 별 | 20 대 | 529 | 1.7 | 14.9 | 43.9 | 34.1 | 5.4 | 16.6 | 39.5 | 56.68 | 3.27 |
|  | 30 대 | 560 | 1.8 | 11.5 | 39.0 | 41.3 | 6.4 | 13.3 | 47.7 | 59.78 | 3.39 |
|  | 40 대 | 644 | 1.6 | 10.9 | 36.0 | 44.1 | 7.4 | 12.5 | 51.5 | 61.24 | 3.45 |
|  | 50 대 | 594 | 2.9 | 15.2 | 27.1 | 49.0 | 5.8 | 18.1 | 54.8 | 59.92 | 3.40 |
|  | 60 대 이 상 | 673 | 3.2 | 22.2 | 26.7 | 43.0 | 4.8 | 25.4 | 47.8 | 55.99 | 3.24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6.8 | 30.0 | 24.0 | 35.2 | 4.1 | 36.8 | 39.3 | 49.91 | 3.00 |
|  | 고 졸 | 1,196 | 1.8 | 15.9 | 35.2 | 42.5 | 4.6 | 17.7 | 47.1 | 58.10 | 3.32 |
|  | 대 재 이 상 | 1,409 | 1.4 | 10.3 | 36.1 | 44.6 | 7.7 | 11.7 | 52.3 | 61.73 | 3.47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5.2 | 23.5 | 31.0 | 34.5 | 5.7 | 28.7 | 40.2 | 53.04 | 3.12 |
|  | 200~299 만 원 | 485 | 2.8 | 17.6 | 36.1 | 37.1 | 6.4 | 20.4 | 43.5 | 56.67 | 3.27 |
|  | 300~399 만 원 | 655 | 2.5 | 13.1 | 35.6 | 43.7 | 5.0 | 15.6 | 48.7 | 58.89 | 3.36 |
|  | 400~499 만 원 | 629 | 1.4 | 17.4 | 33.7 | 42.6 | 5.0 | 18.8 | 47.6 | 58.10 | 3.32 |
|  | 500 만 원 이상 | 853 | 1.1 | 9.7 | 33.5 | 48.3 | 7.3 | 10.8 | 55.6 | 62.75 | 3.51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6.5 | 29.5 | 24.2 | 37.0 | 2.9 | 36.0 | 39.9 | 50.09 | 3.00 |
|  | 자 영 업 | 666 | 1.8 | 15.3 | 33.3 | 43.4 | 6.3 | 17.1 | 49.7 | 59.27 | 3.37 |
|  | 블 루 칼 라 | 588 | 2.8 | 16.8 | 33.7 | 41.6 | 5.1 | 19.6 | 46.7 | 57.35 | 3.29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1 | 9.0 | 35.6 | 46.4 | 8.0 | 10.1 | 54.4 | 62.78 | 3.51 |
|  | 전 업 주 부 | 563 | 2.9 | 18.1 | 33.3 | 41.1 | 4.7 | 21.0 | 45.8 | 56.68 | 3.27 |
|  |  | 185 | 1.0 | 15.1 | 42.7 | 35.4 | 5.8 | 16.1 | 41.2 | 57.44 | 3.30 |
|  | 무 직 / 기 타 | 132 | 3.9 | 13.1 | 33.5 | 43.1 | 6.4 | 17.0 | 49.5 | 58.74 | 3.35 |
|  | 미 혼 | 672 | 1.7 | 15.3 | 38.8 | 38.2 | 6.0 | 17.0 | 44.2 | 57.85 | 3.31 |
|  |  | 2,233 | 2.1 | 14.8 | 32.8 | 44.3 | 6.1 | 16.9 | 50.4 | 59.37 | 3.37 |
| 상 태 별 | 별거/사별/기타 | 94 | 10.5 | 20.5 | 32.7 | 32.1 | 4.2 | 31.0 | 36.3 | 49.74 | 2.99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4.4 | 14.6 | 35.6 | 39.2 | 6.2 | 19.0 | 45.4 | 57.07 | 3.28 |
|  | 1 세 대 가구 | 787 | 2.8 | 19.9 | 34.4 | 36.7 | 6.3 | 22.7 | 43.0 | 55.95 | 3.24 |
|  | 2 세 대 가구 | 1,905 | 1.8 | 13.2 | 33.7 | 45.4 | 5.8 | 15.0 | 51.2 | 60.06 | 3.40 |
|  | 3 세 대 가 구 | 127 | 3.3 | 14.0 | 36.0 | 40.1 | 6.6 | 17.3 | 46.7 | 58.19 | 3.33 |
| 주 관 적 <br> 계 층 <br> 수 준 별 | 하 층 | 1,352 | 2.9 | 17.4 | 36.5 | 38.1 | 5.1 | 20.3 | 43.2 | 56.25 | 3.25 |
|  | 중 간 층 | 1,527 | 1.8 | 13.7 | 32.4 | 45.6 | 6.6 | 15.5 | 52.2 | 60.38 | 3.42 |
|  | 상 층 | 122 | 0.8 | 7.8 | 29.2 | 53.5 | 8.7 | 8.6 | 62.2 | 65.38 | 3.62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br> 보 | 683 | 2.4 | 12.9 | 32.7 | 43.1 | 8.8 | 15.3 | 51.9 | 60.73 | 3.43 |
|  | 중 <br> 도 | 1,462 | 2.8 | 14.6 | 37.9 | 40.1 | 4.7 | 17.4 | 44.8 | 57.34 | 3.29 |
|  | 보 수 | 855 | 1.2 | 17.7 | 28.8 | 46.3 | 5.9 | 18.9 | 52.2 | 59.49 | 3.38 |
| 지 역 별 | 서 | 606 | 0.4 | 9.1 | 32.9 | 51.5 | 6.2 | 9.5 | 57.6 | 63.48 | 3.54 |
|  | 부 산 | 212 | 0.0 | 15.1 | 30.5 | 47.5 | 6.8 | 15.1 | 54.3 | 61.49 | 3.46 |
|  | 대 구 | 146 | 0.6 | 5.9 | 38.5 | 43.8 | 11.1 | 6.6 | 55.0 | 64.73 | 3.59 |
|  | 인 천 | 170 | 3.6 | 20.0 | 21.3 | 48.7 | 6.5 | 23.5 | 55.2 | 58.65 | 3.35 |
|  | 광 주 | 82 | 2.0 | 12.9 | 32.5 | 47.5 | 5.1 | 14.9 | 52.6 | 60.20 | 3.41 |
|  | 대 전 | 89 | 0.0 | 4.8 | 38.7 | 50.5 | 6.0 | 4.8 | 56.5 | 64.41 | 3.58 |
|  | 울 산 | 67 | 5.7 | 4.7 | 59.9 | 25.1 | 4.6 | 10.3 | 29.7 | 54.58 | 3.18 |
|  | 세 종 | 10 | 0.0 | 2.5 | 25.2 | 39.7 | 32.7 | 2.5 | 72.3 | 75.63 | 4.03 |
|  | 경 기 | 707 | 1.6 | 18.1 | 35.5 | 40.0 | 4.7 | 19.7 | 44.7 | 57.02 | 3.28 |
|  | 강 | 91 | 6.5 | 21.1 | 24.3 | 37.4 | 10.7 | 27.6 | 48.0 | 56.13 | 3.25 |
|  | 충 북 | 92 | 0.0 | 0.0 | 40.4 | 54.8 | 4.7 | 0.0 | 59.6 | 66.08 | 3.64 |
|  | 충 남 | 120 | 0.0 | 11.5 | 46.1 | 33.2 | 9.3 | 11.5 | 42.4 | 60.06 | 3.40 |
|  | 전 북 | 107 | 0.0 | 21.6 | 43.7 | 33.1 | 1.7 | 21.6 | 34.7 | 53.71 | 3.15 |
|  | 전 남 | 113 | 16.7 | 21.5 | 23.6 | 30.8 | 7.4 | 38.2 | 38.2 | 47.64 | 2.91 |
|  | 경 북 | 161 | 0.6 | 17.9 | 34.2 | 41.8 | 5.6 | 18.5 | 47.3 | 58.44 | 3.34 |
|  | 경 남 | 193 | 5.2 | 29.8 | 32.5 | 30.9 | 1.6 | 35.1 | 32.5 | 48.44 | 2.94 |
|  | 제 주 | 34 | 17.2 | 28.5 | 19.2 | 22.6 | 12.6 | 45.6 | 35.2 | 46.22 | 2.85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3 | 14.7 | 32.8 | 45.7 | 5.5 | 16.0 | 51.2 | 59.85 | 3.39 |
|  | 충 청 권 | 311 | 0.0 | 5.9 | 41.6 | 44.8 | 7.7 | 5.9 | 52.5 | 63.58 | 3.54 |
|  | 호 남 권 | 302 | 6.8 | 19.2 | 33.1 | 36.2 | 4.7 | 26.0 | 40.9 | 53.20 | 3.13 |
|  | 경 상 권 | 779 | 2.0 | 16.7 | 35.8 | 39.6 | 5.9 | 18.7 | 45.5 | 57.64 | 3.31 |
|  | 강 원 / 제 주 | 125 | 9.4 | 23.1 | 22.9 | 33.3 | 11.2 | 32.5 | 44.5 | 53.43 | 3.14 |
| 지 역 <br> 규모 별 | 대 도 시 | 1,372 | 1.1 | 10.8 | 33.3 | 48.1 | 6.7 | 11.9 | 54.8 | 62.14 | 3.49 |
|  | 중 소 도 시 | 918 | 2.6 | 19.7 | 35.0 | 37.9 | 4.7 | 22.3 | 42.6 | 55.62 | 3.22 |
|  | 읍 면 지 역 | 710 | 4.1 | 17.4 | 34.4 | 37.7 | 6.3 | 21.5 | 44.0 | 56.14 | 3.25 |

[ 표 22] 신규/변경된 법률에 대한 관심
문) [법에 대한 관심]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법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 펴본다

[ 표 23 ] 분쟁 발생시 법적 해결방법 모색
문) [법에 대한 관심]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선려리 } \\ & \text { 엏ㅎ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렬도기 } \\ & \text { 그롷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매ㅇㅜ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심)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홧산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1.0 | 8.3 | 27.3 | 50.0 | 13.4 | 9.3 | 63.4 | 66.63 | 3.67 |
| 성 별 | 남 자 | 1,489 | 0.6 | 7.8 | 25.5 | 51.7 | 14.5 | 8.4 | 66.2 | 67.92 | 3.72 |
|  | 여 자 | 1,511 | 1.4 | 8.9 | 29.1 | 48.2 | 12.4 | 10.3 | 60.6 | 65.36 | 3.61 |
| 연 령 별 | 20 대 | 529 | 0.7 | 8.1 | 30.2 | 47.4 | 13.6 | 8.8 | 61.0 | 66.28 | 3.65 |
|  | 30 대 | 560 | 0.7 | 6.8 | 25.7 | 52.7 | 14.2 | 7.5 | 66.9 | 68.21 | 3.73 |
|  | 40 대 | 644 | 0.5 | 6.9 | 26.4 | 52.1 | 14.1 | 7.4 | 66.2 | 68.11 | 3.72 |
|  | 50 대 | 594 | 1.4 | 5.7 | 25.9 | 52.4 | 14.7 | 7.1 | 67.1 | 68.33 | 3.73 |
|  | 60 대 이 상 | 673 | 1.6 | 13.5 | 28.4 | 45.6 | 10.9 | 15.1 | 56.5 | 62.67 | 3.51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3.1 | 16.5 | 34.4 | 34.3 | 11.6 | 19.6 | 45.9 | 58.68 | 3.35 |
|  | 고 졸 | 1,196 | 0.9 | 8.0 | 28.3 | 50.3 | 12.5 | 8.9 | 62.8 | 66.33 | 3.65 |
|  | 대 재 이 상 | 1,409 | 0.4 | 6.3 | 24.4 | 54.1 | 14.8 | 6.7 | 68.9 | 69.11 | 3.76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3.2 | 12.0 | 33.2 | 41.4 | 10.3 | 15.2 | 51.7 | 60.91 | 3.44 |
|  | 200~299 만 원 | 485 | 1.5 | 9.6 | 31.7 | 43.6 | 13.6 | 11.1 | 57.2 | 64.56 | 3.58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0.6 | 9.3 | 25.6 | 51.5 | 13.0 | 9.9 | 64.5 | 66.78 | 3.67 |
|  | 400~499 만 원 | 629 | 0.3 | 8.0 | 26.1 | 53.6 | 12.0 | 8.3 | 65.6 | 67.24 | 3.69 |
|  | 500 만 원 이상 | 853 | 0.6 | 5.5 | 24.3 | 53.5 | 16.1 | 6.1 | 69.6 | 69.78 | 3.79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2.0 | 15.5 | 29.5 | 39.3 | 13.7 | 17.5 | 53.0 | 61.79 | 3.47 |
|  | 자 영 업 | 666 | 1.4 | 7.7 | 28.9 | 48.1 | 13.9 | 9.1 | 62.0 | 66.37 | 3.65 |
|  | 블 루 칼 라 | 588 | 0.8 | 7.6 | 27.3 | 51.4 | 12.8 | 8.4 | 64.2 | 67.01 | 3.68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0.1 | 7.3 | 21.9 | 54.2 | 16.4 | 7.4 | 70.6 | 69.90 | 3.80 |
|  |  | 563 | 1.3 | 9.8 | 31.8 | 46.6 | 10.5 | 11.1 | 57.1 | 63.78 | 3.55 |
|  | 학 생 | 185 | 0.4 | 5.5 | 30.1 | 52.0 | 12.1 | 5.9 | 64.1 | 67.47 | 3.70 |
|  | 무 직 / 기 타 | 132 | 3.4 | 11.1 | 23.3 | 50.9 | 11.4 | 14.5 | 62.3 | 63.92 | 3.56 |
|  |  | 672 | 0.6 | 8.7 | 28.5 | 48.7 | 13.6 | 9.3 | 62.3 | 66.49 | 3.66 |
|  | 기 | 2,233 | 1.0 | 8.1 | 27.1 | 50.4 | 13.4 | 9.1 | 63.8 | 66.74 | 3.67 |
| 상 태 별 | 별거/사별/기타 | 94 | 3.5 | 10.4 | 22.8 | 49.4 | 13.9 | 13.9 | 63.3 | 65.01 | 3.60 |
| 가 구 <br> 구성 별 |  | 180 | 1.8 | 9.9 | 30.9 | 44.0 | 13.5 | 11.7 | 57.5 | 64.41 | 3.58 |
|  | 1 세 대 가구 | 787 | 1.8 | 10.2 | 28.3 | 46.0 | 13.7 | 12.0 | 59.7 | 64.91 | 3.60 |
|  | 2 세 대 가구 | 1,905 | 0.6 | 7.1 | 26.7 | 52.6 | 13.0 | 7.7 | 65.6 | 67.59 | 3.70 |
|  | 3 세 대 가 구 | 127 | 0.4 | 13.6 | 25.1 | 43.3 | 17.6 | 14.0 | 60.9 | 66.04 | 3.64 |
| 주 관 적 <br> 계 층 <br> 수 준 별 | 하 층 | 1,352 | 1.1 | 9.3 | 28.9 | 48.1 | 12.6 | 10.4 | 60.7 | 65.43 | 3.62 |
|  | 중 간 층 | 1,527 | 1.0 | 7.5 | 25.6 | 51.9 | 14.0 | 8.5 | 65.9 | 67.63 | 3.71 |
|  | 상 층 | 122 | 0.0 | 7.6 | 30.5 | 46.7 | 15.1 | 7.6 | 61.8 | 67.33 | 3.69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0.9 | 7.0 | 24.1 | 52.9 | 15.0 | 7.9 | 67.9 | 68.52 | 3.74 |
|  | 중 도 | 1,462 | 1.1 | 8.4 | 27.6 | 50.5 | 12.4 | 9.5 | 62.9 | 66.21 | 3.65 |
|  | 보 수 | 855 | 0.9 | 9.3 | 29.3 | 46.7 | 13.9 | 10.2 | 60.6 | 65.84 | 3.63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0.2 | 5.6 | 23.7 | 58.9 | 11.6 | 5.8 | 70.5 | 69.03 | 3.76 |
|  | 부 산 | 212 | 1.5 | 10.3 | 39.3 | 39.8 | 9.1 | 11.8 | 48.9 | 61.20 | 3.45 |
|  | 대 구 | 146 | 0.0 | 2.0 | 23.9 | 53.1 | 21.0 | 2.0 | 74.1 | 73.29 | 3.93 |
|  | 인 천 | 170 | 1.1 | 4.7 | 8.8 | 63.5 | 21.8 | 5.8 | 85.4 | 75.07 | 4.00 |
|  | 광 주 | 82 | 1.0 | 5.1 | 30.1 | 51.7 | 12.1 | 6.0 | 63.8 | 67.22 | 3.69 |
|  | 대 전 | 89 | 0.0 | 7.8 | 23.8 | 51.6 | 16.9 | 7.8 | 68.5 | 69.42 | 3.78 |
|  | 울 산 | 67 | 1.0 | 9.1 | 43.0 | 35.7 | 11.1 | 10.2 | 46.8 | 61.67 | 3.47 |
|  | 세 종 | 10 | 0.0 | 7.0 | 22.7 | 54.8 | 15.5 | 7.0 | 70.3 | 69.71 | 3.79 |
|  | 경 기 | 707 | 0.5 | 8.7 | 27.7 | 49.3 | 13.8 | 9.2 | 63.1 | 66.79 | 3.67 |
|  | 강 원 | 91 | 3.7 | 19.1 | 27.5 | 36.9 | 12.8 | 22.8 | 49.7 | 58.99 | 3.36 |
|  | 충 북 | 92 | 0.0 | 3.7 | 31.2 | 52.8 | 12.3 | 3.7 | 65.1 | 68.42 | 3.74 |
|  | 충 남 | 120 | 0.8 | 4.6 | 32.9 | 43.3 | 18.5 | 5.3 | 61.8 | 68.55 | 3.74 |
|  | 전 早 | 107 | 0.9 | 8.4 | 38.1 | 46.2 | 6.5 | 9.3 | 52.7 | 62.24 | 3.49 |
|  | 전 남 | 113 | 2.6 | 6.8 | 17.3 | 53.7 | 19.5 | 9.5 | 73.3 | 70.18 | 3.81 |
|  | 경 북 | 161 | 0.6 | 13.5 | 38.6 | 38.7 | 8.7 | 14.1 | 47.3 | 60.34 | 3.41 |
|  | 경 남 | 193 | 1.6 | 15.2 | 24.6 | 48.2 | 10.4 | 16.8 | 58.6 | 62.66 | 3.51 |
|  | 제 주 | 34 | 19.1 | 27.4 | 17.1 | 19.2 | 17.2 | 46.6 | 36.3 | 46.95 | 2.88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0.4 | 7.0 | 23.9 | 54.8 | 13.8 | 7.4 | 68.6 | 68.65 | 3.75 |
|  | 충 청 권 | 311 | 0.3 | 5.3 | 29.4 | 48.8 | 16.1 | 5.6 | 64.9 | 68.80 | 3.75 |
|  | 호 남 권 | 302 | 1.6 | 6.9 | 28.1 | 50.5 | 12.9 | 8.5 | 63.4 | 66.56 | 3.66 |
|  | 경 상 권 | 779 | 1.0 | 10.5 | 32.9 | 43.8 | 11.7 | 11.5 | 55.5 | 63.69 | 3.55 |
|  | 강 원 / 제 주 | 125 | 7.9 | 21.4 | 24.7 | 32.0 | 14.0 | 29.3 | 46.0 | 55.72 | 3.23 |
| 지 역 <br> 규모 별 | 대 도 시 | 1,372 | 0.6 | 6.1 | 25.6 | 53.9 | 13.8 | 6.7 | 67.7 | 68.58 | 3.74 |
|  | 중 소 도 시 | 918 | 1.1 | 10.1 | 28.6 | 48.0 | 12.2 | 11.2 | 60.2 | 65.00 | 3.60 |
|  | 읍 면 지 역 | 710 | 1.7 | 10.2 | 28.8 | 45.0 | 14.3 | 11.9 | 59.3 | 64.98 | 3.60 |

[ 표 24 ] 일상에 필요한 법률지식 인지
문) [법에 대한 관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구 } \text {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러d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 $\frac{\text { 확산 }}{\text { (점) }}$ |
| 전 체 |  | 3,000 | 4.5 | 27.4 | 44.7 | 21.4 | 2.1 | 31.9 | 23.5 | 47.31 | 2.89 |
| 성 별 | 남 자 | 1,489 | 2.5 | 23.3 | 47.2 | 24.4 | 2.5 | 25.8 | 26.9 | 50.29 | 3.01 |
|  | 여 자 | 1,511 | 6.4 | 31.4 | 42.2 | 18.4 | 1.6 | 37.8 | 20.0 | 44.38 | 2.78 |
| 연 령 별 | 20 대 | 529 | 4.1 | 31.0 | 45.6 | 17.0 | 2.3 | 35.1 | 19.3 | 45.64 | 2.83 |
|  | 30 대 | 560 | 1.9 | 26.4 | 51.1 | 18.9 | 1.6 | 28.3 | 20.5 | 48.00 | 2.92 |
|  | 40 대 | 644 | 3.2 | 23.1 | 54.4 | 17.2 | 2.0 | 26.3 | 19.2 | 47.93 | 2.92 |
|  | 50 대 | 594 | 4.2 | 25.4 | 40.8 | 27.1 | 2.6 | 29.6 | 29.7 | 49.61 | 2.98 |
|  | 60 대 이 상 | 673 | 8.3 | 31.2 | 32.7 | 25.9 | 1.9 | 39.5 | 27.8 | 45.44 | 2.82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10.3 | 34.8 | 29.3 | 23.7 | 1.9 | 45.1 | 25.6 | 43.02 | 2.72 |
|  | 고 졸 | 1,196 | 5.0 | 27.9 | 41.8 | 23.1 | 2.2 | 32.9 | 25.3 | 47.39 | 2.90 |
|  | 대 재 이 상 | 1,409 | 2.3 | 24.9 | 51.4 | 19.4 | 2.0 | 27.2 | 21.4 | 48.46 | 2.94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8.3 | 32.5 | 37.9 | 18.4 | 2.9 | 40.8 | 21.3 | 43.74 | 2.75 |
|  | 200~299 만 원 | 485 | 5.7 | 29.1 | 42.5 | 21.4 | 1.2 | 34.8 | 22.6 | 45.83 | 2.83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5.2 | 26.1 | 43.0 | 23.9 | 1.9 | 31.3 | 25.8 | 47.78 | 2.91 |
|  | 400~499 만 원 | 629 | 2.3 | 27.4 | 46.3 | 21.9 | 2.2 | 29.7 | 24.1 | 48.57 | 2.94 |
|  | 500 만 원 이상 | 853 | 3.0 | 25.1 | 49.0 | 20.5 | 2.3 | 28.1 | 22.8 | 48.47 | 2.94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4.3 | 29.6 | 40.6 | 22.7 | 2.7 | 33.9 | 25.4 | 47.50 | 2.90 |
|  | 자 영 업 | 666 | 4.1 | 25.8 | 42.9 | 25.4 | 1.8 | 29.9 | 27.2 | 48.70 | 2.95 |
|  | 블 루 칼 라 | 588 | 4.6 | 27.7 | 40.8 | 24.0 | 2.9 | 32.3 | 26.9 | 48.25 | 2.93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9 | 21.0 | 56.9 | 17.9 | 2.4 | 22.9 | 20.3 | 49.46 | 2.98 |
|  | 전 업 주 부 | 563 | 8.1 | 33.9 | 36.5 | 20.0 | 1.5 | 42.0 | 21.5 | 43.21 | 2.73 |
|  | 학 생 | 185 | 4.1 | 31.7 | 43.6 | 19.6 | 1.0 | 35.8 | 20.6 | 45.43 | 2.82 |
|  | 무 직 / 기 타 | 132 | 5.0 | 33.2 | 43.5 | 16.7 | 1.6 | 38.2 | 18.3 | 44.15 | 2.77 |
|  | 미 혼 | 672 | 3.0 | 29.2 | 46.1 | 19.2 | 2.4 | 32.2 | 21.6 | 47.25 | 2.89 |
|  | 기 | 2,233 | 4.4 | 26.8 | 44.6 | 22.2 | 2.0 | 31.2 | 24.2 | 47.64 | 2.91 |
| 상 태 별 | 별거/사별/기타 | 94 | 16.0 | 28.0 | 37.0 | 18.0 | 1.0 | 44.0 | 19.0 | 40.01 | 2.60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 180 | 7.3 | 29.6 | 46.3 | 15.3 | 1.5 | 36.9 | 16.8 | 43.56 | 2.74 |
|  | $1 \text { 세 대 가 구 }$ | 787 | 6.1 | 29.2 | 42.1 | 20.3 | 2.3 | 35.3 | 22.6 | 45.90 | 2.84 |
|  | 2 세 대 가구 | 1,905 | 3.6 | 26.1 | 45.5 | 22.8 | 2.0 | 29.7 | 24.8 | 48.40 | 2.94 |
|  | 3 세 대 가 구 | 127 | 3.7 | 32.7 | 45.3 | 15.6 | 2.5 | 36.4 | 18.1 | 45.12 | 2.80 |
| 주 관 적 <br> 계 층 <br> 수 준 별 | 하 층 | 1,352 | 5.6 | 29.3 | 43.6 | 19.5 | 1.9 | 34.9 | 21.4 | 45.70 | 2.83 |
|  | 중 간 층 | 1,527 | 3.6 | 26.5 | 45.6 | 22.4 | 1.9 | 30.1 | 24.3 | 48.12 | 2.92 |
|  | 상 층 | 122 | 2.3 | 16.8 | 45.2 | 29.0 | 6.6 | 19.1 | 35.6 | 55.18 | 3.21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2.5 | 26.8 | 45.2 | 22.9 | 2.7 | 29.3 | 25.6 | 49.10 | 2.96 |
|  | 중 도 | 1,462 | 5.1 | 28.8 | 45.3 | 18.7 | 2.1 | 33.9 | 20.8 | 45.95 | 2.84 |
|  | 보 수 | 855 | 5.0 | 25.4 | 43.1 | 24.9 | 1.7 | 30.4 | 26.6 | 48.22 | 2.93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3.0 | 25.6 | 48.5 | 21.7 | 1.3 | 28.5 | 23.0 | 48.20 | 2.93 |
|  | 부 산 | 212 | 1.5 | 23.4 | 45.0 | 25.8 | 4.3 | 24.9 | 30.1 | 52.01 | 3.08 |
|  | 대 구 | 146 | 8.5 | 24.5 | 39.9 | 23.2 | 3.9 | 33.0 | 27.1 | 47.41 | 2.90 |
|  | 인 천 | 170 | 3.5 | 35.4 | 35.3 | 24.6 | 1.2 | 38.9 | 25.8 | 46.18 | 2.85 |
|  | 광 주 | 82 | 5.1 | 38.5 | 28.9 | 22.2 | 5.3 | 43.6 | 27.4 | 45.98 | 2.84 |
|  | 대 전 | 89 | 0.0 | 21.5 | 60.6 | 14.9 | 2.9 | 21.5 | 17.9 | 49.82 | 2.99 |
|  | 울 산 | 67 | 3.4 | 12.4 | 50.6 | 31.4 | 2.2 | 15.8 | 33.6 | 54.14 | 3.17 |
|  | 세 종 | 10 | 0.0 | 6.5 | 36.8 | 42.2 | 14.5 | 6.5 | 56.7 | 66.17 | 3.65 |
|  | 경 기 | 707 | 6.5 | 29.5 | 44.1 | 19.0 | 1.0 | 36.0 | 19.9 | 44.61 | 2.78 |
|  | 강 원 | 91 | 10.4 | 31.6 | 50.0 | 8.0 | 0.0 | 42.0 | 8.0 | 38.92 | 2.56 |
|  | 충 북 | 92 | 1.0 | 14.2 | 65.3 | 18.7 | 0.9 | 15.2 | 19.6 | 51.08 | 3.04 |
|  | 충 남 | 120 | 1.5 | 28.5 | 43.0 | 21.5 | 5.4 | 30.1 | 27.0 | 50.20 | 3.01 |
|  | 전 북 | 107 | 4.1 | 29.8 | 34.5 | 29.1 | 2.5 | 33.9 | 31.6 | 49.04 | 2.96 |
|  | 전 남 | 113 | 3.9 | 25.5 | 37.5 | 26.3 | 6.7 | 29.4 | 33.0 | 51.62 | 3.06 |
|  | 경 早 | 161 | 1.8 | 27.6 | 40.4 | 28.4 | 1.9 | 29.4 | 30.3 | 50.24 | 3.01 |
|  | 경 남 | 193 | 2.6 | 31.8 | 52.0 | 13.7 | 0.0 | 34.4 | 13.7 | 44.17 | 2.77 |
|  | 제 주 | 34 | 38.1 | 30.6 | 13.1 | 18.3 | 0.0 | 68.7 | 18.3 | 27.88 | 2.12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4.7 | 28.6 | 44.9 | 20.7 | 1.1 | 33.3 | 21.8 | 46.25 | 2.85 |
|  | 충 청 권 | 311 | 0.9 | 21.6 | 54.4 | 19.5 | 3.7 | 22.5 | 23.2 | 50.86 | 3.03 |
|  | 호 남 권 | 302 | 4.3 | 30.6 | 34.1 | 26.2 | 4.8 | 34.9 | 31.0 | 49.17 | 2.97 |
|  | 경 상 권 | 779 | 3.3 | 25.6 | 45.3 | 23.3 | 2.5 | 28.9 | 25.8 | 49.02 | 2.96 |
|  | 강 원 / 제 주 | 125 | 17.9 | 31.3 | 40.0 | 10.8 | 0.0 | 49.2 | 10.8 | 35.91 | 2.44 |
| 지 역 <br> 규모 별 |  | 1,372 | 3.4 | 26.2 | 45.1 | 22.9 | 2.4 | 29.6 | 25.3 | 48.71 | 2.95 |
|  | 중 소 도 시 | 918 | 5.6 | 27.6 | 42.3 | 22.8 | 1.7 | 33.2 | 24.5 | 46.84 | 2.87 |
|  | 읍 면 지 역 | 710 | 5.1 | 29.4 | 46.9 | 16.7 | 1.9 | 34.5 | 18.6 | 45.22 | 2.81 |

［ 표 25 ］어렵지 않은 법 관련 용어／내용

문）［법에 대한 인식／정서］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으로 쓰여 있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명）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begin{aligned} & 100 \text { 점 } \\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5점 } \\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 3，000 | 18.0 | 41.8 | 23.5 | 15.8 | 0.9 | 59.8 | 16.7 | 34.96 | 2.40 |
| 성 별 | 남 자 | 1，489 | 19.6 | 38.9 | 23.7 | 16.8 | 1.0 | 58.5 | 17.8 | 35.17 | 2.41 |
|  | 여 자 | 1，511 | 16.5 | 44.5 | 23.3 | 14.8 | 0.8 | 61.0 | 15.6 | 34.74 | 2.39 |
| 연 렁 별 | 20 대 | 529 | 18.9 | 38.0 | 26.4 | 15.6 | 1.1 | 56.9 | 16.7 | 35.52 | 2.42 |
|  | 30 대 | 560 | 22.5 | 41.3 | 23.2 | 12.2 | 0.8 | 63.8 | 13.0 | 31.87 | 2.27 |
|  | 40 대 | 644 | 23.4 | 44.1 | 19.5 | 12.4 | 0.7 | 67.5 | 13.1 | 30.74 | 2.23 |
|  | 50 대 | 594 | 13.6 | 41.1 | 24.5 | 20.0 | 0.8 | 54.7 | 20.8 | 38.34 | 2.53 |
|  | 60 대 이 상 | 673 | 12.5 | 43.4 | 24.4 | 18.4 | 1.3 | 55.9 | 19.7 | 38.13 | 2.53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17.1 | 41.8 | 23.6 | 16.5 | 1.0 | 58.9 | 17.5 | 35.61 | 2.42 |
|  | 고 졸 | 1，196 | 14.3 | 44.2 | 24.1 | 16.2 | 1.2 | 58.5 | 17.4 | 36.44 | 2.46 |
|  | 대 재 이 상 | 1，409 | 21.5 | 39.7 | 22.9 | 15.2 | 0.7 | 61.2 | 15.9 | 33.51 | 2.34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8.3 | 37.8 | 25.7 | 16.1 | 2.1 | 56.1 | 18.2 | 36.50 | 2.46 |
|  | $200 \sim 299 \text { 만 원 }$ | 485 | 21.9 | 42.4 | 22.3 | 12.1 | 1.3 | 64.3 | 13.4 | 32.09 | 2.28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8.1 | 42.4 | 22.7 | 16.4 | 0.4 | 60.5 | 16.8 | 34.67 | 2.39 |
|  | 400～499 만 원 | 629 | 16.4 | 44.7 | 23.5 | 14.9 | 0.5 | 61.1 | 15.4 | 34.60 | 2.38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6.9 | 40.5 | 23.7 | 17.9 | 0.9 | 57.4 | 18.8 | 36.38 | 2.46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20.7 | 40.0 | 18.5 | 19.4 | 1.4 | 60.7 | 20.8 | 35.17 | 2.41 |
|  | 자 영 업 | 666 | 15.4 | 44.9 | 22.6 | 16.5 | 0.6 | 60.3 | 17.1 | 35.50 | 2.42 |
|  | 블 루 칼 라 | 588 | 16.7 | 40.8 | 23.9 | 17.1 | 1.5 | 57.5 | 18.6 | 36.47 | 2.46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22.3 | 39.2 | 23.7 | 14.0 | 0.8 | 61.5 | 14.8 | 32.98 | 2.32 |
|  | 전 업 주 부 | 563 | 14.7 | 44.7 | 23.4 | 16.2 | 0.9 | 59.4 | 17.1 | 35.93 | 2.44 |
|  | 학 생 | 185 | 17.4 | 39.6 | 29.9 | 12.6 | 0.5 | 57.0 | 13.1 | 34.82 | 2.39 |
|  | 무 직／기 타 | 132 | 25.8 | 36.6 | 21.2 | 15.5 | 0.9 | 62.4 | 16.4 | 32.25 | 2.29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21.0 | 39.5 | 24.7 | 14.0 | 0.8 | 60.5 | 14.8 | 33.55 | 2.34 |
|  | 기 혼 | 2，233 | 16.8 | 42.6 | 23.3 | 16.3 | 1.0 | 59.4 | 17.3 | 35.51 | 2.42 |
|  | 별 거／사 별／기타 | 94 | 25.3 | 39.0 | 18.8 | 17.0 | 0.0 | 64.3 | 17.0 | 31.85 | 2.27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text { 인 가 구 }$ | 180 | 28.8 | 37.1 | 20.8 | 12.3 | 1.0 | 65.9 | 13.3 | 29.90 | 2.20 |
|  | 1 세 대 가 구 | 787 | 18.9 | 40.0 | 24.8 | 14.8 | 1.5 | 58.9 | 16.3 | 34.98 | 2.40 |
|  | 2 세 대 가 구 | 1，905 | 15.9 | 42.9 | 23.7 | 16.8 | 0.8 | 58.8 | 17.6 | 35.91 | 2.44 |
|  | 3 세 대 가 구 | 127 | 29.8 | 42.1 | 15.7 | 12.4 | 0.0 | 71.9 | 12.4 | 27.67 | 2.11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층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21.3 | 43.8 | 21.6 | 12.2 | 1.1 | 65.1 | 13.3 | 32.00 | 2.28 |
|  | 중 간 층 | 1，527 | 15.0 | 41.5 | 24.8 | 17.7 | 0.9 | 56.5 | 18.6 | 37.01 | 2.48 |
|  | 상 층 | 122 | 20.5 | 21.8 | 26.9 | 30.8 | 0.0 | 42.3 | 30.8 | 41.99 | 2.68 |
| 이 념 성 향 별 | 진 보 | 683 | 20.0 | 37.2 | 23.4 | 17.4 | 2.0 | 57.2 | 19.4 | 36.09 | 2.44 |
|  | 중 도 | 1，462 | 19.7 | 43.0 | 23.0 | 13.9 | 0.4 | 62.7 | 14.3 | 33.04 | 2.32 |
|  | 보 수 | 855 | 13.6 | 43.2 | 24.4 | 17.7 | 1.0 | 56.8 | 18.7 | 37.33 | 2.49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2.3 | 42.8 | 26.4 | 18.3 | 0.2 | 55.1 | 18.5 | 37.80 | 2.51 |
|  | 부 산 | 212 | 8.7 | 34.5 | 33.1 | 21.9 | 1.9 | 43.2 | 23.7 | 43.43 | 2.74 |
|  | 대 구 | 146 | 20.0 | 32.4 | 27.1 | 19.8 | 0.6 | 52.5 | 20.5 | 37.16 | 2.49 |
|  | 인 천 | 170 | 18.2 | 56.6 | 16.4 | 8.8 | 0.0 | 74.8 | 8.8 | 28.95 | 2.16 |
|  | 광 주 | 82 | 17.0 | 31.5 | 20.3 | 30.1 | 1.1 | 48.5 | 31.2 | 41.70 | 2.67 |
|  | 대 전 | 89 | 11.9 | 42.4 | 27.8 | 14.9 | 3.0 | 54.3 | 17.9 | 38.68 | 2.55 |
|  | 울 산 | 67 | 15.9 | 17.1 | 44.5 | 20.4 | 2.2 | 32.9 | 22.6 | 44.01 | 2.76 |
|  | 세 종 | 10 | 2.5 | 14.3 | 14.7 | 55.8 | 12.7 | 16.8 | 68.5 | 65.46 | 3.62 |
|  | 경 기 | 707 | 19.9 | 46.7 | 21.7 | 11.3 | 0.3 | 66.6 | 11.7 | 31.38 | 2.26 |
|  | 강 원 | 91 | 26.3 | 53.9 | 14.2 | 5.7 | 0.0 | 80.1 | 5.7 | 24.84 | 1.99 |
|  | 충 易 | 92 | 12.4 | 55.1 | 18.8 | 11.8 | 1.8 | 67.6 | 13.7 | 33.88 | 2.36 |
|  | 충 남 | 120 | 12.4 | 40.7 | 27.6 | 16.2 | 3.1 | 53.1 | 19.3 | 39.21 | 2.57 |
|  | 전 易 | 107 | 11.5 | 33.0 | 30.6 | 24.9 | 0.0 | 44.5 | 24.9 | 42.25 | 2.69 |
|  | 전 남 | 113 | 38.6 | 28.1 | 15.6 | 16.0 | 1.6 | 66.8 | 17.7 | 28.47 | 2.14 |
|  | 경 早 | 161 | 11.0 | 38.0 | 22.7 | 25.2 | 3.1 | 49.0 | 28.3 | 42.86 | 2.71 |
|  | 경 남 | 193 | 29.8 | 46.7 | 15.7 | 7.3 | 0.5 | 76.5 | 7.8 | 25.53 | 2.02 |
|  | 제 주 | 34 | 88.9 | 9.4 | 1.7 | 0.0 | 0.0 | 98.3 | 0.0 | 3.19 | 1.13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6.6 | 46.2 | 23.0 | 13.9 | 0.2 | 62.8 | 14.1 | 33.73 | 2.35 |
|  | 충 청 권 | 311 | 12.0 | 44.6 | 24.6 | 15.8 | 3.0 | 56.6 | 18.8 | 38.33 | 2.53 |
|  | 호 남 권 | 302 | 23.1 | 30.8 | 22.2 | 23.0 | 0.9 | 53.9 | 23.9 | 36.94 | 2.48 |
|  | 경 상 권 | 779 | 17.1 | 36.4 | 26.5 | 18.4 | 1.6 | 53.5 | 20.0 | 37.75 | 2.51 |
|  | 강 원／제 주 | 125 | 43.3 | 41.8 | 10.8 | 4.2 | 0.0 | 85.1 | 4.2 | 18.95 | 1.76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13.7 | 40.2 | 26.8 | 18.4 | 0.8 | 53.9 | 19.2 | 38.10 | 2.52 |
|  | 중 소 도 시 | 918 | 17.7 | 46.1 | 20.1 | 14.7 | 1.4 | 63.8 | 16.1 | 34.01 | 2.36 |
|  | 읍 면 지 역 | 710 | 26.7 | 39.3 | 21.4 | 12.1 | 0.5 | 66.0 | 12.6 | 30.11 | 2.20 |

[ 표 26] 국민 의사를 반영한 법제정
문)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별로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맇저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글롷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 3,000 | 9.8 | 26.7 | 36.2 | 24.3 | 2.9 | 36.5 | 27.2 | 45.97 | 2.84 |
| 성 별 | 남 | 자 | 1,489 | 10.4 | 26.7 | 35.7 | 24.1 | 3.1 | 37.1 | 27.2 | 45.72 | 2.83 |
|  | 여 | 자 | 1,511 | 9.2 | 26.7 | 36.7 | 24.6 | 2.8 | 35.9 | 27.4 | 46.21 | 2.85 |
| 연 령 별 | 20 | 대 | 529 | 15.2 | 31.7 | 30.7 | 20.0 | 2.5 | 46.9 | 22.5 | 40.74 | 2.63 |
|  | 30 | 대 | 560 | 15.0 | 29.2 | 34.5 | 19.5 | 1.8 | 44.2 | 21.3 | 41.00 | 2.64 |
|  | 40 | 대 | 644 | 14.0 | 30.7 | 34.5 | 18.5 | 2.3 | 44.7 | 20.8 | 41.10 | 2.64 |
|  | 50 | 대 | 594 | 3.7 | 24.9 | 38.4 | 29.6 | 3.4 | 28.6 | 33.0 | 50.99 | 3.04 |
|  | 60 대 | 상 | 673 | 2.6 | 18.6 | 41.7 | 32.6 | 4.5 | 21.2 | 37.1 | 54.45 | 3.18 |
| 학 력 별 | 중 졸 |  | 395 | 5.3 | 22.1 | 40.8 | 28.9 | 2.9 | 27.4 | 31.8 | 50.45 | 3.02 |
|  |  | 졸 | 1,196 | 5.6 | 26.6 | 38.2 | 26.5 | 3.2 | 32.2 | 29.7 | 48.74 | 2.95 |
|  | 대 재 |  | 1,409 | 14.6 | 28.2 | 33.2 | 21.2 | 2.8 | 42.8 | 24.0 | 42.37 | 2.69 |
| 소 득 별 | 199 만 원 |  | 379 | 9.0 | 21.8 | 40.6 | 25.2 | 3.4 | 30.8 | 28.6 | 48.05 | 2.92 |
|  | $200 \sim 2$ |  | 485 | 13.4 | 31.1 | 34.2 | 18.8 | 2.6 | 44.5 | 21.4 | 41.56 | 2.66 |
|  | $300 \sim 3$ |  | 655 | 8.0 | 27.7 | 37.0 | 24.4 | 3.0 | 35.7 | 27.4 | 46.69 | 2.87 |
|  | 400~4 |  | 629 | 8.2 | 26.6 | 37.0 | 25.4 | 2.8 | 34.8 | 28.2 | 47.00 | 2.88 |
|  | 500 만 원 |  | 853 | 10.7 | 25.9 | 34.3 | 26.2 | 3.0 | 36.6 | 29.2 | 46.24 | 2.85 |
| 직 업 별 | 농/ 축 / |  | 133 | 7.4 | 24.5 | 37.5 | 27.2 | 3.4 | 31.9 | 30.6 | 48.71 | 2.95 |
|  | 자 영 |  | 666 | 5.9 | 25.7 | 38.5 | 26.7 | 3.2 | 31.6 | 29.9 | 48.87 | 2.95 |
|  | 블 루 |  | 588 | 7.4 | 26.8 | 33.3 | 28.8 | 3.7 | 34.2 | 32.5 | 48.65 | 2.95 |
|  | 화 이 튼 |  | 733 | 15.6 | 28.6 | 35.0 | 18.5 | 2.2 | 44.2 | 20.7 | 40.81 | 2.63 |
|  | 전 업 |  | 563 | 6.1 | 24.3 | 40.3 | 26.0 | 3.4 | 30.4 | 29.4 | 49.11 | 2.96 |
|  | 학 | 생 | 185 | 17.6 | 30.0 | 31.5 | 19.1 | 1.7 | 47.6 | 20.8 | 39.32 | 2.57 |
|  | 무 직/ |  | 132 | 15.3 | 29.4 | 31.9 | 21.7 | 1.6 | 44.7 | 23.3 | 41.19 | 2.65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 혼 | 672 | 14.8 | 31.8 | 31.8 | 19.8 | 1.8 | 46.6 | 21.6 | 40.49 | 2.62 |
|  | 기 | 혼 | 2,233 | 8.6 | 25.6 | 37.0 | 25.5 | 3.2 | 34.2 | 28.7 | 47.30 | 2.89 |
|  | 별 거/사 |  | 94 | 3.1 | 16.3 | 48.3 | 27.9 | 4.4 | 19.4 | 32.3 | 53.56 | 3.14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 구 | 180 | 14.8 | 32.2 | 34.5 | 16.4 | 2.1 | 47.0 | 18.5 | 39.69 | 2.59 |
|  | 1 세 대 |  | 787 | 9.5 | 26.7 | 37.2 | 24.1 | 2.5 | 36.2 | 26.6 | 45.89 | 2.84 |
|  | 2 세 대 |  | 1,905 | 9.1 | 25.9 | 35.9 | 25.8 | 3.3 | 35.0 | 29.1 | 47.07 | 2.88 |
|  | 3 세 대 |  | 127 | 15.6 | 31.0 | 37.0 | 14.6 | 1.8 | 46.6 | 16.4 | 38.97 | 2.56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층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 층 | 1,352 | 11.5 | 29.9 | 35.7 | 20.8 | 2.0 | 41.4 | 22.8 | 42.98 | 2.72 |
|  | 중 | 층 | 1,527 | 8.3 | 23.8 | 37.6 | 26.8 | 3.5 | 32.1 | 30.3 | 48.35 | 2.93 |
|  | 상 | 층 | 122 | 9.2 | 28.9 | 23.7 | 31.7 | 6.5 | 38.1 | 38.2 | 49.33 | 2.97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 보 | 683 | 11.6 | 25.7 | 33.1 | 26.8 | 2.8 | 37.3 | 29.6 | 45.93 | 2.84 |
|  | 중 | 도 | 1,462 | 11.4 | 29.2 | 38.2 | 19.0 | 2.3 | 40.6 | 21.3 | 42.90 | 2.72 |
|  | 보 | 수 | 855 | 5.7 | 23.4 | 35.3 | 31.4 | 4.2 | 29.1 | 35.6 | 51.25 | 3.05 |
| 지 역 별 | 서 | 울 | 606 | 8.6 | 19.0 | 40.0 | 28.2 | 4.1 | 27.6 | 32.3 | 50.06 | 3.00 |
|  | 부 | 산 | 212 | 7.2 | 21.8 | 32.0 | 38.0 | 1.0 | 29.1 | 38.9 | 50.91 | 3.04 |
|  | 대 | 구 | 146 | 4.1 | 27.2 | 41.5 | 23.3 | 3.9 | 31.2 | 27.3 | 48.98 | 2.96 |
|  | 인 | 천 | 170 | 8.2 | 36.0 | 25.3 | 29.9 | 0.6 | 44.3 | 30.5 | 44.65 | 2.79 |
|  | 광 | 주 | 82 | 13.1 | 21.1 | 35.6 | 26.1 | 4.0 | 34.2 | 30.2 | 46.73 | 2.87 |
|  | 대 | 전 | 89 | 8.9 | 21.0 | 34.7 | 32.6 | 2.9 | 29.8 | 35.5 | 49.95 | 3.00 |
|  | 울 | 산 | 67 | 3.8 | 22.6 | 26.7 | 42.4 | 4.4 | 26.5 | 46.8 | 55.20 | 3.21 |
|  | 세 | 종 | 10 | 2.0 | 10.3 | 26.3 | 25.2 | 36.2 | 12.3 | 61.3 | 70.79 | 3.83 |
|  | 경 | 기 | 707 | 11.0 | 31.9 | 39.0 | 15.6 | 2.4 | 43.0 | 18.0 | 41.62 | 2.66 |
|  | 강 | 원 | 91 | 12.6 | 34.5 | 33.1 | 18.9 | 1.0 | 47.0 | 19.8 | 40.30 | 2.61 |
|  | 충 | 북 | 92 | 2.8 | 36.1 | 32.0 | 27.3 | 1.8 | 38.9 | 29.1 | 47.27 | 2.89 |
|  | 충 | 남 | 120 | 7.0 | 24.6 | 35.2 | 29.2 | 3.9 | 31.7 | 33.1 | 49.57 | 2.98 |
|  | 전 | 早 | 107 | 6.6 | 18.1 | 47.2 | 24.8 | 3.3 | 24.7 | 28.1 | 50.02 | 3.00 |
|  | 전 | 남 | 113 | 25.4 | 26.1 | 26.7 | 16.3 | 5.5 | 51.5 | 21.8 | 37.61 | 2.50 |
|  | 경 | 북 | 161 | 8.6 | 30.0 | 33.6 | 23.5 | 4.3 | 38.5 | 27.8 | 46.24 | 2.85 |
|  | 경 | 남 | 193 | 13.1 | 29.3 | 38.2 | 19.4 | 0.0 | 42.4 | 19.4 | 40.99 | 2.64 |
|  | 제 | 주 | 34 | 29.4 | 40.1 | 15.7 | 11.4 | 3.3 | 69.5 | 14.8 | 29.77 | 2.19 |
| 권 역 별 | 수 도 | 권 | 1,483 | 9.7 | 27.1 | 37.9 | 22.4 | 2.9 | 36.8 | 25.3 | 45.41 | 2.82 |
|  | 충 칭 | 권 | 311 | 6.2 | 26.5 | 33.8 | 29.5 | 4.0 | 32.7 | 33.5 | 49.68 | 2.99 |
|  | 호 남 | 권 | 302 | 15.4 | 21.9 | 36.4 | 22.0 | 4.3 | 37.3 | 26.3 | 44.48 | 2.78 |
|  | 경 상 | 권 | 779 | 8.1 | 26.4 | 35.2 | 28.0 | 2.3 | 34.5 | 30.3 | 47.50 | 2.90 |
|  | 강 원 |  | 125 | 17.2 | 36.0 | 28.4 | 16.9 | 1.6 | 53.2 | 18.5 | 37.44 | 2.50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 시 | 1,372 | 7.9 | 22.9 | 35.9 | 30.3 | 3.1 | 30.8 | 33.4 | 49.45 | 2.98 |
|  | 중 소 |  | 918 | 8.4 | 29.6 | 39.9 | 18.7 | 3.4 | 38.0 | 22.1 | 44.78 | 2.79 |
|  | 읍 면 | 역 | 710 | 15.3 | 30.5 | 32.1 | 20.1 | 2.1 | 45.8 | 22.2 | 40.79 | 2.63 |

［ 표 27 ］일반 국민의 권리 보호
문）［법에 대한 인식／정서］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 구 단위:\%)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ㅂㅕㅕㄹㅗ } \\ & \text { 그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ㄹㅗㅗ } \\ & \text { 그롷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begin{aligned} & \text { 5절 } \\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 3，000 | 6.3 | 19.7 | 35.4 | 32.8 | 5.8 | 26.0 | 38.6 | 53.00 | 3.12 |
|  | 남 자 | 1，489 | 6.7 | 20.0 | 34.1 | 32.9 | 6.3 | 26.7 | 39.2 | 53.03 | 3.12 |
|  | 여 자 | 1，511 | 6.0 | 19.4 | 36.7 | 32.6 | 5.3 | 25.4 | 37.9 | 52.97 | 3.12 |
| 연 령 별 | 20 대 | 529 | 9.8 | 25.5 | 36.0 | 23.6 | 5.1 | 35.3 | 28.7 | 47.18 | 2.89 |
|  | 30 대 | 560 | 10.1 | 25.7 | 35.2 | 26.3 | 2.8 | 35.8 | 29.1 | 46.51 | 2.86 |
|  | 40 대 | 644 | 9.7 | 23.7 | 39.6 | 21.8 | 5.1 | 33.4 | 26.9 | 47.21 | 2.89 |
|  | 50 대 | 594 | 1.9 | 13.6 | 32.6 | 43.7 | 8.1 | 15.5 | 51.8 | 60.62 | 3.42 |
|  | 60 대 이 상 | 673 | 1.0 | 11.8 | 33.6 | 46.2 | 7.4 | 12.8 | 53.6 | 61.78 | 3.47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2.2 | 15.7 | 35.4 | 41.7 | 4.9 | 17.9 | 46.6 | 57.82 | 3.31 |
|  | 고 졸 | 1，196 | 2.8 | 16.7 | 36.6 | 36.8 | 7.1 | 19.5 | 43.9 | 57.18 | 3.29 |
|  | 대 재 이 상 | 1，409 | 10.5 | 23.3 | 34.4 | 26.8 | 4.9 | 33.8 | 31.7 | 48.10 | 2.92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4.9 | 19.7 | 34.8 | 36.3 | 4.3 | 24.6 | 40.6 | 53.87 | 3.15 |
|  | 200～299 만 원 | 485 | 8.4 | 23.2 | 40.1 | 24.5 | 3.7 | 31.6 | 28.2 | 47.93 | 2.92 |
|  | 300～399 만 원 | 655 | 5.0 | 18.3 | 35.2 | 36.2 | 5.3 | 23.3 | 41.5 | 54.62 | 3.18 |
|  | 400～499 만 원 | 629 | 5.3 | 19.9 | 35.5 | 33.9 | 5.4 | 25.2 | 39.3 | 53.57 | 3.14 |
|  | 500 만 원 이상 | 853 | 7.5 | 18.7 | 33.2 | 32.4 | 8.3 | 26.2 | 40.7 | 53.82 | 3.15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3.9 | 21.4 | 26.1 | 40.5 | 8.0 | 25.3 | 48.5 | 56.85 | 3.27 |
|  | 자 영 업 | 666 | 3.6 | 14.3 | 38.1 | 38.6 | 5.4 | 17.9 | 44.0 | 56.97 | 3.28 |
|  | 블 루 칼 라 | 588 | 5.4 | 18.1 | 34.0 | 33.9 | 8.5 | 23.5 | 42.4 | 55.51 | 3.22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9.9 | 26.9 | 35.8 | 23.8 | 3.7 | 36.8 | 27.5 | 46.12 | 2.84 |
|  | 전 업 주 부 | 563 | 3.7 | 17.5 | 35.2 | 37.2 | 6.4 | 21.2 | 43.6 | 56.29 | 3.25 |
|  | 학 생 | 185 | 9.6 | 23.0 | 36.3 | 27.9 | 3.2 | 32.6 | 31.1 | 48.07 | 2.92 |
|  | 무 직／기 타 | 132 | 13.1 | 17.8 | 35.1 | 28.1 | 5.8 | 30.9 | 33.9 | 48.93 | 2.96 |
|  | 미 혼 | 672 | 10.7 | 25.4 | 36.2 | 22.9 | 4.8 | 36.1 | 27.7 | 46.44 | 2.86 |
|  | 기 | 2，233 | 5.2 | 18.0 | 35.3 | 35.4 | 6.1 | 23.2 | 41.5 | 54.80 | 3.19 |
|  | 별거／사별／기타 | 94 | 2.1 | 19.7 | 32.0 | 40.4 | 5.8 | 21.8 | 46.2 | 57.02 | 3.28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10.7 | 29.8 | 30.0 | 27.2 | 2.3 | 40.5 | 29.5 | 45.13 | 2.81 |
|  | 1 세 대 가 구 | 787 | 5.8 | 19.4 | 34.7 | 34.8 | 5.3 | 25.2 | 40.1 | 53.62 | 3.14 |
|  | 2 세 대 가 구 | 1，905 | 5.8 | 18.3 | 36.6 | 32.9 | 6.4 | 24.1 | 39.3 | 53.96 | 3.16 |
|  | 3 세 대 가 구 | 127 | 11.4 | 28.3 | 30.3 | 25.6 | 4.3 | 39.7 | 29.9 | 45.82 | 2.83 |
| 주 관 적 <br> 계 층 <br> 수 준 별 | 하 층 | 1，352 | 7.1 | 21.2 | 36.7 | 30.5 | 4.4 | 28.3 | 34.9 | 50.99 | 3.04 |
|  | 중 간 층 | 1，527 | 5.5 | 18.3 | 34.5 | 35.1 | 6.7 | 23.8 | 41.8 | 54.82 | 3.19 |
|  | 상 층 | 122 | 7.8 | 21.4 | 33.4 | 27.9 | 9.6 | 29.2 | 37.5 | 52.52 | 3.10 |
| 이 념 성 향 별 | 진 <br> 보 | 683 | 8.6 | 18.7 | 31.9 | 34.9 | 5.9 | 27.3 | 40.8 | 52.72 | 3.11 |
|  | 중 도 | 1，462 | 7.4 | 23.1 | 37.8 | 27.0 | 4.8 | 30.5 | 31.8 | 49.64 | 2.99 |
|  | 보 수 | 855 | 2.6 | 14.8 | 34.2 | 41.0 | 7.4 | 17.4 | 48.4 | 58.97 | 3.36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5.4 | 15.9 | 29.7 | 40.8 | 8.2 | 21.3 | 49.0 | 57.63 | 3.31 |
|  | 부 산 | 212 | 4.8 | 13.0 | 39.3 | 36.5 | 6.3 | 17.9 | 42.8 | 56.62 | 3.26 |
|  | 대 구 | 146 | 3.3 | 20.8 | 33.0 | 37.7 | 5.3 | 24.1 | 42.9 | 55.18 | 3.21 |
|  | 인 <br> 천 | 170 | 5.9 | 23.5 | 26.5 | 34.0 | 10.0 | 29.4 | 44.0 | 54.68 | 3.19 |
|  | 광 주 | 82 | 5.2 | 22.3 | 36.2 | 31.3 | 5.0 | 27.5 | 36.3 | 52.13 | 3.09 |
|  | 대 전 | 89 | 6.0 | 8.8 | 44.6 | 32.6 | 8.0 | 14.7 | 40.6 | 56.99 | 3.28 |
|  | 울 산 | 67 | 6.5 | 16.2 | 46.0 | 23.0 | 8.3 | 22.7 | 31.3 | 52.60 | 3.10 |
|  | 세 종 | 10 | 4.5 | 6.5 | 25.2 | 27.7 | 36.2 | 11.0 | 63.8 | 71.13 | 3.85 |
|  | 경 기 | 707 | 7.5 | 19.1 | 41.2 | 28.5 | 3.7 | 26.6 | 32.2 | 50.47 | 3.02 |
|  | 강 원 | 91 | 6.6 | 32.8 | 35.8 | 24.0 | 0.8 | 39.4 | 24.8 | 44.89 | 2.80 |
|  | 충 早 | 92 | 2.9 | 31.4 | 35.7 | 24.5 | 5.5 | 34.3 | 30.0 | 49.58 | 2.98 |
|  | 충 남 | 120 | 6.3 | 23.0 | 32.2 | 29.8 | 8.6 | 29.4 | 38.4 | 52.81 | 3.11 |
|  | 전 早 | 107 | 4.1 | 14.8 | 31.6 | 43.7 | 5.7 | 19.0 | 49.4 | 58.02 | 3.32 |
|  | 전 남 | 113 | 6.4 | 28.5 | 30.2 | 26.1 | 8.9 | 34.9 | 35.0 | 50.66 | 3.03 |
|  | 경 䆜 | 161 | 3.7 | 22.0 | 38.5 | 32.8 | 3.1 | 25.7 | 35.8 | 52.36 | 3.09 |
|  | 경 남 | 193 | 10.5 | 23.6 | 36.6 | 28.8 | 0.5 | 34.1 | 29.3 | 46.32 | 2.85 |
|  | 제 주 | 34 | 29.6 | 26.8 | 23.2 | 18.6 | 1.8 | 56.4 | 20.4 | 34.06 | 2.36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6.5 | 18.3 | 34.8 | 34.2 | 6.3 | 24.8 | 40.5 | 53.88 | 3.16 |
|  | 충 청 권 | 311 | 5.2 | 20.9 | 36.6 | 29.0 | 8.4 | 26.1 | 37.4 | 53.64 | 3.15 |
|  | 호 남 권 | 302 | 5.3 | 22.0 | 32.3 | 33.7 | 6.7 | 27.3 | 40.4 | 53.67 | 3.15 |
|  | 경 상 권 | 779 | 5.9 | 19.2 | 37.9 | 32.9 | 4.2 | 25.1 | 37.1 | 52.57 | 3.10 |
|  | 강 원／제 주 | 125 | 12.9 | 31.1 | 32.4 | 22.5 | 1.1 | 44.0 | 23.6 | 41.94 | 2.68 |
| 지 역규모 별 | 대 도 시 | 1，372 | 5.2 | 16.8 | 33.3 | 37.0 | 7.6 | 22.0 | 44.6 | 56.23 | 3.25 |
|  | 중 소 도 시 | 918 | 6.0 | 18.9 | 39.5 | 31.5 | 4.2 | 24.9 | 35.7 | 52.29 | 3.09 |
|  | 읍 면 지 역 | 710 | 8.8 | 26.4 | 34.3 | 26.3 | 4.2 | 35.2 | 30.5 | 47.66 | 2.91 |

[ 표 28] 평등, 차별 없이 작용
문) [법에 대한 인식/정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 \text {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러d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 $\frac{\text { 확산 }}{\text { (점) }}$ |
| 전 체 |  | 3,000 | 13.7 | 25.3 | 32.5 | 24.4 | 4.0 | 39.0 | 28.4 | 44.95 | 2.80 |
| 성 별 | 남 자 | 1,489 | 15.1 | 24.6 | 32.0 | 24.2 | 4.1 | 39.7 | 28.3 | 44.37 | 2.77 |
|  | 여 자 | 1,511 | 12.4 | 25.9 | 33.0 | 24.7 | 4.0 | 38.3 | 28.7 | 45.52 | 2.82 |
| 연 령 별 | 20 대 | 529 | 20.0 | 28.9 | 30.0 | 18.2 | 3.0 | 48.9 | 21.2 | 38.86 | 2.55 |
|  | 30 대 | 560 | 22.2 | 26.7 | 29.2 | 18.4 | 3.4 | 48.9 | 21.8 | 38.54 | 2.54 |
|  | 40 대 | 644 | 21.2 | 27.8 | 30.6 | 17.7 | 2.7 | 49.0 | 20.4 | 38.29 | 2.53 |
|  | 50 대 | 594 | 4.9 | 21.8 | 36.8 | 30.9 | 5.7 | 26.7 | 36.6 | 52.70 | 3.11 |
|  | 60 대 이 상 | 673 | 2.5 | 22.1 | 35.1 | 35.1 | 5.2 | 24.6 | 40.3 | 54.59 | 3.18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5.1 | 22.8 | 35.8 | 31.0 | 5.2 | 27.9 | 36.2 | 52.07 | 3.08 |
|  | 고 졸 | 1,196 | 7.5 | 24.1 | 37.6 | 26.5 | 4.2 | 31.6 | 30.7 | 48.98 | 2.96 |
|  | 대 재 이 상 | 1,409 | 21.5 | 26.9 | 27.1 | 20.9 | 3.6 | 48.4 | 24.5 | 39.53 | 2.58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2.1 | 25.1 | 31.9 | 26.5 | 4.4 | 37.2 | 30.9 | 46.49 | 2.86 |
|  | 200~299 만 원 | 485 | 15.9 | 26.7 | 35.7 | 17.8 | 3.8 | 42.6 | 21.6 | 41.69 | 2.67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2.1 | 25.0 | 34.0 | 23.9 | 5.0 | 37.1 | 28.9 | 46.18 | 2.85 |
|  | 400~499 만 원 | 629 | 11.2 | 25.5 | 32.1 | 27.2 | 4.1 | 36.7 | 31.3 | 46.86 | 2.87 |
|  | 500 만 원 이상 | 853 | 16.3 | 24.6 | 30.0 | 25.7 | 3.3 | 40.9 | 29.0 | 43.75 | 2.75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9.4 | 15.3 | 39.3 | 30.6 | 5.4 | 24.7 | 36.0 | 51.87 | 3.07 |
|  | 자 영 업 | 666 | 9.7 | 25.2 | 34.4 | 25.7 | 5.0 | 34.9 | 30.7 | 47.77 | 2.91 |
|  | 블 루 칼 라 | 588 | 10.5 | 21.7 | 34.3 | 28.3 | 5.1 | 32.2 | 33.4 | 48.93 | 2.96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23.3 | 29.3 | 26.4 | 18.1 | 2.9 | 52.6 | 21.0 | 37.01 | 2.48 |
|  | 전 업 주 부 | 563 | 7.2 | 25.6 | 33.8 | 29.9 | 3.5 | 32.8 | 33.4 | 49.21 | 2.97 |
|  | 학 생 | 185 | 19.0 | 27.8 | 35.3 | 15.3 | 2.6 | 46.8 | 17.9 | 38.72 | 2.55 |
|  | 무 직 / 기 타 | 132 | 20.4 | 24.7 | 31.2 | 19.5 | 4.1 | 45.1 | 23.6 | 40.56 | 2.62 |
|  | 미 혼 | 672 | 22.4 | 27.6 | 28.5 | 18.2 | 3.2 | 50.0 | 21.4 | 38.05 | 2.52 |
|  | 기 | 2,233 | 11.4 | 24.5 | 33.6 | 26.0 | 4.4 | 35.9 | 30.4 | 46.88 | 2.88 |
| 상 태 별 | 별거/사별/기타 | 94 | 6.6 | 27.4 | 32.8 | 32.2 | 1.0 | 34.0 | 33.2 | 48.38 | 2.94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 180 | 26.6 | 25.5 | 27.7 | 18.0 | 2.1 | 52.1 | 20.1 | 35.90 | 2.44 |
|  | $1 \text { 세 대 가 구 }$ | 787 | 13.4 | 23.0 | 34.3 | 24.7 | 4.6 | 36.4 | 29.3 | 46.01 | 2.84 |
|  | 2 세 대 가구 | 1,905 | 12.1 | 25.9 | 32.6 | 25.2 | 4.2 | 38.0 | 29.4 | 45.87 | 2.83 |
|  | 3 세 대 가 구 | 127 | 22.6 | 29.1 | 26.3 | 20.4 | 1.5 | 51.7 | 21.9 | 37.29 | 2.49 |
|  | 하 층 | 1,352 | 14.8 | 26.8 | 33.0 | 22.3 | 3.2 | 41.6 | 25.5 | 43.10 | 2.72 |
|  | 중 간 층 | 1,527 | 12.5 | 23.9 | 32.7 | 26.5 | 4.4 | 36.4 | 30.9 | 46.58 | 2.86 |
|  | 상 층 | 122 | 18.0 | 26.2 | 22.9 | 23.6 | 9.3 | 44.2 | 32.9 | 44.99 | 2.80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18.1 | 22.4 | 32.2 | 23.8 | 3.5 | 40.5 | 27.3 | 43.07 | 2.72 |
|  | 중 도 | 1,462 | 15.7 | 28.5 | 31.5 | 21.0 | 3.3 | 44.2 | 24.3 | 41.90 | 2.68 |
|  | 보 수 | 855 | 6.9 | 22.1 | 34.4 | 30.8 | 5.8 | 29.0 | 36.6 | 51.65 | 3.07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2.9 | 19.8 | 31.2 | 32.2 | 3.9 | 32.7 | 36.1 | 48.61 | 2.94 |
|  | 부 산 | 212 | 9.1 | 13.1 | 40.4 | 31.6 | 5.7 | 22.2 | 37.4 | 52.97 | 3.12 |
|  | 대 구 | 146 | 14.1 | 27.6 | 30.4 | 25.2 | 2.6 | 41.8 | 27.8 | 43.65 | 2.75 |
|  | 인 천 | 170 | 14.7 | 26.5 | 27.0 | 24.8 | 7.1 | 41.2 | 31.8 | 45.75 | 2.83 |
|  | 광 주 | 82 | 8.3 | 26.1 | 32.5 | 24.1 | 9.0 | 34.3 | 33.1 | 49.88 | 3.00 |
|  | 대 전 | 89 | 8.0 | 23.5 | 39.9 | 23.8 | 4.8 | 31.5 | 28.6 | 48.45 | 2.94 |
|  | 울 산 | 67 | 12.2 | 16.2 | 33.3 | 31.5 | 6.8 | 28.4 | 38.2 | 51.09 | 3.04 |
|  | 세 종 | 10 | 8.3 | 22.5 | 6.7 | 34.2 | 28.3 | 30.8 | 62.5 | 62.92 | 3.52 |
|  | 경 기 | 707 | 12.8 | 34.2 | 33.7 | 17.8 | 1.5 | 47.0 | 19.3 | 40.24 | 2.61 |
|  | 강 원 | 91 | 21.4 | 33.2 | 24.9 | 18.7 | 1.8 | 54.6 | 20.5 | 36.59 | 2.46 |
|  | 충 북 | 92 | 11.4 | 30.6 | 33.5 | 19.7 | 4.7 | 42.0 | 24.5 | 43.94 | 2.76 |
|  | 충 남 | 120 | 9.5 | 21.5 | 39.1 | 24.7 | 5.3 | 30.9 | 30.0 | 48.73 | 2.95 |
|  | 전 북 | 107 | 10.7 | 16.5 | 35.5 | 31.6 | 5.7 | 27.2 | 37.3 | 51.29 | 3.05 |
|  | 전 남 | 113 | 22.4 | 19.7 | 35.8 | 9.9 | 12.2 | 42.1 | 22.1 | 42.45 | 2.70 |
|  | 경 북 | 161 | 8.6 | 21.9 | 34.2 | 31.0 | 4.3 | 30.5 | 35.4 | 50.17 | 3.01 |
|  | 경 남 | 193 | 17.8 | 34.6 | 25.6 | 21.5 | 0.5 | 52.4 | 22.0 | 38.07 | 2.52 |
|  | 제 주 | 34 | 86.6 | 6.8 | 6.6 | 0.0 | 0.0 | 93.4 | 0.0 | 5.00 | 1.20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3.1 | 27.4 | 31.9 | 24.5 | 3.1 | 40.5 | 27.6 | 44.29 | 2.77 |
|  | 충 청 권 | 311 | 9.6 | 24.8 | 36.6 | 23.3 | 5.7 | 34.4 | 29.0 | 47.69 | 2.91 |
|  | 호 남 권 | 302 | 14.4 | 20.3 | 34.8 | 21.4 | 9.0 | 34.7 | 30.4 | 47.60 | 2.90 |
|  | 경 상 권 | 779 | 12.3 | 23.2 | 33.0 | 27.8 | 3.7 | 35.5 | 31.5 | 46.79 | 2.87 |
|  | 강 원 / 제 주 | 125 | 39.1 | 26.0 | 19.9 | 13.6 | 1.3 | 65.1 | 14.9 | 28.00 | 2.12 |
| 지 역 <br> 규모 별 |  | 1,372 | 12.0 | 20.9 | 32.8 | 29.4 | 5.0 | 32.9 | 34.4 | 48.59 | 2.94 |
|  | 중 소 도 시 | 918 | 12.4 | 29.8 | 32.6 | 22.8 | 2.4 | 42.2 | 25.2 | 43.28 | 2.73 |
|  | 읍 면 지 역 | 710 | 18.8 | 28.0 | 31.7 | 17.1 | 4.4 | 46.8 | 21.5 | 40.07 | 2.60 |

[ 표 29 ]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문) [법에 대한 인식/정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선혀 } \\ & \text { 그럴지 } \\ & \hline \text { 안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댈도 } \\ & \text { ㄱㅓㅓㅎ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환섬 } \\ & \text { (삼)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홧사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0.4 | 4.6 | 26.0 | 54.3 | 14.6 | 5.0 | 68.9 | 69.50 | 3.78 |
| 성 별 | 남 자 | 1,489 | 0.5 | 3.8 | 25.4 | 54.2 | 16.0 | 4.3 | 70.2 | 70.37 | 3.81 |
|  | 여 자 | 1,511 | 0.4 | 5.5 | 26.5 | 54.4 | 13.2 | 5.9 | 67.6 | 68.64 | 3.75 |
| 연 령 별 | 20 대 | 529 | 1.0 | 6.5 | 32.5 | 49.4 | 10.6 | 7.5 | 60.0 | 65.51 | 3.62 |
|  | 30 대 | 560 | 0.7 | 5.0 | 30.3 | 53.4 | 10.6 | 5.7 | 64.0 | 67.06 | 3.68 |
|  | 40 대 | 644 | 0.5 | 4.8 | 27.5 | 50.8 | 16.3 | 5.3 | 67.1 | 69.42 | 3.78 |
|  | 50 대 | 594 | 0.2 | 3.4 | 20.9 | 60.1 | 15.4 | 3.6 | 75.5 | 71.79 | 3.87 |
|  | 60 대 이 상 | 673 | 0.0 | 3.8 | 20.2 | 57.3 | 18.7 | 3.8 | 76.0 | 72.70 | 3.91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0.5 | 4.6 | 24.4 | 54.3 | 16.2 | 5.1 | 70.5 | 70.25 | 3.81 |
|  | 고 졸 | 1,196 | 0.4 | 4.1 | 22.4 | 58.7 | 14.4 | 4.5 | 73.1 | 70.68 | 3.83 |
|  | 대 재 이 상 | 1,409 | 0.5 | 5.1 | 29.5 | 50.6 | 14.3 | 5.6 | 64.9 | 68.29 | 3.73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0.5 | 6.0 | 26.0 | 52.5 | 14.9 | 6.5 | 67.4 | 68.82 | 3.75 |
|  | 200~299 만 원 | 485 | 0.4 | 4.6 | 31.3 | 48.5 | 15.3 | 5.0 | 63.8 | 68.40 | 3.74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0.3 | 3.9 | 25.2 | 56.2 | 14.4 | 4.2 | 70.6 | 70.10 | 3.80 |
|  | 400~499 만 원 | 629 | 0.2 | 5.5 | 23.9 | 56.5 | 13.8 | 5.7 | 70.3 | 69.58 | 3.78 |
|  | 500 만 원 이상 | 853 | 0.7 | 4.0 | 25.1 | 55.4 | 14.8 | 4.7 | 70.2 | 69.90 | 3.80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0.0 | 2.1 | 19.5 | 51.5 | 26.9 | 2.1 | 78.4 | 75.79 | 4.03 |
|  | 자 영 업 | 666 | 0.2 | 4.1 | 20.9 | 57.1 | 17.8 | 4.3 | 74.9 | 72.07 | 3.88 |
|  | 블 루 칼 라 | 588 | 0.7 | 4.6 | 24.4 | 57.9 | 12.4 | 5.3 | 70.3 | 69.18 | 3.77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0.5 | 5.6 | 30.6 | 50.4 | 12.9 | 6.1 | 63.3 | 67.36 | 3.69 |
|  | 전 업 주 부 | 563 | 0.0 | 4.5 | 25.4 | 57.4 | 12.7 | 4.5 | 70.1 | 69.57 | 3.78 |
|  | 학 생 | 185 | 1.2 | 4.6 | 30.5 | 52.6 | 11.0 | 5.8 | 63.6 | 66.90 | 3.68 |
|  | 무 직 / 기 타 | 132 | 1.5 | 5.3 | 36.2 | 38.5 | 18.5 | 6.8 | 57.0 | 66.80 | 3.67 |
|  | 미 혼 | 672 | 1.4 | 6.6 | 33.4 | 48.8 | 9.7 | 8.0 | 58.5 | 64.70 | 3.59 |
|  | 기 | 2,233 | 0.2 | 4.2 | 24.0 | 55.9 | 15.8 | 4.4 | 71.7 | 70.74 | 3.83 |
| 상 태 별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1.9 | 20.3 | 56.0 | 21.7 | 1.9 | 77.7 | 74.38 | 3.98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 180 | 2.0 | 7.0 | 32.9 | 46.8 | 11.2 | 9.0 | 58.0 | 64.54 | 3.58 |
|  | 1 세 대 가 구 | 787 | 0.3 | 6.0 | 25.2 | 51.6 | 16.9 | 6.3 | 68.5 | 69.72 | 3.79 |
|  | 2 세 대 가 구 | 1,905 | 0.4 | 3.9 | 25.7 | 56.4 | 13.6 | 4.3 | 70.0 | 69.72 | 3.79 |
|  | 3 세 대 가 구 | 127 | 0.0 | 4.2 | 25.0 | 50.2 | 20.6 | 4.2 | 70.8 | 71.79 | 3.87 |
| 주 관 적 <br> 계 층 <br> 수준 별 | 하 층 | 1,352 | 0.4 | 5.1 | 27.0 | 53.8 | 13.7 | 5.5 | 67.5 | 68.79 | 3.75 |
|  | 중 간 층 | 1,527 | 0.4 | 4.3 | 25.1 | 54.8 | 15.4 | 4.7 | 70.2 | 70.15 | 3.81 |
|  | 상 층 | 122 | 0.8 | 4.6 | 26.3 | 53.6 | 14.6 | 5.4 | 68.2 | 69.16 | 3.77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0.5 | 5.0 | 27.3 | 53.0 | 14.2 | 5.5 | 67.2 | 68.85 | 3.75 |
|  | 중 도 | 1,462 | 0.6 | 5.1 | 27.7 | 53.7 | 12.9 | 5.7 | 66.6 | 68.28 | 3.73 |
|  | 보 수 | 855 | 0.1 | 3.6 | 21.9 | 56.4 | 17.9 | 3.7 | 74.3 | 72.09 | 3.88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0.2 | 3.6 | 23.2 | 60.2 | 12.9 | 3.8 | 73.1 | 70.51 | 3.82 |
|  | 부 산 | 212 | 0.5 | 8.3 | 30.5 | 49.5 | 11.2 | 8.8 | 60.7 | 65.66 | 3.63 |
|  | 대 구 | 146 | 0.0 | 2.0 | 22.5 | 53.8 | 21.7 | 2.0 | 75.5 | 73.83 | 3.95 |
|  | 인 천 | 170 | 1.2 | 3.5 | 14.7 | 64.1 | 16.5 | 4.7 | 80.6 | 72.79 | 3.91 |
|  | 광 주 | 82 | 1.0 | 1.1 | 28.9 | 50.7 | 18.3 | 2.1 | 69.0 | 71.07 | 3.84 |
|  | 대 전 | 89 | 0.0 | 3.0 | 30.4 | 47.8 | 18.8 | 3.0 | 66.6 | 70.60 | 3.82 |
|  | 울 산 | 67 | 0.0 | 9.1 | 39.6 | 44.3 | 7.0 | 9.1 | 51.3 | 62.29 | 3.49 |
|  | 세 종 | 10 | 0.0 | 2.0 | 14.5 | 52.7 | 30.8 | 2.0 | 83.5 | 78.08 | 4.12 |
|  | 경 기 | 707 | 0.6 | 4.7 | 24.5 | 58.3 | 11.8 | 5.4 | 70.1 | 68.98 | 3.76 |
|  | 강 원 | 91 | 3.0 | 6.8 | 22.1 | 48.6 | 19.5 | 9.8 | 68.1 | 68.71 | 3.75 |
|  | 충 북 | 92 | 0.0 | 4.7 | 35.0 | 43.6 | 16.7 | 4.7 | 60.4 | 68.11 | 3.72 |
|  | 충 남 | 120 | 0.0 | 8.5 | 33.1 | 48.5 | 9.9 | 8.5 | 58.4 | 64.97 | 3.60 |
|  | 전 북 | 107 | 0.0 | 9.1 | 47.2 | 37.1 | 6.7 | 9.1 | 43.7 | 60.31 | 3.41 |
|  | 전 남 | 113 | 0.0 | 3.0 | 19.8 | 48.7 | 28.5 | 3.0 | 77.2 | 75.69 | 4.03 |
|  | 경 早 | 161 | 0.0 | 3.1 | 30.6 | 58.3 | 8.0 | 3.1 | 66.3 | 67.80 | 3.71 |
|  | 경 남 | 193 | 0.5 | 4.7 | 24.5 | 56.0 | 14.2 | 5.3 | 70.2 | 69.65 | 3.79 |
|  | 제 주 | 34 | 0.0 | 0.0 | 9.9 | 6.9 | 83.2 | 0.0 | 90.1 | 93.32 | 4.73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0.5 | 4.1 | 22.8 | 59.7 | 12.8 | 4.6 | 72.5 | 70.04 | 3.80 |
|  | 충 청 권 | 311 | 0.0 | 5.6 | 32.3 | 47.0 | 15.2 | 5.6 | 62.2 | 67.93 | 3.72 |
|  | 호 남 권 | 302 | 0.3 | 4.6 | 32.0 | 45.1 | 18.0 | 4.9 | 63.1 | 68.99 | 3.76 |
|  | 경 상 권 | 779 | 0.3 | 5.2 | 28.3 | 53.3 | 12.9 | 5.5 | 66.2 | 68.33 | 3.73 |
|  | 강 원 / 제 주 | 125 | 2.2 | 4.9 | 18.8 | 37.2 | 36.9 | 7.1 | 74.1 | 75.40 | 4.02 |
| 지 역 <br> 규모 별 | 대 도 시 | 1,372 | 0.4 | 4.2 | 24.8 | 56.2 | 14.4 | 4.6 | 70.6 | 70.04 | 3.80 |
|  | 중 소 도 시 | 918 | 0.3 | 4.9 | 25.3 | 56.1 | 13.4 | 5.2 | 69.5 | 69.38 | 3.78 |
|  | 읍 면 지 역 | 710 | 0.8 | 5.1 | 29.2 | 48.5 | 16.4 | 5.9 | 64.9 | 68.61 | 3.74 |

## [ 표 30]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문) [법에 대한 인식/정서] 주위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 구 반위:\%)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ㅓㄴ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홪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0.2 | 4.1 | 23.7 | 52.1 | 19.8 | 4.3 | 71.9 | 71.82 | 3.87 |
| 성 별 | 남 자 | 1,489 | 0.3 | 3.6 | 22.9 | 52.8 | 20.5 | 3.9 | 73.3 | 72.43 | 3.90 |
|  | 여 자 | 1,511 | 0.1 | 4.7 | 24.5 | 51.5 | 19.2 | 4.8 | 70.7 | 71.22 | 3.85 |
| 연 령 별 | 20 대 | 529 | 0.2 | 4.4 | 23.5 | 50.1 | 21.8 | 4.6 | 71.9 | 72.25 | 3.89 |
|  | 30 대 | 560 | 0.3 | 3.5 | 21.6 | 53.4 | 21.2 | 3.8 | 74.6 | 72.89 | 3.92 |
|  | 40 대 | 644 | 0.3 | 3.5 | 24.7 | 49.0 | 22.4 | 3.8 | 71.4 | 72.43 | 3.90 |
|  | 50 대 | 594 | 0.2 | 4.3 | 24.1 | 53.8 | 17.6 | 4.5 | 71.4 | 71.11 | 3.84 |
|  | 60 대 이 상 | 673 | 0.0 | 4.9 | 24.3 | 54.1 | 16.7 | 4.9 | 70.8 | 70.63 | 3.83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0.5 | 5.6 | 25.2 | 49.4 | 19.3 | 6.1 | 68.7 | 70.36 | 3.81 |
|  | 고 졸 | 1,196 | 0.1 | 4.3 | 25.8 | 53.6 | 16.2 | 4.4 | 69.8 | 70.36 | 3.81 |
|  | 대 재 이 상 | 1,409 | 0.2 | 3.5 | 21.5 | 51.6 | 23.1 | 3.7 | 74.7 | 73.46 | 3.94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0.0 | 6.1 | 23.6 | 46.3 | 24.1 | 6.1 | 70.4 | 72.09 | 3.88 |
|  | 200~299만 원 | 485 | 0.6 | 2.8 | 29.5 | 48.6 | 18.5 | 3.4 | 67.1 | 70.40 | 3.82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0.0 | 4.1 | 23.2 | 52.6 | 20.1 | 4.1 | 72.7 | 72.17 | 3.89 |
|  | 400~499 만 원 | 629 | 0.3 | 5.4 | 23.4 | 54.2 | 16.6 | 5.7 | 70.8 | 70.36 | 3.81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0.1 | 3.1 | 21.1 | 54.7 | 20.9 | 3.2 | 75.6 | 73.30 | 3.93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0.0 | 2.9 | 22.5 | 40.6 | 34.0 | 2.9 | 74.6 | 76.39 | 4.06 |
|  | 자 영 업 | 666 | 0.2 | 3.6 | 24.1 | 54.1 | 18.1 | 3.8 | 72.2 | 71.58 | 3.86 |
|  | 블 루 칼 라 | 588 | 0.4 | 5.3 | 24.6 | 55.6 | 14.1 | 5.7 | 69.7 | 69.45 | 3.78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0.3 | 3.8 | 20.0 | 51.3 | 24.7 | 4.1 | 76.0 | 74.09 | 3.96 |
|  | 전 업 주 부 | 563 | 0.0 | 5.1 | 27.8 | 50.8 | 16.3 | 5.1 | 67.1 | 69.57 | 3.78 |
|  | 학 생 | 185 | 0.0 | 2.7 | 20.9 | 54.0 | 22.4 | 2.7 | 76.4 | 74.04 | 3.96 |
|  | 무 직 / 기 타 | 132 | 0.6 | 3.0 | 25.9 | 45.6 | 24.9 | 3.6 | 70.5 | 72.79 | 3.91 |
| 혼 인 <br> 상 태 별 |  | 672 | 0.3 | 4.8 | 23.0 | 50.7 | 21.2 | 5.1 | 71.9 | 71.90 | 3.88 |
|  | 기 | 2,233 | 0.2 | 4.0 | 23.9 | 52.7 | 19.2 | 4.2 | 71.9 | 71.72 | 3.87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3.1 | 23.9 | 48.2 | 24.7 | 3.1 | 72.9 | 73.62 | 3.94 |
| 가 구 <br> 구 성 별 |  | 180 | 1.0 | 5.6 | 29.8 | 38.8 | 24.8 | 6.6 | 63.6 | 70.20 | 3.81 |
|  | 1 세 대 가 구 | 787 | 0.0 | 4.9 | 20.3 | 54.1 | 20.7 | 4.9 | 74.8 | 72.63 | 3.91 |
|  | 2 세 대 가 구 | 1,905 | 0.2 | 3.8 | 24.9 | 52.5 | 18.6 | 4.0 | 71.1 | 71.35 | 3.85 |
|  | 3 세 대 가 구 | 127 | 0.0 | 1.8 | 18.3 | 53.3 | 26.6 | 1.8 | 79.9 | 76.15 | 4.05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ㅈㅓㅓ } \\ & \text { 계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0.2 | 4.2 | 25.6 | 51.0 | 18.9 | 4.4 | 69.9 | 71.09 | 3.84 |
|  | 중 간 층 | 1,527 | 0.2 | 4.2 | 21.6 | 53.6 | 20.5 | 4.4 | 74.1 | 72.51 | 3.90 |
|  | 상 층 | 122 | 0.8 | 2.5 | 29.0 | 46.3 | 21.3 | 3.3 | 67.6 | 71.20 | 3.85 |
| 이 념 성 향 별 | 진 보 | 683 | 0.3 | 4.5 | 21.6 | 51.4 | 22.3 | 4.8 | 73.7 | 72.70 | 3.91 |
|  | 중 도 | 1,462 | 0.2 | 3.4 | 24.4 | 52.4 | 19.6 | 3.6 | 72.0 | 71.96 | 3.88 |
|  | 보 수 | 855 | 0.1 | 5.1 | 24.3 | 52.3 | 18.3 | 5.2 | 70.6 | 70.87 | 3.83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0.2 | 3.9 | 24.5 | 54.4 | 17.0 | 4.1 | 71.4 | 71.02 | 3.84 |
|  | 부 산 | 212 | 0.5 | 6.3 | 25.7 | 56.3 | 11.2 | 6.8 | 67.5 | 67.82 | 3.71 |
|  | 대 구 | 146 | 0.0 | 3.3 | 17.8 | 45.8 | 33.2 | 3.3 | 78.9 | 77.20 | 4.09 |
|  | 인 천 | 170 | 0.6 | 1.7 | 8.9 | 66.4 | 22.4 | 2.3 | 88.8 | 77.08 | 4.08 |
|  | 광 주 | 82 | 1.0 | 5.1 | 18.9 | 55.7 | 19.3 | 6.1 | 75.0 | 71.82 | 3.87 |
|  | 대 전 | 89 | 0.0 | 4.7 | 20.9 | 54.6 | 19.8 | 4.7 | 74.4 | 72.38 | 3.90 |
|  | 울 산 | 67 | 0.0 | 5.7 | 38.0 | 41.4 | 14.8 | 5.7 | 56.3 | 66.34 | 3.65 |
|  | 세 종 | 10 | 0.0 | 0.0 | 16.5 | 58.5 | 25.0 | 0.0 | 83.5 | 77.13 | 4.09 |
|  | $\begin{array}{ll} \text { 경 } & \text { 기 } \end{array}$ | 707 | 0.0 | 4.4 | 26.1 | 52.9 | 16.7 | 4.4 | 69.5 | 70.46 | 3.82 |
|  | 강 원 | 91 | 1.0 | 5.0 | 30.1 | 45.7 | 18.2 | 6.0 | 63.9 | 68.78 | 3.75 |
|  | 충 북 | 92 | 0.0 | 1.8 | 25.5 | 55.7 | 17.0 | 1.8 | 72.7 | 71.95 | 3.88 |
|  | 충 남 | 120 | 0.0 | 3.9 | 27.5 | 51.7 | 16.9 | 3.9 | 68.6 | 70.40 | 3.82 |
|  | 전 북 | 107 | 0.0 | 5.0 | 31.2 | 53.9 | 9.8 | 5.0 | 63.8 | 67.14 | 3.69 |
|  | 전 남 | 113 | 0.0 | 1.7 | 7.6 | 32.2 | 58.5 | 1.7 | 90.8 | 86.91 | 4.48 |
|  | 경 북 | 161 | 0.6 | 5.5 | 31.7 | 50.7 | 11.5 | 6.2 | 62.2 | 66.73 | 3.67 |
|  | 경 남 | 193 | 0.0 | 3.7 | 20.4 | 49.8 | 26.1 | 3.7 | 76.0 | 74.61 | 3.98 |
|  | 제 주 | 34 | 0.0 | 5.0 | 16.7 | 19.0 | 59.2 | 5.0 | 78.3 | 83.13 | 4.33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0.1 | 3.9 | 23.5 | 55.1 | 17.5 | 4.0 | 72.6 | 71.45 | 3.86 |
|  | 충 청 권 | 311 | 0.0 | 3.4 | 24.7 | 53.9 | 18.0 | 3.4 | 71.9 | 71.64 | 3.87 |
|  | 호 남 권 | 302 | 0.3 | 3.8 | 19.0 | 46.3 | 30.6 | 4.1 | 76.9 | 75.81 | 4.03 |
|  | 경 상 권 | 779 | 0.3 | 4.9 | 25.2 | 50.3 | 19.4 | 5.2 | 69.7 | 70.91 | 3.84 |
|  | 강 원 / 제 주 | 125 | 0.7 | 5.0 | 26.5 | 38.4 | 29.4 | 5.7 | 67.8 | 72.68 | 3.91 |
| 지 역 <br> 규모 별 | 대 도 시 | 1,372 | 0.3 | 4.2 | 22.1 | 54.7 | 18.7 | 4.5 | 73.4 | 71.84 | 3.87 |
|  | 중 소 도 시 | 918 | 0.0 | 4.6 | 27.0 | 52.8 | 15.5 | 4.6 | 68.3 | 69.81 | 3.79 |
|  | 읍 면 지 역 | 710 | 0.3 | 3.4 | 22.5 | 46.1 | 27.6 | 3.7 | 73.7 | 74.36 | 3.97 |

## [ 표 31 ] 정부의 법준수 정도

문) [법에 대한 준수]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난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ㄹㅗㅗ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종 합 |  | 100점 환산 (점) | $\begin{aligned} & \text { 5점 } \\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  |  |  |  | 그렇다 |  |  |
| 전 체 |  |  | 3,000 | 12.7 | 29.0 | 32.4 | 24.5 | 1.4 | 41.7 | 25.9 | 43.17 | 2.73 |
| 성 별 | 남 자 | 1,489 | 12.9 | 28.3 | 33.1 | 24.3 | 1.5 | 41.2 | 25.8 | 43.31 | 2.73 |
|  | 여 자 | 1,511 | 12.6 | 29.8 | 31.7 | 24.6 | 1.3 | 42.4 | 25.9 | 43.04 | 2.72 |
| 연 령 별 | 20 대 | 529 | 19.8 | 31.3 | 28.7 | 19.2 | 0.9 | 51.1 | 20.1 | 37.55 | 2.50 |
|  | 30 대 | 560 | 20.1 | 27.8 | 32.6 | 18.6 | 1.0 | 47.9 | 19.6 | 38.13 | 2.53 |
|  | 40 대 | 644 | 16.5 | 31.8 | 33.9 | 16.7 | 1.0 | 48.3 | 17.7 | 38.47 | 2.54 |
|  | 50 대 | 594 | 5.9 | 27.5 | 31.4 | 33.8 | 1.4 | 33.4 | 35.2 | 49.33 | 2.97 |
|  | 60 대 이 상 | 673 | 3.5 | 27.0 | 34.4 | 32.7 | 2.4 | 30.5 | 35.1 | 50.86 | 3.03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6.5 | 29.0 | 34.4 | 26.8 | 3.3 | 35.5 | 30.1 | 47.86 | 2.91 |
|  | 고 졸 | 1,196 | 7.5 | 31.3 | 31.7 | 28.3 | 1.1 | 38.8 | 29.4 | 46.05 | 2.84 |
|  | 대 재 이 상 | 1,409 | 19.0 | 27.1 | 32.3 | 20.5 | 1.1 | 46.1 | 21.6 | 39.42 | 2.58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2.6 | 29.2 | 30.4 | 25.8 | 2.0 | 41.8 | 27.8 | 43.85 | 2.75 |
|  | $200 \sim 299 \text { 만 원 }$ | 485 | 15.0 | 31.6 | 32.1 | 19.0 | 2.2 | 46.6 | 21.2 | 40.49 | 2.62 |
|  | 300~399 만 원 | 655 | 11.8 | 29.0 | 32.2 | 25.5 | 1.6 | 40.8 | 27.1 | 44.02 | 2.76 |
|  | 400~499 만 원 | 629 | 10.1 | 32.2 | 33.3 | 23.7 | 0.8 | 42.3 | 24.5 | 43.22 | 2.73 |
|  | $500 \text { 만 원 이상 }$ | 853 | 14.2 | 25.3 | 32.8 | 26.8 | 0.9 | 39.5 | 27.7 | 43.71 | 2.75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11.6 | 33.8 | 32.0 | 22.0 | 0.7 | 45.4 | 22.7 | 41.58 | 2.66 |
|  | 자 영 업 | 666 | 7.7 | 27.8 | 34.5 | 27.8 | 2.2 | 35.5 | 30.0 | 47.28 | 2.89 |
|  | 블 루 칼 라 | 588 | 10.9 | 29.7 | 28.6 | 29.3 | 1.5 | 40.6 | 30.8 | 45.21 | 2.81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9.0 | 29.3 | 35.0 | 15.7 | 1.0 | 48.3 | 16.7 | 37.64 | 2.51 |
|  | 전 업 주 부 | 563 | 8.8 | 28.2 | 32.0 | 29.7 | 1.3 | 37.0 | 31.0 | 46.62 | 2.86 |
|  | 학 생 | 185 | 19.7 | 29.3 | 31.8 | 19.2 | 0.0 | 49.0 | 19.2 | 37.64 | 2.51 |
|  | 무 직 / 기 타 | 132 | 20.2 | 29.9 | 26.1 | 22.2 | 1.5 | 50.1 | 23.7 | 38.75 | 2.55 |
| 혼 인 | 미 혼 | 672 | 20.2 | 31.1 | 29.8 | 18.2 | 0.8 | 51.3 | 19.0 | 37.08 | 2.48 |
|  | 기 혼 | 2,233 | 10.9 | 28.4 | 33.2 | 25.9 | 1.6 | 39.3 | 27.5 | 44.78 | 2.79 |
| 상 태 별 | 별거/사 별/기타 | 94 | 4.7 | 30.7 | 30.3 | 34.3 | 0.0 | 35.4 | 34.3 | 48.58 | 2.94 |
| 가 구 <br> 구 성 별 | 1 인 가 구 | 180 | 17.1 | 41.3 | 20.4 | 20.7 | 0.5 | 58.4 | 21.2 | 36.54 | 2.46 |
|  | 1 세 대 가 구 | 787 | 13.3 | 27.7 | 34.2 | 23.1 | 1.7 | 41.0 | 24.8 | 43.09 | 2.72 |
|  | $2 \text { 세 대 가 구 }$ | 1,905 | 11.6 | 28.5 | 32.9 | 25.7 | 1.4 | 40.1 | 27.1 | 44.19 | 2.77 |
|  | $3 \text { 세 대 가 구 }$ |  | 21.2 | 28.1 | 29.5 | 20.4 | 0.8 | 49.3 | 21.2 | 37.87 | 2.51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전 } \\ & \text { 계 } \\ & \text { 수 준 블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4.5 | 30.6 | 31.9 | 21.9 | 1.2 | 45.1 | 23.1 | 41.17 | 2.65 |
|  | 중 간 층 | 1,527 | 10.9 | 28.1 | 33.2 | 26.2 | 1.6 | 39.0 | 27.8 | 44.87 | 2.79 |
|  | 상 층 | 122 | 16.3 | 23.9 | 27.2 | 32.0 | 0.6 | 40.2 | 32.6 | 44.18 | 2.77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17.2 | 23.4 | 32.5 | 25.7 | 1.2 | 40.6 | 26.9 | 42.57 | 2.70 |
|  | 중 도 | 1,462 | 14.6 | 33.0 | 32.5 | 19.0 | 0.8 | 47.6 | 19.8 | 39.59 | 2.58 |
|  | 보 수 | 855 | 5.9 | 26.7 | 32.0 | 32.8 | 2.5 | 32.6 | 35.3 | 49.78 | 2.99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1.8 | 18.8 | 32.5 | 36.5 | 0.4 | 30.6 | 36.8 | 48.70 | 2.95 |
|  | 부 산 | 212 | 4.8 | 15.1 | 41.2 | 35.5 | 3.4 | 19.9 | 38.9 | 54.41 | 3.18 |
|  | 대 구 | 146 | 10.0 | 17.3 | 44.2 | 27.1 | 1.3 | 27.3 | 28.5 | 48.11 | 2.92 |
|  | 인 천 | 170 | 14.1 | 41.9 | 19.9 | 23.5 | 0.6 | 56.0 | 24.1 | 38.64 | 2.55 |
|  | 광 주 | 82 | 13.3 | 32.1 | 24.3 | 28.3 | 1.9 | 45.5 | 30.3 | 43.36 | 2.73 |
|  | 대 전 | 89 | 19.8 | 37.6 | 26.7 | 16.0 | 0.0 | 57.3 | 16.0 | 34.72 | 2.39 |
|  | 울 산 | 67 | 8.7 | 20.9 | 41.9 | 24.0 | 4.5 | 29.6 | 28.5 | 48.70 | 2.95 |
|  | 세 종 | 10 | 10.3 | 7.3 | 20.5 | 50.5 | 11.3 | 17.7 | 61.8 | 61.29 | 3.45 |
|  | 경 기 | 707 | 11.5 | 40.2 | 33.1 | 14.9 | 0.3 | 51.7 | 15.2 | 38.08 | 2.52 |
|  | 강 원 | 91 | 21.3 | 44.1 | 24.2 | 8.6 | 1.8 | 65.4 | 10.4 | 31.38 | 2.26 |
|  | 충 북 | 92 | 14.1 | 49.2 | 30.2 | 5.5 | 1.0 | 63.3 | 6.5 | 32.53 | 2.30 |
|  | 충 남 | 120 | 7.0 | 22.3 | 43.6 | 24.7 | 2.4 | 29.3 | 27.1 | 48.28 | 2.93 |
|  | 전 북 | 107 | 10.6 | 16.4 | 35.8 | 35.6 | 1.7 | 27.0 | 37.3 | 50.37 | 3.01 |
|  | 전 남 | 113 | 27.2 | 30.6 | 22.2 | 16.8 | 3.3 | 57.8 | 20.1 | 34.58 | 2.38 |
|  | 경 空 | 161 | 6.8 | 23.2 | 31.2 | 33.9 | 4.9 | 30.0 | 38.8 | 51.77 | 3.07 |
|  | 경 남 | 193 | 18.3 | 30.4 | 31.9 | 18.9 | 0.5 | 48.7 | 19.4 | 38.22 | 2.53 |
|  | 제 주 | 34 | 48.7 | 28.2 | 8.7 | 11.2 | 3.2 | 76.9 | 14.4 | 23.01 | 1.92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1.9 | 31.7 | 31.3 | 24.7 | 0.4 | 43.6 | 25.1 | 42.49 | 2.70 |
|  | 충 청 권 | 311 | 12.9 | 34.2 | 34.1 | 17.3 | 1.6 | 47.1 | 18.9 | 40.16 | 2.61 |
|  | 호 남 권 | 302 | 17.5 | 26.0 | 27.6 | 26.6 | 2.4 | 43.5 | 29.0 | 42.56 | 2.70 |
|  | 경 상 권 | 779 | 9.9 | 21.5 | 37.5 | 28.5 | 2.7 | 31.4 | 31.2 | 48.18 | 2.93 |
|  | 강 원 / 제 주 | 125 | 28.7 | 39.8 | 20.0 | 9.3 | 2.2 | 68.5 | 11.5 | 29.10 | 2.16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11.3 | 23.1 | 33.1 | 31.3 | 1.2 | 34.4 | 32.5 | 47.05 | 2.88 |
|  | 중 소 도 시 | 918 | 9.9 | 36.2 | 32.0 | 20.2 | 1.7 | 46.1 | 21.9 | 41.91 | 2.68 |
|  | 읍 면 지 역 | 710 | 19.3 | 31.3 | 31.3 | 16.8 | 1.2 | 50.6 | 18.0 | 37.32 | 2.49 |

[ 표 32 ] 지자체의 법준수 정도
문) [법에 대한 준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 \text { ) } \end{aligned}$ |  |  | 후 | 별로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ㅝㅎ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글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렿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홤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10.1 | 29.2 | 37.0 | 20.4 | 3.3 | 39.3 | 23.7 | 44.44 | 2.78 |
| 성 별 | 남 자 | 1,489 | 10.1 | 29.3 | 37.4 | 19.9 | 3.2 | 39.4 | 23.1 | 44.21 | 2.77 |
|  | 여 자 | 1,511 | 10.0 | 29.0 | 36.6 | 21.0 | 3.4 | 39.0 | 24.4 | 44.66 | 2.79 |
| 연 령 별 | 20 대 | 529 | 14.8 | 31.7 | 35.4 | 14.9 | 3.2 | 46.5 | 18.1 | 39.99 | 2.60 |
|  | 30 대 | 560 | 15.8 | 29.0 | 37.5 | 14.1 | 3.6 | 44.8 | 17.7 | 40.16 | 2.61 |
|  | 40 대 | 644 | 14.6 | 30.6 | 37.5 | 15.5 | 1.9 | 45.2 | 17.4 | 39.86 | 2.59 |
|  | 50 대 | 594 | 4.1 | 29.9 | 34.7 | 26.2 | 5.0 | 34.0 | 31.2 | 49.55 | 2.98 |
|  | 60 대 이 상 | 673 | 2.5 | 25.3 | 39.4 | 29.7 | 3.1 | 27.8 | 32.8 | 51.35 | 3.05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4.2 | 26.9 | 37.3 | 29.6 | 2.0 | 31.1 | 31.6 | 49.51 | 2.98 |
|  | 고 졸 | 1,196 | 5.9 | 31.7 | 36.7 | 22.4 | 3.3 | 37.6 | 25.7 | 46.41 | 2.86 |
|  | 대 재 이 상 | 1,409 | 15.3 | 27.7 | 37.2 | 16.2 | 3.7 | 43.0 | 19.9 | 41.34 | 2.65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0.8 | 28.7 | 34.8 | 24.0 | 1.7 | 39.5 | 25.7 | 44.29 | 2.77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12.7 | 31.4 | 36.3 | 16.9 | 2.7 | 44.1 | 19.6 | 41.39 | 2.66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8.3 | 29.5 | 36.4 | 22.3 | 3.5 | 37.8 | 25.8 | 45.77 | 2.83 |
|  | 400~499 만 원 | 629 | 8.6 | 28.9 | 41.7 | 18.1 | 2.7 | 37.5 | 20.8 | 44.32 | 2.77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0.7 | 28.0 | 35.4 | 21.2 | 4.7 | 38.7 | 25.9 | 45.30 | 2.81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6.7 | 38.2 | 33.1 | 22.0 | 0.0 | 44.9 | 22.0 | 42.57 | 2.70 |
|  | 자 영 업 | 666 | 5.9 | 28.8 | 37.7 | 23.2 | 4.5 | 34.7 | 27.7 | 47.88 | 2.92 |
|  | 블 루 칼 라 | 588 | 8.3 | 31.5 | 33.0 | 22.6 | 4.5 | 39.8 | 27.1 | 45.87 | 2.83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4.7 | 29.7 | 39.6 | 13.6 | 2.3 | 44.4 | 15.9 | 39.76 | 2.59 |
|  | 전 업 주 부 | 563 | 8.1 | 23.3 | 39.8 | 24.5 | 4.3 | 31.4 | 28.8 | 48.35 | 2.93 |
|  | 학 생 | 185 | 13.8 | 31.1 | 35.5 | 19.0 | 0.5 | 44.9 | 19.5 | 40.32 | 2.61 |
|  | 무 직 / 기 타 | 132 | 19.5 | 30.2 | 31.4 | 18.2 | 0.7 | 49.7 | 18.9 | 37.57 | 2.50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15.6 | 32.0 | 34.3 | 15.0 | 3.2 | 47.6 | 18.2 | 39.56 | 2.58 |
|  | 기 | 2,233 | 8.7 | 28.3 | 37.7 | 22.0 | 3.4 | 37.0 | 25.4 | 45.77 | 2.83 |
|  | 별거/사 별/기타 | 94 | 3.3 | 30.5 | 41.3 | 22.8 | 2.1 | 33.8 | 24.9 | 47.48 | 2.90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13.2 | 38.7 | 33.6 | 12.3 | 2.3 | 51.9 | 14.6 | 37.90 | 2.52 |
|  | 1 세 대 가 구 | 787 | 10.9 | 28.1 | 38.1 | 20.6 | 2.3 | 39.0 | 22.9 | 43.85 | 2.75 |
|  | 2 세 대 가 구 | 1,905 | 9.1 | 28.7 | 37.3 | 21.1 | 3.9 | 37.8 | 25.0 | 45.47 | 2.82 |
|  | 3 세 대 가 구 | 127 | 15.0 | 29.6 | 31.0 | 21.8 | 2.6 | 44.6 | 24.4 | 41.84 | 2.67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 & \text { 숭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1.5 | 30.6 | 36.5 | 18.8 | 2.6 | 42.1 | 21.4 | 42.55 | 2.70 |
|  | 중 간 층 | 1,527 | 8.6 | 28.5 | 37.9 | 21.3 | 3.8 | 37.1 | 25.1 | 45.80 | 2.83 |
|  | 상 층 | 122 | 12.8 | 21.5 | 31.5 | 28.2 | 6.0 | 34.3 | 34.2 | 48.28 | 2.93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12.4 | 27.9 | 35.8 | 19.8 | 4.2 | 40.3 | 24.0 | 43.87 | 2.75 |
|  | 중 도 | 1,462 | 11.3 | 32.1 | 37.4 | 16.2 | 2.9 | 43.4 | 19.1 | 41.82 | 2.67 |
|  | 보 수 | 855 | 6.1 | 25.2 | 37.3 | 28.2 | 3.3 | 31.3 | 31.5 | 49.36 | 2.97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9.7 | 25.0 | 41.2 | 21.7 | 2.4 | 34.7 | 24.1 | 45.52 | 2.82 |
|  | 부 산 | 212 | 4.8 | 16.9 | 37.3 | 32.8 | 8.2 | 21.7 | 41.0 | 55.66 | 3.23 |
|  | 대 구 | 146 | 6.7 | 18.7 | 51.5 | 21.8 | 1.3 | 25.4 | 23.2 | 48.11 | 2.92 |
|  | 인 천 | 170 | 11.8 | 43.1 | 23.5 | 17.0 | 4.7 | 54.8 | 21.7 | 39.95 | 2.60 |
|  | 광 주 | 82 | 10.0 | 24.5 | 40.5 | 22.0 | 2.9 | 34.6 | 24.9 | 45.82 | 2.83 |
|  | 대 전 | 89 | 14.6 | 39.7 | 34.8 | 10.9 | 0.0 | 54.3 | 10.9 | 35.49 | 2.42 |
|  | 울 산 | 67 | 6.5 | 18.4 | 28.6 | 35.2 | 11.3 | 24.9 | 46.5 | 56.60 | 3.26 |
|  | 세 종 | 10 | 19.5 | 6.0 | 18.5 | 19.7 | 36.3 | 25.5 | 56.0 | 61.83 | 3.47 |
|  | 경 기 | 707 | 8.7 | 33.4 | 41.5 | 14.5 | 1.8 | 42.2 | 16.3 | 41.81 | 2.67 |
|  | 강 원 | 91 | 16.5 | 35.6 | 34.5 | 12.4 | 1.0 | 52.1 | 13.4 | 36.44 | 2.46 |
|  | 충 북 | 92 | 13.2 | 40.8 | 36.6 | 9.4 | 0.0 | 54.0 | 9.4 | 35.58 | 2.42 |
|  | 충 남 | 120 | 6.2 | 33.2 | 28.4 | 24.5 | 7.7 | 39.4 | 32.2 | 48.59 | 2.94 |
|  | 전 북 | 107 | 6.5 | 19.6 | 36.3 | 34.4 | 3.3 | 26.1 | 37.6 | 52.09 | 3.08 |
|  | 전 남 | 113 | 17.3 | 33.1 | 27.8 | 16.7 | 5.1 | 50.4 | 21.7 | 39.77 | 2.59 |
|  | 경 穹 | 161 | 5.5 | 15.3 | 37.3 | 35.0 | 6.9 | 20.8 | 41.9 | 55.63 | 3.23 |
|  | 경 남 | 193 | 14.6 | 41.4 | 27.7 | 16.2 | 0.0 | 56.1 | 16.2 | 36.38 | 2.46 |
|  | 제 주 | 34 | 46.8 | 28.3 | 15.2 | 8.2 | 1.5 | 75.1 | 9.7 | 22.33 | 1.89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9.5 | 31.1 | 39.3 | 17.7 | 2.4 | 40.6 | 20.1 | 43.11 | 2.72 |
|  | 충 청 권 | 311 | 11.1 | 36.4 | 32.3 | 16.0 | 4.1 | 47.5 | 20.1 | 41.42 | 2.66 |
|  | 호 남 권 | 302 | 11.5 | 26.0 | 34.3 | 24.4 | 3.8 | 37.5 | 28.2 | 45.78 | 2.83 |
|  | 경 상 권 | 779 | 7.9 | 23.1 | 36.8 | 27.3 | 4.9 | 31.0 | 32.2 | 49.54 | 2.98 |
|  | 강 원/ 제 주 | 125 | 24.7 | 33.6 | 29.3 | 11.3 | 1.1 | 58.3 | 12.4 | 32.60 | 2.30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9.1 | 25.9 | 38.4 | 22.8 | 3.8 | 35.0 | 26.6 | 46.58 | 2.86 |
|  | 중 소 도 시 | 918 | 8.8 | 31.3 | 37.5 | 18.7 | 3.6 | 40.1 | 22.3 | 44.23 | 2.77 |
|  | 읍 면 지 역 | 710 | 13.6 | 32.7 | 33.6 | 18.2 | 2.0 | 46.3 | 20.2 | 40.56 | 2.62 |

［ 표 33］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문）［법에 대한 준수］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후 | 로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리ㅎㅓㅓ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frac{\text { 환산 }}{(ㅈ ㅓ ㅁ) ~}$ | $\frac{\text { 환산 }}{\text { (점) }}$ |
| 전 체 |  | 3，000 | 5.6 | 17.3 | 36.2 | 34.4 | 6.5 | 22.9 | 40.9 | 54.74 | 3.19 |
| 성 별 | 남 자 | 1，489 | 5.9 | 17.9 | 35.8 | 34.1 | 6.3 | 23.8 | 40.4 | 54.24 | 3.17 |
|  | 여 자 | 1，511 | 5.3 | 16.7 | 36.7 | 34.7 | 6.7 | 22.0 | 41.4 | 55.23 | 3.21 |
| 연 령 별 | 20 대 | 529 | 7.3 | 17.0 | 39.8 | 31.1 | 4.7 | 24.3 | 35.8 | 52.25 | 3.09 |
|  | 30 대 | 560 | 10.1 | 18.8 | 34.3 | 31.9 | 4.9 | 28.9 | 36.8 | 50.70 | 3.03 |
|  | 40 대 | 644 | 8.3 | 19.3 | 40.3 | 27.3 | 4.8 | 27.6 | 32.1 | 50.25 | 3.01 |
|  | $\begin{array}{lll} 5 & 0 & \text { 대 } \end{array}$ | 594 | 1.9 | 16.3 | 32.5 | 40.2 | 9.0 | 18.2 | 49.2 | 59.51 | 3.38 |
|  | 60 대 이 상 | 673 | 1.2 | 15.1 | 34.4 | 40.5 | 8.8 | 16.3 | 49.3 | 60.15 | 3.41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2.0 | 17.2 | 37.2 | 36.6 | 7.1 | 19.2 | 43.7 | 57.37 | 3.29 |
|  | 고 졸 | 1，196 | 2.5 | 16.2 | 37.4 | 36.0 | 7.9 | 18.7 | 43.9 | 57.65 | 3.31 |
|  | 대 재 이 상 | 1，409 | 9.3 | 18.2 | 35.0 | 32.4 | 5.2 | 27.5 | 37.6 | 51.53 | 3.06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4.9 | 17.4 | 36.4 | 34.9 | 6.3 | 22.3 | 41.2 | 55.09 | 3.20 |
|  | 200～299 만 원 | 485 | 7.9 | 19.1 | 37.6 | 29.3 | 6.2 | 27.0 | 35.5 | 51.70 | 3.07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4.6 | 17.9 | 36.1 | 34.8 | 6.5 | 22.5 | 41.3 | 55.18 | 3.21 |
|  | 400～499 만 원 | 629 | 4.2 | 18.0 | 36.0 | 35.8 | 6.0 | 22.2 | 41.8 | 55.34 | 3.21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6.3 | 15.2 | 35.7 | 35.6 | 7.2 | 21.5 | 42.8 | 55.52 | 3.22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3.6 | 20.6 | 37.4 | 29.8 | 8.6 | 24.2 | 38.4 | 54.84 | 3.19 |
|  | 자 영 업 | 666 | 2.9 | 15.5 | 35.6 | 39.4 | 6.6 | 18.4 | 46.0 | 57.79 | 3.31 |
|  | 블 루 칼 라 | 588 | 4.7 | 17.8 | 34.4 | 34.9 | 8.3 | 22.5 | 43.2 | 56.06 | 3.24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8.9 | 20.0 | 36.4 | 30.5 | 4.2 | 28.9 | 34.7 | 50.29 | 3.01 |
|  | 전 업 주 부 | 563 | 4.5 | 14.5 | 36.1 | 37.2 | 7.7 | 19.0 | 44.9 | 57.26 | 3.29 |
|  | 학 생 | 185 | 5.4 | 15.5 | 44.6 | 29.9 | 4.6 | 20.9 | 34.5 | 53.18 | 3.13 |
|  | 무 직／기 타 | 132 | 11.4 | 19.6 | 35.2 | 27.3 | 6.5 | 31.0 | 33.8 | 49.49 | 2.98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9.0 | 18.8 | 36.2 | 31.5 | 4.4 | 27.8 | 35.9 | 50.89 | 3.04 |
|  | 기 | 2，233 | 4.7 | 16.7 | 36.2 | 35.3 | 7.2 | 21.4 | 42.5 | 55.88 | 3.24 |
|  | 별 거／사 별／기타 | 94 | 2.2 | 20.6 | 37.7 | 33.7 | 5.8 | 22.8 | 39.5 | 55.08 | 3.20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8.1 | 30.0 | 30.6 | 25.5 | 5.8 | 38.1 | 31.3 | 47.71 | 2.91 |
|  | 1 세 대 가 구 | 787 | 5.4 | 17.2 | 35.3 | 36.1 | 6.1 | 22.6 | 42.2 | 55.09 | 3.20 |
|  | 2 세 대 가 구 | 1，905 | 5.0 | 16.1 | 37.3 | 34.8 | 6.7 | 21.1 | 41.5 | 55.52 | 3.22 |
|  | 3 세 대 가 구 | 127 | 11.8 | 16.9 | 34.4 | 30.0 | 7.0 | 28.7 | 37.0 | 50.87 | 3.03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text { 층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5.9 | 19.3 | 36.7 | 32.7 | 5.3 | 25.2 | 38.0 | 53.03 | 3.12 |
|  | 중 간 층 | 1，527 | 5.1 | 15.9 | 35.4 | 36.3 | 7.3 | 21.0 | 43.6 | 56.20 | 3.25 |
|  | 상 층 | 122 | 8.1 | 11.5 | 41.5 | 28.4 | 10.5 | 19.6 | 38.9 | 55.37 | 3.21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8.2 | 16.5 | 31.9 | 38.1 | 5.3 | 24.7 | 43.4 | 53.94 | 3.16 |
|  | 중 도 | 1，462 | 6.2 | 19.3 | 39.3 | 28.9 | 6.2 | 25.5 | 35.1 | 52.42 | 3.10 |
|  | 보 수 | 855 | 2.4 | 14.5 | 34.4 | 40.7 | 8.0 | 16.9 | 48.7 | 59.35 | 3.37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5.6 | 12.3 | 26.5 | 45.6 | 9.9 | 17.9 | 55.5 | 60.48 | 3.42 |
|  | 부 산 | 212 | 2.9 | 12.6 | 40.8 | 36.9 | 6.8 | 15.5 | 43.7 | 58.00 | 3.32 |
|  | 대 구 | 146 | 6.0 | 20.4 | 41.1 | 28.5 | 4.0 | 26.4 | 32.5 | 51.01 | 3.04 |
|  | 인 천 | 170 | 2.9 | 26.4 | 28.3 | 37.0 | 5.3 | 29.4 | 42.3 | 53.82 | 3.15 |
|  | 광 주 | 82 | 4.0 | 20.3 | 31.3 | 39.4 | 5.0 | 24.3 | 44.4 | 55.27 | 3.21 |
|  | 대 전 | 89 | 6.8 | 14.8 | 47.6 | 28.8 | 1.9 | 21.7 | 30.7 | 51.02 | 3.04 |
|  | 울 산 | 67 | 3.8 | 12.9 | 36.7 | 37.6 | 9.1 | 16.7 | 46.6 | 58.80 | 3.35 |
|  | 세 종 | 10 | 7.8 | 11.8 | 26.3 | 27.8 | 26.2 | 19.7 | 54.0 | 63.17 | 3.53 |
|  | 경 기 | 707 | 5.5 | 18.0 | 41.8 | 28.7 | 6.0 | 23.5 | 34.7 | 52.91 | 3.12 |
|  | 강 원 | 91 | 7.7 | 29.5 | 29.8 | 31.0 | 2.0 | 37.2 | 32.9 | 47.48 | 2.90 |
|  | 충 易 | 92 | 2.9 | 21.7 | 50.0 | 24.4 | 1.0 | 24.7 | 25.4 | 49.68 | 2.99 |
|  | 충 남 | 120 | 3.9 | 13.9 | 40.6 | 32.4 | 9.3 | 17.8 | 41.7 | 57.33 | 3.29 |
|  | 전 易 | 107 | 4.1 | 11.6 | 43.7 | 37.3 | 3.3 | 15.7 | 40.6 | 56.04 | 3.24 |
|  | 전 남 | 113 | 10.0 | 23.4 | 29.1 | 23.2 | 14.3 | 33.3 | 37.5 | 52.15 | 3.09 |
|  | 경 早 | 161 | 3.1 | 9.1 | 36.6 | 42.6 | 8.6 | 12.2 | 51.2 | 61.12 | 3.44 |
|  | 경 남 | 193 | 7.3 | 25.7 | 38.2 | 27.7 | 1.0 | 33.0 | 28.8 | 47.37 | 2.89 |
|  | 제 주 | 34 | 38.6 | 24.4 | 19.5 | 17.5 | 0.0 | 63.0 | 17.5 | 28.97 | 2.16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5.3 | 16.6 | 34.0 | 36.5 | 7.5 | 21.9 | 44.0 | 56.10 | 3.24 |
|  | 충 청 권 | 311 | 4.6 | 16.4 | 44.9 | 28.8 | 5.3 | 21.0 | 34.1 | 53.45 | 3.14 |
|  | 호 남 권 | 302 | 6.3 | 18.4 | 34.9 | 32.6 | 7.9 | 24.7 | 40.5 | 54.37 | 3.17 |
|  | 경 상 권 | 779 | 4.7 | 16.6 | 39.0 | 34.3 | 5.4 | 21.3 | 39.7 | 54.77 | 3.19 |
|  | 강 원／제 주 | 125 | 16.1 | 28.1 | 27.0 | 27.3 | 1.4 | 44.2 | 28.7 | 42.44 | 2.70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4.8 | 15.6 | 32.7 | 39.5 | 7.4 | 20.4 | 46.9 | 57.26 | 3.29 |
|  | 중 소 도 시 | 918 | 4.5 | 18.3 | 39.6 | 31.2 | 6.4 | 22.8 | 37.6 | 54.20 | 3.17 |
|  | 읍 면 지 역 | 710 | 8.6 | 19.0 | 38.9 | 28.5 | 5.0 | 27.6 | 33.5 | 50.58 | 3.02 |

[ 표 34] 기업의 법준수 정도
문) [법에 대한 준수]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 표 35] 국민의 법준수 정도
문) [법에 대한 준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 구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신ㅇㅝ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글러치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ㄹㅗㅗ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ㅓㄷ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 $\frac{\text { 환산 }}{\text { (점) }}$ |
| 전 체 |  | 3,000 | 2.4 | 17.2 | 40.5 | 37.3 | 2.6 | 19.6 | 39.9 | 55.16 | 3.21 |
| 성 별 | 남 자 | 1,489 | 2.6 | 17.7 | 40.4 | 36.7 | 2.6 | 20.3 | 39.3 | 54.75 | 3.19 |
|  | 여 자 | 1,511 | 2.1 | 16.7 | 40.6 | 38.0 | 2.6 | 18.8 | 40.6 | 55.55 | 3.22 |
| 연 령 별 | 20 대 | 529 | 4.9 | 25.2 | 40.4 | 27.1 | 2.4 | 30.1 | 29.5 | 49.21 | 2.97 |
|  | 30 대 | 560 | 3.8 | 21.4 | 45.2 | 27.8 | 1.9 | 25.2 | 29.7 | 50.63 | 3.03 |
|  | 40 대 | 644 | 2.9 | 19.3 | 46.4 | 29.6 | 1.9 | 22.2 | 31.5 | 52.06 | 3.08 |
|  | 50 대 | 594 | 0.5 | 11.9 | 36.9 | 48.3 | 2.5 | 12.4 | 50.8 | 60.10 | 3.40 |
|  | 60 대 이 상 | 673 | 0.3 | 10.1 | 34.3 | 51.0 | 4.2 | 10.4 | 55.2 | 62.19 | 3.49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0.8 | 10.6 | 38.8 | 45.9 | 3.9 | 11.4 | 49.8 | 60.39 | 3.42 |
|  | 고 졸 | 1,196 | 1.5 | 15.4 | 39.4 | 40.6 | 3.1 | 16.9 | 43.7 | 57.09 | 3.28 |
|  | 대 재 이 상 | 1,409 | 3.5 | 20.6 | 41.9 | 32.1 | 1.9 | 24.1 | 34.0 | 52.05 | 3.08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2.8 | 14.3 | 43.2 | 35.8 | 3.9 | 17.1 | 39.7 | 55.96 | 3.24 |
|  | 200~299 만 원 | 485 | 3.5 | 19.3 | 44.2 | 29.8 | 3.1 | 22.8 | 32.9 | 52.47 | 3.10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3 | 16.9 | 38.0 | 41.6 | 2.2 | 18.2 | 43.8 | 56.60 | 3.26 |
|  | $400 \sim 499 \text { 만 원 }$ | 629 | 1.8 | 18.4 | 39.7 | 38.4 | 1.8 | 20.2 | 40.2 | 54.98 | 3.20 |
|  | 500 만 원 이상 | 853 | 2.8 | 16.6 | 39.7 | 38.2 | 2.7 | 19.4 | 40.9 | 55.34 | 3.21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0.7 | 8.3 | 30.7 | 55.4 | 5.0 | 9.0 | 60.4 | 63.93 | 3.56 |
|  | 자 영 업 | 666 | 0.9 | 13.2 | 40.7 | 41.7 | 3.5 | 14.1 | 45.2 | 58.38 | 3.34 |
|  | 블 루 칼 라 | 588 | 1.7 | 17.2 | 38.1 | 40.2 | 2.8 | 18.9 | 43.0 | 56.31 | 3.25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4.3 | 20.1 | 48.1 | 25.8 | 1.7 | 24.4 | 27.5 | 50.12 | 3.00 |
|  | 전 업 주 부 | 563 | 1.5 | 13.8 | 37.9 | 44.1 | 2.8 | 15.3 | 46.9 | 58.19 | 3.33 |
|  |  | 185 | 2.7 | 30.6 | 37.1 | 29.1 | 0.5 | 33.3 | 29.6 | 48.54 | 2.94 |
|  | 무 직 / 기 타 | 132 | 6.9 | 25.4 | 34.3 | 30.8 | 2.6 | 32.3 | 33.4 | 49.21 | 2.97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4.4 | 24.4 | 42.5 | 26.4 | 2.3 | 28.8 | 28.7 | 49.44 | 2.98 |
|  | 기 혼 | 2,233 | 1.8 | 15.3 | 39.9 | 40.1 | 2.8 | 17.1 | 42.9 | 56.67 | 3.27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10.0 | 40.8 | 48.6 | 0.7 | 10.0 | 49.3 | 60.00 | 3.40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 180 | 2.6 | 21.2 | 49.1 | 26.1 | 1.0 | 23.8 | 27.1 | 50.40 | 3.02 |
|  | 1 세 대 가 구 | 787 | 2.2 | 15.3 | 40.6 | 38.7 | 3.1 | 17.5 | 41.8 | 56.31 | 3.25 |
|  | 2 세 대 가 구 | 1,905 | 2.4 | 17.6 | 39.4 | 38.1 | 2.5 | 20.0 | 40.6 | 55.16 | 3.21 |
|  | 3 세 대 가 구 | 127 | 1.8 | 17.4 | 44.5 | 32.9 | 3.5 | 19.2 | 36.4 | 54.70 | 3.19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전 } \\ & \text { 계 } \\ & \text { 수 준 블 } \end{aligned}$ | 하 층 | 1,352 | 2.6 | 19.5 | 39.3 | 36.9 | 1.7 | 22.1 | 38.6 | 53.92 | 3.16 |
|  | 중 간 층 | 1,527 | 2.1 | 15.5 | 41.7 | 37.5 | 3.3 | 17.6 | 40.8 | 56.09 | 3.24 |
|  | 상 층 | 122 | 3.4 | 13.4 | 38.7 | 40.1 | 4.4 | 16.8 | 44.5 | 57.16 | 3.29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3.0 | 18.3 | 37.3 | 39.3 | 2.1 | 21.3 | 41.4 | 54.80 | 3.19 |
|  | 중 <br> 도 | 1,462 | 2.7 | 18.5 | 44.9 | 31.3 | 2.5 | 21.2 | 33.8 | 53.11 | 3.12 |
|  | 보 수 | 855 | 1.3 | 14.0 | 35.6 | 46.0 | 3.2 | 15.3 | 49.2 | 58.95 | 3.36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3.2 | 15.1 | 37.6 | 41.7 | 2.4 | 18.3 | 44.1 | 56.26 | 3.25 |
|  | 부 산 | 212 | 1.4 | 8.7 | 39.8 | 45.7 | 4.4 | 10.1 | 50.1 | 60.73 | 3.43 |
|  | 대 予 | 146 | 4.0 | 21.8 | 43.8 | 28.3 | 2.1 | 25.8 | 30.4 | 50.66 | 3.03 |
|  | 인 천 | 170 | 2.9 | 24.1 | 27.6 | 45.3 | 0.0 | 27.0 | 45.3 | 53.84 | 3.15 |
|  | 광 주 | 82 | 1.0 | 15.4 | 39.3 | 36.1 | 8.2 | 16.4 | 44.4 | 58.81 | 3.35 |
|  | 대 전 | 89 | 2.9 | 13.8 | 38.6 | 44.7 | 0.0 | 16.7 | 44.7 | 56.25 | 3.25 |
|  | 울 산 | 67 | 1.1 | 14.2 | 49.0 | 32.3 | 3.4 | 15.3 | 35.7 | 55.64 | 3.23 |
|  | 세 종 | 10 | 6.7 | 23.0 | 20.2 | 28.8 | 21.3 | 29.7 | 50.2 | 58.79 | 3.35 |
|  | 경 기 | 707 | 2.1 | 22.2 | 44.1 | 30.1 | 1.5 | 24.3 | 31.6 | 51.66 | 3.07 |
|  | 강 원 | 91 | 2.9 | 18.0 | 54.1 | 25.0 | 0.0 | 20.9 | 25.0 | 50.29 | 3.01 |
|  | 충 북 | 92 | 2.7 | 8.5 | 43.4 | 43.5 | 1.9 | 11.2 | 45.4 | 58.32 | 3.33 |
|  | 충 남 | 120 | 0.7 | 12.5 | 37.5 | 48.4 | 0.8 | 13.3 | 49.2 | 59.00 | 3.36 |
|  | 전 북 | 107 | 1.6 | 15.7 | 43.0 | 36.4 | 3.3 | 17.3 | 39.7 | 56.02 | 3.24 |
|  | 전 남 | 113 | 2.9 | 14.6 | 28.3 | 44.8 | 9.4 | 17.4 | 54.2 | 60.83 | 3.43 |
|  | 경 북 | 161 | 0.0 | 14.2 | 45.6 | 34.1 | 6.1 | 14.2 | 40.2 | 58.04 | 3.32 |
|  | 경 남 | 193 | 3.1 | 18.4 | 40.8 | 36.7 | 1.0 | 21.5 | 37.7 | 53.55 | 3.14 |
|  | 제 주 | 34 | 3.4 | 24.7 | 42.6 | 25.5 | 3.8 | 28.2 | 29.3 | 50.37 | 3.01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2.6 | 19.5 | 39.6 | 36.6 | 1.7 | 22.1 | 38.3 | 53.79 | 3.15 |
|  | 충 청 권 | 311 | 2.1 | 12.0 | 39.0 | 45.3 | 1.5 | 14.1 | 46.8 | 58.00 | 3.32 |
|  | 호 남 권 | 302 | 1.9 | 15.2 | 36.5 | 39.5 | 6.9 | 17.1 | 46.4 | 58.58 | 3.34 |
|  | 경 상 권 | 779 | 2.0 | 15.2 | 42.8 | 36.7 | 3.4 | 17.2 | 40.1 | 56.07 | 3.24 |
|  | 강 원 / 제 주 | 125 | 3.0 | 19.9 | 51.0 | 25.1 | 1.0 | 22.9 | 26.1 | 50.31 | 3.01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2.7 | 15.8 | 38.1 | 40.7 | 2.6 | 18.5 | 43.3 | 56.18 | 3.25 |
|  | 중 소 도 시 | 918 | 1.9 | 20.0 | 40.7 | 34.7 | 2.7 | 21.9 | 37.4 | 54.08 | 3.16 |
|  | 읍 면 지 역 | 710 | 2.3 | 16.2 | 45.0 | 34.0 | 2.5 | 18.5 | 36.5 | 54.58 | 3.18 |

[ 표 36 ] 신체의 자유 보장
문)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100젚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명) | $\begin{aligned} & \text { 선혀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를로ㅎㅓㅣ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100 \text { 심 } \\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험 } \\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3.2 | 10.6 | 29.1 | 52.0 | 5.1 | 13.8 | 57.1 | 61.28 | 3.45 |
| 성 별 | 남 자 | 1,489 | 3.2 | 10.4 | 28.5 | 52.8 | 5.1 | 13.6 | 57.9 | 61.53 | 3.46 |
|  | 여 자 | 1,511 | 3.2 | 10.7 | 29.8 | 51.2 | 5.0 | 13.9 | 56.2 | 61.03 | 3.44 |
| 연 렁 별 | 20 대 | 529 | 5.6 | 13.6 | 32.1 | 43.7 | 5.0 | 19.2 | 48.7 | 57.19 | 3.29 |
|  | 30 대 | 560 | 5.7 | 15.3 | 32.6 | 43.4 | 3.0 | 21.0 | 46.4 | 55.65 | 3.23 |
|  | 40 대 | 644 | 4.3 | 13.5 | 38.3 | 40.4 | 3.5 | 17.8 | 43.9 | 56.29 | 3.25 |
|  | 50 대 | 594 | 0.8 | 5.6 | 21.7 | 65.1 | 6.9 | 6.4 | 72.0 | 67.90 | 3.72 |
|  | 60 대 이 상 | 673 | 0.3 | 5.9 | 21.6 | 65.4 | 6.8 | 6.2 | 72.2 | 68.09 | 3.72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1.3 | 7.6 | 27.8 | 58.7 | 4.5 | 8.9 | 63.2 | 64.41 | 3.58 |
|  | 고 졸 | 1,196 | 1.4 | 7.2 | 26.1 | 59.3 | 6.1 | 8.6 | 65.4 | 65.41 | 3.62 |
|  | 대 재 이 상 | 1,409 | 5.3 | 14.3 | 32.1 | 43.9 | 4.3 | 19.6 | 48.2 | 56.89 | 3.28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3.4 | 10.3 | 31.0 | 51.6 | 3.7 | 13.7 | 55.3 | 60.49 | 3.42 |
|  | 200~299 만 원 | 485 | 3.3 | 12.1 | 35.4 | 44.4 | 4.8 | 15.4 | 49.2 | 58.80 | 3.35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2.0 | 9.9 | 26.9 | 56.7 | 4.5 | 11.9 | 61.2 | 62.98 | 3.52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3.9 | 10.7 | 27.6 | 53.0 | 4.8 | 14.6 | 57.8 | 61.01 | 3.44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3.5 | 10.3 | 27.6 | 52.1 | 6.4 | 13.8 | 58.5 | 61.91 | 3.48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3.0 | 7.0 | 26.7 | 59.6 | 3.7 | 10.0 | 63.3 | 63.49 | 3.54 |
|  | 자 영 업 | 666 | 1.3 | 7.9 | 22.9 | 61.9 | 6.0 | 9.2 | 67.9 | 65.85 | 3.63 |
|  | 블 루 칼 라 | 588 | 2.0 | 9.4 | 27.2 | 55.6 | 5.8 | 11.4 | 61.4 | 63.44 | 3.54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5.0 | 16.8 | 34.1 | 40.5 | 3.5 | 21.8 | 44.0 | 55.13 | 3.21 |
|  | 전 업 주 부 | 563 | 2.7 | 7.4 | 29.6 | 54.1 | 6.2 | 10.1 | 60.3 | 63.44 | 3.54 |
|  | 학 생 | 185 | 3.8 | 10.3 | 35.6 | 45.9 | 4.4 | 14.1 | 50.3 | 59.19 | 3.37 |
|  | 무 직 / 기 타 | 132 | 9.9 | 12.5 | 32.2 | 42.1 | 3.3 | 22.4 | 45.4 | 54.11 | 3.16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 672 | 6.2 | 15.3 | 33.4 | 41.5 | 3.5 | 21.5 | 45.0 | 55.23 | 3.21 |
|  | 기 | 2,233 | 2.5 | 9.3 | 27.8 | 54.9 | 5.5 | 11.8 | 60.4 | 62.95 | 3.52 |
|  | 별거/사 별/기타 | 94 | 0.0 | 7.4 | 30.7 | 57.6 | 4.3 | 7.4 | 61.9 | 64.68 | 3.59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 180 | 4.4 | 18.8 | 36.3 | 37.3 | 3.1 | 23.2 | 40.4 | 54.01 | 3.16 |
|  | $1 \text { 세 대 가 구 }$ | 787 | 3.1 | 12.5 | 29.4 | 51.0 | 4.0 | 15.6 | 55.0 | 60.03 | 3.40 |
|  | $2 \text { 세 대 가 구 }$ | 1,905 | 2.9 | 8.9 | 28.4 | 54.1 | 5.7 | 11.8 | 59.8 | 62.71 | 3.51 |
|  | $3 \text { 세 대 가 구 }$ | 127 | 6.5 | 12.2 | 28.9 | 48.5 | 4.0 | 18.7 | 52.5 | 57.82 | 3.31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 & \text { 숭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3.6 | 11.3 | 30.7 | 50.2 | 4.1 | 14.9 | 54.3 | 59.99 | 3.40 |
|  | 중 간 층 | 1,527 | 2.7 | 9.6 | 27.8 | 53.9 | 6.0 | 12.3 | 59.9 | 62.72 | 3.51 |
|  | 상 층 | 122 | 5.0 | 15.4 | 27.8 | 48.2 | 3.5 | 20.4 | 51.7 | 57.46 | 3.30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4.7 | 13.7 | 25.6 | 51.3 | 4.8 | 18.4 | 56.1 | 59.44 | 3.38 |
|  | 중 도 | 1,462 | 3.8 | 11.6 | 34.2 | 47.0 | 3.5 | 15.4 | 50.5 | 58.71 | 3.35 |
|  | 보 수 | 855 | 1.1 | 6.3 | 23.4 | 61.3 | 7.9 | 7.4 | 69.2 | 67.14 | 3.69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3.2 | 8.0 | 23.3 | 58.9 | 6.5 | 11.2 | 65.4 | 64.39 | 3.58 |
|  | 부 산 | 212 | 1.4 | 10.7 | 30.6 | 50.5 | 6.9 | 12.1 | 57.3 | 62.66 | 3.51 |
|  | 대 구 | 146 | 3.3 | 7.4 | 29.9 | 49.6 | 9.9 | 10.7 | 59.4 | 63.83 | 3.55 |
|  | 인 천 | 170 | 2.9 | 16.4 | 21.3 | 56.4 | 3.0 | 19.4 | 59.4 | 60.02 | 3.40 |
|  | 광 주 | 82 | 1.0 | 8.0 | 40.5 | 50.6 | 0.0 | 8.9 | 50.6 | 60.17 | 3.41 |
|  | 대 전 | 89 | 4.9 | 8.8 | 27.9 | 51.4 | 7.0 | 13.8 | 58.4 | 61.67 | 3.47 |
|  | 울 산 | 67 | 2.6 | 16.2 | 48.9 | 29.9 | 2.3 | 18.8 | 32.3 | 53.28 | 3.13 |
|  | 세 종 | 10 | 0.0 | 2.5 | 13.3 | 55.7 | 28.5 | 2.5 | 84.2 | 77.54 | 4.10 |
|  | 경 기 | 707 | 3.6 | 11.4 | 28.8 | 51.1 | 5.2 | 14.9 | 56.2 | 60.73 | 3.43 |
|  | 강 원 | 91 | 2.0 | 21.0 | 35.5 | 39.6 | 2.0 | 23.0 | 41.5 | 54.63 | 3.19 |
|  | 충 북 | 92 | 1.0 | 5.7 | 36.6 | 52.2 | 4.6 | 6.6 | 56.8 | 63.46 | 3.54 |
|  | 충 남 | 120 | 1.5 | 7.1 | 39.9 | 50.0 | 1.6 | 8.6 | 51.5 | 60.74 | 3.43 |
|  | 전 早 | 107 | 4.9 | 9.8 | 30.6 | 50.6 | 4.1 | 14.7 | 54.7 | 59.80 | 3.39 |
|  | 전 남 | 113 | 6.8 | 16.6 | 35.6 | 40.2 | 0.8 | 23.5 | 41.0 | 52.88 | 3.12 |
|  | 경 早 | 161 | 2.4 | 7.3 | 23.0 | 64.1 | 3.1 | 9.7 | 67.2 | 64.55 | 3.58 |
|  | 경 남 | 193 | 4.7 | 11.5 | 30.4 | 48.7 | 4.7 | 16.1 | 53.4 | 59.33 | 3.37 |
|  | 제 주 | 34 | 5.2 | 17.1 | 27.3 | 40.4 | 10.0 | 22.3 | 50.4 | 58.24 | 3.33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3.3 | 10.6 | 25.7 | 54.9 | 5.5 | 13.9 | 60.4 | 62.14 | 3.49 |
|  | 충 청 권 | 311 | 2.3 | 7.0 | 34.6 | 51.2 | 4.9 | 9.3 | 56.1 | 62.35 | 3.49 |
|  | 호 남 권 | 302 | 4.6 | 11.9 | 35.1 | 46.7 | 1.8 | 16.5 | 48.5 | 57.31 | 3.29 |
|  | 경 상 권 | 779 | 2.9 | 10.0 | 30.4 | 50.9 | 5.7 | 12.9 | 56.6 | 61.64 | 3.47 |
|  | 강 원 / 제 주 | 125 | 2.8 | 20.0 | 33.3 | 39.8 | 4.1 | 22.8 | 43.9 | 55.61 | 3.22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2.8 | 9.9 | 27.5 | 53.9 | 5.9 | 12.7 | 59.8 | 62.55 | 3.50 |
|  | 중 소 도 시 | 918 | 2.5 | 9.9 | 26.8 | 55.4 | 5.4 | 12.4 | 60.8 | 62.83 | 3.51 |
|  | 읍 면 지 역 | 710 | 4.9 | 12.8 | 35.4 | 44.1 | 2.9 | 17.7 | 47.0 | 56.80 | 3.27 |

[ 표 37 ] 이의 제기 및 청원권리 보장
문)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 장한다


## ［ 표 38 ］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문）［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법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보 장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별로 |  |  |  |  |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명） | $\begin{aligned} & \text { 기너엏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를노 } \\ & \text { 겋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롱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홤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2.0 | 7.7 | 29.6 | 46.3 | 14.4 | 9.7 | 60.7 | 65.85 | 3.63 |
| 성 별 | 남 자 | 1，489 | 2.3 | 7.1 | 28.3 | 47.2 | 15.2 | 9.4 | 62.4 | 66.47 | 3.66 |
|  | 여 자 | 1，511 | 1.8 | 8.2 | 30.9 | 45.5 | 13.6 | 10.0 | 59.1 | 65.23 | 3.61 |
| 연 렁 별 | 20 대 | 529 | 2.5 | 9.7 | 33.0 | 42.8 | 12.1 | 12.2 | 54.9 | 63.10 | 3.52 |
|  | 30 대 | 560 | 4.5 | 9.0 | 36.0 | 39.3 | 11.2 | 13.5 | 50.5 | 60.88 | 3.44 |
|  | 40 대 | 644 | 3.4 | 8.3 | 34.5 | 43.2 | 10.7 | 11.7 | 53.9 | 62.36 | 3.49 |
|  | 50 대 | 594 | 0.1 | 6.1 | 21.9 | 54.1 | 17.7 | 6.2 | 71.8 | 70.82 | 3.83 |
|  | 60 대 이 상 | 673 | 0.0 | 5.7 | 23.7 | 51.1 | 19.4 | 5.7 | 70.5 | 71.09 | 3.84 |
| 학 럭 별 | 중 졸 이 하 | 395 | 0.5 | 8.6 | 29.7 | 46.5 | 14.7 | 9.1 | 61.2 | 66.58 | 3.66 |
|  | 고 졸 | 1，196 | 0.6 | 5.5 | 25.5 | 51.0 | 17.3 | 6.1 | 68.3 | 69.74 | 3.79 |
|  | 대 재 이 상 | 1，409 | 3.7 | 9.2 | 33.0 | 42.3 | 11.8 | 12.9 | 54.1 | 62.34 | 3.49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2.7 | 9.8 | 32.3 | 41.2 | 13.9 | 12.5 | 55.1 | 63.47 | 3.54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2.5 | 9.5 | 34.2 | 39.9 | 13.9 | 12.0 | 53.8 | 63.29 | 3.53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0 | 7.2 | 28.0 | 48.1 | 15.7 | 8.2 | 63.8 | 67.56 | 3.70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1.3 | 7.0 | 28.4 | 49.5 | 13.9 | 8.3 | 63.4 | 66.91 | 3.68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2.7 | 6.5 | 28.0 | 48.5 | 14.3 | 9.2 | 62.8 | 66.27 | 3.65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0.8 | 7.9 | 25.4 | 49.6 | 16.3 | 8.7 | 65.9 | 68.19 | 3.73 |
|  | 자 영 업 | 666 | 0.9 | 6.5 | 22.8 | 51.5 | 18.3 | 7.4 | 69.8 | 69.94 | 3.80 |
|  | 블 루 칼 라 | 588 | 1.4 | 7.5 | 24.6 | 49.8 | 16.6 | 8.9 | 66.4 | 68.16 | 3.73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3.9 | 9.0 | 36.9 | 39.8 | 10.4 | 12.9 | 50.2 | 60.93 | 3.44 |
|  | 전 업 주 부 | 563 | 1.3 | 6.8 | 31.1 | 47.1 | 13.6 | 8.1 | 60.7 | 66.27 | 3.65 |
|  | 학 생 | 185 | 3.0 | 6.6 | 35.5 | 44.9 | 9.9 | 9.6 | 54.8 | 63.03 | 3.52 |
|  | 무 직／기 타 | 132 | 2.9 | 11.6 | 34.7 | 36.0 | 14.8 | 14.5 | 50.8 | 62.04 | 3.48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3.8 | 9.6 | 32.8 | 43.4 | 10.5 | 13.4 | 53.9 | 61.85 | 3.47 |
|  | 기 혼 | 2，233 | 1.6 | 6.9 | 29.0 | 47.1 | 15.5 | 8.5 | 62.6 | 67.03 | 3.68 |
|  | 별 거／사 별／기타 | 94 | 0.0 | 13.4 | 22.2 | 49.5 | 14.9 | 13.4 | 64.4 | 66.50 | 3.66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3.6 | 13.1 | 33.3 | 39.3 | 10.6 | 16.7 | 49.9 | 60.06 | 3.40 |
|  | 1 세 대 가 구 | 787 | 2.3 | 8.4 | 29.7 | 44.2 | 15.4 | 10.7 | 59.6 | 65.45 | 3.62 |
|  | 2 세 대 가 구 | 1，905 | 1.6 | 7.0 | 29.1 | 47.7 | 14.6 | 8.6 | 62.3 | 66.65 | 3.67 |
|  | 3 세 대 가 구 | 127 | 3.4 | 5.5 | 31.8 | 48.6 | 10.8 | 8.9 | 59.4 | 64.47 | 3.58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 & \text { 수 중 } \\ & \text {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2.5 | 7.9 | 29.8 | 45.4 | 14.3 | 10.4 | 59.7 | 65.23 | 3.61 |
|  | 중 간 층 | 1，527 | 1.3 | 7.6 | 29.0 | 47.8 | 14.3 | 8.9 | 62.1 | 66.53 | 3.66 |
|  | 상 층 | 122 | 5.1 | 5.4 | 34.6 | 37.6 | 17.3 | 10.5 | 54.9 | 64.12 | 3.56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3.6 | 9.0 | 29.4 | 43.6 | 14.5 | 12.6 | 58.1 | 64.07 | 3.56 |
|  | 중 도 | 1，462 | 1.9 | 9.1 | 32.7 | 44.9 | 11.6 | 11.0 | 56.5 | 63.79 | 3.55 |
|  | 보 수 | 855 | 1.0 | 4.3 | 24.6 | 51.0 | 19.2 | 5.3 | 70.2 | 70.79 | 3.83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2.3 | 5.4 | 23.4 | 53.3 | 15.7 | 7.7 | 69.0 | 68.68 | 3.75 |
|  | 부 산 | 212 | 1.4 | 10.2 | 41.2 | 34.5 | 12.7 | 11.6 | 47.1 | 61.69 | 3.47 |
|  | 대 구 | 146 | 0.7 | 6.6 | 24.8 | 46.3 | 21.7 | 7.2 | 68.0 | 70.43 | 3.82 |
|  | 인 천 | 170 | 2.4 | 5.9 | 24.2 | 51.1 | 16.5 | 8.2 | 67.6 | 68.36 | 3.73 |
|  | 광 주 | 82 | 2.0 | 7.2 | 48.4 | 34.3 | 8.2 | 9.1 | 42.5 | 59.91 | 3.40 |
|  | 대 전 | 89 | 3.9 | 9.8 | 23.4 | 48.8 | 14.1 | 13.7 | 62.8 | 64.82 | 3.59 |
|  | 울 산 | 67 | 1.5 | 13.9 | 42.7 | 35.2 | 6.8 | 15.3 | 42.0 | 57.98 | 3.32 |
|  | 세 종 | 10 | 0.0 | 2.0 | 15.7 | 54.0 | 28.3 | 2.0 | 82.3 | 77.17 | 4.09 |
|  | 경 기 | 707 | 1.9 | 6.2 | 27.9 | 53.0 | 11.0 | 8.1 | 64.0 | 66.23 | 3.65 |
|  | 강 원 | 91 | 2.0 | 16.9 | 37.3 | 36.8 | 7.0 | 18.9 | 43.8 | 57.47 | 3.30 |
|  | 충 章 | 92 | 0.9 | 5.8 | 28.1 | 59.6 | 5.6 | 6.7 | 65.2 | 65.80 | 3.63 |
|  | 충 남 | 120 | 2.3 | 7.8 | 33.7 | 42.9 | 13.2 | 10.1 | 56.1 | 64.23 | 3.57 |
|  | 전 早 | 107 | 1.6 | 9.2 | 43.9 | 33.0 | 12.2 | 10.8 | 45.3 | 61.26 | 3.45 |
|  | 전 남 | 113 | 1.4 | 15.1 | 28.5 | 34.3 | 20.7 | 16.5 | 55.0 | 64.45 | 3.58 |
|  | 경 早 | 161 | 1.8 | 9.2 | 32.4 | 40.6 | 15.9 | 11.0 | 56.6 | 64.94 | 3.60 |
|  | 경 남 | 193 | 2.6 | 5.7 | 27.8 | 37.7 | 26.2 | 8.3 | 63.9 | 69.79 | 3.79 |
|  | 제 주 | 34 | 6.9 | 16.1 | 25.2 | 35.9 | 16.0 | 23.0 | 51.8 | 59.48 | 3.38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2.1 | 5.8 | 25.6 | 52.9 | 13.6 | 7.9 | 66.5 | 67.48 | 3.70 |
|  | 충 청 권 | 311 | 2.3 | 7.6 | 28.6 | 49.9 | 11.7 | 9.9 | 61.6 | 65.28 | 3.61 |
|  | 호 남 권 | 302 | 1.6 | 10.8 | 39.4 | 33.9 | 14.3 | 12.4 | 48.2 | 62.09 | 3.48 |
|  | 경 상 권 | 779 | 1.7 | 8.5 | 33.1 | 38.8 | 17.9 | 10.2 | 56.7 | 65.69 | 3.63 |
|  | 강 원／제 주 | 125 | 3.3 | 16.7 | 34.0 | 36.6 | 9.4 | 20.0 | 46.0 | 58.02 | 3.32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2.0 | 7.1 | 28.8 | 47.0 | 15.0 | 9.1 | 62.0 | 66.45 | 3.66 |
|  | 중 소 도 시 | 918 | 1.7 | 7.0 | 26.5 | 50.4 | 14.4 | 8.7 | 64.8 | 67.19 | 3.69 |
|  | 읍 면 지 역 | 710 | 2.4 | 9.5 | 35.2 | 39.7 | 13.2 | 11.9 | 52.9 | 62.96 | 3.52 |

[ 표 39 ] 참정권 보장
문)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 장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 \text { ) } \end{aligned}$ |  |  | 전혀 | 별로 |  |  |  |  |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림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첨) } \end{aligned}$ | $\frac{\text { 환산 }}{\text { (점) }}$ |
| 전 체 |  | 3,000 | 1.8 | 6.3 | 29.3 | 46.2 | 16.4 | 8.1 | 62.6 | 67.30 | 3.69 |
|  | 남 자 | 1,489 | 1.7 | 5.7 | 28.7 | 47.8 | 16.0 | 7.4 | 63.8 | 67.66 | 3.71 |
|  | 여 자 | 1,511 | 1.8 | 6.9 | 29.9 | 44.6 | 16.8 | 8.7 | 61.4 | 66.95 | 3.68 |
| 연 렁 별 | 20 대 | 529 | 2.4 | 6.9 | 31.1 | 43.7 | 16.0 | 9.3 | 59.7 | 65.97 | 3.64 |
|  | 30 대 | 560 | 4.4 | 8.6 | 33.0 | 42.2 | 11.8 | 13.0 | 54.0 | 62.10 | 3.48 |
|  | 40 대 | 644 | 2.4 | 5.3 | 35.9 | 44.7 | 11.7 | 7.7 | 56.4 | 64.51 | 3.58 |
|  | 50 대 | 594 | 0.0 | 5.2 | 24.8 | 47.3 | 22.6 | 5.2 | 69.9 | 71.84 | 3.87 |
|  | 60 대 이 상 | 673 | 0.2 | 5.8 | 22.3 | 52.0 | 19.7 | 6.0 | 71.7 | 71.34 | 3.85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0.5 | 8.1 | 27.8 | 46.1 | 17.5 | 8.6 | 63.6 | 68.01 | 3.72 |
|  | 고 졸 | 1,196 | 0.6 | 4.9 | 26.9 | 49.5 | 18.1 | 5.5 | 67.6 | 69.91 | 3.80 |
|  | 대 재 이 상 | 1,409 | 3.2 | 7.0 | 31.7 | 43.4 | 14.7 | 10.2 | 58.1 | 64.89 | 3.60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2.2 | 7.7 | 32.8 | 42.7 | 14.7 | 9.9 | 57.4 | 65.02 | 3.60 |
|  | 200~299 만 원 | 485 | 1.4 | 7.7 | 31.7 | 44.2 | 15.0 | 9.1 | 59.2 | 65.90 | 3.64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0.6 | 6.5 | 28.7 | 50.1 | 14.1 | 7.1 | 64.2 | 67.63 | 3.71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1.8 | 5.8 | 27.5 | 48.0 | 16.8 | 7.6 | 64.8 | 68.03 | 3.72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2.7 | 5.1 | 28.1 | 44.6 | 19.6 | 7.8 | 64.2 | 68.32 | 3.73 |
| 직 업 별 | 농/ 축 / 수 산 업 | 133 | 0.8 | 5.9 | 32.0 | 45.4 | 16.0 | 6.7 | 61.4 | 67.48 | 3.70 |
|  | 자 영 업 | 666 | 0.8 | 4.6 | 25.9 | 48.7 | 20.0 | 5.4 | 68.7 | 70.60 | 3.82 |
|  | 블 루 칼 라 | 588 | 0.8 | 5.9 | 28.4 | 48.4 | 16.5 | 6.7 | 64.9 | 68.44 | 3.74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3.1 | 8.2 | 33.8 | 41.4 | 13.4 | 11.3 | 54.8 | 63.43 | 3.54 |
|  | 전 업 주 부 | 563 | 1.4 | 6.2 | 27.3 | 49.4 | 15.7 | 7.6 | 65.1 | 67.94 | 3.72 |
|  | 학 생 | 185 | 1.6 | 7.2 | 29.9 | 44.3 | 17.1 | 8.8 | 61.4 | 67.05 | 3.68 |
|  | 무 직 / 기 타 | 132 | 6.4 | 5.3 | 30.1 | 40.7 | 17.7 | 11.7 | 58.4 | 64.51 | 3.58 |
| 혼 인 | 미 혼 | 672 | 3.6 | 8.0 | 30.9 | 42.9 | 14.5 | 11.6 | 57.4 | 64.21 | 3.57 |
|  | 기 | 2,233 | 1.3 | 5.8 | 28.7 | 47.1 | 17.1 | 7.1 | 64.2 | 68.22 | 3.73 |
| 상 태 별 | 별 거/사 별/기타 | 94 | 0.0 | 6.1 | 32.2 | 47.3 | 14.5 | 6.1 | 61.8 | 67.52 | 3.70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2.6 | 8.1 | 36.1 | 39.9 | 13.2 | 10.7 | 53.1 | 63.24 | 3.53 |
|  | $1 \text { 세 대 가 구 }$ | 787 | 2.2 | 7.1 | 28.4 | 46.6 | 15.7 | 9.3 | 62.3 | 66.61 | 3.66 |
|  | $2 \text { 세 대 가 구 }$ | $1,905$ | 1.4 | 5.9 | 28.9 | 46.5 | 17.3 | 7.3 | 63.8 | 68.10 | 3.72 |
|  | $3 \text { 세 대 가 구 }$ | 127 | 3.3 | 4.9 | 30.9 | 48.9 | 12.0 | 8.2 | 60.9 | 65.36 | 3.61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 & \text { 숭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9 | 6.7 | 30.1 | 47.2 | 14.1 | 8.6 | 61.3 | 66.24 | 3.65 |
|  | 중 간 층 | 1,527 | 1.6 | 5.8 | 28.8 | 45.3 | 18.5 | 7.4 | 63.8 | 68.27 | 3.73 |
|  | 상 층 | 122 | 2.6 | 8.1 | 25.2 | 47.0 | 17.1 | 10.7 | 64.1 | 66.98 | 3.68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2.7 | 7.8 | 28.9 | 43.8 | 16.8 | 10.5 | 60.6 | 66.04 | 3.64 |
|  | 중 도 | 1,462 | 2.1 | 6.3 | 32.9 | 44.7 | 14.0 | 8.4 | 58.7 | 65.54 | 3.62 |
|  | 보 수 | 855 | 0.5 | 5.1 | 23.4 | 50.7 | 20.4 | 5.6 | 71.1 | 71.33 | 3.85 |
| 지역 별 | 서 울 | 606 | 2.8 | 4.1 | 26.7 | 48.8 | 17.5 | 6.9 | 66.3 | 68.54 | 3.74 |
|  | 부 산 | 212 | 0.5 | 9.2 | 31.6 | 40.9 | 17.9 | 9.7 | 58.8 | 66.63 | 3.67 |
|  | 대 구 | 146 | 0.0 | 6.0 | 25.2 | 41.9 | 26.9 | 6.0 | 68.8 | 72.42 | 3.90 |
|  | 인 천 | 170 | 1.2 | 3.6 | 21.2 | 50.5 | 23.6 | 4.7 | 74.0 | 72.92 | 3.92 |
|  | 광 주 | 82 | 1.0 | 5.0 | 39.4 | 43.5 | 11.2 | 6.0 | 54.6 | 64.71 | 3.59 |
|  | 대 전 | 89 | 3.9 | 9.6 | 22.0 | 47.7 | 16.8 | 13.5 | 64.5 | 65.97 | 3.64 |
|  | 울 산 | 67 | 1.5 | 2.7 | 42.8 | 39.0 | 14.1 | 4.1 | 53.0 | 65.37 | 3.61 |
|  | 세 종 | 10 | 0.0 | 4.5 | 15.5 | 46.5 | 33.5 | 4.5 | 80.0 | 77.25 | 4.09 |
|  | 경 7 | 707 | 1.8 | 6.5 | 31.2 | 50.2 | 10.4 | 8.3 | 60.6 | 65.22 | 3.61 |
|  | 강 원 | 91 | 1.9 | 15.2 | 33.3 | 40.0 | 9.5 | 17.1 | 49.5 | 59.98 | 3.40 |
|  | 충 북 | 92 | 1.9 | 4.8 | 31.0 | 54.8 | 7.5 | 6.7 | 62.3 | 65.31 | 3.61 |
|  | 충 남 | 120 | 1.5 | 7.7 | 33.7 | 50.8 | 6.2 | 9.3 | 57.0 | 63.11 | 3.52 |
|  | 전 早 | 107 | 1.6 | 9.2 | 42.0 | 38.1 | 9.1 | 10.8 | 47.2 | 60.96 | 3.44 |
|  | 전 남 | 113 | 3.2 | 9.1 | 31.8 | 32.5 | 23.3 | 12.3 | 55.9 | 65.92 | 3.64 |
|  | 경 昂 | 161 | 0.6 | 4.3 | 28.0 | 53.7 | 13.4 | 4.9 | 67.0 | 68.71 | 3.75 |
|  | 경 남 | 193 | 2.1 | 7.3 | 24.1 | 38.2 | 28.2 | 9.4 | 66.5 | 70.82 | 3.83 |
|  | 제 주 | 34 | 0.0 | 0.0 | 6.7 | 22.0 | 71.3 | 0.0 | 93.3 | 91.15 | 4.65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2.1 | 5.2 | 28.2 | 49.7 | 14.8 | 7.3 | 64.5 | 67.46 | 3.70 |
|  | 충 청 권 | 311 | 2.3 | 7.3 | 29.0 | 51.0 | 10.5 | 9.6 | 61.5 | 65.04 | 3.60 |
|  | 호 남 권 | 302 | 2.0 | 8.0 | 37.5 | 37.5 | 15.0 | 10.0 | 52.5 | 63.83 | 3.55 |
|  | 경 상 권 | 779 | 0.9 | 6.5 | 28.8 | 42.9 | 20.9 | 7.4 | 63.8 | 69.07 | 3.76 |
|  | 강 원 / 제 주 | 125 | 1.4 | 11.1 | 26.1 | 35.1 | 26.3 | 12.5 | 61.4 | 68.46 | 3.74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1.8 | 5.4 | 27.9 | 46.2 | 18.7 | 7.2 | 64.9 | 68.65 | 3.75 |
|  | 중 소 도 시 | 918 | 1.3 | 7.0 | 27.8 | 48.5 | 15.4 | 8.3 | 63.9 | 67.42 | 3.70 |
|  | 읍 면 지 역 | 710 | 2.3 | 7.2 | 33.9 | 43.3 | 13.3 | 9.5 | 56.6 | 64.55 | 3.58 |

## ［ 표 40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문）［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법은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 장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100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명） | $\begin{aligned} & \text { 선져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발도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롷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br> （점） | $\begin{aligned} & \text { 5섬 } \\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4.2 | 13.2 | 38.3 | 38.3 | 6.1 | 17.4 | 44.4 | 57.22 | 3.29 |
| 성 별 | 남 자 | 1，489 | 4.4 | 13.5 | 36.8 | 39.1 | 6.2 | 17.9 | 45.3 | 57.32 | 3.29 |
|  | 여 자 | 1，511 | 4.1 | 12.8 | 39.7 | 37.4 | 6.0 | 16.9 | 43.4 | 57.12 | 3.28 |
| 연 렁 별 | 20 대 | 529 | 7.3 | 17.0 | 38.7 | 31.4 | 5.6 | 24.3 | 37.0 | 52.71 | 3.11 |
|  | 30 대 | 560 | 8.6 | 15.4 | 39.7 | 32.2 | 4.2 | 24.0 | 36.4 | 52.02 | 3.08 |
|  | $\begin{array}{lll}4 & 0 & \text { 대 }\end{array}$ | 644 | 4.8 | 14.4 | 43.3 | 33.8 | 3.7 | 19.2 | 37.5 | 54.31 | 3.17 |
|  | 500 대 | 594 | 1.0 | 9.6 | 34.7 | 46.3 | 8.4 | 10.6 | 54.7 | 62.82 | 3.51 |
|  | 60 대 이 상 | 673 | 0.4 | 10.2 | 35.1 | 45.9 | 8.4 | 10.6 | 54.3 | 62.94 | 3.52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1.0 | 10.1 | 34.6 | 45.1 | 9.2 | 11.1 | 54.3 | 62.82 | 3.51 |
|  | 고 졸 | 1，196 | 1.9 | 11.0 | 38.3 | 42.5 | 6.3 | 12.9 | 48.8 | 60.10 | 3.40 |
|  | 대 재 이 상 | 1，409 | 7.0 | 15.9 | 39.3 | 32.8 | 5.0 | 22.9 | 37.8 | 53.21 | 3.13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4.8 | 13.0 | 36.6 | 39.1 | 6.6 | 17.8 | 45.7 | 57.41 | 3.30 |
|  | 200～299 만 원 | 485 | 4.2 | 13.8 | 40.9 | 35.1 | 6.0 | 18.0 | 41.1 | 56.23 | 3.25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3.1 | 12.6 | 38.2 | 41.3 | 4.8 | 15.7 | 46.1 | 58.00 | 3.32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3.2 | 12.3 | 40.8 | 36.9 | 6.8 | 15.5 | 43.7 | 57.95 | 3.32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5.5 | 13.9 | 35.7 | 38.4 | 6.5 | 19.4 | 44.9 | 56.57 | 3.26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1.6 | 17.8 | 31.2 | 40.6 | 8.8 | 19.4 | 49.4 | 59.32 | 3.37 |
|  | 자 영 업 | 666 | 1.6 | 11.6 | 35.4 | 44.3 | 7.0 | 13.2 | 51.3 | 60.87 | 3.43 |
|  | 블 루 칼 라 | 588 | 2.5 | 9.4 | 39.3 | 41.5 | 7.4 | 11.9 | 48.9 | 60.49 | 3.42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7.7 | 16.3 | 40.7 | 31.3 | 3.9 | 24.0 | 35.2 | 51.85 | 3.07 |
|  | 전 업 주 부 | 563 | 2.6 | 11.8 | 39.9 | 39.8 | 5.9 | 14.4 | 45.7 | 58.68 | 3.35 |
|  | 학 <br> 생 | 185 | 7.1 | 17.7 | 34.8 | 34.6 | 5.9 | 24.8 | 40.5 | 53.63 | 3.15 |
|  | 무 직／기 타 | 132 | 10.9 | 15.3 | 39.7 | 27.8 | 6.3 | 26.2 | 34.1 | 50.84 | 3.03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 672 | 9.1 | 16.2 | 38.7 | 30.5 | 5.6 | 25.3 | 36.1 | 51.80 | 3.07 |
|  | 기 <br> 혼 | 2，233 | 2.8 | 12.4 | 38.1 | 40.4 | 6.4 | 15.2 | 46.8 | 58.82 | 3.35 |
|  | 별거／사 별／기타 | 94 | 3.1 | 10.7 | 39.9 | 43.6 | 2.7 | 13.8 | 46.3 | 58.00 | 3.32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10.6 | 12.8 | 39.8 | 33.6 | 3.2 | 23.4 | 36.8 | 51.47 | 3.06 |
|  | 1 세 대 가 구 | 787 | 3.8 | 13.6 | 36.5 | 39.7 | 6.4 | 17.4 | 46.1 | 57.84 | 3.31 |
|  | 2 세 대 가 구 | 1，905 | 3.7 | 12.7 | 38.7 | 38.6 | 6.2 | 16.4 | 44.8 | 57.74 | 3.31 |
|  | 3 세 대 가 구 | 127 | 5.5 | 17.8 | 39.7 | 30.4 | 6.7 | 23.3 | 37.1 | 53.73 | 3.15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 & \text { 숭 } \\ & \text { 순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4.8 | 14.4 | 37.7 | 37.2 | 5.9 | 19.2 | 43.1 | 56.23 | 3.25 |
|  | 중 간 층 | 1，527 | 3.7 | 11.7 | 38.8 | 39.5 | 6.3 | 15.4 | 45.8 | 58.22 | 3.33 |
|  | 상 층 | 122 | 3.5 | 17.2 | 38.0 | 35.6 | 5.7 | 20.7 | 41.3 | 55.68 | 3.23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7.3 | 16.4 | 36.5 | 34.3 | 5.5 | 23.7 | 39.8 | 53.57 | 3.14 |
|  | 중 도 | 1，462 | 4.6 | 14.3 | 41.9 | 34.8 | 4.4 | 18.9 | 39.2 | 55.05 | 3.20 |
|  | 보 수 | 855 | 1.1 | 8.6 | 33.4 | 47.4 | 9.5 | 9.7 | 56.9 | 63.86 | 3.55 |
| 지역 별 | 서 울 | 606 | 5.1 | 9.3 | 36.8 | 45.4 | 3.4 | 14.4 | 48.8 | 58.18 | 3.33 |
|  | 부 산 | 212 | 3.9 | 11.6 | 38.9 | 37.5 | 8.2 | 15.5 | 45.7 | 58.62 | 3.34 |
|  | 대 구 | 146 | 2.0 | 10.0 | 30.6 | 42.3 | 15.1 | 12.0 | 57.4 | 64.61 | 3.58 |
|  | 인 천 | 170 | 3.5 | 17.7 | 28.2 | 44.8 | 5.8 | 21.2 | 50.6 | 57.91 | 3.32 |
|  | 광 주 | 82 | 1.0 | 10.1 | 42.6 | 37.3 | 9.1 | 11.1 | 46.4 | 60.86 | 3.43 |
|  | 대 전 | 89 | 5.8 | 8.7 | 42.9 | 35.6 | 7.0 | 14.5 | 42.6 | 57.31 | 3.29 |
|  | 울 산 | 67 | 3.0 | 9.4 | 43.2 | 38.9 | 5.5 | 12.4 | 44.3 | 58.60 | 3.34 |
|  | 세 종 | 10 | 2.5 | 7.8 | 32.3 | 41.3 | 16.0 | 10.3 | 57.3 | 65.13 | 3.61 |
|  | 경 기 | 707 | 4.9 | 14.1 | 43.5 | 33.2 | 4.4 | 19.0 | 37.6 | 54.52 | 3.18 |
|  | 강 원 | 91 | 3.9 | 17.2 | 45.3 | 31.7 | 1.9 | 21.1 | 33.7 | 52.66 | 3.11 |
|  | 충 昂 | 92 | 3.8 | 22.7 | 46.3 | 26.4 | 0.9 | 26.4 | 27.3 | 49.49 | 2.98 |
|  | 충 남 | 120 | 4.0 | 12.4 | 44.4 | 33.0 | 6.3 | 16.3 | 39.3 | 56.31 | 3.25 |
|  | 전 易 | 107 | 3.3 | 13.1 | 46.4 | 30.5 | 6.7 | 16.4 | 37.2 | 56.03 | 3.24 |
|  | 전 남 | 113 | 8.2 | 27.1 | 24.0 | 30.7 | 10.0 | 35.3 | 40.7 | 51.81 | 3.07 |
|  | 경 易 | 161 | 1.2 | 11.0 | 30.8 | 48.3 | 8.7 | 12.2 | 57.0 | 63.06 | 3.52 |
|  | 경 남 | 193 | 4.2 | 14.7 | 30.3 | 43.0 | 7.9 | 18.9 | 50.8 | 58.90 | 3.36 |
|  | 제 주 | 34 | 3.2 | 12.7 | 44.7 | 22.0 | 17.3 | 15.9 | 39.4 | 59.39 | 3.38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4.8 | 12.6 | 39.0 | 39.5 | 4.1 | 17.4 | 43.6 | 56.40 | 3.26 |
|  | 충 청 권 | 311 | 4.4 | 14.2 | 44.1 | 32.1 | 5.2 | 18.6 | 37.3 | 54.86 | 3.19 |
|  | 호 남 권 | 302 | 4.5 | 17.5 | 37.0 | 32.4 | 8.6 | 22.0 | 41.0 | 55.76 | 3.23 |
|  | 경 상 권 | 779 | 3.0 | 11.8 | 33.9 | 42.1 | 9.3 | 14.8 | 51.4 | 60.73 | 3.43 |
|  | 강 원／제 주 | 125 | 3.7 | 15.9 | 45.1 | 29.1 | 6.1 | 19.6 | 35.2 | 54.49 | 3.18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4.1 | 10.8 | 36.5 | 42.3 | 6.3 | 14.9 | 48.6 | 59.02 | 3.36 |
|  | 중 소 도 시 | 918 | 3.7 | 12.7 | 39.0 | 38.4 | 6.3 | 16.4 | 44.7 | 57.73 | 3.31 |
|  | 읍 면 지 역 | 710 | 5.2 | 18.3 | 40.8 | 30.2 | 5.4 | 23.5 | 35.6 | 53.09 | 3.12 |

[ 표 41 ]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문)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구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림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르ㄹㅓㅚㅓㅣ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ㄹㅗㅗ } \\ & \text { 그렁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사맘ㅁ | 확산 |
| 전 체 |  | 3,000 | 1.9 | 7.0 | 34.8 | 48.6 | 7.7 | 8.9 | 56.3 | 63.29 | 3.53 |
|  | 남 자 | 1,489 | 1.7 | 7.2 | 32.4 | 50.2 | 8.5 | 8.9 | 58.7 | 64.12 | 3.56 |
|  | 여 자 | 1,511 | 2.0 | 6.8 | 37.3 | 47.0 | 6.9 | 8.8 | 53.9 | 62.47 | 3.50 |
| 연 령 별 | 20 대 | 529 | 2.4 | 9.2 | 38.4 | 42.9 | 7.2 | 11.6 | 50.1 | 60.84 | 3.43 |
|  | 30 대 | 560 | 4.2 | 8.6 | 39.7 | 43.0 | 4.5 | 12.8 | 47.5 | 58.72 | 3.35 |
|  | 40 대 | 644 | 2.3 | 9.2 | 42.0 | 39.9 | 6.5 | 11.5 | 46.4 | 59.74 | 3.39 |
|  | 50 대 | 594 | 0.1 | 5.2 | 27.8 | 57.5 | 9.4 | 5.3 | 66.9 | 67.71 | 3.71 |
|  | 60 대 이 상 | 673 | 0.6 | 3.5 | 27.4 | 58.1 | 10.4 | 4.1 | 68.5 | 68.51 | 3.74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0.7 | 4.4 | 33.8 | 54.5 | 6.5 | 5.1 | 61.0 | 65.42 | 3.62 |
|  | 고 졸 | 1,196 | 1.0 | 5.7 | 31.0 | 53.3 | 9.1 | 6.7 | 62.4 | 65.98 | 3.64 |
|  | 대 재 이 상 | 1,409 | 2.9 | 9.0 | 38.4 | 42.9 | 6.8 | 11.9 | 49.7 | 60.41 | 3.42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3.1 | 7.8 | 35.3 | 48.5 | 5.3 | 10.9 | 53.8 | 61.28 | 3.45 |
|  | $200 \sim 299 \text { 만 원 }$ | 485 | 2.1 | 7.0 | 41.4 | 43.5 | 6.0 | 9.1 | 49.5 | 61.07 | 3.44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0.9 | 6.4 | 34.1 | 51.0 | 7.6 | 7.3 | 58.6 | 64.48 | 3.58 |
|  | 400~499 만 원 | 629 | 1.5 | 6.4 | 34.7 | 50.5 | 6.8 | 7.9 | 57.3 | 63.66 | 3.55 |
|  | 500 만 원 이상 | 853 | 2.2 | 7.6 | 31.6 | 48.2 | 10.4 | 9.8 | 58.6 | 64.26 | 3.57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0.8 | 5.1 | 31.0 | 56.1 | 7.0 | 5.9 | 63.1 | 65.89 | 3.64 |
|  | 자 영 업 | 666 | 0.8 | 5.3 | 28.2 | 57.5 | 8.2 | 6.1 | 65.7 | 66.75 | 3.67 |
|  | 블 루 칼 라 | 588 | 1.1 | 7.0 | 32.2 | 50.5 | 9.1 | 8.1 | 59.6 | 64.86 | 3.59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3.1 | 9.8 | 40.5 | 38.9 | 7.7 | 12.9 | 46.6 | 59.62 | 3.38 |
|  | 전 업 주 부 | 563 | 1.8 | 4.9 | 35.1 | 51.4 | 6.7 | 6.7 | 58.1 | 64.07 | 3.56 |
|  | 학 생 | 185 | 1.6 | 8.8 | 40.2 | 44.4 | 5.0 | 10.4 | 49.4 | 60.62 | 3.42 |
|  | 무 직 / 기 타 | 132 | 5.3 | 9.2 | 43.9 | 35.2 | 6.4 | 14.5 | 41.6 | 57.05 | 3.28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3.5 | 10.0 | 38.7 | 41.5 | 6.4 | 13.5 | 47.9 | 59.36 | 3.37 |
|  | 기 혼 | 2,233 | 1.5 | 6.2 | 33.8 | 50.4 | 8.2 | 7.7 | 58.6 | 64.41 | 3.58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7.1 | 32.1 | 55.7 | 5.1 | 7.1 | 60.8 | 64.72 | 3.59 |
| 가 구 구성 별 | 1 인 가 구 | 180 | 3.7 | 11.2 | 40.3 | 39.9 | 4.9 | 14.9 | 44.8 | 57.79 | 3.31 |
|  | 1 세 대 가구 | 787 | 2.2 | 7.9 | 34.3 | 48.7 | 6.9 | 10.1 | 55.6 | 62.55 | 3.50 |
|  | $2 \text { 세 대 가 구 }$ | 1,905 | 1.5 | 6.2 | 34.3 | 49.7 | 8.2 | 7.7 | 57.9 | 64.20 | 3.57 |
|  | $3 \text { 세 대 가 구 }$ | 127 | 1.8 | 7.9 | 38.6 | 43.5 | 8.2 | 9.7 | 51.7 | 62.11 | 3.48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ㅈㅓㅓ } \\ & \text { 곙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2.3 | 7.6 | 36.1 | 48.5 | 5.5 | 9.9 | 54.0 | 61.85 | 3.47 |
|  | 중 간 층 | 1,527 | 1.4 | 6.2 | 34.2 | 48.9 | 9.2 | 7.6 | 58.1 | 64.57 | 3.58 |
|  | 상 층 | 122 | 2.5 | 11.1 | 29.5 | 44.7 | 12.3 | 13.6 | 57.0 | 63.29 | 3.53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2.7 | 9.2 | 33.6 | 47.3 | 7.2 | 11.9 | 54.5 | 61.81 | 3.47 |
|  | 중 도 | 1,462 | 2.2 | 8.1 | 39.9 | 44.3 | 5.5 | 10.3 | 49.8 | 60.68 | 3.43 |
|  | 보 수 | 855 | 0.6 | 3.5 | 27.1 | 57.0 | 11.8 | 4.1 | 68.8 | 68.93 | 3.76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2.3 | 4.8 | 30.3 | 52.5 | 10.1 | 7.1 | 62.6 | 65.84 | 3.63 |
|  | 부 산 | 212 | 1.0 | 6.3 | 36.8 | 45.7 | 10.2 | 7.3 | 55.9 | 64.45 | 3.58 |
|  | 대 구 | 146 | 0.6 | 3.3 | 31.9 | 52.4 | 11.7 | 3.9 | 64.1 | 67.82 | 3.71 |
|  | 인 천 | 170 | 2.4 | 14.1 | 32.9 | 45.3 | 5.3 | 16.5 | 50.6 | 59.25 | 3.37 |
|  | 광 주 | 82 | 1.0 | 6.2 | 37.2 | 47.5 | 8.1 | 7.2 | 55.6 | 63.89 | 3.56 |
|  | 대 전 | 89 | 3.9 | 4.9 | 32.5 | 50.8 | 7.9 | 8.8 | 58.7 | 63.47 | 3.54 |
|  | 울 산 | 67 | 1.5 | 3.8 | 46.7 | 35.7 | 12.3 | 5.3 | 48.0 | 63.36 | 3.53 |
|  | 세 종 | 10 | 0.0 | 4.5 | 26.3 | 50.2 | 19.0 | 4.5 | 69.2 | 70.92 | 3.84 |
|  | 경 기 | 707 | 1.8 | 8.1 | 34.1 | 49.7 | 6.3 | 9.9 | 56.0 | 62.67 | 3.51 |
|  | 강 원 | 91 | 2.9 | 13.2 | 44.2 | 38.8 | 1.0 | 16.1 | 39.7 | 55.42 | 3.22 |
|  | 충 북 | 92 | 1.9 | 5.8 | 41.5 | 45.3 | 5.5 | 7.7 | 50.8 | 61.71 | 3.47 |
|  | 충 남 | 120 | 1.5 | 6.4 | 33.6 | 53.9 | 4.6 | 7.9 | 58.5 | 63.42 | 3.54 |
|  | 전 북 | 107 | 0.8 | 9.0 | 38.8 | 44.9 | 6.5 | 9.8 | 51.4 | 61.83 | 3.47 |
|  | 전 남 | 113 | 2.3 | 8.7 | 34.2 | 44.0 | 10.8 | 11.0 | 54.8 | 63.08 | 3.52 |
|  | 경 북 | 161 | 1.8 | 4.9 | 38.5 | 52.4 | 2.4 | 6.7 | 54.8 | 62.19 | 3.49 |
|  | 경 남 | 193 | 1.6 | 7.3 | 36.5 | 48.3 | 6.3 | 8.9 | 54.6 | 62.61 | 3.50 |
|  | 제 주 | 34 | 5.0 | 10.3 | 45.3 | 21.6 | 17.8 | 15.3 | 39.4 | 59.23 | 3.37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2.0 | 7.5 | 32.4 | 50.4 | 7.7 | 9.5 | 58.1 | 63.57 | 3.54 |
|  | 충 청 권 | 311 | 2.3 | 5.7 | 35.4 | 50.4 | 6.3 | 8.0 | 56.7 | 63.17 | 3.53 |
|  | 호 남 권 | 302 | 1.4 | 8.1 | 36.6 | 45.2 | 8.6 | 9.5 | 53.8 | 62.85 | 3.51 |
|  | 경 상 권 | 779 | 1.3 | 5.5 | 37.0 | 48.1 | 8.1 | 6.8 | 56.2 | 64.06 | 3.56 |
|  | 강 원 / 제 주 | 125 | 3.5 | 12.4 | 44.5 | 34.1 | 5.6 | 15.9 | 39.7 | 56.46 | 3.26 |
| 지 역 <br> 규모 별 | 대 도 시 | 1,372 | 1.9 | 6.1 | 33.2 | 49.3 | 9.5 | 8.0 | 58.8 | 64.63 | 3.59 |
|  | 중 소 도 시 | 918 | 1.8 | 6.6 | 33.2 | 51.9 | 6.5 | 8.4 | 58.4 | 63.72 | 3.55 |
|  | 읍 면 지 역 | 710 | 1.9 | 9.5 | 40.2 | 42.8 | 5.6 | 11.4 | 48.4 | 60.15 | 3.41 |

## [ 표 42 ] 국민의 일상생활 반영

문)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

[ 표 43 ] 이웃 간 분쟁 감소
문)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인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선혀 } \\ & \text { 겋ㅎ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렬도 } \\ & \text { ㄱㅣㅓㅎㅊ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한섬 } \\ & \text { 환산) } \\ & \text { (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5섣사 } \\ & \text { 환삼 } \\ & \text { (젬)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3.6 | 14.4 | 33.2 | 40.8 | 8.0 | 18.0 | 48.8 | 58.83 | 3.35 |
| 성 별 | 남 자 | 1,489 | 3.3 | 13.9 | 32.5 | 42.2 | 8.0 | 17.2 | 50.2 | 59.39 | 3.38 |
|  | 여 자 | 1,511 | 3.8 | 14.8 | 33.9 | 39.4 | 8.1 | 18.6 | 47.5 | 58.29 | 3.33 |
| 연 령 별 | 20 대 | 529 | 6.2 | 18.4 | 34.6 | 33.3 | 7.5 | 24.6 | 40.8 | 54.39 | 3.18 |
|  | 30 대 | 560 | 6.7 | 21.0 | 34.9 | 33.1 | 4.3 | 27.7 | 37.4 | 51.82 | 3.07 |
|  | 40 대 | 644 | 4.0 | 17.5 | 38.8 | 34.7 | 5.0 | 21.5 | 39.7 | 54.75 | 3.19 |
|  | 50 대 | 594 | 1.1 | 7.8 | 28.2 | 50.0 | 12.9 | 8.9 | 62.9 | 66.45 | 3.66 |
|  | 60 대 이 상 | 673 | 0.6 | 8.6 | 29.9 | 50.6 | 10.3 | 9.2 | 60.9 | 65.35 | 3.61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1.7 | 9.6 | 31.4 | 46.4 | 10.9 | 11.3 | 57.3 | 63.80 | 3.55 |
|  | 고 졸 | 1,196 | 1.8 | 10.6 | 31.9 | 47.3 | 8.5 | 12.4 | 55.8 | 62.51 | 3.50 |
|  | 대 재 이 상 | 1,409 | 5.6 | 18.9 | 34.9 | 33.7 | 6.9 | 24.5 | 40.6 | 54.32 | 3.17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5.6 | 13.6 | 36.3 | 37.6 | 6.9 | 19.2 | 44.5 | 56.62 | 3.26 |
|  | $200 \sim 299$ 만 원 | 485 | 4.8 | 16.9 | 34.7 | 36.6 | 7.0 | 21.7 | 43.6 | 56.02 | 3.24 |
|  | 300~399 만 원 | 655 | 2.1 | 13.9 | 32.4 | 44.9 | 6.7 | 16.0 | 51.6 | 60.04 | 3.40 |
|  | 400~499 만 원 | 629 | 2.3 | 12.5 | 33.3 | 43.2 | 8.7 | 14.8 | 51.9 | 60.89 | 3.44 |
|  | 500 만 원 이상 | 853 | 4.0 | 15.1 | 31.6 | 39.6 | 9.7 | 19.1 | 49.3 | 58.97 | 3.36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3.0 | 9.9 | 26.6 | 50.4 | 10.2 | 12.9 | 60.6 | 63.71 | 3.55 |
|  | 자 영 업 | 666 | 1.9 | 10.5 | 30.7 | 46.6 | 10.2 | 12.4 | 56.8 | 63.20 | 3.53 |
|  | 블 루 칼 라 | 588 | 3.1 | 12.7 | 29.8 | 45.1 | 9.4 | 15.8 | 54.5 | 61.23 | 3.45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5.2 | 20.2 | 36.4 | 31.9 | 6.3 | 25.4 | 38.2 | 53.46 | 3.14 |
|  | 전 업 주 부 | 563 | 2.6 | 12.2 | 36.7 | 42.4 | 6.1 | 14.8 | 48.5 | 59.32 | 3.37 |
|  | 학 생 | 185 | 4.8 | 17.3 | 36.3 | 35.6 | 6.1 | 22.1 | 41.7 | 55.21 | 3.21 |
|  | 무 직 / 기 타 | 132 | 7.7 | 19.5 | 31.3 | 32.0 | 9.6 | 27.2 | 41.6 | 54.07 | 3.16 |
| 혼 인 <br> 상 태 별 | 미 혼 | 672 | 7.5 | 19.4 | 34.7 | 31.6 | 6.7 | 26.9 | 38.3 | 52.67 | 3.11 |
|  | 기 | 2,233 | 2.5 | 13.1 | 33.0 | 43.0 | 8.4 | 15.6 | 51.4 | 60.41 | 3.42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10.0 | 27.8 | 52.7 | 9.5 | 10.0 | 62.2 | 65.42 | 3.62 |
| 가 구 <br> 구 성 별 | 1 인 가 구 | 180 | 6.4 | 14.4 | 36.8 | 35.7 | 6.7 | 20.8 | 42.4 | 55.53 | 3.22 |
|  | 1 세 대 가구 | 787 | 4.5 | 15.2 | 31.4 | 40.3 | 8.6 | 19.7 | 48.9 | 58.32 | 3.33 |
|  | 2 세 대 가구 | 1,905 | 2.7 | 13.4 | 33.8 | 41.9 | 8.2 | 16.1 | 50.1 | 59.86 | 3.39 |
|  | 3 세 대 가 구 | 127 | 6.7 | 23.8 | 31.5 | 33.2 | 4.8 | 30.5 | 38.0 | 51.39 | 3.06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ㅈㅓㅓ } \\ & \text { 계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3.9 | 15.2 | 33.7 | 40.7 | 6.6 | 19.1 | 47.3 | 57.74 | 3.31 |
|  | 중 간 층 | 1,527 | 3.2 | 13.7 | 32.9 | 40.8 | 9.5 | 16.9 | 50.3 | 59.92 | 3.40 |
|  | 상 층 | 122 | 5.1 | 14.4 | 32.9 | 41.5 | 6.2 | 19.5 | 47.7 | 57.34 | 3.29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3.9 | 15.0 | 30.9 | 39.4 | 10.8 | 18.9 | 50.2 | 59.55 | 3.38 |
|  | 중 도 | 1,462 | 4.2 | 16.8 | 35.5 | 37.5 | 6.0 | 21.0 | 43.5 | 56.04 | 3.24 |
|  | 보 수 | 855 | 2.2 | 9.7 | 31.2 | 47.5 | 9.4 | 11.9 | 56.9 | 63.04 | 3.52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4.3 | 11.6 | 34.4 | 42.6 | 7.1 | 15.9 | 49.7 | 59.16 | 3.37 |
|  | 부 산 | 212 | 1.9 | 9.6 | 29.1 | 44.7 | 14.7 | 11.5 | 59.4 | 65.16 | 3.61 |
|  | 대 구 | 146 | 2.7 | 9.3 | 38.4 | 40.9 | 8.6 | 12.0 | 49.5 | 60.86 | 3.43 |
|  | 인 천 | 170 | 2.9 | 10.6 | 21.8 | 44.7 | 20.0 | 13.5 | 64.7 | 67.05 | 3.68 |
|  | 광 주 | 82 | 4.0 | 7.3 | 32.3 | 50.2 | 6.1 | 11.4 | 56.3 | 61.75 | 3.47 |
|  | 대 전 | 89 | 2.9 | 15.4 | 31.1 | 39.7 | 10.9 | 18.3 | 50.6 | 60.05 | 3.40 |
|  | 울 산 | 67 | 1.5 | 11.8 | 28.9 | 44.9 | 12.8 | 13.3 | 57.7 | 63.93 | 3.56 |
|  | 세 종 | 10 | 4.5 | 6.5 | 11.8 | 47.2 | 30.0 | 11.0 | 77.2 | 72.92 | 3.92 |
|  | 경 기 | 707 | 2.8 | 19.0 | 34.9 | 38.7 | 4.7 | 21.7 | 43.4 | 55.91 | 3.24 |
|  | 강 원 | 91 | 4.7 | 17.7 | 37.8 | 37.8 | 2.0 | 22.4 | 39.8 | 53.65 | 3.15 |
|  | 충 북 | 92 | 1.0 | 11.4 | 31.9 | 47.1 | 8.6 | 12.4 | 55.7 | 62.73 | 3.51 |
|  | 충 남 | 120 | 3.9 | 9.3 | 39.2 | 39.2 | 8.5 | 13.2 | 47.7 | 59.77 | 3.39 |
|  | 전 북 | 107 | 4.0 | 14.1 | 42.2 | 34.8 | 5.0 | 18.1 | 39.8 | 55.67 | 3.23 |
|  | 전 남 | 113 | 6.0 | 15.0 | 24.9 | 42.2 | 11.9 | 20.9 | 54.1 | 59.79 | 3.39 |
|  | 경 북 | 161 | 2.4 | 13.3 | 40.8 | 33.6 | 9.9 | 15.8 | 43.5 | 58.78 | 3.35 |
|  | 경 남 | 193 | 6.3 | 21.0 | 28.1 | 41.4 | 3.2 | 27.3 | 44.6 | 53.55 | 3.14 |
|  | 제 주 | 34 | 11.8 | 45.7 | 25.5 | 15.3 | 1.8 | 57.4 | 17.1 | 37.41 | 2.50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3.4 | 15.0 | 33.2 | 41.0 | 7.4 | 18.4 | 48.4 | 58.51 | 3.34 |
|  | 충 청 권 | 311 | 2.8 | 11.6 | 33.8 | 42.0 | 9.9 | 14.4 | 51.9 | 61.15 | 3.45 |
|  | 호 남 권 | 302 | 4.8 | 12.6 | 33.0 | 41.7 | 7.9 | 17.4 | 49.6 | 58.86 | 3.35 |
|  | 경 상 권 | 779 | 3.2 | 13.3 | 33.0 | 40.9 | 9.5 | 16.5 | 50.4 | 60.05 | 3.40 |
|  | 강 원 / 제 주 | 125 | 6.7 | 25.3 | 34.5 | 31.7 | 1.9 | 32.0 | 33.6 | 49.23 | 2.97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3.4 | 10.9 | 31.9 | 43.4 | 10.5 | 14.3 | 53.9 | 61.69 | 3.47 |
|  | 중 소 도 시 | 918 | 2.7 | 15.1 | 35.4 | 40.0 | 6.7 | 17.8 | 46.7 | 58.20 | 3.33 |
|  | 읍 면 지 역 | 710 | 5.0 | 20.1 | 33.1 | 36.6 | 5.0 | 25.1 | 41.6 | 54.13 | 3.17 |

[ 표 44 ] 범죄 감소
문)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인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럼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frac{\text { 환산 }}{(ㅈ ㅓ ㅁ) ~}$ | $\begin{aligned} & \text { 홤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4.1 | 11.4 | 28.0 | 43.7 | 12.8 | 15.5 | 56.5 | 62.45 | 3.50 |
| 성 별 | 남 자 | 1,489 | 3.2 | 10.5 | 29.1 | 45.3 | 11.9 | 13.7 | 57.2 | 63.04 | 3.52 |
|  | 여 자 | 1,511 | 4.9 | 12.3 | 27.0 | 42.0 | 13.8 | 17.2 | 55.8 | 61.85 | 3.47 |
| 연 령 별 | 20 대 | 529 | 8.8 | 17.9 | 26.1 | 37.5 | 9.8 | 26.7 | 47.3 | 55.38 | 3.22 |
|  | 30 대 | 560 | 7.5 | 15.2 | 33.0 | 35.3 | 9.1 | 22.7 | 44.4 | 55.80 | 3.23 |
|  | 40 대 | 644 | 4.4 | 12.2 | 34.2 | 41.1 | 8.2 | 16.6 | 49.3 | 59.10 | 3.36 |
|  | 50 대 | 594 | 0.9 | 6.7 | 24.3 | 50.0 | 18.0 | 7.6 | 68.0 | 69.38 | 3.78 |
|  | 60 대 이 상 | 673 | 0.0 | 6.5 | 22.8 | 52.4 | 18.3 | 6.5 | 70.7 | 70.61 | 3.82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0.7 | 7.8 | 25.2 | 49.7 | 16.6 | 8.5 | 66.3 | 68.44 | 3.74 |
|  | 고 졸 | 1,196 | 2.2 | 9.8 | 25.2 | 47.9 | 14.9 | 12.0 | 62.8 | 65.88 | 3.64 |
|  | 대 재 이 상 | 1,409 | 6.6 | 13.8 | 31.2 | 38.3 | 10.0 | 20.4 | 48.3 | 57.85 | 3.31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4.7 | 11.1 | 26.8 | 43.8 | 13.6 | 15.8 | 57.4 | 62.65 | 3.51 |
|  | 200~299 만 원 | 485 | 5.4 | 12.7 | 29.9 | 42.9 | 9.1 | 18.1 | 52.0 | 59.43 | 3.38 |
|  | 300~399 만 원 | 655 | 2.2 | 12.1 | 27.1 | 45.6 | 13.0 | 14.3 | 58.6 | 63.82 | 3.55 |
|  | 400~499 만 원 | 629 | 3.6 | 10.3 | 28.7 | 44.5 | 12.9 | 13.9 | 57.4 | 63.19 | 3.53 |
|  | 500 만 원 이상 | 853 | 4.9 | 11.1 | 27.7 | 41.9 | 14.4 | 16.0 | 56.3 | 62.46 | 3.50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0.8 | 11.9 | 20.3 | 45.6 | 21.5 | 12.7 | 67.1 | 68.79 | 3.75 |
|  | 자 영 업 | 666 | 1.3 | 8.2 | 26.3 | 50.3 | 13.8 | 9.5 | 64.1 | 66.75 | 3.67 |
|  | 블 루 칼 라 | 588 | 3.3 | 10.9 | 28.0 | 43.8 | 14.0 | 14.2 | 57.8 | 63.58 | 3.54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6.7 | 15.2 | 31.4 | 38.4 | 8.3 | 21.9 | 46.7 | 56.62 | 3.26 |
|  | 전 업 주 부 | 563 | 2.9 | 9.3 | 27.1 | 45.5 | 15.2 | 12.2 | 60.7 | 65.18 | 3.61 |
|  | 학 생 | 185 | 8.6 | 15.6 | 28.0 | 38.9 | 8.9 | 24.2 | 47.8 | 55.97 | 3.24 |
|  | 무 직 / 기 타 | 132 | 9.0 | 10.7 | 30.0 | 35.7 | 14.7 | 19.7 | 50.4 | 59.12 | 3.36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8.7 | 16.5 | 29.0 | 36.4 | 9.4 | 25.2 | 45.8 | 55.33 | 3.21 |
|  | 기 혼 | 2,233 | 2.9 | 10.1 | 27.7 | 45.6 | 13.7 | 13.0 | 59.3 | 64.29 | 3.57 |
|  | 별거/사별/기타 | 94 | 0.0 | 5.7 | 27.7 | 49.5 | 17.0 | 5.7 | 66.5 | 69.47 | 3.78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 180 | 8.1 | 12.9 | 32.8 | 37.0 | 9.2 | 21.0 | 46.2 | 56.56 | 3.26 |
|  | 1 세 대 가 구 | 787 | 3.7 | 11.8 | 26.5 | 44.5 | 13.5 | 15.5 | 58.0 | 63.09 | 3.52 |
|  | 2 세 대 가구 | 1,905 | 3.7 | 10.8 | 28.6 | 43.7 | 13.2 | 14.5 | 56.9 | 62.97 | 3.52 |
|  | 3 세 대 가 구 | 127 | 6.8 | 15.5 | 21.9 | 46.7 | 9.2 | 22.3 | 55.9 | 58.99 | 3.36 |
|  | 하 층 | 1,352 | 4.0 | 12.7 | 27.9 | 44.4 | 11.0 | 16.7 | 55.4 | 61.44 | 3.46 |
|  | 중 간 층 | 1,527 | 4.0 | 10.2 | 27.8 | 43.6 | 14.4 | 14.2 | 58.0 | 63.56 | 3.54 |
|  | 상 층 | 122 | 6.3 | 12.2 | 32.0 | 35.3 | 14.1 | 18.5 | 49.4 | 59.68 | 3.39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5.2 | 11.6 | 25.5 | 44.2 | 13.4 | 16.8 | 57.6 | 62.28 | 3.49 |
|  | 중 도 | 1,462 | 4.9 | 13.4 | 30.6 | 41.9 | 9.1 | 18.3 | 51.0 | 59.23 | 3.37 |
|  | 보 수 | 855 | 1.7 | 7.8 | 25.6 | 46.3 | 18.7 | 9.5 | 65.0 | 68.08 | 3.72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4.9 | 8.8 | 21.3 | 47.5 | 17.6 | 13.6 | 65.0 | 66.02 | 3.64 |
|  | 부 산 | 212 | 2.9 | 8.7 | 30.0 | 36.5 | 21.9 | 11.6 | 58.4 | 66.46 | 3.66 |
|  | 대 구 | 146 | 2.0 | 16.7 | 25.8 | 43.7 | 11.8 | 18.7 | 55.5 | 61.66 | 3.47 |
|  | 인 천 | 170 | 4.7 | 8.9 | 18.2 | 52.3 | 15.9 | 13.6 | 68.2 | 66.45 | 3.66 |
|  | 광 주 | 82 | 2.0 | 9.1 | 33.3 | 49.6 | 6.0 | 11.0 | 55.6 | 62.16 | 3.49 |
|  | 대 전 | 89 | 4.0 | 9.0 | 33.5 | 40.7 | 12.8 | 13.0 | 53.5 | 62.30 | 3.49 |
|  | 울 산 | 67 | 2.3 | 8.9 | 39.2 | 38.4 | 11.2 | 11.2 | 49.6 | 61.81 | 3.47 |
|  | 세 종 | 10 | 2.5 | 8.5 | 21.3 | 32.2 | 35.5 | 11.0 | 67.7 | 72.42 | 3.90 |
|  | 경 | 707 | 3.4 | 14.1 | 31.6 | 43.6 | 7.3 | 17.5 | 50.9 | 59.29 | 3.37 |
|  | 강 원 | 91 | 6.7 | 15.2 | 28.2 | 46.3 | 3.7 | 21.8 | 50.0 | 56.28 | 3.25 |
|  | 충 북 | 92 | 1.0 | 9.5 | 29.1 | 49.2 | 11.1 | 10.5 | 60.4 | 64.99 | 3.60 |
|  | 충 남 | 120 | 5.3 | 6.9 | 33.1 | 37.6 | 17.0 | 12.2 | 54.6 | 63.52 | 3.54 |
|  | 전 북 | 107 | 4.9 | 11.7 | 39.7 | 31.5 | 12.3 | 16.6 | 43.7 | 58.63 | 3.35 |
|  | 전 남 | 113 | 2.3 | 11.8 | 26.9 | 39.3 | 19.8 | 14.1 | 59.1 | 65.61 | 3.62 |
|  | 경 早 | 161 | 3.1 | 5.5 | 31.3 | 52.2 | 8.0 | 8.5 | 60.1 | 64.13 | 3.57 |
|  | 경 남 | 193 | 5.2 | 17.3 | 25.1 | 39.4 | 13.1 | 22.5 | 52.4 | 59.44 | 3.38 |
|  | 제 주 | 34 | 25.0 | 29.0 | 19.0 | 21.9 | 5.1 | 54.1 | 27.0 | 38.23 | 2.53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4.2 | 11.3 | 25.9 | 46.2 | 12.5 | 15.5 | 58.7 | 62.86 | 3.51 |
|  | 충 청 권 | 311 | 3.6 | 8.3 | 31.7 | 41.8 | 14.7 | 11.9 | 56.5 | 63.89 | 3.56 |
|  | 호 남 권 | 302 | 3.1 | 11.0 | 33.2 | 39.3 | 13.4 | 14.1 | 52.7 | 62.20 | 3.49 |
|  | 경 상 권 | 779 | 3.3 | 11.7 | 29.1 | 42.0 | 14.0 | 15.0 | 56.0 | 62.94 | 3.52 |
|  | 강 원 / 제 주 | 125 | 11.7 | 18.9 | 25.7 | 39.7 | 4.1 | 30.6 | 43.8 | 51.37 | 3.05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모 별 } \end{aligned}$ |  | 1,372 | 3.9 | 9.7 | 25.1 | 45.2 | 16.1 | 13.6 | 61.3 | 65.00 | 3.60 |
|  | 중 소 도 시 | 918 | 3.5 | 11.9 | 31.6 | 44.4 | 8.7 | 15.4 | 53.1 | 60.70 | 3.43 |
|  | 읍 면 지 역 | 710 | 5.2 | 14.1 | 29.0 | 39.7 | 11.9 | 19.3 | 51.6 | 59.77 | 3.39 |

[ 표 45 ] 공무원 부패 방지
문)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ㅚㅈㅣ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로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9.3 | 20.9 | 33.8 | 31.5 | 4.5 | 30.2 | 36.0 | 50.27 | 3.01 |
| 성 별 | 남 자 | 1,489 | 8.8 | 21.4 | 33.2 | 31.7 | 4.9 | 30.2 | 36.6 | 50.57 | 3.02 |
|  | 여 자 | 1,511 | 9.7 | 20.4 | 34.3 | 31.4 | 4.2 | 30.1 | 35.6 | 49.96 | 3.00 |
| 연 령 별 | 20 대 | 529 | 14.4 | 25.3 | 30.4 | 25.9 | 4.0 | 39.7 | 29.9 | 44.93 | 2.80 |
|  | 30 대 | 560 | 17.2 | 24.0 | 31.8 | 23.6 | 3.4 | 41.2 | 27.0 | 42.99 | 2.72 |
|  | 40 대 | 644 | 13.6 | 24.0 | 33.3 | 26.6 | 2.5 | 37.6 | 29.1 | 45.09 | 2.80 |
|  | 50 대 | 594 | 1.4 | 18.2 | 34.9 | 39.4 | 6.1 | 19.6 | 45.5 | 57.65 | 3.31 |
|  | 60 대 이 상 | 673 | 1.5 | 14.4 | 37.3 | 40.2 | 6.5 | 15.9 | 46.7 | 58.94 | 3.36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2.4 | 10.9 | 34.9 | 42.9 | 8.8 | 13.3 | 51.7 | 61.19 | 3.45 |
|  | 고 졸 | 1,196 | 4.6 | 21.5 | 36.1 | 33.9 | 4.0 | 26.1 | 37.9 | 52.77 | 3.11 |
|  | 대 재 이 상 | 1,409 | 15.2 | 23.2 | 31.5 | 26.3 | 3.8 | 38.4 | 30.1 | 45.08 | 2.80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8.8 | 14.7 | 32.8 | 36.9 | 6.9 | 23.5 | 43.8 | 54.62 | 3.18 |
|  | 200~299 만 원 | 485 | 10.9 | 22.9 | 35.9 | 26.2 | 4.1 | 33.8 | 30.3 | 47.40 | 2.90 |
|  | 300~399 만 원 | 655 | 8.2 | 20.9 | 34.0 | 32.9 | 4.2 | 29.1 | 37.1 | 51.01 | 3.04 |
|  | 400~499 만 원 | 629 | 7.6 | 21.9 | 35.1 | 30.9 | 4.4 | 29.5 | 35.3 | 50.68 | 3.03 |
|  | 500 만 원 이상 | 853 | 10.7 | 21.9 | 31.8 | 31.5 | 4.0 | 32.6 | 35.5 | 49.08 | 2.96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4.6 | 12.2 | 37.2 | 35.5 | 10.6 | 16.8 | 46.1 | 58.83 | 3.35 |
|  | 자 영 업 | 666 | 4.7 | 20.0 | 31.9 | 37.6 | 5.7 | 24.7 | 43.3 | 54.89 | 3.20 |
|  | 블 루 칼 라 | 588 | 7.7 | 20.9 | 29.8 | 34.8 | 6.9 | 28.6 | 41.7 | 53.11 | 3.12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15.6 | 24.7 | 33.8 | 23.5 | 2.3 | 40.3 | 25.8 | 43.05 | 2.72 |
|  | 전 업 주 부 | 563 | 7.0 | 17.5 | 38.0 | 34.0 | 3.6 | 24.5 | 37.6 | 52.44 | 3.10 |
|  |  | 185 | 13.8 | 24.1 | 35.0 | 25.6 | 1.4 | 37.9 | 27.0 | 44.21 | 2.77 |
|  | 무 직 / 기 타 | 132 | 12.7 | 23.8 | 37.2 | 23.8 | 2.5 | 36.5 | 26.3 | 44.90 | 2.80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16.2 | 24.8 | 29.7 | 25.4 | 3.9 | 41.0 | 29.3 | 44.04 | 2.76 |
|  | 기 혼 | 2,233 | 7.5 | 19.7 | 34.8 | 33.3 | 4.7 | 27.2 | 38.0 | 52.03 | 3.08 |
|  | 별거/사 별/기타 | 94 | 3.5 | 22.9 | 36.4 | 33.0 | 4.1 | 26.4 | 37.1 | 52.81 | 3.11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14.9 | 30.1 | 30.8 | 20.8 | 3.3 | 45.0 | 24.1 | 41.89 | 2.68 |
|  | 1 세 대 가구 | 787 | 9.4 | 18.6 | 33.9 | 32.6 | 5.6 | 28.0 | 38.2 | 51.56 | 3.06 |
|  | 2 세 대 가 구 | 1,905 | 8.0 | 21.4 | 33.9 | 32.3 | 4.4 | 29.4 | 36.7 | 50.95 | 3.04 |
|  | 3 세 대 가 구 | 127 | 19.9 | 15.7 | 34.9 | 27.9 | 1.5 | 35.6 | 29.4 | 43.85 | 2.75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ㅈㅓㅓ } \\ & \text { 곙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0.6 | 22.4 | 33.2 | 30.2 | 3.6 | 33.0 | 33.8 | 48.46 | 2.94 |
|  | 중 간 층 | 1,527 | 8.2 | 19.5 | 34.7 | 32.6 | 5.0 | 27.7 | 37.6 | 51.69 | 3.07 |
|  | 상 층 | 122 | 8.1 | 22.5 | 29.1 | 32.1 | 8.2 | 30.6 | 40.3 | 52.48 | 3.10 |
| 이 념 성 향 별 | 진 보 | 683 | 12.0 | 19.5 | 31.8 | 32.4 | 4.3 | 31.5 | 36.7 | 49.38 | 2.98 |
|  | 충 도 | 1,462 | 10.8 | 23.3 | 35.8 | 26.3 | 3.9 | 34.1 | 30.2 | 47.29 | 2.89 |
|  | 보 수 | 855 | 4.6 | 18.1 | 31.8 | 39.7 | 5.9 | 22.7 | 45.6 | 56.05 | 3.24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0.5 | 17.0 | 32.9 | 36.6 | 3.0 | 27.5 | 39.6 | 51.17 | 3.05 |
|  | 부 산 | 212 | 4.8 | 14.6 | 27.6 | 47.1 | 5.9 | 19.4 | 53.0 | 58.65 | 3.35 |
|  | 대 구 | 146 | 8.0 | 27.4 | 32.3 | 28.5 | 3.9 | 35.3 | 32.4 | 48.25 | 2.93 |
|  | 인 천 | 170 | 9.4 | 42.4 | 26.5 | 18.8 | 2.9 | 51.8 | 21.7 | 40.84 | 2.63 |
|  | 광 주 | 82 | 8.0 | 11.9 | 29.4 | 40.7 | 10.0 | 19.9 | 50.8 | 58.25 | 3.33 |
|  | 대 전 | 89 | 9.7 | 11.9 | 43.7 | 22.9 | 11.9 | 21.6 | 34.7 | 53.83 | 3.15 |
|  | 울 산 | 67 | 8.8 | 9.6 | 43.5 | 28.0 | 10.1 | 18.4 | 38.1 | 55.25 | 3.21 |
|  | 세 종 | 10 | 7.0 | 4.0 | 31.0 | 29.8 | 28.2 | 11.0 | 58.0 | 67.04 | 3.68 |
|  | 경 기 | 707 | 9.3 | 27.4 | 36.5 | 24.9 | 2.0 | 36.7 | 26.9 | 45.72 | 2.83 |
|  | 강 원 | 91 | 11.5 | 25.2 | 31.1 | 25.8 | 6.5 | 36.7 | 32.3 | 47.66 | 2.91 |
|  | 충 북 | 92 | 3.8 | 20.1 | 48.6 | 19.9 | 7.6 | 23.9 | 27.4 | 51.82 | 3.07 |
|  | 충 남 | 120 | 7.7 | 16.4 | 38.9 | 28.4 | 8.6 | 24.1 | 37.0 | 53.47 | 3.14 |
|  | 전 북 | 107 | 8.2 | 9.9 | 33.0 | 39.8 | 9.2 | 18.0 | 49.0 | 58.00 | 3.32 |
|  | 전 남 | 113 | 6.5 | 16.9 | 35.7 | 33.0 | 7.9 | 23.4 | 40.9 | 54.70 | 3.19 |
|  | 경 북 | 161 | 4.3 | 14.0 | 30.6 | 47.5 | 3.7 | 18.2 | 51.1 | 58.08 | 3.32 |
|  | 경 남 | 193 | 13.6 | 22.1 | 30.3 | 31.9 | 2.1 | 35.7 | 34.0 | 46.71 | 2.87 |
|  | 제 주 | 34 | 52.8 | 13.6 | 18.5 | 13.6 | 1.5 | 66.4 | 15.0 | 24.31 | 1.97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9.8 | 24.9 | 33.9 | 29.0 | 2.5 | 34.7 | 31.5 | 47.39 | 2.90 |
|  | 충 청 권 | 311 | 7.1 | 15.8 | 42.9 | 24.3 | 9.9 | 22.9 | 34.2 | 53.52 | 3.14 |
|  | 호 남 권 | 302 | 7.5 | 13.1 | 33.0 | 37.5 | 8.9 | 20.6 | 46.4 | 56.83 | 3.27 |
|  | 경 상 권 | 779 | 7.8 | 18.3 | 31.2 | 38.3 | 4.5 | 26.1 | 42.8 | 53.33 | 3.13 |
|  | 강 원 / 제 주 | 125 | 22.7 | 22.1 | 27.7 | 22.4 | 5.1 | 44.8 | 27.5 | 41.31 | 2.65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8.9 | 19.9 | 32.2 | 34.1 | 4.9 | 28.8 | 39.0 | 51.53 | 3.06 |
|  | 중 소 도 시 | 918 | 7.6 | 22.7 | 35.3 | 31.1 | 3.4 | 30.3 | 34.5 | 49.97 | 3.00 |
|  | 읍 면 지 역 | 710 | 12.2 | 20.7 | 34.7 | 27.1 | 5.4 | 32.9 | 32.5 | 48.21 | 2.93 |

[ 표 46 ] 정부 권한 통제
문) [법의 실효성 보장]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


## [ 표 47 ] 국회의 공정한 입법

문) [법의 제정/집행]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든다

| 구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르ㄹㅓㅚ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대체ㄹㅗㅗ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사맘) | 환산 <br> (점) |
| 전 체 |  | 3,000 | 15.9 | 28.3 | 29.3 | 24.5 | 2.1 | 44.2 | 26.6 | 42.12 | 2.68 |
| 성 별 | 남 자 | 1,489 | 17.6 | 28.0 | 28.3 | 23.9 | 2.1 | 45.6 | 26.0 | 41.23 | 2.65 |
|  | 여 자 | 1,511 | 14.3 | 28.5 | 30.2 | 25.1 | 2.0 | 42.8 | 27.1 | 42.99 | 2.72 |
| 연 령 별 | 20 대 | 529 | 21.8 | 28.0 | 27.9 | 19.6 | 2.6 | 49.8 | 22.2 | 38.29 | 2.53 |
|  | 30 대 | 560 | 27.8 | 26.4 | 26.2 | 18.6 | 1.0 | 54.2 | 19.6 | 34.68 | 2.39 |
|  | 40 대 | 644 | 20.9 | 30.7 | 29.3 | 17.3 | 1.8 | 51.6 | 19.1 | 37.12 | 2.48 |
|  | 50 대 | 594 | 6.7 | 27.5 | 30.5 | 33.3 | 2.1 | 34.2 | 35.4 | 49.13 | 2.97 |
|  | 60 대 이 상 | 673 | 4.9 | 28.3 | 31.8 | 32.4 | 2.6 | 33.2 | 35.0 | 49.89 | 3.00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7.5 | 25.6 | 33.3 | 30.6 | 3.1 | 33.1 | 33.7 | 49.08 | 2.96 |
|  | 고 졸 | 1,196 | 9.5 | 30.5 | 30.9 | 26.9 | 2.1 | 40.0 | 29.0 | 45.41 | 2.82 |
|  | 대 재 이 상 | 1,409 | 23.7 | 27.1 | 26.7 | 20.7 | 1.7 | 50.8 | 22.4 | 37.37 | 2.49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3.2 | 25.7 | 34.1 | 24.6 | 2.4 | 38.9 | 27.0 | 44.33 | 2.77 |
|  | 200~299 만 원 | 485 | 21.7 | 27.8 | 26.8 | 20.6 | 3.0 | 49.5 | 23.6 | 38.87 | 2.55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5.1 | 27.8 | 30.2 | 25.1 | 1.9 | 42.9 | 27.0 | 42.73 | 2.71 |
|  | 400~499 만 원 | 629 | 11.2 | 32.4 | 30.9 | 24.6 | 0.9 | 43.6 | 25.5 | 42.87 | 2.71 |
|  | 500 만 원 이상 | 853 | 18.0 | 27.0 | 26.5 | 26.1 | 2.3 | 45.0 | 28.4 | 41.95 | 2.68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9.7 | 30.7 | 37.6 | 19.4 | 2.6 | 40.4 | 22.0 | 43.64 | 2.75 |
|  | 자 영 업 | 666 | 11.1 | 28.1 | 31.8 | 27.2 | 1.8 | 39.2 | 29.0 | 45.16 | 2.81 |
|  | 블 루 칼 라 | 588 | 11.9 | 27.8 | 29.0 | 29.0 | 2.3 | 39.7 | 31.3 | 45.50 | 2.82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26.2 | 27.8 | 26.6 | 17.6 | 1.8 | 54.0 | 19.4 | 35.25 | 2.41 |
|  | 전 업 주 부 | 563 | 10.8 | 28.6 | 28.9 | 29.5 | 2.2 | 39.4 | 31.7 | 45.88 | 2.84 |
|  | 학 생 | 185 | 19.0 | 30.9 | 28.8 | 19.2 | 2.2 | 49.9 | 21.4 | 38.70 | 2.55 |
|  | 무 직 / 기 타 | 132 | 25.1 | 26.4 | 25.9 | 20.4 | 2.2 | 51.5 | 22.6 | 37.07 | 2.48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24.2 | 28.1 | 27.1 | 18.3 | 2.3 | 52.3 | 20.6 | 36.58 | 2.46 |
|  | 기 | 2,233 | 13.6 | 28.2 | 29.9 | 26.2 | 2.1 | 41.8 | 28.3 | 43.71 | 2.75 |
|  | 별거/사별/기타 | 94 | 11.2 | 31.2 | 28.5 | 29.1 | 0.0 | 42.4 | 29.1 | 43.87 | 2.75 |
| 가 구 <br> 구 성 별 |  | 180 | 27.2 | 28.5 | 27.3 | 16.0 | 1.0 | 55.7 | 17.0 | 33.76 | 2.35 |
|  | 1 세 대 가 구 | 787 | 15.5 | 26.5 | 29.7 | 26.0 | 2.3 | 42.0 | 28.3 | 43.27 | 2.73 |
|  | 2 세 대 가구 | 1,905 | 14.2 | 29.0 | 29.9 | 24.9 | 2.1 | 43.2 | 27.0 | 42.97 | 2.72 |
|  | 3 세 대 가 구 | 127 | 29.0 | 28.9 | 20.1 | 21.0 | 0.9 | 57.9 | 21.9 | 33.95 | 2.36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ㅈㅓㅓ } \\ & \text { 계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7.6 | 29.5 | 29.8 | 21.1 | 2.1 | 47.1 | 23.2 | 40.14 | 2.61 |
|  | 중 간 층 | 1,527 | 14.1 | 27.8 | 28.6 | 27.5 | 1.9 | 41.9 | 29.4 | 43.83 | 2.75 |
|  | 상 층 | 122 | 20.7 | 20.1 | 31.1 | 24.0 | 4.0 | 40.8 | 28.0 | 42.61 | 2.70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19.4 | 23.5 | 25.6 | 28.8 | 2.7 | 42.9 | 31.5 | 42.96 | 2.72 |
|  | 중 도 | 1,462 | 18.2 | 30.4 | 29.7 | 20.1 | 1.6 | 48.6 | 21.7 | 39.11 | 2.56 |
|  | 보 수 | 855 | 9.3 | 28.4 | 31.4 | 28.6 | 2.3 | 37.7 | 30.9 | 46.57 | 2.86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5.5 | 23.3 | 27.8 | 31.2 | 2.1 | 38.9 | 33.3 | 45.24 | 2.81 |
|  | 부 산 | 212 | 10.1 | 16.9 | 33.6 | 36.0 | 3.4 | 27.0 | 39.4 | 51.43 | 3.06 |
|  | 대 구 | 146 | 13.4 | 33.7 | 27.1 | 23.8 | 2.0 | 47.1 | 25.8 | 41.85 | 2.67 |
|  | 인 천 | 170 | 19.4 | 37.1 | 12.9 | 29.4 | 1.2 | 56.5 | 30.6 | 38.95 | 2.56 |
|  | 광 주 | 82 | 13.8 | 18.5 | 23.3 | 42.3 | 2.0 | 32.3 | 44.3 | 50.07 | 3.00 |
|  | 대 전 | 89 | 13.7 | 24.9 | 42.5 | 15.9 | 3.0 | 38.6 | 18.9 | 42.41 | 2.70 |
|  | 울 산 | 67 | 15.7 | 14.1 | 45.2 | 22.9 | 2.2 | 29.8 | 25.0 | 45.42 | 2.82 |
|  | 세 종 | 10 | 33.0 | 12.3 | 5.3 | 34.2 | 15.2 | 45.3 | 49.3 | 46.54 | 2.86 |
|  | 경 기 | 707 | 14.4 | 38.2 | 30.3 | 16.4 | 0.6 | 52.7 | 17.0 | 37.64 | 2.51 |
|  | 강 원 | 91 | 23.0 | 22.8 | 34.4 | 19.0 | 0.8 | 45.8 | 19.8 | 37.95 | 2.52 |
|  | 충 家 | 92 | 16.3 | 29.3 | 44.1 | 9.4 | 1.0 | 45.6 | 10.3 | 37.36 | 2.49 |
|  | 충 남 | 120 | 7.7 | 17.8 | 45.3 | 24.7 | 4.6 | 25.5 | 29.2 | 50.16 | 3.01 |
|  | 전 북 | 107 | 10.6 | 15.7 | 32.2 | 38.2 | 3.2 | 26.3 | 41.4 | 51.93 | 3.08 |
|  | 전 남 | 113 | 16.0 | 30.4 | 27.7 | 23.3 | 2.5 | 46.5 | 25.8 | 41.46 | 2.66 |
|  | 경 북 | 161 | 12.2 | 22.1 | 27.7 | 34.3 | 3.8 | 34.3 | 38.1 | 48.85 | 2.95 |
|  | 경 남 | 193 | 26.8 | 41.3 | 17.7 | 11.5 | 2.6 | 68.1 | 14.1 | 30.45 | 2.22 |
|  | 제 주 | 34 | 72.4 | 13.9 | 9.2 | 2.9 | 1.5 | 86.3 | 4.4 | 11.78 | 1.47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5.5 | 32.0 | 27.3 | 23.9 | 1.3 | 47.5 | 25.2 | 40.90 | 2.64 |
|  | 충 청 권 | 311 | 12.8 | 23.0 | 42.9 | 17.9 | 3.4 | 35.8 | 21.3 | 44.04 | 2.76 |
|  | 호 남 권 | 302 | 13.5 | 22.0 | 28.1 | 33.8 | 2.6 | 35.5 | 36.4 | 47.51 | 2.90 |
|  | 경 상 권 | 779 | 15.8 | 26.9 | 28.2 | 26.2 | 2.9 | 42.7 | 29.1 | 43.39 | 2.74 |
|  | 강 원 / 제 주 | 125 | 36.5 | 20.4 | 27.5 | 14.6 | 1.0 | 56.9 | 15.6 | 30.83 | 2.23 |
| 지 역 규 모 별 | 대 도 시 | 1,372 | 14.7 | 24.5 | 28.3 | 30.2 | 2.2 | 39.2 | 32.4 | 45.17 | 2.81 |
|  | 중 소 도 시 | 918 | 12.9 | 35.0 | 28.9 | 20.9 | 2.2 | 47.9 | 23.1 | 41.13 | 2.65 |
|  | 읍 면 지 역 | 710 | 22.1 | 26.8 | 31.5 | 18.1 | 1.5 | 48.9 | 19.6 | 37.49 | 2.50 |

## ［ 표 48 ］법원의 공정한 판결

문）［법의 제정／집행］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 \text { ) } \end{aligned}$ |  |  | 전혀 | 별로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롷혀미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13.8 | 29.5 | 30.7 | 22.0 | 4.0 | 43.3 | 26.0 | 43.22 | 2.73 |
| 성 별 | 남 자 | 1，489 | 14.5 | 30.7 | 28.8 | 22.6 | 3.4 | 45.2 | 26.0 | 42.41 | 2.70 |
|  | 여 자 | 1，511 | 13.2 | 28.2 | 32.5 | 21.4 | 4.7 | 41.4 | 26.1 | 44.01 | 2.76 |
| 연 렁 별 | 20 대 | 529 | 20.3 | 31.2 | 29.8 | 15.3 | 3.3 | 51.5 | 18.6 | 37.53 | 2.50 |
|  | 30 대 | 560 | 23.0 | 29.4 | 29.1 | 15.2 | 3.4 | 52.4 | 18.6 | 36.64 | 2.47 |
|  | 40 대 | 644 | 19.3 | 32.0 | 29.2 | 16.0 | 3.5 | 51.3 | 19.5 | 38.09 | 2.52 |
|  | 50 대 | 594 | 5.0 | 27.6 | 30.8 | 31.4 | 5.2 | 32.6 | 36.6 | 51.00 | 3.04 |
|  | 60 대 이 상 | 673 | 3.6 | 27.4 | 33.9 | 30.4 | 4.6 | 31.0 | 35.0 | 51.21 | 3.05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5.8 | 24.5 | 34.5 | 30.1 | 5.1 | 30.3 | 35.2 | 51.05 | 3.04 |
|  | 고 졸 | 1，196 | 8.0 | 32.3 | 31.3 | 24.4 | 4.1 | 40.3 | 28.5 | 46.09 | 2.84 |
|  | 대 재 이 상 | 1，409 | 21.1 | 28.5 | 29.1 | 17.7 | 3.7 | 49.6 | 21.4 | 38.59 | 2.54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1.5 | 27.0 | 31.1 | 25.6 | 4.8 | 38.5 | 30.4 | 46.30 | 2.85 |
|  | 200～299 만 원 | 485 | 19.4 | 31.0 | 30.9 | 16.1 | 2.6 | 50.4 | 18.7 | 37.90 | 2.52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1.4 | 29.3 | 31.4 | 23.5 | 4.4 | 40.7 | 27.9 | 45.08 | 2.80 |
|  | 400～499 만 원 | 629 | 10.5 | 30.3 | 32.5 | 23.4 | 3.3 | 40.8 | 26.7 | 44.67 | 2.79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6.1 | 29.3 | 28.4 | 21.6 | 4.7 | 45.4 | 26.3 | 42.38 | 2.70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7.5 | 31.9 | 32.5 | 25.9 | 2.1 | 39.4 | 28.0 | 45.77 | 2.83 |
|  | 자 영 업 | 666 | 10.4 | 28.4 | 32.4 | 23.5 | 5.3 | 38.8 | 28.8 | 46.22 | 2.85 |
|  | 블 루 칼 라 | 588 | 10.7 | 27.8 | 28.0 | 26.7 | 6.9 | 38.5 | 33.6 | 47.86 | 2.91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21.2 | 31.5 | 29.4 | 16.6 | 1.3 | 52.7 | 17.9 | 36.35 | 2.45 |
|  | 전 업 주 부 | 563 | 8.5 | 28.1 | 34.4 | 24.6 | 4.3 | 36.6 | 28.9 | 47.04 | 2.88 |
|  | 학 생 | 185 | 20.7 | 33.4 | 27.5 | 15.8 | 2.6 | 54.1 | 18.4 | 36.58 | 2.46 |
|  | 무 직／기 타 | 132 | 23.8 | 29.5 | 27.7 | 16.8 | 2.2 | 53.3 | 19.0 | 36.02 | 2.44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22.7 | 30.8 | 28.2 | 14.5 | 3.8 | 53.5 | 18.3 | 36.48 | 2.46 |
|  | 기 혼 | 2，233 | 11.5 | 28.9 | 31.4 | 24.1 | 4.1 | 40.4 | 28.2 | 45.15 | 2.81 |
|  | 별거／사 별／기타 | 94 | 7.0 | 33.5 | 32.2 | 24.3 | 3.0 | 40.5 | 27.3 | 45.70 | 2.83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text { 인 가 구 }$ | 180 | 22.4 | 29.9 | 32.1 | 14.5 | 1.1 | 52.3 | 15.6 | 35.45 | 2.42 |
|  | 1 세 대 가 구 | 787 | 14.8 | 27.3 | 30.5 | 23.5 | 3.8 | 42.1 | 27.3 | 43.59 | 2.74 |
|  | 2 세 대 가 구 | 1，905 | 12.1 | 30.5 | 30.6 | 22.3 | 4.5 | 42.6 | 26.8 | 44.13 | 2.77 |
|  | 3 세 대 가 구 | 127 | 21.4 | 27.2 | 30.3 | 18.7 | 2.4 | 48.6 | 21.1 | 38.37 | 2.53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text { 층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4.7 | 32.0 | 29.1 | 20.3 | 3.8 | 46.7 | 24.1 | 41.63 | 2.67 |
|  | 중 간 층 | 1，527 | 12.9 | 27.8 | 32.2 | 23.2 | 3.9 | 40.7 | 27.1 | 44.37 | 2.77 |
|  | 상 층 | 122 | 16.4 | 21.9 | 28.8 | 25.4 | 7.5 | 38.3 | 32.9 | 46.42 | 2.86 |
| 이 념 성 향 별 | 진 보 | 683 | 18.8 | 25.4 | 27.4 | 24.7 | 3.7 | 44.2 | 28.4 | 42.28 | 2.69 |
|  | 중 도 | 1，462 | 15.9 | 32.1 | 31.8 | 16.5 | 3.7 | 48.0 | 20.2 | 39.98 | 2.60 |
|  | 보 수 | 855 | 6.3 | 28.3 | 31.3 | 29.2 | 4.9 | 34.6 | 34.1 | 49.51 | 2.98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3.3 | 25.4 | 31.8 | 25.6 | 3.9 | 38.7 | 29.5 | 45.37 | 2.81 |
|  | 부 산 | 212 | 7.2 | 19.9 | 34.9 | 33.1 | 4.9 | 27.1 | 38.0 | 52.14 | 3.09 |
|  | 대 구 | 146 | 16.0 | 31.8 | 31.2 | 20.3 | 0.6 | 47.8 | 21.0 | 39.45 | 2.58 |
|  | 인 천 | 170 | 13.5 | 41.2 | 16.5 | 21.2 | 7.6 | 54.7 | 28.8 | 42.03 | 2.68 |
|  | 광 주 | 82 | 13.0 | 19.5 | 31.5 | 29.9 | 6.1 | 32.5 | 36.0 | 49.18 | 2.97 |
|  | 대 전 | 89 | 15.8 | 31.0 | 23.5 | 24.7 | 5.0 | 46.8 | 29.7 | 43.01 | 2.72 |
|  | 울 산 | 67 | 14.5 | 20.2 | 18.7 | 38.9 | 7.7 | 34.6 | 46.6 | 51.30 | 3.05 |
|  | 세 종 | 10 | 35.0 | 7.8 | 10.7 | 15.7 | 30.8 | 42.8 | 46.5 | 49.88 | 3.00 |
|  | 경 7 | 707 | 13.6 | 34.5 | 34.7 | 14.9 | 2.3 | 48.2 | 17.2 | 39.41 | 2.58 |
|  | 강 원 | 91 | 20.6 | 29.0 | 29.5 | 18.9 | 2.0 | 49.6 | 20.9 | 38.17 | 2.53 |
|  | 충 早 | 92 | 12.4 | 28.4 | 49.9 | 9.3 | 0.0 | 40.8 | 9.3 | 39.05 | 2.56 |
|  | 충 남 | 120 | 8.5 | 27.2 | 31.2 | 26.1 | 7.0 | 35.7 | 33.1 | 49.00 | 2.96 |
|  | 전 易 | 107 | 9.8 | 11.5 | 35.6 | 34.9 | 8.2 | 21.3 | 43.1 | 55.06 | 3.20 |
|  | 전 남 | 113 | 12.8 | 35.5 | 28.7 | 18.3 | 4.8 | 48.3 | 23.0 | 41.68 | 2.67 |
|  | 경 昀 | 161 | 9.1 | 31.9 | 25.0 | 26.0 | 8.0 | 41.0 | 34.0 | 47.97 | 2.92 |
|  | 경 남 | 193 | 18.9 | 38.9 | 25.5 | 16.2 | 0.5 | 57.7 | 16.8 | 35.16 | 2.41 |
|  | 제 주 | 34 | 65.5 | 17.6 | 12.5 | 2.9 | 1.5 | 83.1 | 4.4 | 14.32 | 1.57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3.5 | 31.6 | 31.4 | 20.0 | 3.6 | 45.1 | 23.6 | 42.15 | 2.69 |
|  | 충 청 권 | 311 | 12.6 | 28.0 | 33.8 | 20.4 | 5.1 | 40.6 | 25.5 | 44.37 | 2.77 |
|  | 호 남 권 | 302 | 11.8 | 22.7 | 31.9 | 27.3 | 6.4 | 34.5 | 33.7 | 48.46 | 2.94 |
|  | 경 상 권 | 779 | 12.8 | 29.3 | 28.4 | 25.6 | 3.9 | 42.1 | 29.5 | 44.62 | 2.78 |
|  | 강 원／제 주 | 125 | 32.8 | 25.9 | 24.9 | 14.5 | 1.9 | 58.7 | 16.4 | 31.68 | 2.27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12.9 | 26.9 | 29.1 | 26.5 | 4.6 | 39.8 | 31.1 | 45.74 | 2.83 |
|  | 중 소 도 시 | 918 | 11.7 | 32.8 | 32.6 | 18.5 | 4.5 | 44.5 | 23.0 | 42.79 | 2.71 |
|  | 읍 면 지 역 | 710 | 18.4 | 30.1 | 31.2 | 17.9 | 2.4 | 48.5 | 20.3 | 38.91 | 2.56 |

[ 표 49 ] 정부의 공정한 집행
문) [법의 제정/집행]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 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답자 수 (명) | $\begin{aligned} & \text { 신여 } \\ & \text { 그런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글도 } \\ & \text { 근ㅎㅎㅈㅣ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렁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환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홤만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14.1 | 27.4 | 33.6 | 21.5 | 3.4 | 41.5 | 24.9 | 43.18 | 2.73 |
| 성 별 | 남 자 | 1,489 | 14.7 | 27.0 | 34.9 | 20.2 | 3.2 | 41.7 | 23.4 | 42.58 | 2.70 |
|  | 여 자 | 1,511 | 13.5 | 27.9 | 32.3 | 22.7 | 3.6 | 41.4 | 26.3 | 43.76 | 2.75 |
| 연 렁 별 | 20 대 | 529 | 21.7 | 29.6 | 28.5 | 17.0 | 3.2 | 51.3 | 20.2 | 37.60 | 2.50 |
|  | 30 대 | 560 | 24.3 | 27.7 | 30.1 | 14.6 | 3.2 | 52.0 | 17.8 | 36.16 | 2.45 |
|  | 40 대 | 644 | 17.8 | 30.7 | 35.1 | 14.2 | 2.2 | 48.5 | 16.4 | 38.07 | 2.52 |
|  | 50 대 | 594 | 5.3 | 24.9 | 36.4 | 29.6 | 3.8 | 30.2 | 33.4 | 50.42 | 3.02 |
|  | 60 대 이 상 | 673 | 3.7 | 24.6 | 36.7 | 30.4 | 4.6 | 28.3 | 35.0 | 51.88 | 3.08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5.8 | 22.7 | 37.4 | 28.0 | 6.0 | 28.5 | 34.0 | 51.38 | 3.06 |
|  | 고 졸 | 1,196 | 7.7 | 28.8 | 36.9 | 23.6 | 3.0 | 36.5 | 26.6 | 46.34 | 2.85 |
|  | 대 재 이 상 | 1,409 | 21.8 | 27.6 | 29.8 | 17.8 | 3.0 | 49.4 | 20.8 | 38.19 | 2.53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2.9 | 24.2 | 33.9 | 24.8 | 4.2 | 37.1 | 29.0 | 45.75 | 2.83 |
|  | 200~299 만 원 | 485 | 19.1 | 27.1 | 34.4 | 16.5 | 2.9 | 46.2 | 19.4 | 39.23 | 2.57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2.4 | 27.3 | 34.5 | 22.2 | 3.5 | 39.7 | 25.7 | 44.26 | 2.77 |
|  | $400 \sim 499$ 만 원 | 629 | 11.4 | 29.1 | 34.6 | 22.1 | 2.8 | 40.5 | 24.9 | 43.94 | 2.76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4.9 | 27.9 | 31.6 | 21.8 | 3.8 | 42.8 | 25.6 | 42.88 | 2.72 |
| 직 업 별 | 농 / 축 / 수 산 업 | 133 | 8.4 | 20.1 | 36.8 | 29.2 | 5.6 | 28.5 | 34.8 | 50.87 | 3.03 |
|  | 자 영 업 | 666 | 10.1 | 27.1 | 36.8 | 23.3 | 2.8 | 37.2 | 26.1 | 45.40 | 2.82 |
|  | 블 루 칼 라 | 588 | 10.0 | 26.4 | 33.6 | 24.0 | 5.9 | 36.4 | 29.9 | 47.35 | 2.89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22.4 | 29.0 | 31.4 | 15.0 | 2.3 | 51.4 | 17.3 | 36.42 | 2.46 |
|  | 전 업 주 부 | 563 | 9.1 | 26.8 | 34.9 | 26.2 | 3.0 | 35.9 | 29.2 | 46.82 | 2.87 |
|  | 학 생 | 185 | 20.4 | 31.8 | 27.8 | 18.0 | 2.0 | 52.2 | 20.0 | 37.33 | 2.49 |
|  | 무 직 / 기 타 | 132 | 23.8 | 29.3 | 29.9 | 14.0 | 3.0 | 53.1 | 17.0 | 35.78 | 2.43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23.1 | 29.2 | 29.0 | 15.3 | 3.4 | 52.3 | 18.7 | 36.70 | 2.47 |
|  | 기 혼 | 2,233 | 11.7 | 26.7 | 35.2 | 23.0 | 3.4 | 38.4 | 26.4 | 44.96 | 2.80 |
|  | 별거/사 별/기타 | 94 | 7.0 | 31.5 | 30.5 | 28.0 | 3.0 | 38.5 | 31.0 | 47.15 | 2.89 |
| 가 구 구 성 별 | 1 인 가 구 | 180 | 23.1 | 28.4 | 33.6 | 11.0 | 3.9 | 51.5 | 14.9 | 36.01 | 2.44 |
|  | 1 세 대 가 구 | 787 | 14.5 | 23.4 | 35.3 | 22.8 | 3.9 | 37.9 | 26.7 | 44.54 | 2.78 |
|  | 2 세 대 가 구 | 1,905 | 12.4 | 29.2 | 33.1 | 21.9 | 3.3 | 41.6 | 25.2 | 43.63 | 2.75 |
|  | 3 세 대 가 구 | 127 | 22.7 | 24.7 | 30.8 | 21.0 | 0.8 | 47.4 | 21.8 | 38.09 | 2.52 |
| 주 관 적 <br> 계 층 <br> 수 준 별 | 하 층 | 1,352 | 15.3 | 29.1 | 32.5 | 21.4 | 1.7 | 44.4 | 23.1 | 41.27 | 2.65 |
|  | 중 간 층 | 1,527 | 12.7 | 26.3 | 35.2 | 21.2 | 4.5 | 39.0 | 25.7 | 44.62 | 2.78 |
|  | 상 층 | 122 | 16.8 | 23.3 | 26.2 | 25.2 | 8.5 | 40.1 | 33.7 | 46.31 | 2.85 |
| 이 념 <br> 성 향 별 | 진 보 | 683 | 20.8 | 21.4 | 30.1 | 23.0 | 4.6 | 42.2 | 27.6 | 42.31 | 2.69 |
|  | 중 도 | 1,462 | 15.4 | 30.6 | 34.9 | 16.1 | 3.1 | 46.0 | 19.2 | 40.21 | 2.61 |
|  | 보 수 | 855 | 6.5 | 26.8 | 34.2 | 29.4 | 3.0 | 33.3 | 32.4 | 48.93 | 2.96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3.5 | 23.2 | 35.5 | 25.4 | 2.4 | 36.6 | 27.9 | 45.06 | 2.80 |
|  | 부 산 | 212 | 6.7 | 20.4 | 37.4 | 28.7 | 6.8 | 27.1 | 35.5 | 52.13 | 3.09 |
|  | 대 구 | 146 | 16.7 | 31.8 | 30.5 | 17.8 | 3.3 | 48.5 | 21.0 | 39.78 | 2.59 |
|  | 인 천 | 170 | 14.7 | 34.2 | 21.8 | 25.8 | 3.5 | 48.9 | 29.3 | 42.31 | 2.69 |
|  | 광 주 | 82 | 15.0 | 18.5 | 38.3 | 21.0 | 7.2 | 33.5 | 28.2 | 46.71 | 2.87 |
|  | 대 전 | 89 | 15.7 | 19.9 | 40.7 | 18.8 | 4.9 | 35.6 | 23.7 | 44.32 | 2.77 |
|  | 울 산 | 67 | 12.1 | 11.8 | 47.8 | 19.3 | 9.0 | 23.9 | 28.4 | 50.35 | 3.01 |
|  | 세 종 | 10 | 30.5 | 10.3 | 13.2 | 26.8 | 19.2 | 40.8 | 46.0 | 48.46 | 2.94 |
|  | 경 기 | 707 | 13.8 | 36.6 | 31.9 | 17.0 | 0.6 | 50.4 | 17.7 | 38.54 | 2.54 |
|  | 강 원 | 91 | 20.4 | 22.6 | 36.0 | 17.2 | 3.8 | 43.0 | 21.0 | 40.31 | 2.61 |
|  | 충 북 | 92 | 10.5 | 36.1 | 42.1 | 11.3 | 0.0 | 46.6 | 11.3 | 38.54 | 2.54 |
|  | 충 남 | 120 | 6.9 | 24.0 | 35.9 | 26.3 | 6.9 | 30.9 | 33.1 | 50.54 | 3.02 |
|  | 전 早 | 107 | 9.8 | 6.6 | 38.9 | 37.3 | 7.4 | 16.4 | 44.7 | 56.47 | 3.26 |
|  | 전 남 | 113 | 14.4 | 29.8 | 22.5 | 21.3 | 11.9 | 44.2 | 33.3 | 46.64 | 2.87 |
|  | 경 量 | 161 | 9.7 | 24.5 | 36.2 | 27.1 | 2.5 | 34.3 | 29.6 | 47.01 | 2.88 |
|  | 경 남 | 193 | 20.4 | 34.0 | 32.5 | 12.0 | 1.0 | 54.5 | 13.1 | 34.79 | 2.39 |
|  | 제 주 | 34 | 68.8 | 17.5 | 10.7 | 1.5 | 1.5 | 86.3 | 2.9 | 12.31 | 1.49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3.8 | 30.8 | 32.2 | 21.5 | 1.7 | 44.6 | 23.2 | 41.63 | 2.67 |
|  | 충 청 권 | 311 | 11.3 | 26.0 | 38.4 | 19.7 | 4.7 | 37.3 | 24.4 | 45.14 | 2.81 |
|  | 호 남 권 | 302 | 13.0 | 18.5 | 32.6 | 26.9 | 9.0 | 31.5 | 35.9 | 50.14 | 3.01 |
|  | 경 상 권 | 779 | 13.1 | 26.0 | 35.5 | 21.4 | 4.0 | 39.1 | 25.4 | 44.31 | 2.77 |
|  | 강 원 / 제 주 | 125 | 33.6 | 21.2 | 29.1 | 12.9 | 3.1 | 54.8 | 16.0 | 32.70 | 2.31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13.1 | 24.0 | 34.7 | 24.2 | 4.1 | 37.1 | 28.3 | 45.56 | 2.82 |
|  | 중 소 도 시 | 918 | 12.1 | 32.8 | 32.6 | 20.3 | 2.2 | 44.9 | 22.5 | 41.93 | 2.68 |
|  | 읍 면 지 역 | 710 | 18.5 | 27.2 | 33.0 | 17.6 | 3.7 | 45.7 | 21.3 | 40.18 | 2.61 |

문）［법의 제정／집행］－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

| $\begin{aligned} & \text { 구 분 } \\ & \text { (단위:\%)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응답자 수 } \\ \text { (명)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신여 } \\ & \text { 그런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를노 } \\ & \text { 그렁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보통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롤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그렿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그렇다 | 환산 | $\begin{aligned} & \text { 홤산 } \\ & \text { (점) } \end{aligned}$ |
| 전 체 |  | 3，000 | 14.0 | 30.4 | 33.6 | 19.2 | 2.9 | 44.4 | 22.1 | 41.63 | 2.67 |
| 성 별 | 남 자 | 1，489 | 14.6 | 30.8 | 32.8 | 18.7 | 3.2 | 45.4 | 21.9 | 41.27 | 2.65 |
|  | 여 자 | 1，511 | 13.5 | 29.9 | 34.3 | 19.7 | 2.6 | 43.4 | 22.3 | 42.00 | 2.68 |
| 연 렁 별 | 20 대 | 529 | 20.9 | 29.4 | 32.2 | 15.4 | 2.2 | 50.3 | 17.6 | 37.13 | 2.49 |
|  | 30 대 | 560 | 22.9 | 31.6 | 30.0 | 14.5 | 0.9 | 54.5 | 15.4 | 34.76 | 2.39 |
|  | 40 대 | 644 | 17.5 | 34.6 | 31.7 | 14.1 | 2.1 | 52.1 | 16.2 | 37.22 | 2.49 |
|  | 50 대 | 594 | 6.2 | 26.6 | 38.5 | 24.0 | 4.8 | 32.8 | 28.8 | 48.66 | 2.95 |
|  | 60 대 이 상 | 673 | 4.9 | 29.4 | 35.0 | 26.5 | 4.2 | 34.3 | 30.7 | 48.92 | 2.96 |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 395 | 6.4 | 23.8 | 38.1 | 27.6 | 4.1 | 30.2 | 31.7 | 49.86 | 2.99 |
|  | 고 졸 | 1，196 | 7.8 | 32.2 | 36.4 | 20.4 | 3.3 | 40.0 | 23.7 | 44.79 | 2.79 |
|  | 대 재 이 상 | 1，409 | 21.4 | 30.7 | 29.9 | 15.8 | 2.2 | 52.1 | 18.0 | 36.65 | 2.47 |
| 소 득 별 | 199 만 원 이하 | 379 | 12.7 | 27.1 | 35.6 | 20.4 | 4.3 | 39.8 | 24.7 | 44.15 | 2.77 |
|  | 200～299 만 원 | 485 | 20.1 | 28.1 | 31.6 | 17.6 | 2.7 | 48.2 | 20.3 | 38.70 | 2.55 |
|  | $300 \sim 399$ 만 원 | 655 | 11.5 | 30.6 | 34.9 | 20.2 | 2.8 | 42.1 | 23.0 | 43.04 | 2.72 |
|  | 400～499 만 원 | 629 | 10.8 | 31.0 | 36.5 | 18.7 | 3.0 | 41.8 | 21.7 | 43.04 | 2.72 |
|  | 500 만 원 이 상 | 853 | 15.5 | 32.5 | 30.6 | 19.0 | 2.4 | 48.0 | 21.4 | 40.07 | 2.60 |
| 직 업 별 | 농／축／수 산 업 | 133 | 11.3 | 23.2 | 35.3 | 22.3 | 7.9 | 34.5 | 30.2 | 48.11 | 2.92 |
|  | 자 영 업 | 666 | 9.6 | 31.7 | 32.3 | 22.2 | 4.2 | 41.3 | 26.4 | 44.96 | 2.80 |
|  | 블 루 칼 라 | 588 | 9.9 | 30.8 | 31.7 | 24.0 | 3.6 | 40.7 | 27.6 | 45.16 | 2.81 |
|  | 화 이 트 칼 라 | 733 | 22.6 | 31.2 | 31.1 | 13.7 | 1.4 | 53.8 | 15.1 | 35.01 | 2.40 |
|  | 전 업 주 부 | 563 | 9.6 | 29.0 | 39.5 | 19.8 | 2.1 | 38.6 | 21.9 | 43.96 | 2.76 |
|  | 학 생 | 185 | 18.6 | 31.7 | 35.2 | 13.4 | 1.1 | 50.3 | 14.5 | 36.69 | 2.47 |
|  | 무 직／기 타 | 132 | 22.3 | 28.6 | 32.5 | 14.6 | 2.1 | 50.9 | 16.7 | 36.44 | 2.46 |
| $\begin{aligned} & \text { 혼 인 } \\ & \text { 상 태 별 } \end{aligned}$ | 미 혼 | 672 | 22.1 | 31.6 | 29.4 | 14.6 | 2.3 | 53.7 | 16.9 | 35.81 | 2.43 |
|  | 기 혼 | 2，233 | 11.8 | 29.8 | 35.0 | 20.2 | 3.2 | 41.6 | 23.4 | 43.29 | 2.73 |
|  | 별거／사 별／기타 | 94 | 8.1 | 34.8 | 30.3 | 26.8 | 0.0 | 42.9 | 26.8 | 43.94 | 2.76 |
| $\begin{aligned} & \text { 가 구 } \\ & \text { 구 성 별 } \end{aligned}$ | 1 인 가 구 | 180 | 22.7 | 31.6 | 29.7 | 14.5 | 1.5 | 54.3 | 16.0 | 35.13 | 2.41 |
|  | 1 세 대 가 구 | 787 | 14.5 | 26.4 | 32.9 | 22.2 | 4.0 | 40.9 | 26.2 | 43.72 | 2.75 |
|  | 2 세 대 가 구 | 1，905 | 12.5 | 32.0 | 34.0 | 18.9 | 2.6 | 44.5 | 21.5 | 41.73 | 2.67 |
|  | 3 세 대 가 구 | 127 | 21.0 | 28.0 | 37.5 | 11.2 | 2.3 | 49.0 | 13.5 | 36.42 | 2.46 |
| $\begin{aligned} & \text { 주 관 적 } \\ & \text { 계 } \\ & \text { 수 준 별 } \end{aligned}$ | 하 층 | 1，352 | 14.3 | 31.0 | 33.9 | 18.4 | 2.4 | 45.3 | 20.8 | 40.85 | 2.63 |
|  | 중 간 층 | 1，527 | 13.4 | 30.3 | 33.5 | 19.7 | 3.1 | 43.7 | 22.8 | 42.21 | 2.69 |
|  | 상 층 | 122 | 18.0 | 24.1 | 31.2 | 21.2 | 5.6 | 42.1 | 26.8 | 43.11 | 2.72 |
| 이 념 성 향 별 | 진 보 | 683 | 19.0 | 26.4 | 30.3 | 21.8 | 2.4 | 45.4 | 24.2 | 40.56 | 2.62 |
|  | 중 도 | 1，462 | 15.4 | 32.9 | 34.5 | 14.7 | 2.5 | 48.3 | 17.2 | 38.97 | 2.56 |
|  | 보 수 | 855 | 7.6 | 29.3 | 34.5 | 24.7 | 4.0 | 36.9 | 28.7 | 47.04 | 2.88 |
| 지 역 별 | 서 울 | 606 | 13.1 | 26.7 | 36.8 | 22.6 | 0.8 | 39.8 | 23.4 | 42.80 | 2.71 |
|  | 부 산 | 212 | 9.6 | 26.3 | 35.3 | 22.9 | 5.9 | 35.9 | 28.8 | 47.30 | 2.89 |
|  | 대 구 | 146 | 16.7 | 29.8 | 33.6 | 18.5 | 1.3 | 46.5 | 19.8 | 39.48 | 2.58 |
|  | 인 천 | 170 | 12.9 | 36.0 | 24.7 | 22.8 | 3.6 | 48.9 | 26.4 | 42.03 | 2.68 |
|  | 광 주 | 82 | 13.1 | 23.7 | 35.9 | 17.9 | 9.4 | 36.8 | 27.3 | 46.71 | 2.87 |
|  | 대 전 | 89 | 15.7 | 16.9 | 43.6 | 20.8 | 3.0 | 32.6 | 23.8 | 44.64 | 2.79 |
|  | 울 산 | 67 | 10.7 | 19.3 | 38.9 | 22.2 | 9.0 | 29.9 | 31.1 | 49.87 | 2.99 |
|  | 세 종 | 10 | 34.2 | 11.2 | 5.3 | 38.2 | 11.2 | 45.3 | 49.3 | 45.25 | 2.81 |
|  | 경 기 | 707 | 14.6 | 38.3 | 31.3 | 14.6 | 1.3 | 52.9 | 15.9 | 37.43 | 2.50 |
|  | 강 원 | 91 | 22.5 | 25.2 | 29.4 | 20.0 | 2.9 | 47.7 | 22.9 | 38.89 | 2.56 |
|  | 충 易 | 92 | 11.5 | 29.6 | 45.9 | 11.2 | 1.8 | 41.1 | 13.0 | 40.55 | 2.62 |
|  | 충 남 | 120 | 5.4 | 29.4 | 33.6 | 28.6 | 3.1 | 34.8 | 31.6 | 48.63 | 2.95 |
|  | 전 早 | 107 | 9.8 | 14.8 | 44.7 | 26.7 | 4.0 | 24.6 | 30.7 | 50.08 | 3.00 |
|  | 전 남 | 113 | 14.0 | 31.4 | 26.2 | 17.0 | 11.5 | 45.3 | 28.5 | 45.18 | 2.81 |
|  | 경 早 | 161 | 9.7 | 28.7 | 30.1 | 27.6 | 3.8 | 38.5 | 31.4 | 46.74 | 2.87 |
|  | 경 남 | 193 | 16.8 | 41.9 | 33.0 | 6.8 | 1.6 | 58.7 | 8.4 | 33.63 | 2.35 |
|  | 제 주 | 34 | 70.8 | 17.5 | 8.7 | 1.5 | 1.5 | 88.3 | 2.9 | 11.33 | 1.45 |
| 권 역 별 | 수 도 권 | 1，483 | 13.8 | 33.3 | 32.8 | 18.8 | 1.3 | 47.1 | 20.1 | 40.15 | 2.61 |
|  | 충 청 권 | 311 | 11.1 | 25.3 | 39.2 | 21.5 | 2.9 | 36.4 | 24.4 | 44.99 | 2.80 |
|  | 호 남 권 | 302 | 12.3 | 23.4 | 35.4 | 20.6 | 8.3 | 35.7 | 28.9 | 47.33 | 2.89 |
|  | 경 상 권 | 779 | 12.8 | 30.7 | 33.7 | 19.0 | 3.8 | 43.5 | 22.8 | 42.55 | 2.70 |
|  | 강 원／제 주 | 125 | 35.6 | 23.1 | 23.8 | 14.9 | 2.5 | 58.7 | 17.4 | 31.40 | 2.26 |
| $\begin{aligned} & \text { 지 역 } \\ & \text { 규 모 별 } \end{aligned}$ | 대 도 시 | 1，372 | 13.0 | 26.9 | 35.2 | 21.8 | 3.0 | 39.9 | 24.8 | 43.74 | 2.75 |
|  | 중 소 도 시 | 918 | 11.5 | 35.2 | 32.8 | 18.6 | 1.9 | 46.7 | 20.5 | 41.06 | 2.64 |
|  | 읍 면 지 역 | 710 | 19.3 | 30.7 | 31.4 | 14.7 | 3.9 | 50.0 | 18.6 | 38.30 | 2.53 |

## V. 2015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 TIIIIIT: <br> 한국법제연구원 <br> 



## 2015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리서치센터 및 닐슨코리아 조사원 $\bigcirc \bigcirc \bigcirc$ 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하여 향후 법 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증진 및 법치국가 실현 등을 위한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bigcirc \bigcirc$ 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그 비밀이 철저히 보 장되며, 관련 정책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경제법제연구실장 현대호 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김명아 연락처) 044-861-0445

* 아시아리서치센터 및 닐슨코리아 아시아리서치 본부장 장영배 닐슨코리아 상무 최원석 연락처) 02-2122-7292

■ 응답자 선정 질문 : ○○님은 혹시 법 관련 분야에 종사하십니까?

## [법 관련분야]

* 사법기관 종사자
* 법 관련학자 및 법학 전공 학생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법 관련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법률 관련 업무 종사자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토 면접 진행)


## ※ 응답자 특성.

SQ1. 성별은?
(1) 남성
(2) 여성
$\mathrm{SQ} 2 . \mathrm{O}$ 님의 올해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qquad$ 세

SQ3. $O$ ○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6) 경남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 ○○님의 법에 대한 가치관, 인식 및 법생활과 관련해 여쫍겠습니다.

문1. OO 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1) 공평하다
(2) 민주적이다
(3) 불공평하다
(4) 권위적이다
(5) 기타 (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2. $○ ○$ 님은 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2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1)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2) 인터넷
(3) 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4) 정부 홍보물
(5) 주위 사람
(6) 학교
(7) 기타 (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3. OO 님은 보험이나 펀드를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매우 자세히 읽는다
(2) 대충 읽는다
(3) 별로 읽지 않는다
(4) 전혀 읽지 않는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4. $\bigcirc \bigcirc$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 잘 지켜지는 편이다
(3)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토 문4-1로 가시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4-1. (문4에서 ' 3,4 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7) 기타 (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5. $\bigcirc \bigcirc$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킨다
(2) 잘 지키는 편이다
(3)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지키지 않는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5-1. (문5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7) 기타 (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6. $\bigcirc \bigcirc$ 님은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4)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5) 기타 (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7. OO 님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렿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 잘 지켜지는 편이다
(3)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또 문7-1로 가시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7-1. (문7에서 ‘3, 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업주
(2) 근로자
(3) 정부
(4) 기타 ( )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8. OO 님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 현행 법령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3)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4) 기타 (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9. $○ ○$ 님은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 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2)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3)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9-1. (문9에서 '1, 2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2)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3) 사회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 부족
(4) 국민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5) 사회 • 경제적 지위 차이
(6) 기타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0. ○○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2)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3)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0-1. (문 10 에서 ' 1,2 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결함
(3)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불철저
(5)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1. ○○님의 가정에서는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합니까?
(1) 아버지
(2) 어머니
(3) 남편
(4) 아내
(5) 부모 공동 의사
(6) 부부 공동 의사
(7) 자녀
(8) 가족 모두
(9) 기타 (
(10)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2.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 습니다. $\bigcirc \bigcirc$ 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성과가 있다
(2) 성과가 있는 편이다
(3) 별로 성과가 없다
(4) 전혀 성과가 없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2-1. (문12에서 '1,2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2)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3)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4)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
⑤ 기타 ( )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3. OO 님은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 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 다음은 주요 법 관련 현안에 대한 $○ \bigcirc$ 님의 의견을 여쫍겠습니다.

문14.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OO 님은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5.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과거 10 여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bigcirc \bigcirc \bigcirc$ 님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 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6.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OO님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7. 최근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bigcirc \bigcirc$ 임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8.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 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O \bigcirc$ 님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성과가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성과가 있다
(2) 대체로 성과가 있다
(3) 별로 성과가 없다
(4) 전혀 성과가 없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19.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 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이 2015 년에 제정되었습니다. O ○님은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과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성과가 있을 것이다
(2) 대체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
(3)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4) 전혀 성과가 없을 것이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문20. 2007년에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O$ ○님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성과가 있다
(2) 대체로 성과가 있다
(3) 별로 성과가 없다
(4) 전혀 성과가 없다
(9)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 11 법에 대한 관심

|  | 전혀 <br> 그렇지 <br> 을뤟지 | 보통 |
| :--- | :---: | :---: | :---: | :---: | :---: |
| 이다 | 대체로 | 맿다 |
| 그렇다 그렇다 |  |  |

## 22 법에 대한 인식/정서

|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러d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러d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 :---: | :---: | :---: | :---: | :---: | :---: |
| 문25. 법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내용 으로 쓰여 있다 | (1) | (2) | (3) | (4) | (5) |
| 문26. 법은 국민의 뜻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 어진다 | (1) | (2) | (3) | (4) | (5) |
| 문27. 법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호한다 | (1) | (2) | (3) | (4) | (5) |
| 문28. 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 (1) | (2) | (3) | (4) | (5) |
| 문29.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 (1) | (2) | (3) | (4) | (5) |
| 문30. 주위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신고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3 법에 대한 준수

|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렇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대체로 <br> 그렇다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 :---: | :---: | :---: | :---: | :---: | :---: |
| 문31. 정부(중앙행정기관)는 법을 잘 지킨다 | (1) | (2) | (3) | (4) | (5) |
| 문3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는 법을 잘 지킨다 | (1) | (2) | (3) | (4) | (5) |
| 문33.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 (1) | (2) | (3) | (4) | (5) |
| 문34. 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 (1) | (2) | (3) | (4) | (5) |
| 문35.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잘 지킨다 | (1) | (2) | (3) | (4) | (5) |

## 4 법이 의한 기본권 보장

|  | 전혀 <br> 그렇지 <br> 블렇지 | 보통 |
| :--- | :---: | :---: | :---: | :---: | :---: |
| 다다 | 닪다 | 그롷다 | 므렇다

## 수 법의 실효성 보장

|  | $\begin{aligned} & \text { 전혀 } \\ & \text { 그러d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별로 } \\ & \text { 그러d지 } \\ & \text { 않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보통 } \\ & \text { 이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대체로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우 } \\ & \text { 그렇다 } \end{aligned}$ |
| :---: | :---: | :---: | :---: | :---: | :---: |
| 문42.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 | (1) | (2) | (3) | (4) | (5) |
| 문43. 법은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인다 | (1) | (2) | (3) | (4) | (5) |
| 문44. 법은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인다 | (1) | (2) | (3) | (4) | (5) |
| 문45.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한다 | (1) | (2) | (3) | (4) | (5) |
| 문46. 법은 정부 권한을 통제(제한)한다 | (1) | (2) | (3) | (4) | (5) |

## 숙 법의 제정집행

|  | 전혀 | 별로 |
| :--- | :---: | :---: | :---: | :---: | :---: |
| 그렇지 |  |  |
| 그렇지 |  |  |
| 않다 | 볺도아 |  | 디다 | 게로 |
| :---: |
| 그렇다 그렇다 |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mathrm{DQ} 1 . \bigcirc \bigcirc$ 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이상
(6) 기타 ( )
$\mathrm{DQ} 2 . \bigcirc \bigcirc$ 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기혼
(3) 별거/사별
(4) 기타(
$\mathrm{DQ} 3 . \bigcirc \bigcirc$ 님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1) 1 명
(2) 2 명
(3) 3 명
(4) 4 명
(5) 5 명 이상

DQ3-1. (DQ3에서 ' 1 번' 이외의 응답자에게만) 그럼, $\mathrm{O} \bigcirc$ 임 댁의 가구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 세대 가구(형제/자매 또는 부부로 구성)
(2) 2 세대 가구(부부+자녀 또는 부부+부모로 구성)
(3) 3 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로 구성)
(4) 기타 (

DQ4. ○○님 댁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1) 100 만원 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 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 만원
(7) 600-699만원
(8) 700-799만원
(9) 800-899만원
(10) $900-999$ 만원
(11) 1,000 만원 이상

DQ5. ○○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기족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사 등)
(3)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mathrm{A} / \mathrm{S}$ 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작업직(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 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전업주부
(10) 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무직
(12) 기타( )

DQ6.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 최상층을 (5)라고 할 때, $\bigcirc \bigcirc$ 님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Q7. 선생님의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0]:    9)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 한국법제연구원, 2008. 123면,
[^1]:    12） CAPI 조사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효미•이상호•성재민•배 기준，『패널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기법 연구－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방 법－』，한국노동연구원，2012．25－27면；김희재，＂국민생활시간조사 실시간 분석을 위 한 연구＂，『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Vol 6．No5，2004．10．， 1427－1428면을 참조할 것．

[^2]:    50) 동아일보 2014.11.10. "한중 FTA 협상 시작 30개월 만에 타결…어떤 내용?" (http://news.donga.com/3/all/20141110/67776755/2)
    51) 프레시안 2015.1.7. "한중 FTA, 체결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955)
    52) 연합뉴스 TV 2014.12.8. "조현아 부사장, 사상 초유 갑질‥비행기 회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92613)
    53) 이데일리 2015.2.23. "땅콩회항" 2 라운드 돌입 $\cdots$ 檢 항소장 제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3319366609273472\&D CD=A00704\&OutLnkChk=Y)
    54) 머니투데이 2015.2.11. 기사 "이기권 장관 " '열정페이' 문제, 해소해나갈 것"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21111467693312)
    55) 조선닷컴 2015.1.9. "이상봉, 청년 착취 甲 불명예…'열정페이' 월급 보니 ‘충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9/2015010901385.html)
    56) 세계일보 2015.2.25.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확인, 김군은 왜 IS를 택했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2/24/20150224005820.html?OutUrl=naver)
    57) 아시아투데이 2015.3.18. "IS 김군, 김기종..테러방지법 논의 ‘활활'"
[^3]:    85）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80면；박상철외 2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69면．

[^4]:    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 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퍼센트 또는 3 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 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 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았다（헌재 1999．12．23．［98헌마363］）．
    90）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 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를 차 별하는 제도이다．가산점제도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데에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으며，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 퍼센트 또는 3 퍼센트 를 가산함으로써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 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 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 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 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헌재 1999．12．23．［98헌바33］）．

[^5]:    92)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88면.
[^6]:    99）박상철외 2 인，『1991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1．65면；이세정•

[^7]:    101)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11.4.5. - 4.19에 전국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보다 법준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http://www.goodlaw.org/bbs/view.asp?id=guide_item_bd\&menu=guide\&b_idx=315\&page=15 2015년 10월 30일 방문). 즉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8]:    103)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97면.
[^9]:    104)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01면.
[^10]:    108) 경찰청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즉 피의자가 불량만두소를 제조하여 국내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만두업체에서 만든 만두는 모두 쓰레기와 다름없는 불량만두소를 원료로 만들어진 불량제품 내지는 소위 '쓰레기 만두'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으로 써 만두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이 국민의 보건 -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의정 부지법 고양지원 2006.2.10. [2004가합5723]).
    109)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17면.
[^11]:    119)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45면.
[^12]:    142）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285면；박상철
    외 2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143면．
    143）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285면；박상철 외 2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143면．

[^13]:    146) 환경범죄단속법은 1999.12.31. 전부개정을 하였는데, 전부개정시 본 법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후 2011.4.28. 법의 명칭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단속법)>으로 바뀌면서, 그 목적도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
    14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헌재 2013.7.25.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위헌제청 (헌재 2011.12.29. [2011헌가3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 헌제청 등(헌재 2010.9.30. [2010헌가 $10 \cdot 31 \cdot 43 \cdot 45 \cdot 46 \cdot 49 \cdot 62 \cdot 68]($ 병합))이 나 타났다.
[^14]:    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2015．3．10．－3．12．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00 명을 대상으 로＂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잘된 일로 보는가，잘못된 일로 보는가？＂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도 잘된 일（ $58 \%$ ），잘못된 일（ $21 \%$ ），모름／응담거절（22\％）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 부정부패，비리가 사라질 것 $(31 \%)$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 $(11 \%)$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 $(10 \%)$ ，법으로 명시／법 제정，통과 자체에 의의（ $10 \%$ ）로 나타났다（한 국갤럽 조사연구소，『데일리 오피니언』제153호，2015년 3월 2주， 13 면）．
    157）이 법의 제정이유는＂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 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나，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이에 공직 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공직자등의 금품등 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 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15]:    169）박상철 외 2 인，『1994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247면．
    170）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11면．
    171）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8．115면．

[^16]:    179)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30면
[^17]:    180)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25면
[^18]:    181）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p．26－28；World Justice Project， ${ }^{『}$ Rule of Law Index 2015』，pp．30－31．

[^19]:    186）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134；World Justice Project，${ }^{『}$ Rule of Law Index 2015』，p． 132.

[^20]:    187)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1면.
[^21]:    190）이세정 • 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2008， 84 면．
    191）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국가주요지표－부문별지표－기관신뢰도－통계표 （한국사회과학자료원，『한국종합사회조사』，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cd＝2985 2015．10．30．최종 검색）
    192）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134；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 132.

[^22]:    194）이세정•이상윤，『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한국법제연구원，2008，87면 195）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국가주요지표－부문별지표－기관신뢰도－통계표 （한국사회과학자료원，『한국종합사회조사』，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cd＝2985 2015．10．30．검색）
    196）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p26－28；World Justice Project， ${ }^{『}$ Rule of Law Index 2015』，pp．30－31．

[^23]:    197) 김해성, ""비대칭적 정의감’의 의미와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제47권 3호, 2015.9, 51~52면에서는 '갑의 횡포'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균형 잡힌 정의감의 부재에 대한 분노라고 보고 있다.
    198)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24]:    201）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134；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 132.

[^25]:    202）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134；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 132.

[^26]:    204）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134；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 132.

[^27]:    208）부패인식지수는＇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1995년부터 World Bank 등 13 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매년 작성해 온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한다（통계청，e－나라통계 홈페이지－부문별 지표－사회－사회통합－신뢰와 투명성－부패 인식지수－정의
    （http：／／www．index ．go．kr／potal／enaraIdx／idxField／userPageCh．do 2015．10．30．검색））．
    209）OECD 회원국 중에서는 34 개국 중에서 27 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통계 청，e－나라통계 홈페이지－부문별 지표－총량지표－행정일반－청렴／부패－부패 인식지수（CPI）－지표해석－국제간 비교
    （http：／／www．index．go．kr／potal／enaraIdx／idxField／userPageCh．do 2015．10．30．검색））．
    210）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 • 공익신고－신고안내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

[^28]:    216)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36면.
[^29]:    231）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국가주요지표－부문별지표－기관신뢰도－통계표 （한국사회과학자료원，『한국종합사회조사』，각 년도 자료 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cd＝2985 2015．10．30．검 색）
    232）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16．
    233）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30．
    234）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 26 ．
    235）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4』，p．28；World Justice Project，『Rule of Law Index 2015』，p． 31 ．

[^30]:    236) 그러나, OECD 조사 결과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 앙정부(national government)에 대한 신뢰도는 $34 \%$ 로 24 위를 차지하였으며, 사법제도 (judicial system)에 대한 신뢰도는 $27 \%$ 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 2015.10.30. 최종 검색).
